

■ 2014년 전문자료집 ■

팀 역량 강화



남동강애인종합복지관

8. 열린일터	
◦ 14-17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과 장애인생산품 인증의 차이점	229
◦ 14-18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41
9. 남동사회복귀시설 그루터기	
◦ 14-19 사례연구의 실제	259
◦ 14-20 정신장애인 평가도구의 이해 (지역사회에의 정신장애인 사례관리, 공문서 작성법)	264

2014 행복한 직장의 조건



팀 명	업무지원팀
일 시	2014. 5. 28
발표자	최 유 라
장 소	남동장애인복지관 대회의실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2014 행복한 직장의 조건

행복한 직장생활의 비결 및 직장 일을 재미있게 하는 방법

◎ 행복한 직장 생활하기 10계명

1. 생각을 잡자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탈피하고 습관을 바꾸어 스스로를 낙관의 힘으로 채워본다.

2. 마음을 잡자

쓸데없는 걱정이나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3. 행동을 잡자

언행을 주의하고 말이나 행동에 앞서 세 번씩 생각해보자.

4. 감사하자

감사의 마음을 목례나 눈인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감사인사를 통해 실제로 표현하자.

5. 조금씩 나아지자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실수를 통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배움으로써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

6. 섬기자

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야 다른 사람도 존중할 수 있다.

7. 내 자신의 가치를 알자

스스로 잘하는 일, 회사에서 세웠던 공, 주변 동료들에 도움을 주었던 일 등 자신의 치를 되새겨보자. 회사가 내 덕에 잘 된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지고 일을 즐길 수 있다.

8. 지금 이 순간의 삶을 깨닫자

과거에 대한 후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실패에서 배우되 현재를 즐기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9. 사랑을 확인하자

자신과 주위사람들에게 사랑과 관대함을 나눔으로써 행복을 전파할 수 있다. 다양한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10. 매력적인 사람이 되자

'독한사람'은 어느 순간 한계를 느끼게 되고 '능력자'는 시기와 질투를 받지만
'매력적인 사람'은' 최후의 순간에 웃을 수 있다.

[출처] 현대경제연구원, 즐거운 직장생활을 하기 위한 10계명

서비스를 위한 경청과 대화



팀 명	업무지원팀
일 시	2014. 12. 15
발표자	최 유 라
장 소	남동장애인복지관 대회의실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업무지원팀 역량개발

일시 : 2014년12월15일

주제 : 서비스 개선을 위한 경청과 대화

경청의 3단계

경청해라, 잘 들어라 많이 이야기 듣지만, 그 말은 얼마나 귀 기울여 듣나요?
인간관계에서 경청처럼 중요한 스킬도 없습니다. 단지 듣기만 하면 되는데 말처럼 쉽지 않지요.

경청은 3단계의 수준이 있습니다.

1단계는 상대의 말을 글자 그대로 귀 기울여 듣는 겁니다.
상대를 집중하여 보고, 불필요한 잔 동작을 없애고, 진지하게 몰입하는 겁니다.
상대가 내 경청을 느끼도록, 지나가는 사람도 뭐 그리 재미있을까 한번더 돌아볼 정도로 들어줍니다.
고개도 끄덕이고, 네에~, 그렇군요.. 추임새도 넣어줍니다.
이를 '몸으로 듣기 (visual listening)'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해보면 이도 쉽지 않음을 아실겁니다.

2단계는 상대의 진정한 의도와 심중에 빠지는 겁니다.
말 들으면서 속으로는 다음에 이런 말을 해야지, 이걸 틀린 소린데, 메모리에 저장하고 사이드로 CPU 돌리지 말고 무아지경으로 듣는겁니다.
말하는 내용뿐 아니라, 말하는 이유까지 새겨 듣습니다.
또한, 이런 몰입은 상대도 느끼고, 대화를 더욱 멋지게 만듭니다.

3단계는 정말 어려운 단계입니다.
정말 상대의 말이 맞다면, 내 신념을 바꿀 각오를 하고 듣는 겁니다.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좋은 사람은 대개 2단계까지는 잘 구사합니다.
그러나 3단계의 경청은 배우자에게도 쉽지 않을겁니다.
하물며 적에게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만일 예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천하를 얻든, 벼를 얻든, 매일 매일 진보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팀역량강화 14-03

한국사례관리학회
사례관리전문가 교육
(사례관리 기록양식 중심으로)



팀 명	지역복지팀
일 시	2014. 02. 24(월) 18:00~19:00
발표자	이건용
장 소	상담실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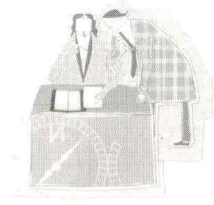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제 7 장

사례 기록

유명이(대림대학교)



기록이란 사례관리 실무자인 기록자가 사례의 의미를 표현하려는 시도다. 사례관리 기록은 사례관리를 효과적으로 운영 및 평가하기 위한 사례관리자의 주요 업무이며, 진실한 기록과 클라이언트에 대한 사적권리의 보장 및 문서관리는 사례관리자의 주요 책무라고 할 수 있다(Kagle, 1997).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업무량이 많은 사례관리자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직접서비스에 비해 기록업무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효과적인 사례관리를 방해하는 요소로 인식함으로써 점차 기록의 질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렇게 기록업무가 사례관리자에게 지나친 부담이 되고 있다면 사례관리자에게 무조건 기록을 질을 높이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우선 기록양식과 기록방법의 점검을 포함한 행정업무 정책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1. 사례관리 양식의 이해 및 활용

사례관리를 실행하는 기관에서는 이미 대부분 기관의 정책이나 행정 지침에 의거한 기록양식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인천시 사회복지관협회와 사례관리연구회가 공동연구로 개발한 기록양식을 토대로 사례관리자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기록방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표 7-1〉 사례관리 과정과 기록양식

과정	기록양식
초기면접	1. 초기면접지 2. 사례관리 동의서
사정	3. 사례관리 사정표
계획	4. 사례관리 계획 및 평가표
실행	5. 사례관리 과정기록지 6. 서비스 의뢰서 7. 사례보고서 8. 슈퍼비전 일지
종결	9. 사례관리 종결보고서

출처: 권진숙 외(2009).

1) 초기면접(인테이크) 단계의 기록

- 초기면접자의 과업은 서비스 요청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대상자가 본 복지(기)관의 사례관리 서비스 대상으로 적합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초기면접에서는 ‘초기면접지’와 ‘사례관리 동의서’ 작성이 실행된다.
- 기록은 사례관리 대상자를 직접 면접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되 필요에 따라 의뢰인 또는 후견인과 함께 면접할 수 있다.

- 초기면접은 해당 복지기관의 사례관리자가 작성하지만 초기면접자가 반드시 사례관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초기면접자가 대상자를 사례관리 대상으로 판정한 경우 사례관리팀의 운영규정에 따라 사례관리자를 배정한다.
- 초기면접에 참여한 대상자/후견인의 도움요청 내용은 진술자의 표현을 원형 그대로 기록하는 것이 좋다. 대상자의 표현에 대해 사정할 경우 표면적으로 드러난 '요구(want)' 이면에 숨겨진 '욕구(need)'를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초기 사정자와 사례관리자가 다를 경우 같은 질문과 대답을 반복하는 수고를 덜 수 있다.
- 초기면접 후 3일 이내에 배정된 담당 사례관리자가 대상자를 접촉하도록 한다.
- 초기면접에서 사례관리 대상으로 판정이 된 경우 대상자와 함께 사례관리 과정 참여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한다.

❖ 초기면접지 작성법

- 후견인: 친족 외에 대상자를 보호하고 있거나 근거리 지원체계가 되고 있는 사람이다. 법적 후견인 자격과 무관하다.
- 장애 유형/등급: 법적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유형과 등급을 표시한다.
- 가족사항: 가족과 현재 동거인을 포함하여 기록한다.
- 도움요청 내용: 대상자가 진술하는 어려움과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을 진술한 원형인 구어체로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상자 이외의 사람이 제시한 유의미한 요청이 있을 경우 함께 기록하되, 누구의 진술인지 반드시 기록한다.
- 면접자평가: 면접자는 대상자의 진술과 조사된 객관적 정보를 중심으로

초기면접지

접수번호	0811-001	일시	2008년 12월 18일
면접자	최○○ 사례관리자	장소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가정 <input type="checkbox"/> 내방 <input type="checkbox"/> 전화 <input type="checkbox"/> 지역사회 기관()
면접참여자	정○○ 대상자		
면접경로	<input type="checkbox"/> 본인 요청() <input type="checkbox"/> 사례관리자의 발골 <input type="checkbox"/> 기관 내부 의뢰() <input checked="" type="checkbox"/> 타 기관 의뢰(○○어린이집) <input type="checkbox"/> 주민 의뢰() <input type="checkbox"/> 기타()		
상담장소	<input type="checkbox"/> 가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내방 <input type="checkbox"/> 전화 <input type="checkbox"/> 지역사회 기관()		

대상자	정○○	주민번호	810725-*****						
주소	경기도 ○○시 ○○동	전화번호	031-000-0000						
후견인	성명: (관계)	전화번호							
장애유형/급	지적장애 3급	건강상태	<input type="checkbox"/> 양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질환(턱관절 이상, 우울증)						
보호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수급 <input type="checkbox"/> 조건부수급 <input type="checkbox"/> 저소득/차상위 <input type="checkbox"/> 기타(의료보호/영유아보육료 지원, 보훈 등)								
주거상태	<input type="checkbox"/> 자택 <input type="checkbox"/> 전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월세(무보증급, 월 15만 원) <input type="checkbox"/> 영구임대 <input type="checkbox"/> 기타()								
가족사항	관계	성명	나이/성별	직업	결혼 상태	동거 여부	연락처	기타	
		아들	김○○	3	미취학	-	동거	상동	간질, 발달장애 의심
		아들	김○○	10개월	미취학	-	동거	상동	천식, 역류성 식도염, 모세기 관지염

대상자의 진술 (도움요청 내용)	-분유값과 기저귀를 지원해 주면 좋겠어요. -둘째 아이가 천식, 역류성 식도염 등 여러 질병을 갖고 있어 입원을 자주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천식 기계를 사면 입원을 자주 안 한대요. 기계를 어디서 사는지, 얼마나 하는지 알아봐 주실 수 있나요? -핸드폰이 고장이 나서 새로 개통하려고 대리점에 갔더니 나도 모르게 내 이름으로 핸드폰이 여러 회사에서 개통되어 미납금이 300~500만 원이 된대요. 지갑을 잃어버린 적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턱관절에 이상이 있어서 날씨가 추우면 소리가 나고 아파요. 수술비가 8000만 원 정도 든다는데 혹시나 가능하다면 수술을 하고 싶어요. -지금은 ○○대학병원 신경정신과를 이용하고 있는데 다른 병원으로 옮기고 싶어요.
면접자평가	위 대상자 가구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법률적인 어려움, 의료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나, 보호자인 정○○ 대상자의 지적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의 판단능력이 비장애 인보다 낮은 상황이며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있어서 방법을 모르는 부분이 많으므로 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대상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지해 주어야 한다고 사유됨
대상판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대상(긴급/일반) <input type="checkbox"/> 비대상(정보제공 / 연계:)

[그림 7-1] 초기면접지 작성 예시

주: 이 장에서 제시된 예시는 인천시 사회복지관 사례관리자에 의해 작성된 기록지를 대상자와 작성자의 동의를 얻어 일부 수정한 것이다.

출처: 권진숙 외(2009).

로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여부 및 위험도에 대한 사정을 실시한 후 평가란에 기록한다.

- 대상판정: 본 복지(기)관의 사례관리 서비스 대상으로 적합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정한다. 이 양식에서는 먼저 대상과 비대상으로 사례 유형을 분류하였다. 사례관리 서비스 대상으로 판정된 경우 대상자의 도움요청 내용에 따라 긴급개입 및 일반개입 여부를 판정한다. 긴급개입이 필요한 경우 사례관리자 배정과 사정 및 개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처리한다. 비대상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타 기관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연계하여야 한다. 이 단계에서 실행되는 연계는 '서비스 의뢰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구체적인 대상기관과 담당자에게 직접 연결하여 서비스가 지속되도록 하여야 한다.

❖ 사례관리 동의서 작성법

- 초기면접을 통해 사례관리 대상자로 판정된 경우 면접자는 본 기관에서 실행되는 사례관리 서비스의 과정 및 내용에 관해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서비스 동의서를 작성한다.
- 면접자는 서비스 소개를 위해서 기관안내문과 사례관리 안내문 및 그에 준하는 문건을 사용하여 최대한 자세하고 쉬운 말로 설명하여야 한다. 설명 후에는 문건을 대상자 또는 후견인에게 제공한다.
- 사례관리 동의서에는 이후 진행될 사례관리 과정이 사례관리자 및 기관과 대상자 상호가 협력하는 과정이라는 점이 강조되며, 특히 사례관리기관의 전문 서비스 제공 및 비밀보장에 대한 책임과 대상자의 정보 제공 및 적극적 참여의 책임에 대한 상호 동의가 포함된다.
- 면접자는 대상자 또는 후견인에게 동의서의 내용을 설명하고 충분히 이해하였다고 생각되면 이름을 기록하고 직접 서명하도록 안내한다.

- 동의서는 2장을 서명하여 사례관리자와 대상자(후견인)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사례관리 동의서

- 본 사회복지(기)관의 사업 및 사례관리 서비스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본 사회복지(기)관은 귀하의 사회복지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아래의 목적 이외에 귀하의 개인적인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관장 _____ (인)

본인은 귀 ○○사회복지(기)관에 관한 소개와 사례관리 서비스의 과정 및 내용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이해했습니다. ()

- 본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귀 복지(기)관에서 제공하는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사례관리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제반 활동에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
- 본 자료가 본인과 관련된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학문적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

20 ____ 년 ____ 월 ____ 일

성 명: _____ (인)

후견인: _____ /관계: _____ (인)

[그림 7-2] 사례관리 동의서 기록양식 예시

2) 사정 단계의 기록

- 초기면접이 이루어진 후 3주 이내에 사례관리 사정 및 계획이 완료되고, 사례회의 또는 통합사례회의를 거쳐 늦어도 1개월 이내에 목표에 입각한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 대상자와 가족을 직접 대면하여 사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밖의 의뢰인,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지역사회 관련 기관 담당자 등 대상자에 대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의미 있는 타인에게서 정보를 입수하여 포괄적인 자료를 수집한다.
- 사정을 위해서는 1회 이상의 가정방문을 실시한다.
- 사정면담 과정에서 녹음을 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면담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필기나 녹음기 등의 기구가 면담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대상자의 말에는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대상자의 욕구표현을 서비스 제공자의 말로 전환하여 기록하게 될 경우 그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대상자의 욕구표현은 문장 그대로 살려서 기록한다.
- 사정을 위해 제시된 욕구는 푸념이나 불만 호소를 넘어서 해결되기를 바라는 상황이나 조건에 대한 진술을 하도록 유도한다(“~(하)게 되면 좋죠.”). 대상자가 바라는 상황에 대한 진술은 다음 단계에서 대상자의 동기가 포함된 장기목표로 설정될 수 있다.
- 사례관리 사정은 3개월을 주기로 재사정을 실시한다. 단, 사례관리자는 대상자 또는 환경의 새로운 요구(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재사정을 실시한다.
- 재사정 시에도 사정과 계획이 함께 시행되는데 동일한 양식인 ‘사례

관리 사정표', '사례관리 계획 및 평가표'가 이용된다.

❖ 사례관리 사정표 작성법

- 유형: 욕구의 주체나 욕구 해결에 관련된 체계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유형을 구분하기 어렵거나 복수의 유형과 연관된 경우 기타 의미 있는 욕구로 분류한다.
- 우선순위: 모든 욕구에 대한 사정이 끝난 후 대상자의 호소 정도, 객관적 긴급성, 해결 가능성, 현실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전체 욕구를 대상으로 개입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우선순위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대상자다.
- 제시된 욕구: 대상자, 가족, 기타 의미 있는 타인이 진술하는 욕구를 진술문의 원형 그대로 기술한다(예: “남편이 술이나 먹지 않으면 살겠어요.”). 대상자 이외의 사람(가족이나 의뢰자)이 제시한 욕구라면 제시자가 누구인지, 누구의 욕구인지를 기록한다. 대상자가 동의하지 않았으나 사례관리자가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내용 역시 사례관리자가 제시한 욕구로 기록한다. 욕구는 각 유형으로 분류하여 기록한다.
- 이용 가능한 자원: 제시된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자원으로서 대상자의 내적인 강점과 환경적인 자원을 포함하여 기술한다. 현재 문제와 직접 연결되지 않더라도 이전에 클라이언트나 가족이 이용하였거나 이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자원에 대한 사정을 포함한다.
- 내/외적 장애물: 제시된 욕구의 해결에 방해가 되는 장애요인에 대해 내부 장애물과 외부 장애물로 나누어 사정한다. 장애물의 유형은 클라이언트와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외부 환경적 장애물로 구별된다. 이때 신체적, 정신적 문제를 제시할 경우 반드시 객관적 근거가 동시에 명시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우울증이 있다고 진술할 경우 병원치료

사례관리 사정표

관리번호	0811-006	대상자	정○○	사례관리자	최○○ 주임
시정일시	2008. 12. 24	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재사정	정보제공자	정○○

유형	우선 순위	제시된 욕구	이용가능한 지원(강점)	내/외적 장애물
개인수준의 욕구	2	○○대학병원 신경정신과를 이용하고 있는데 다른 병원으로 옮기고 싶어요.	-병원을 옮길 때까지 치료를 유지하겠다는 대상자의 의지가 있음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 있음 -남자 의사선생님을 꺼림
	5	턱관절에 이상이 있어서 날씨가 추우면 소리가 나고 아파요. 수술비가 8,000만원 정도 든다는데 가능하다면 수술을 하고 싶어요.	-○○병원 자선진료실에서 300만원 지원 예정임	-수술비용이 비싸 많은 자원을 개발하여야 함
가족수준의 욕구	3	둘째아이가 천식, 역류성 식도염 등 여러 질병을 갖고 있어 입원을 자주 하는데 의사선생님이 천식기계를 사면 입원을 자주 안 한대요. 기계를 어디서 따는지, 얼마나 하는지 알아봐 주실 수 있나요?	-○○병원 담당의	-경제적 여건 안 됨
	4	분유값과 기저귀를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재가복지봉사센터결연서비스/생필품지원	-후원자 매칭이 되어야 지원 가능 -유아용품 후원처가 거의 없음
기관 및 조직 수준의 욕구	6	아이 어린이집에서 자주 오라고 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담당 보육교사	-수줍음과 말더듬으로 어린이집에 문의하기 어려움
지역사회 및 정책 수준의 욕구	7	동네 재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갑자기 철거한다고 할까 봐 걱정이예요.	-재개발주민협의회사무실 -동반장이 옆집에 살고 있음	-재개발사무실 사람과 싸운 적이 있어서 찾아가지 않음
기타 의미 있는 욕구	1	나도 모르게 내 이름으로 핸드폰이 여러 회사에서 개통되어 미납금이 300~500만원이 된대요.	-핸드폰 회사 명의 도움 신고 서비스 -범무법인 「○○」 김○○변호사	-명의도용 시 대상자가 직접 대리점 방문해야 함 -신고 결과에 대한 불확실

척도를 이용한 사정	척도 종류	사정결과
	가계도, 생태도	친인척과는 관계가 단절된 상황이나 사회적인 지지체계는 다양하며 많은 지원을 받고 있음
사례관리 수준판정	<input type="checkbox"/> 긴급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집중 <input type="checkbox"/> 일반	

종합 의견
 대상자는 현재 다양한 사회적 지지망을 갖고 있으나 직접서비스(물질) 위주로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어 대상자의 문제 및 욕구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사례관리 집중 대상자로 선정하고자 함

[그림 7-3] 사례관리 사정표 작성 예시

〈표 7-2〉 사례관리 대상자 수준판정 기준 및 예시

관리수준	사례관리 수준판정 기준 및 예시
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가족 혹은 의뢰자의 판단으로 긴급개입이 요청된 경우 • 의식주 관련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예, 결식-1일 이상, 주거 상태의 응급상황-난방시설, 위생상태 등, 3개월 이상 관리비 체납 등) • 폭력사건(아동학대, 가족폭력, 성폭력, 자살 등)이 일어난 직후 또는 발생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 경우 • 질병의 급격한 재발과 건강의 악화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예, 정신질환의 재발로 인해 자해 및 타해의 위험성이 있어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 위의 상황으로 인해 법적, 의료적, 경제적 지원이 긴급히 요청되는 경우 • 대상자나 가족을 위한 긴급개입이 요청되나 가족 등 자연적 지지체계가 적절한 작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 갑작스러운 사고(실직, 사고, 가족원의 사망 등)로 인해 경제적 및 사회적으로 위기 상황에 직면한 경우
집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채 관련 문제가 가족의 생계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으나 적절한 관리를 위한 전문적, 법적 체계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 • 대상자 혹은 가족을 위해 긴급한 의료적 진단과 개입이 요구되나 현 시점에서 자연적 자원 연결이 불가능한 경우 • 대상자 혹은 가족을 위해 정신의료적 사정과 개입이 요구되나 현 시점에서 자연적 자원 연결이 불가능한 경우 • 대상자 혹은 가족이 심각한 의료적 문제, 물질중독 문제(알코올과 마약 중독 등), 행태중독 문제(오락, 게임, 도박중독 등), 정신질환 문제(정신분열병, 우울증 등)가 있으나 치료를 위한 적절한 지원체계와 연결되어 있지 못한 경우 • 대상자 혹은 가족원이 가족폭력(성학대를 포함하여 방임과 학대) 사건에 연루되어 있거나 학대 가능성이 있으나 현 상황에서 가족원의 안전계획(safety plan)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기관의 충분한 협력을 얻을 수 없는 경우 • 사정을 위해 3개 이상의 전문체계의 연계가 요청되나 현 시점에서 주 사례관리체계와 주 사례관리자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 대상자나 가족원이 법적 체계(예, 보호관찰 대상자, 수감자 등)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경우 • 복합적인 욕구사정으로 인해 초기면접 후 1개월 이상 가정방문을 포함하여 주 2회 이상 대면 상담이 이루어진 경우 • 긴급 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긴급개입 이후 위기 상황이 종료되었으나 일정 기간 집중적 개입이 요청되는 경우 • 기타 대상자, 가족 혹은 의뢰자에 의해 집중적 개입이 요청된 경우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 및 집중 사례관리 수준에 해당되지 않는 대상자로서 장기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한 경우

근거(처방전이나 영수증) 또는 진단서를 통해 질병 사실과 정확한 진단명을 확인하여 기록한다.

- 척도를 이용한 사정: 객관적인 사정을 위해 생태도, 가계도 및 기타 표준화를 거쳐 보급되고 있는 척도를 사용하여 사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다. 척도를 사용할 경우 측정일시, 측정자, 결과, 그리고 측정자의 소견을 간략하게 기록하며 검사지 또는 구체적인 측정결과서는 사정지 뒤에 별지로 첨부한다.
- 사례관리 수준판정: 사례관리자는 사정결과를 종합하여 사례관리 수준을 긴급, 집중 혹은 일반으로 판정한다(〈표 7-2〉 참조).
- 종합 코멘트: 사정자는 사례관리 사정에 대한 이론적 및 경험적 근거를 기록한다.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위의 사정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 전문적 설명을 제시하며 사례관리 수준판정의 근거를 설명한다. 기록의 분량은 자율적으로 하되 반드시 기록한다.

3) 계획수립 단계의 기록

- 사정을 통해 작성된 욕구 목록을 실천을 위한 전략으로 설정하는 단계다. 계획 단계에서는 클라이언트의 요구를 중심으로 우선순위와 실천 계획이 선정되어야 하므로 클라이언트의 참여를 독려하여야 한다. 기록은 긍정적이고 행동적이며 생산적인 용어를 사용하며 클라이언트가 이해하고 수긍할 수 있는지 점검되어야 한다.
- ‘사례관리 사정표’를 기반으로 ‘사례관리 계획 및 평가표’를 작성한다.
- 사례관리자는 ‘사례관리 계획 및 평가표’를 작성한 후 대상자(또는 후견인)에게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안내한다. 클라이언트에게 사본을 전달하면 사례관리자와 함께 실행과업을 수행하고 점검하기에 유용하다.

- ‘사례관리 계획 및 점검표’는 제시된 욕구를 기반으로 사례관리실천 계획에서부터 실행 및 점검까지 일관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논리 모델에 근거한 평가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사례관리 계획 및 평가표 작성법

- 우선순위: ‘사례관리 사정표’에서 우선순위화한 욕구를 순서대로 재정렬하여 기록한다.
- 제시된 욕구: ‘사례관리 사정표’의 제시된 욕구를 기술한다. 이때 누구에 의해 제시된 욕구인지 함께 기록한다.
- 욕구수준: 사례관리 계획단계(개입 전)와 점검단계(개입 후)에 제시된 욕구의 심각도를 10점 척도로 대상자가 평가한 것을 기록한다(심각하지 않다 1점→매우 심각하다 10점).
- 합의된 목표: 제시된 욕구의 해결을 위해 사례관리자와 대상자가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세부목표다. 합의된 목표는 장기목표와 단기목표로 구분하여 설정할 수 있다. 단기목표는 장기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적 목표로서 3개월 이내 재사정을 통해 다음 단계로 진행하도록 한다.
- 실천계획: 합의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방법으로서 계획의 내용, 장소, 관련 자원 등을 포함해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이때 대상자가 실행자로서 역할을 하는 계획을 포함함으로써 변화계획에 참여하게 한다.
- 빈도: 실천계획에 의한 주당 서비스 제공 횟수 또는 실행 빈도를 기록한다.
- 담당: 실천계획을 실행할 사람(기관)으로서 기관 내부에서 담당할 경우 부서와 담당자의 이름, 외부 기관에 의해 제공될 경우 기관명과 담

사례관리 계획 및 평가표

등록번호	0811-006	대상자	정○○	사례관리자	최○○ 주임	일시	2008. 12. 24	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재사정	사례관리 수준	<input type="checkbox"/> 긴급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집중 <input type="checkbox"/> 일반
우선 순위	제시된 욕구		합의된 목표		실천계획		빈도 (회/주)	담당기관(부서)/담당	개입 기간	평가	
	1	나도 모르게 내 이름으로 핸드폰이 여러 회사에서 개통되어 피싱금이 300~500만원 된대요. 욕구 수준 개입 전(8)/개입 후()	명의도용에 대한 법적 문제를 해결한다.	명의도용의 구체적 상황 및 신고 절차를 파악한다. 명의도용 신고 및 절차를 진행한다.	상시	최○○ 사례관리자	정○○ 대상자	08. 12. 24 ~12. 30			<input type="checkbox"/> 달성(정도:) <input type="checkbox"/> 연장 <input type="checkbox"/> 재사정
2	○○대학병원 신경정신과를 이용하여 있는데 다른 병원으로 옮기고 싶어요. 욕구 수준 개입 전(7)/개입 후()	우울증 치료를 유지한다.	신경정신과 외래진료를 위한 처방을 지원한다. 여성 의사가 진료하는 인근 병원을 탐색한다.	월 1회 주 1회		재가복지봉사 센터(김○○ 복지사)	08. 12. 24 ~ 09. 01. 31	<input type="checkbox"/> 달성(정도:) <input type="checkbox"/> 연장 <input type="checkbox"/> 재사정			
3	둘째 아이가 친식... 의사선생님이 친식 기계를 사면 입원을 자주 안한대요. 욕구 수준 개입 전(6)/개입 후()	가정용 친식치류 기계를 구입한다.	필요한 친식치류 기계의 모델과 비용을 확인한다. 치류기 구입을 위한 후원자원을 탐색한다.	주 1회	최○○ 사례관리자	정○○ 대상자 (주)정○○대 상자/○○병원 (김○○원장)	08. 12. 24 ~ 09. 01. 31	<input type="checkbox"/> 달성(정도:) <input type="checkbox"/> 연장 <input type="checkbox"/> 재사정			
4	분류값과 기저귀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어요. 욕구 수준 개입 전(4)/개입 후()	육아용품물 지원받는다.	분류와 기저귀를 지원한다.	월 1회		보건소 (정○○ 주사)	08. 12. 24 ~ 09. 03. 31 (3개월)	<input type="checkbox"/> 달성(정도:) <input type="checkbox"/> 연장 <input type="checkbox"/> 재사정			

상기와 같은 서비스 제공 및 이용에 동의하며, 계획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할 것을 상호 약속합니다.

200__년__월__일

성명: 정○○ (인) 후견인: 없음 /관계: (인) 사례관리자: 최○○ (인)

[그림 7-4] 사례관리 계획 및 평가표 작성 예시

당자의 이름을 기록한다. 대상자 또는 가족 역시 담당자가 될 수 있다. 내부와 외부의 기관이 공동으로 담당할 경우에는 모두 기록하며 주 담당자를 표시한다(예, (주)○○사회복지사).

- **개입기간:** 해당 실천계획의 실제적인 실행기간이다. 실행기간은 정기적 재사정주기(예: 3개월)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 **평가:** 각 실천계획의 실행 종료일에 목표 달성 여부에 관해서 평가한다. 평가결과는 ‘달성’ ‘연장’ ‘재사정’으로 구분하여 ✓를 표시하고 그에 대한 설명을 기록한다. ‘달성’으로 평가된 경우 대상자가 목표 달성 수준을 10점 척도로 평가하여 기록한다(달성하였으나 매우 미약 1점→충분히 달성됨 10점).
- **전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한 후에는** 대상자 및 후견인에게 내용을 설명하고 서비스 실행과 참여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계약과정에서는 사례관리자와 대상자 및 후견인의 역할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합의한다. 합의된 계약서는 사례관리자와 대상자가 한 장씩 나누어 가지며 이 계획표를 사례관리 점검을 위한 자료로 사용하면 효율적이다.

4) 실행 단계의 기록

실행 단계에서는 ‘사례관리 과정기록지’ ‘서비스 의뢰서’, ‘사례보고서’를 기록한다.

❖ 사례관리 과정기록지

- ‘사례관리 과정기록지’에는 시간 진행순서에 따른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결과를 기록한다. 사례관리자는 대상자가 이용하고 있는 자원을 모두 파악하여 조정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례관리자에 의해 제공

되는 서비스와 연계된 기관 내외부 조직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모두 기록하는 것이 좋다.

- 기관에 따라 상담일지 또는 프로그램 일지에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할 경우 과정기록지에는 실행된 서비스의 제목 정도라도 기록하여 과정기록지를 통해 사례관리의 진행과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 과정기록지에서 자원 개발 및 연계 과정에 관한 기록은 점검의 기능을 동반한다. 타 기관에 의뢰된 이후에 정기적인 점검사항을 과정기록지에 간략하게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좋다.
- 서비스의 종결 이후에 실행되는 사후관리도 과정기록지에 기록한다.
- 과정기록은 자칫 사례관리자에게 행정업무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따라서 기관에서는 기록의 전산화를 포함한 업무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기록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서비스 의뢰서

- ‘서비스 의뢰서’는 사례관리자가 서비스 계획을 수립한 내용 중에서 내부 기관의 타 부서나 외부 기관의 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 활용한다.
- 의뢰서는 대상자에 대한 사정 및 계획과 연계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요소를 분명히 밝힘으로써 불필요한 사정의 반복을 피하고 설정된 목표를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의뢰서에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사례관리 사정표와 사례관리 계획 및 평가표를 첨부하게 될 경우 대상자에게 이러한 사항을 공지하고 동의를 받는다.

❖ 사례관리 과정기록지의 작성법

- 사례관리 서비스 및 관련 제반 사항을 시간 진행순서에 따라 기록한다.
- 각 복지(기)관에서 사용하는 전산 프로그램에 서비스 일지 또는 상담 일지를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 구분: 직접서비스(D: 사례관리자의 행동이 들어간 서비스. 상담, 자원 제공, 자원조사, 연계, 의뢰 등), 자원 활용(R: 사례관리자가 동행하지 않은 기관 내 사례관리팀 이외의 부서, 타 기관이나 조직 등이 제공한 서비스. 미술 치료, 방과후 교실, 병원진료, 자원봉사자의 방문 등). 자원 활용의 경우 매 회 기록할 수 없더라도 가능하면 대상자가 받고 있는 서비스의 총체를 기록한다.
- 접촉방법: 전화, 내방, 방문, 메일, 기타
- 내용: 사례관리 계획표에 의한 서비스의 제공, 각종 회의(사례회의, 통합사례회의, 솔루션 위원회) 및 슈퍼비전에 논제로 상정된 경우 평가, 재사정, 서비스 조정, 기타 대상자와 관련된 정보를 기록한다. 기록은 SOAP 형식에 따라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각 과정에 대한 기록 하단에 다음 과정에 대한 계획(P)의 명시는 SOAP 기록방식의 적용 유무에 상관없이 반드시 기록되어야 한다.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나도록(예, 언제 몇 시에 어디에서 클라이언트와 면담 예정/과제 확인 및 의뢰 서비스 제공 유무 확인 요함 등) 기록한다.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서비스는 서비스명만 기록한다.
- 소요시간: 사례관리자에 의해 제공되는 직접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소요된 시간을 '분' 단위로 기록한다.

사례관리 과정기록지

등록번호	2008-025	대상자	김○○	사례관리자	김○○
일시	구분	접촉방법	접촉대상	내 용	소요시간(분)
2008. 12. 20	R	전화		○○사회복지관에서 ct의 사례관리를 의뢰함.	
2008. 12. 26	D	방문	ca 외조모. ct	ca 가정을 방문하여 초기면접 진행함. ca와 외조모가 함께 본 복지관의 서비스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적으로 면담에 임함.	120
2009. 1. 6	D	방문	ct	ca의 인지능력 및 학습능력을 파악하고 ca의 학습의지와 욕구를 중심으로 사정을 실시함. 외조모와 서비스 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계약함.	50
2009. 1. 8	D	전화	○○동 주민센터	ca의 수급비 확인 및 ca 외조모의 수급자 대상자 선정 가능성 상담함. 국적취득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한다고 함.	15
2009. 1. 12	D	전화	외국인종합 상담소 ○○지부	ca 외조모의 국적취득 가능성에 대해 전화 문의함.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상담한다고 함. 19일에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기로 함.	10
2009. 1. 19	D	방문	○○출입국 관리사무소	ca 외조모 국적취득 가능성 상담함. 필요한 서류와 절차 등을 소개받음. 내일 ca의 외조모와 함께 다시 방문하여 신청하기로 함.	20
2009. 1. 20	R	내방	ca	ca 복지관 미술심리치류 서비스 진행함. (매주 화요일)	
2009. 1. 20	D	방문	○○출입국 관리사무소	국적취득은 한국 5년 이상 거주자에 한하여 신청 자격이 주어지므로 ca 외조모는 자격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함. 법적 후견인 및 ca 모 사망확인 진 단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체류연장 신청을 원함.	150
2009. 1. 30	D	전화	○○지역 자활센터	김○○ 복지사에게 방문학습지도 서비스를 의뢰 하고 팩스로 의뢰서를 전송함.	5
2009. 2. 3	R	내방	ca	미술심리치류 2회기 진행함.	
2009. 2. 4	D	전화	미술심리 치류사	어제 실시된 ca 미술심리치류에 대해 확인함. ca 가 거부감없이 참여하고 있으며 3개월 동안 실시 한 후 함께 평가하기로 함.	5
2009. 2. 5	R	방문	○○지역 자활센터	방문학습 도우미 파견함.	
2009. 2. 5	D	방문	ca외조모	사례관리 개입에 대한 중간 만족도 체크를 위해 방문함. ca 외조모와 ca 모두 매우 만족해함. 중국 조선족인 외조모의 한국 적응을 위한 서비스를 채용하기로 함.	30

[그림 7-5] 사례관리 과정기록지 작성 예시

❖ 서비스 의뢰서 작성법

- 의뢰서 작성 이전에 직접 또는 전화상으로 해당 기관의 담당자와 의뢰에 관한 조율을 하고 합의한 후 서류를 작성하여 전달하도록 한다.

서비스 의뢰서

기관: ○○지역자활센터 담당자: 김○○사회복지사 귀하

등록번호	2008-025	성명	최○○	성별/나이	♀/10
주소	○○시 ○○구 ○○동			전화번호	031-000-0000
후견인 성명	(관계)			전화번호	
보호구분		장애유형		사례관리자	
사례요약	<p>c는 1년간 ○○복지관에서 주 1회 미술심리치료를 받았으나, 심리치료가 2007년도 12월부로 종료가 되면서 지역 내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c 거주지 관할 복지관인 본 기관에 의뢰하여 2007년 12월 20일부터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음. 아버지는 c가 5세 때 어머니와 이혼하여 연락이 두절되었으며, 중국 조선족인 어머니는 이혼 후 c를 양육하다가 3년 전 사망함. 중국에서 외할머니가 와서 c를 돌봐 주고 있음. c는 현재 ADHD 진단을 받아서 ○○소아정신과를 이용해 약물치료를 하고 있으나, 증상으로 인하여 학습능력이 떨어짐. 본 복지관에서 매주 화요일 미술심리치료 서비스를 참여하고 있음.</p>				
의뢰내용	<p>학습이 부진하여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귀 기관에서 방문학습지도 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p>				
첨부내용	<p>사례관리 사정표, 사례관리 계획 및 평가표</p>				

본 기관의 대상자에게 전문적 서비스 제공을 통해 효과적인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자
위와 같이 의뢰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1월 30일

○○ 종합사회복지관
 사례관리자: 김○○
 연락처: 000-0000

[그림 7-6] 서비스 의뢰서 작성 예시

- 해당 기관의 담당자에게 첨부서류와 함께 의뢰서를 전달한다. 가능하면 기관의 행정규정에 따라 공문을 첨부하여 공식적으로 전달한다.
- 사례요약: 대상자의 욕구 및 목표, 서비스 실행 내용 및 과정 등에 대해 기록한다.
- 의뢰내용: 서비스 의뢰와 관련해 욕구와 목표를 기술하며, 구체적으로 의뢰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빈도에 대해서 기록할 수 있다. 사례관리자가 지속적으로 서비스 제공과정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면 그 빈도와 방법도 기록한다.
- 첨부내용: 정보 공유의 필요성에 따라 '사례관리 사정표', '사례관리 계획 및 평가표' 등을 첨부한다. 이때 대상자에게 타 기관에 어떠한 정보를 어떤 방법으로 공유할 것인지 고지해야 한다.
- '서비스 의뢰서'의 원본은 의뢰기관에 전달하고 사본은 본 기관에서 보관한다.
- 의뢰서 전달에 관해 '사례관리 과정기록지'에 기록한다.

❖ 사례보고서 작성법

- 사례관리 서비스의 조정 및 점검을 위해 전문가 및 기관 사례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그에 대해 기록한다.
- 각종 사례관리회의에 사례논의를 상정할 경우에는 사례보고서 양식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한다.
- '사례보고서 I' 양식은 최초 보고를 위해 사용한다. 다음 사례회의에서 이전 회의 권고사항의 실행경과에 대해서 보고하거나 동일 사례에 대해 다른 논의사항이 있을 경우 '사례보고서 II' (부록 참조) 양식을 사용한다.
- 사례관리자는 회의 종료 후 사례회의에서 논의된 결과(팀 권고사항)와

사례보고서

등록번호	2008-025	대상자	최○○	성별/나이	♀/10
사례보고일	2009. 2. 10	사례회의 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례회의 <input type="checkbox"/> 통합사례회의 <input type="checkbox"/> 솔루션 위원회	사례관리자	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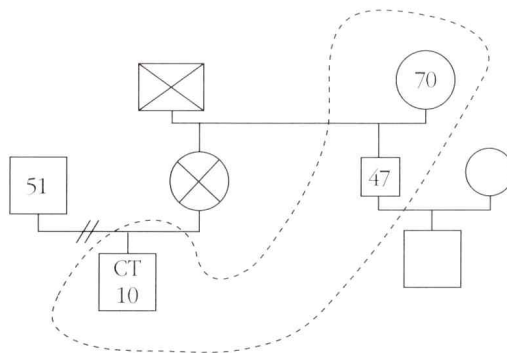
1. 사례요약

1) 기본 정보

- ct 가족력

- ① ct 모: ct의 모는 중국 ○○ 출신으로, ct 부가 중국 여행 시 만나서 재혼을 한 후 한국으로 들어와서 서울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다가 3년 전 뇌출혈로 사망함.
- ② ct 외조모: ct 외조모는 큰아들과 중국 ○○에서 거주하다가 ct 모가 사망했다는 연락을 받고 한국에 온 후 ct의 실질적인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으나 현재 불법체류 상태임. 당근 및 무류권걸 직판을 가지고 있음.
- ③ ct 부: ct 부는 한국인으로 알코올중독으로 인하여 가정생활에 소홀하며 5년 전에 ct 모와 이혼하였으며 현재 카드 빚 등으로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함.
- ④ ct 외삼촌: 중국에서 거주하다가 돈을 벌기 위해 한국으로 와서 건축 노동을 하면서 소득의 일부를 ○○으로 송금한다고 함. 월소득은 일정치 않으며 ct 외삼촌 역시 불법체류 상태임.
- ⑤ ct: ct는 모의 사망 후 심리적 충격으로 인하여 길거리에서 옷을 벗고 혼잣말을 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였다고 함. 현재 ADHD 진단을 받아서 소아정신과를 이용해 약물을 복용하고 있으나, 과잉행동과 주의력결핍 등으로 인하여 학습능력이 떨어짐

-가계도



2) 의뢰 과정 및 내용의 요약

-ct는 1년간 ○○사회복지관에서 주 1회 미술심리치료를 받았으나, 심리치료가 2008년도 12월부로 종료되면서 지역 내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복지관에서 ct 거주지 관할 복지관인 본 기관에 의뢰하여 상담을 진행함

3) 욕구

① 제시된 욕구

- 가 받던 심리치료가 끝났는데 더 받아야 할 것 같아요.
- 중국 국적으로 되어 있어서 나라에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대요.(c외조모).
- 가 학교공부를 따라가지 못해요.

② 합의된 목표

- 미술심리치료 서비스 이용
- 외조모가 국적취득을 하여 2인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주 1회 이상 방문학습도우미를 파견한다.

4) 자원 및 장애물 사정

-자원사정

- ① ○○동 주민센터(기초생활보장 급여 월 45만원 지원: 1인생계비 38만원, 소년·소녀가장 7만원)
- ② ○○복지관(사례관리 및 무료 미술심리치료 진행)
- ③ ○○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무료 컴퓨터 교육)
- ④ ○○교회(경서적 지지)

-장애물사정

- ① 내적 장애물: ADHD로 인한 학습능력 저하
- ② 외적 장애물: c모 사망으로 인한 양육권자 부재(소년·소녀가장)

2. 개입내용

- 1) c는 주 1회 복지관에서 미술심리치료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었음
- 2) ○○출입국관리사무소에 2회 방문하여 국적취득 절차를 상담하고 c외조모가 법적 후견인임을 증명하였으나, 한국에 체류한 지 5년 이상이 되지 않았으므로 지금은 지속적인 체류연장만 가능하며, 체류기간연장을 함
- 3) c의 학습도우미 봉사자를 자활후견기관에서 연계

3. 사례계획

- 1) 2월 중순부터 학습도우미 봉사자 자활후견기관에 의뢰하여 학습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2) 복지관 조손 프로그램에 연계하여 c외조모가 c 양육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또래 노인과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4. 논의요청 내용

ADHD 증상 완화를 위해 약물치료 이외의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5. 회의의 권고(슈퍼비전) 내용

[그림 7-7] 사례보고서 작성 예시

재평가일을 기록하고 사례보고서에 첨부하여 보관한다.

- 사례관리 과정기록지에 사례회의에서 논의된 논제와 권고사항을 기록한다.

❖ 슈퍼비전 일지 작성법

- '슈퍼비전 일지'의 사용 유무는 기본적으로 사례관리자와 기관 간 합의에 기초해 결정한다.
- 슈퍼비전에 대한 기록은 매우 중요하지만, 사례관리자의 모든 활동이 슈퍼비전의 내용이 묻어난 것임을 감안한다면 별도의 '슈퍼비전 일지'를 작성하는 것이 효율적인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통합 사례관리팀 등 외부의 투입까지 포함하고 있는 본 모델의 경우 별도의 일지를 작성하기보다는 통합사례관리팀의 권고 내용을 보고서나 과정 기록에 명시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
- 집단 슈퍼비전, 사례관리자의 교육이나 연구 등 사례관리자와 슈퍼바이저가 별도의 기록이 필요하다고 합의한 경우에 슈퍼비전 일지를 사용한다.

5) 평가와 종결 단계의 기록

- 사례회의를 통해 사례관리 서비스의 종결이 확정된 경우 사례관리 서비스 과정을 평가하고 '사례관리 종결보고서'를 기록한다.
- 종결 후 6개월간 사후관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종결과정에서 대상자 또는 후견인에게 사후관리의 방법과 기간에 관해 동의를 받고 이를 과정기록지에 기록하며, 사후관리 과정 역시 과정기록지에 기록한다.

사례관리 제3차 슈퍼비전 일지

일 시	2009년 12월 30일(월) 09:30-12:30		
장 소	○○중합사회복지관		
참석자	슈퍼바이저	권○○ 교수	
	실무자	남○○ 부장, 김○○ 사례관리자, 이○○ 사례관리자, 장○○ 사례관리자	
슈퍼비전 내용	임상 사례	<p>1) 김○○ 대상자의 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표에 대한 세분화 필요함(가사 욕구에 대하여 - 청결, 욕아 등) -목표설정 시 '~을 없앤다' 의 부정적 기술보다 '~을 향상시킨다' 의 긍정적 기술로 설정할 것 -함의된 목표에서 '아이들에게 화를 내는 횟수를 줄인다' 보다는 분노조절, 분노기술 향상, 대화기술 향상을 위한 상담으로 기술이 필요함 -실천계획 중 상담서비스 지원 부분은 지지 및 모니터링만으로 가능하며, 상담서비스를 지원 시 구체적 방법의 추가 제시가 필요함 -'술을 마시는 횟수를 줄인다' 는 함의된 목표에 대하여 아버지의 알코올에 대한 사정이 이루어져야 됨. 또한 알코올의존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목표를 세워야 함 -우선순위 1, 2번을 제외한 3~6번은 비슷비슷한 순위로 보이고 순위 책정이 산만해 보이는데 이럴 땐 묶어서 순위를 책정하는 게 필요함 -도움 요청 시 집안일과 가정일이 문제인데, 계획에서는 알코올이 문제가 되어 있음. 일치성에 대한 계획이 필요함 -장애등급이 모호함. 담당공무원과의 통화가 필요함. 뇌병변장애는 중증일 경우 받는 장애임 -평가표에서 같은 욕구끼리 묶거나 요약할 필요가 있음 -알코올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알코올부터 사정할 필요가 있음. 검사진단이 필요함 	
	운영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합사례회의를 1월 초에 추진하고자 하고 있으며, 통합사례회의 시 2번씩 슈퍼바이저 교수님 참석하기로 함 -통합사례회의 첫 모임 때 협약식을 같이 진행하고 첫 회의 때에 사례 두 가지를 준비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함. 회의팀에게는 사례보고서만 제시하며, 사례관리자는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도록 함. 또한 사례관리자는 사례에 관한 논의거리를 제시하도록 함 	
	기타	<p>1) FGI 진행사항에 대하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간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욕구조사를 진행 예정임. 예정은 1월 초로 잡혀 있음 	
다음 모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제: 4차 슈퍼비전 -일시: 2009년 1월 13일(화) 9:30 		

기록자: 이○○ 사회복지사

[그림 7-8] 슈퍼비전 일지 작성 예시

- 종결보고서에는 대상자의 욕구, 서비스 과정 및 결과 평가에 대해 간결하게 요약 정리한다.
- 사후관리가 종료되면 사례관리 서비스가 전체적으로 종료된다. 서비스가 종료되면 대상자에 대한 모든 기록을 다음의 순서로 묶어 보관한다.
 - ① 사례관리 종결보고서, ② 초기면접지, ③ 사례관리 동의서, ④ 사례관리 사정표, ⑤ 사례관리 계획 및 평가표, ⑥ 사례관리 과정기록지, ⑦ 서비스 의뢰서, ⑧ 기타 평가척도 등 부수적인 기록

❖ 사례관리 종결보고서 작성법

- **종결 사유:** 사례관리 서비스를 종결하게 된 궁극적인 사유(클라이언트에 의한 종결, 사례관리자나 기관에 의한 종결, 기타 사유 등)를 표시한다. 기타 사유의 경우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한다(예, 타 기관으로의 의뢰로 인한 종결 등).
- **서비스 제공요약:** 서비스 욕구의 유형에 따른 직접(D) 또는 자원 연계(R) 서비스의 내용과 투입시간의 총량을 계산하여 기록한다.
- **대상자 변화사항:** 사례관리 개입 전과 후의 상황을 욕구를 중심으로 비교 평가하여 기술한다. 이때 생태도 및 기타 척도나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 **사후관리 계획:** 사후관리 기간, 방법을 기술한다.

사례관리 종결보고서

등록번호	2008-025	대상자	강○○	사례관리자	김○○
주 소	○○시 ○○구 ○○동			연락처	000-0000
등록일	2008. 12. 26.		종결일	2009. 3. 2.	
종결 사유	사 유				
	<input type="checkbox"/> 사망 <input type="checkbox"/> 시설입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이주 <input type="checkbox"/> 욕구 해결 <input type="checkbox"/> 타 기관 이용 <input type="checkbox"/> 거절이나 포기 <input type="checkbox"/> 기관의 업무조정 <input type="checkbox"/> 기관의 자원·능력의 한계				
서비스 제공요약	목구유형	구분	제공된 서비스 총량		
	개인수준	D	상당(100)		
		R	상당팀 - 미술심리치료, ○○지역자활센터 - 방문학습지도		
	가족수준	D	상당(600), 체류기간연장 처리동행(150)		
		R	○○출입국관리사무소-체류기간 상당		
	기관/조직 수준	D			
		R			
	지역사회/정책 수준	D			
	R				
기타	D				
	R				
대상자 변화사항	초기 상황		종결 상황		
	○○복지관에서 심리상담 서비스에 관해 의뢰함. ADHD 진단으로 약물치료 중이었으나 충동적이고 돌발적인 행동이 남아 있었음. 학습부진으로 뭇따의 위험 있었음. 외조모의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그를 돌보기 위해 기간연장이 필요함		다에게 미술심리치료와 자활센터를 통한 학습지도가 정기적으로 진행되었음. 외조모의 체류기간 연장이 완료되어 다를 돌보는 문제는 해결됨. 다의 외삼촌이 직장이동으로 ○○시로 이사하게 되어 사례 종결하게 됨		
사례관리자 의견	향의된 목표 중 외조모의 체류기간 연장은 달성됨. 다에 대한 심리치료와 학습지도가 연계되어 진행 중이었으나 외삼촌의 직장 때문에 이주하게 되어 사례 종결함. 다의 심리치료가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가족의 환경 적응을 위한 지속적인 사례관리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이주하게 될 ○○시의 ○○사회복지관 사례관리팀에 의뢰함				
사후관리 계획	6월 30일까지 월 1회 전화 방문하여 새로운 지역에서의 적응과 ○○복지관 이용에 관한 지원을 제공하기로 함				

[그림 7-9] 사례관리 종결보고서 작성 예시

2. 사례관리 기록 실무

사례관리자는 효과적인 서비스 전달자의 역할과 함께 효율적인 기록자로서의 능력을 함양하여야 한다. 사례관리 기록을 위해 Kagle(1997)이 제안한 사회복지사 기록업무와 관련한 주요 사항을 점검해 본다.

1) 사회복지 기록의 활용

- 대상자의 상황과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확인시켜 주는 정보를 포함한다.
- 대상자와 함께 실행한 활동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참고로서 보고와 자문을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
- 사례관리자의 부재 시 서비스 전개과정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여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 사례관리팀 내부 및 외부 전문가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도록 돕는다.
- 내담자와 의사소통하는 도구로 사용된다.
- 서비스 과정과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도구다.
- 행정적 과업 및 교육, 조사, 평가를 위한 자료를 제공한다.

2) 사적 권리의 보호

사회복지 기록의 목표에는 책무성(accountability), 효율성(efficiency), 사적 권리(privacy)가 있다. 이 중 사적 권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적 권리의 보장에서 대상자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동안 자신과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사회복지사와 기관도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정보를 누설하지 말아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정보보호에 대한 의무는 상호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상자에 대한 정보는 개인의 자산이므로 정보를 위한 대상자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사적 권리에는 비밀보장, 축약, 접근성, 익명성의 원칙이 요구된다.

(1) 비밀보장

비밀보장은 대상자에게는 기본 권리이며 사회복지사와 기관에게는 윤리적이고 법적인 책임이다. 이러한 비밀보장의 책무는 서비스 초기단계부터 실행되어야 한다. 예컨대, 사례관리자가 사정을 실행하기 전에 정보 제공과 비밀보장에 대한 상호 의무 이행에 대한 동의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규정된 상황이나 사회적으로 공인된 목적에서만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상자가 정보 공개를 공식으로 허락한 경우(자문, 연구, 타 기관 서비스 의뢰 등), 아동학대나 약물남용 등 사회복지사에게 법적인 보고의무가 있는 경우, 자살 위험 사례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 등이다.

(2) 축약

개인적 정보의 수집, 문서화, 보관을 제한함으로써 내담자의 사적 권리를 보호한다. 사회복지사는 서비스 전달에 필요한 정보에 초점을 맞추며 종결 이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정보를 삭제하거나 축소한다.

(3) 접근성

대상자와 가족의 사회복지 기록에의 접근성은 대상자에게 서비스 실행

과정에서의 결정권을 부여하고 사회복지사와 대상자 사이의 의사소통을 개방하며 신뢰를 강화시킨다.

(4) 익명성

익명성은 정보 공개의 방법으로 조사, 교육 등 개인의 신분 확인이 불필요한 경우에 요구된다. 이름과 고유한 정보는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

3) 사회복지 기록을 위한 지침

(1) 내용

모든 관련자에게 도움이 되고 그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정보의 내용이 부족하거나 지나침이 없는지 확인한다. 특히 서비스 전달을 촉진하고 윤리 관련 문제 제기나 소송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충분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2) 언어 및 용어

명료하고 구체적인 용어를 사용하되, 비난조의 표현을 피하면서 정확하게 표현해야 한다. 전문가가 사용하는 특수용어, 속어, 축약어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기록이 끝난 후에는 맞춤법과 띄어쓰기 등 문법을 고려하여 점검한다.

(3) 진실성

사례관리자의 행위에 대한 적절성 논란에 필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문서내용의 신뢰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록했는지 꼼꼼히 점검한다. 기록은 개입 후 24시간 내에 기록하여 지연되지 않아

야 하며 예측성 문서 작성은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접근성

문서의 공개 및 보안에 있어 비밀보장 원칙과 관련된 윤리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한다. 컴퓨터 사용과 관련해 보안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소환에 대응하는 법과 규정을 이해하며, 접근이 제한되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기관은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장치를 마련한다.

참고문헌

권진숙, 김상곤, 김성천, 박지영, 유명이, 유서구, 이기연, 조현순(2009). 인천광역시 복지(기)관 사례관리 실천을 위한 매뉴얼 연구보고서. 인천광역시복지(기)관협회, 사례관리연구회.

Kagle, J. D. (1997). 사회사업 기록: 이론과 실제(홍순혜, 한인영 공역). 서울: 학문사.

글상자 6-4 점검 사례

신씨 사례의 점검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클라이언트 점검

- 청소 역할 분담: 청소 분담표에 스티커 붙이기를 하는데 주 1회 사례관리자 방문 시 볼 수 있도록 벽에 부착함
- 청소 상태: 사례관리자가 정기 방문하여 관찰(주 1회 가정방문)
- 신씨 운동 및 건강 관리: 운동일지 작성
- 아침 기상 및 등교: 아침 모닝콜 자원봉사자를 통한 진행 정도 점검
- 기타 목표 항목에 대한 변화 정도: 자기 기입식 평가표 활용

2. 지원망 점검

- ○○신경외과: 의사 소견서를 통한 현재 상태와 변화 정도 점검(월 1회)
- 가사돌보미: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송부(서비스 종료 시마다)
- 가사돌보미 파견기관: 가사돌보미 외의 면담을 통한 애로사항 점검(월 1회)
- 주민센터: 이메일을 통한 서비스 제공정보 교환(월 1회)

3. 점검사항에 대한 조정활동

- 운동하는 길의 약수터에 술친구들이 있어 술을 권하는 애로사항이 있음: 동행자 지원(단기), 거절훈련(장기)
- 가사돌보미가 남자 혼자 있는 집인데다 악취가 심하여 방문을 거부하는 애로사항이 있음: 집이 안정될 때까지 2인 1조로 파견

내용		2008	현재	2009	계획
일상생활	① 경제	6점	6점	10점	로또복권에 당첨됐으면 좋겠다.
	② 건강	8점	9점	10점	한 주에 3번 이상 운동한다.
	③ 의식주(생활)	6점	7점	8점	더욱 신경 써야 할 부분이다.
	④ 취업	7점	7점	10점	성실하게 근무해야겠다.
	⑤ 관계	6점	7점	8점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 마음 문을 열어야겠다.

심리정서	① 자신감 증진	7점	8점	9점	좋은 계획을 세워서 이루어 나가야겠다.
	② 부정적 감정 해결	5점	6점	7점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야겠다.
	③ 우울증	6점	7점	8점	베풀고 남을 배려하고 관용하는 마음을 가져야겠다.
자녀양육	① 학업지도	6점	7점	10점	자녀교육에 좀 더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후원해 주는 아빠가 되어야겠다.
	② 돌봄	8점	9점	10점	나는 자녀들의 돌보미다.
가족관계	사라	7점	8점	10점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여 각자 맡은 일을 성실히 수행하자! 그래서 각자 가지고 있는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보자!(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한다.)
	한나	8점	9점	10점	
	영준	9점	10점	10점	
2009년 우리 가정의 모습		꿈과 희망이 넘치고 더욱 화목한 가정이 되었으면 한다.			

초기면접지

접수번호		일시	
면접자		장소	<input type="checkbox"/> 가정 <input type="checkbox"/> 내방 <input type="checkbox"/> 전화
면접 참여자			<input type="checkbox"/> 지역사회 기관()
면접경로	<input type="checkbox"/> 본인 요청()		<input type="checkbox"/> 사례관리자의 발굴
	<input type="checkbox"/> 기관 내부 의뢰()		<input type="checkbox"/> 타 기관 의뢰
	<input type="checkbox"/> 주민 의뢰()		<input type="checkbox"/> 기타()
상담장소	<input type="checkbox"/> 가정 <input type="checkbox"/> 내방 <input type="checkbox"/> 전화 <input type="checkbox"/> 지역사회 기관()		

대상자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후견인	성명: (관계)	전화번호						
장애유형/급		건강상태	<input type="checkbox"/> 양호 <input type="checkbox"/> 질환					
보호구분	<input type="checkbox"/> 수급 <input type="checkbox"/> 조건부수급 <input type="checkbox"/> 저소득/차상위 <input type="checkbox"/> 기타(의료보호/영유아보육료 지원, 보훈 등)							
주거상태	<input type="checkbox"/> 자택 <input type="checkbox"/> 전세 <input type="checkbox"/> 월세 <input type="checkbox"/> 영구임대 <input type="checkbox"/> 기타()							
가족사항	관계	성명	나이/성별	직업	결혼상태	동거 여부	연락처	기타

대상자의 진술 (도움요청 내용)	
면접자평가	
	대상판정 <input type="checkbox"/> 대상(긴급 / 일반) <input type="checkbox"/> 비대상(정보제공 / 연계:)

[그림 1] 초기면접지 기록양식

사례관리 동의서

- 본 사회복지(기)관의 사업 및 사례관리 서비스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본 사회복지(기)관은 귀하의 사회복지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아래의 목적 이외에 귀하의 개인적인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관장 _____ (인)

본인은 귀 ○○사회복지(기)관에 관한 소개와 사례관리 서비스의 과정 및 내용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이해했습니다.()

- 본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귀 복지(기)관에서 제공하는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례관리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제반 활동에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 본 자료가 본인과 관련된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학문적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____년 ____월 ____일

성 명: _____ (인)

후견인: _____ /관계: _____ (인)

[그림 2] 사례관리 동의서 기록양식

사례관리 사정표

등록번호		대상자		사례관리자	
시정일시	20 . .	유형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재사정	정보제공자	

유형	우선 순위	제시된 욕구	이용가능한 자원(강점)	내/외적 장애물
개인수준의 욕구				
가족수준의 욕구				
기관 및 조직 수준의 욕구				
지역사회 및 정책 수준의 욕구				
기타 의미 있는 욕구				

척도를 이용한 사정	척도 종류	사정결과
사례관리 수준판정	<input type="checkbox"/> 긴급 <input type="checkbox"/> 집중 <input type="checkbox"/> 일반	

종합 의견

[그림 3] 사례관리 사정표 기록양식

사례관리 계획 및 평가표

등록번호	대상자	사례관리자	일시	유형	신규 재사정	사례관리 수준	긴급 집중 일반
우선 순위	제시된 욕구	합의된 목표	실천계획	빈도 (회/주)	담당(기관(부서)/담당)	개입 기간	평가
	욕구 수준 개입 전()/개입 후()				내부		
	욕구 수준 개입 전()/개입 후()				외부		<input type="checkbox"/> 달성(정도:) <input type="checkbox"/> 연장 <input type="checkbox"/> 재사정
	욕구 수준 개입 전()/개입 후()						<input type="checkbox"/> 달성(정도:) <input type="checkbox"/> 연장 <input type="checkbox"/> 재사정
	욕구 수준 개입 전()/개입 후()						<input type="checkbox"/> 달성(정도:) <input type="checkbox"/> 연장 <input type="checkbox"/> 재사정
	욕구 수준 개입 전()/개입 후()						<input type="checkbox"/> 달성(정도:) <input type="checkbox"/> 연장 <input type="checkbox"/> 재사정

상기와 같은 서비스 제공 및 이용에 동의하며, 계획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할 것을 상호 약속합니다.

200__년__월__일

성명: _____(인) 후견인: _____(인) /관계: _____(인) 사례관리자: _____(인)

[그림 4] 사례관리 계획 및 평가표 기록양식

사례관리 과정기록지

등록번호			대상자			사례관리자		
일 시	구분	접촉방법	접촉대상	내 용			소요시간(분)	

[그림 5] 사례관리 과정기록지 기록양식

서비스 의뢰서

기관: _____ 담당자: _____ 귀하

등록번호		대상자		성별/나이	
주소				전화번호	
후견인 성명	(관계)			전화번호	
보호구분		장애유형		사례관리자	
사례요약					
의뢰내용					
첨부내용					

본 기관의 대상자에게 전문적 서비스 제공을 통해 효과적인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자
위와 같이 의뢰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__년 __월 __일

의뢰기관명: _____

사례관리자: _____

연락처: _____

[그림 6] 서비스 의뢰서 기록양식

사례보고서 I

등록번호		대상자		성별/나이	
사례보고일	20 . . .	사례회의 유형	<input type="checkbox"/> 사례회의 <input type="checkbox"/> 통합사례회의 <input type="checkbox"/> 솔루션 위원회	사례관리자	

1. 사례요약

1) 기본 정보

- ① 인구통계학적 정보
- ② 클라이언트 사항
- ③ 가족사항 및 가계도

2) 의뢰 과정 및 내용의 요약

3) 욕구

- ① 제시된 욕구(대상자 가족, 의뢰인이 제시한 욕구 포함)
- ② 합의된 목표

4) 자원 및 장애물 사정

5) 사정의 근거

2. 개입내용

3. 사례계획

4. 논의요청 내용

5. 회의의 권고(슈퍼비전) 내용

6. 재평가일

사례보고서 II(최초 사례보고 이후)

1. 사례요약

2. 지난 회의 권고사항

3. 현재상태

4. 사례계획

5. 회의의 권고(슈퍼비전) 내용

6. 재평가일

[그림 7] 사례보고서 기록양식

사례관리 제 ___차 슈퍼비전 일지

일시	20 년 월 일() : - :	
장소		
참석자	슈퍼바이저	
	실무자	
슈퍼비전내용	임상 사례	
	운영 체계	
	기타	
다음 모임		

기록자:

[그림 8] 슈퍼비전 일지 기록양식

사례관리 종결보고서

등록번호		대상자		사례관리자	
주소				연락처	
등록일				종결일	
종결사유	사유				
	<input type="checkbox"/> 사망 <input type="checkbox"/> 시설입소 <input type="checkbox"/> 이주 <input type="checkbox"/> 욕구해결 <input type="checkbox"/> 타기관 이용 <input type="checkbox"/> 거절이나 포기 <input type="checkbox"/> 기관의 업무조정 <input type="checkbox"/> 기관의 자원·능력의 한계				
서비스 제공요약	욕구유형	구분	제공된 서비스 총량		
	개인수준	D			
		R			
	가족수준	D			
		R			
	기관/ 조직수준	D			
		R			
	지역사회/ 정책수준	D			
		R			
	기타	D			
R					
대상자 변화사항	초기 상황		종결 상황		
사례관리자 의견					
사후관리 계획					

[그림 9] 사례관리 종결보고서 기록양식

팀역량강화 14-04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시범사업



팀 명	지역복지
일 시	2014-07-21(월) 18:00~19:00
발표자	변희진
장 소	상담실2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시범사업

1. 사업추진내용

가. 추진배경

장애인 일상생활 수행상의 안전 사각지대(2012년 9월 이후 화재 등 연이은 중증장애인 사망사고 발생)로 장애계의 24시간 활동지원보장을 요구하여 2014년 활동지원사업의 예산이 615억원으로 증액하였으나, 상시보호가 필요한 수급자를 지원하기에는 활동지원 급여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었음. (지자체 지원사업을 제외한 최종증 독거수급자의 경우, 월 183시간 활동보조 제공) 이에, 중증장애인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화재·가스사고등 응급상황발생시 스스로 대처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서비스의 필요성과 (장애인복지법 제 24조에 따라 장애인의 특성을 배려한 안전대책등 필요한 조치 강구) 오프라인서비스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중증장애인의 안전을 실시간 확인 할 수 있는 온라인시스템 필요성을 가지게 됨.(화재 및 가스감지센터, 활동감지센터 등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 또, 소방서 및 지연센터와 온라인 연계로 24시간 ·365일 중증장애인의 안전 확인 지원 및 응급상황 발생 시 구조·구급지원체계의 필요성 인지(2008년 독거노인 고독사의 사회이슈화에 따라 ‘독거노인응급안전시스템’구축)

나. 추진경과

- 2013년 3월 사업계획 수립/사업추진방향설정
- 2013년 5월 사업설명회개최 및 사업 발주 / 서비스대상자 발국 및 선정
- 2013년 7월 사업자 선정 및 착수 /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시스템구축
- 2013년 11월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시스템 오픈(운영)/서비스 대상자 모니터링 및 구급구조 지원

다. 추진체계

- 1)보건복지부(장애인서비스과)-사업총괄(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지침 시달,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및 사업평가, 국고보조금 교부, 사업홍부 등)
- 2)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생활안전지원부)-사업수탁(시범사업 기획·발주 지원, 응급안전시스템운영·관리, 기능개발, 업무현황 모니터링, 동계 생산·분석 등)
- 3)지자체(시군구 담당 공무원)-사업·운영 관리(지역센터 지정·운영, 서비스대상자 조사 및 승인, 사업 지도·점검 및 예산집행, 홍보, 정보제공 등 지역센터 업무지원)
- 4)지역센터(전담인력)-사업수행(서비스 대상자 모집·관리, 대상자 안전확인, 응급상황 모니터링 및 대응조치, 대책장비 관리,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연계, 사업실적 보고)

라. 사업 수행기관 지정 및 운영

1)지역센터 공모 및 지정

- 지자체는 활동지원기관 등을 대상으로 공모를 거쳐 일정 심사기준에 따라 지역 센터 지정
- 사업수행경험, 사업추진의지 및 능력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 센터를 선정
- 기존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 시스템 구축 지역의 경우, 통합 운영에 따른 시너지 효과
- 위탁운영 시 사업기간을 정하고, 지역센터의 실적 및 역량 등을 평가하여 재지정 여부 결정가능

2)지역센터 운영기준

- 서비스대상자 인원에 따라 응급안전 전담인력 배치 및 고유 역할 수행
- 소방서 및 활동지원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 사회복지사 이상의 전담인력 확보(인건비 지원) 및 안전 확인 등 적정 서비스 제공
- 지역센터 자체적으로 응급안전서비스 제공사업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서비스 대상자의 개인정보보호 등 사업의 적정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 사업운영을 위한 예산 및 인력은 다른 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전용이 불가하며, 지역센터의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및 집행

마. 사업수행기관 지원내용

1)인건비

- 2013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장애인복지관 4급(1호봉) 1,597천원(사회보험료 본인부담분을 제외한 실수령액)지원
- *지자체 자체 재원으로 전담인력의 급식비, 교통비 등 실비 추가 지원 가능
- 사회보험 사용자부담분, 퇴직급여 적립금, 유류비, 사무용품비, 공공요금 등 센터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경비는 운영비로 지원

2)운영비

전담인력수	운영비	비고
2명	900천원/월	서비스대상자 인원 : 100~200
1명	600천원/월	서비스대상자 인원 : 50~99

* 지역센터 구축 사무용품품 지원(집기류, 모니터링 장비 등)

3)통신비

- 월 서비스 대상자 1명기준 2,750원(VAT포함)
- 1년간은 무상이며, 2년 이후에는 통신비용 확보 필요
- * 통신비는 사업자 선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사업 현황

가. '13년도 시스템 구축 현황

1)택내시스템구축·운영

대상자 주거환경을 고려한 센서 설치, 게이트웨이· 활동감지센터· 응급호출기·화재감지 센서·가스감지센서

2)중앙시스템구축

업무편의성을 고려한 업무시스템 구축, 데이터 수집서버 구축, 영상서버구축, 데이터 보관 서버 구축

3)유관 시스템연계

긴급구조·구급출동 지원을 위한 U-119시스템연계, 장애인 정보조회를 위한 행복e음 연계,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ITSM연계

4)사용자 교육·기술지원

시스템 관리·운영을 위한 운영자 교육, 신속·정확한 업무처리를 위한 업무시스템 교육, 이전설치 및 민원응대를 위한 택내시스템 기술지원

나. 응급상황 처리 실적

<기준 :2013-10-01 ~2013-03-18>

시도	시군구	총계	화재발생	가스감지	119호출
총계		179	15	2	162
서울	마포구	0	0	0	0
	강서구	10	0	0	10
대구	서구	2	0	0	2
	북구	0	0	0	0
	달서구	20	0	0	20
울산광역시		21	7	0	14
경기	수원시	12	0	0	12
	성남시	4	0	0	4
	의정부시	27	0	0	27
	안산시	23	1	0	22
충북	충주시	12	1	2	9
충남	천안시	7	2	0	5
	부여군	4	1	0	3
전북	전주시	5	0	0	5
경북	안동시	14	2	0	12
제주	제주시	18	1	0	17

다. 시범사업 서비스 기관 현황

번호	시도	시군구	관할지역센터
1	서울	강서구	강서길라잡장애인자립생활센터
2		마포구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3	대구	서구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
4		북구	강북장애인주간보호센터
5		달서구	달구별종합복지관
6	울산	남구/울주군	행복한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7		동구/중구/북구	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8	경기	성남시	수정노인종합복지관
9		의정부시	의정부세움자립생활센터
10		안산시	초지종합사회복지관
11		수원시	SK청솔노인복지관
12	충북	충주시	충주종합사회복지관
13	충남	천안시	충남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14		부여군	부여장애인응급안전서비스센터
15	경북	안동시	경북지체장애인협회안동지회
16	전북	전주시	희망드림
17	제주	제주시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3. 서비스 소개

1)서비스 목적

- 중증장애인인에게 화재·가스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 위험으로부터 안전확보 및 사회기반의 상시 보호체계를 마련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보호 강화를 통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

2)서비스 대상자

1순위 : 최중증 독거·취약가구 활동지원 수급자

2순위 : 중증독거 및 취약가구 수급자로서 상시보호자가 필요한 자(생활환경)

3순위 : 지자체의 장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수급 중증장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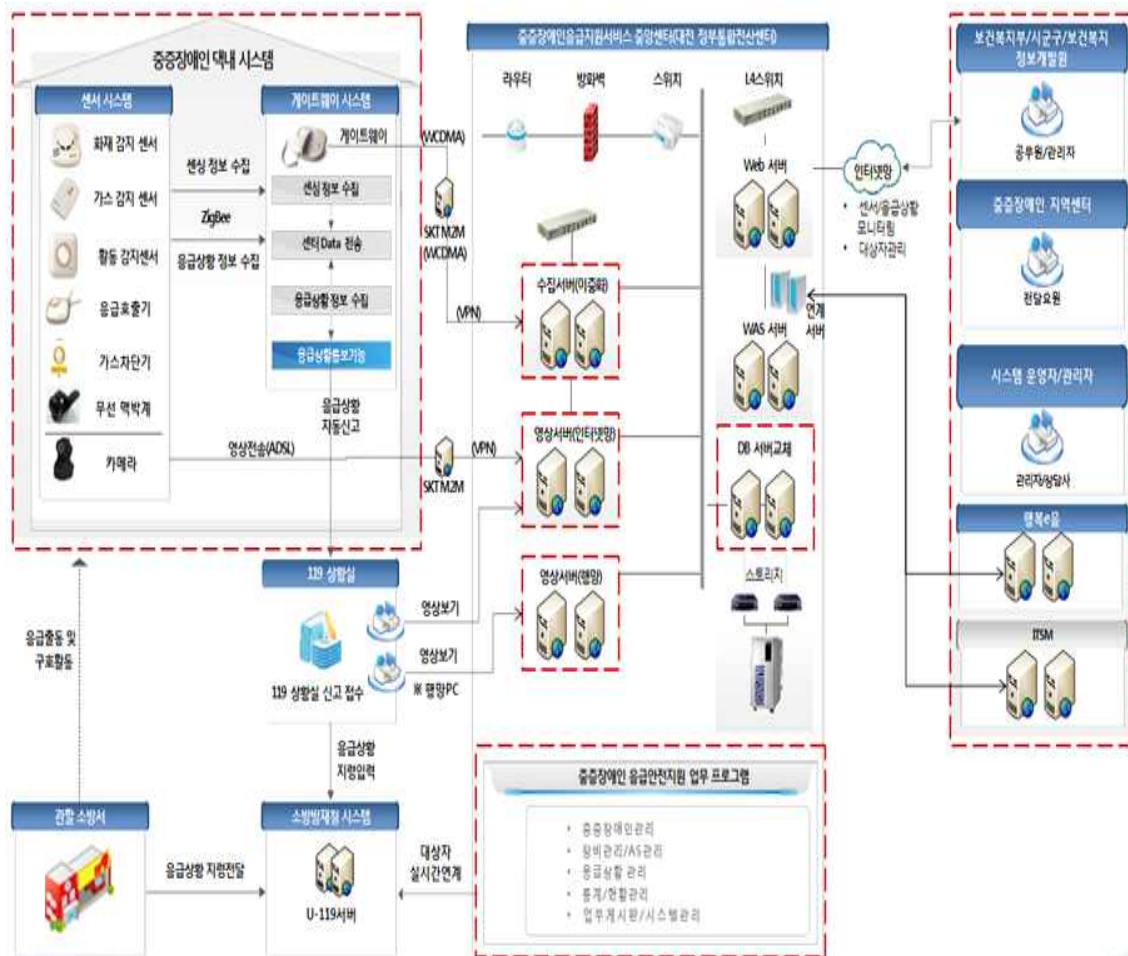
*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아닌 중증장애인(1~2급 장애인)도 상시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서비스 지원 대상에 포함 가능

3)서비스 내용

- 상시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택내에 화재·가스 등 각종 센서를 설치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이를 소방서·응급안전 지역센터에 실시간으로 전송하여 신속한 구급·구조 및 안전 확인 서비스 제공
- 지역별로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사업 수행을 하는 지역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안전관리, 응급상황 확인, 택내장비의 관리,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연계 등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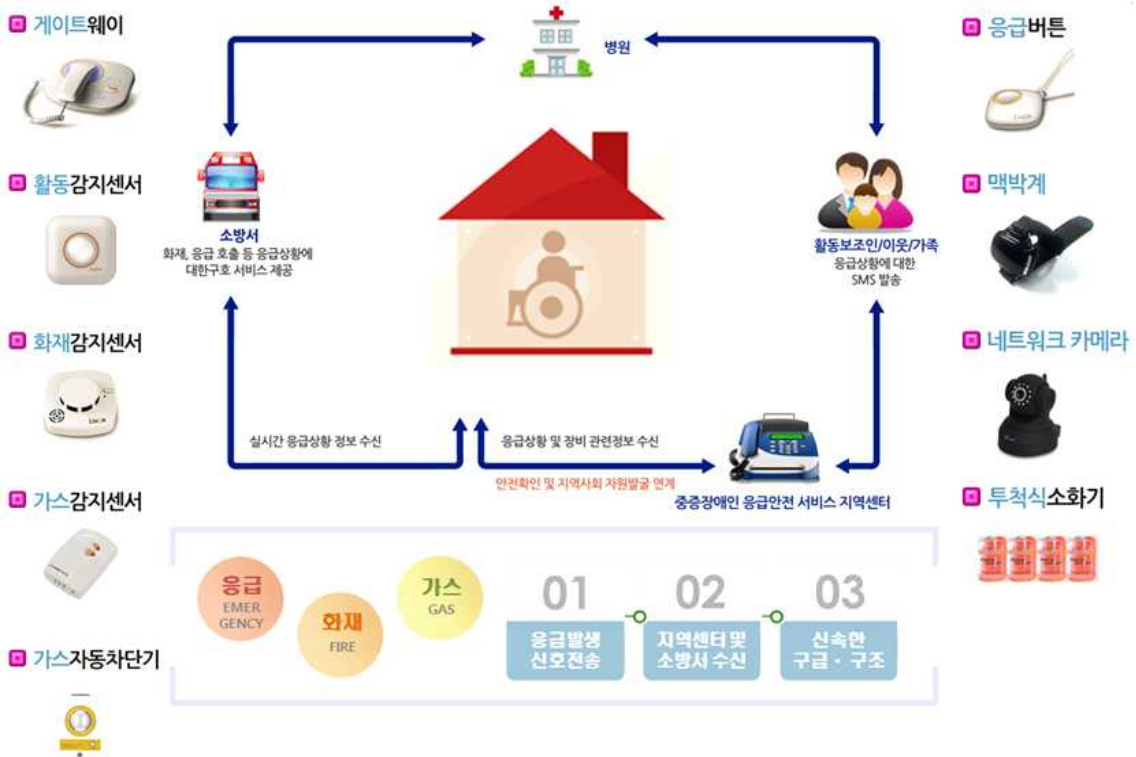
4)중앙시스템 흐름

[그림 1] 중앙시스템 흐름



4)서비스 흐름도

[그림2]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흐름



5)택내시스템소개

- 택내장비 설치 목록 공통 : 게이트웨이(전화·통신장비), 휴대용 응급버튼, 화재감지 센서, 가스감지센서, 가스자동차단기, 활동감지센서
- 선택 : 네트워크 카메라, 맥박센서, 투척식소화기
- ※네트워크 카메라는 응급상황 발생 시에만 작동하여 신속한 현장 확인 목적으로만 사용

[그림 3] 게이트웨이



- 말벗 통화버튼 : 단축번호 1번, 2번에 대상자가 요청하는 사람의 번호를 지정 등록 하여 일반통화 기능을 제공
- 외출버튼 : 대상자가 외출 시 설정 버튼
- 119 통화버튼 : 대상자 응급한 경우 119로 바로 연결
- 지역센터 통화버튼 : 지역센터(전담인력)로 연결

[그림 4] 활동감지센서



- 귀가 확인을 위한 외출 버튼 연동, 대상자 요구에 따라 감지LED에 대한 원격 ON/OFF 기능제공

[그림 5] 응급호출기



- 버튼 동작에 의한 배터리 전원 사용 자동 응급호출기로 맥내 전기사용을 절감하고, 목걸이·손목밴드 액세서리 제공을 통해 다양하게 착용 가능
- 게이트웨이와 연동을 통해 자동외출 인식 및 활동량감지센서 연동을 통해 귀가 정보를 자동적으로 인식

[그림 6] 화재감시센서



- 배터리 전원 사용으로 전기 사용 절감(배터리 기간 10년으로 배터리 교체 불편해소, 배터리 부족 시 알림으로 사용자 통보)

[그림 7] 가스감지센서



- 대상자택내취사, 난방, 연료가 다를 경우 각각의 센서설치, 저전력 회로 구현으로 전기료 절감, 가스감지에 따라 게이트웨이와 연동하여 자동소방 신고

6)서비스 신청 및 유의사항

[그림 8] 서비스 신청 절차



가. 본인부담금

- 무료 : 소방서·응급안전 지역센터와의 통신비용, 게이트웨이 및 각종 센서 설치비용
- 유료 : 상전으로 작동하는 택내장비 전기사용료(1개월 기준 약100원)

나. 유의사항

- 택내장비는 지자체의 자산으로써 관내에서 이사할 경우 관할지역센터에 이전설치 요청
- 타지자체로 이사 또는 응급안전서비스 종결 시 지역센터에 택내장비 반납

7)서비스 주요기능 소개

가. 응급상황 발생 알림

- 사용자가 시스템에 로그인되어 있을 경우 관할 지역의 대상자에게 응급상황 시 사용자에게 응급상황 발생 알림 팝업창 표시
- 전담인력이 외부 출장중이거나 시스템에 로그인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대비하여 관할지역의 대상자에게 응급상황 발생시 전담인력과 보호자에게 응급SMS문자 발송

나. 원격설정

- 택내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서비스 대상자택내에 방문하지 않고, 업무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원격으로 게이트웨이 설정 정보 변경

다. 총괄현황표

-관할지역센터에서 관리중인 모든 장비의 상태를 표시, 항목별 건수 클릭 시 항목에 해당하는 대상자 및 장비목록 조회 가능

라. 실적조회

-지역센터의 기간별 실적(업무일지, 응급상황 발생현황, 대상자 현황, 사용자 현황 등) 자료의 실시간 조회가 가능

마.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연계

-지역센터의 원활한 업무처리(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연계 등)을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과 연계하여 서비스 대상자의 장애정보(장애유형, 장애등급)조회 가능

바. ITSM연계

-사용자의 문의사항 및 개선사항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시스템 개선을 위하여 정보개발원 ITSM 시스템과 연계

*ITSM(IT Service Management):시스템 사용자에게 만족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서비스의 품질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

사. 소방방재청 U-119시스템 연계

-서비스 대상자택내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수보대로 자동 전화신고 될 경우 신속한 구조·구급 처리 지원을 위하여 시스템에 등록된 대상자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등)와 장애정보(장애유형, 장애등급 등)를 제공

4. 향후 추진일정

가. 향후 추진일정 및 활성화 방안

- 1)권역별 설명회 개최 후 제 2차 수요조사 실시 및 사업 참여 독려방문
(지자체별 서비스 대상인원 추계와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대상자가 일정 인원 이상임에도 사업 미신청 지자체를 방문하여 사업 참여 설득)
- 2)응급안전서비스 사업 참여 여부를 장애인복지 등 각종 평가 사업에 반영하여 활동 지원 사업 선진제도 해외견학, 장관 표창 등 포상과 연계
- 3)시범사업 지역의 서비스대상자 발굴 및 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 자료 배포, 기념품 제작 등 직간접적인 지원 강화 (2013년도 제1차 시범사업의 경험을 살려 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방안 마련 및 지원 강화)
- 4)기존 활동지원 수급자로 만 65세 도래로 장기요양급여의 인정등급을 받은 수급자의 경우, 급여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돌봄 사각지대 해소
- 5)최근 노인, 장애인의 돌봄부담 가중에 따른 잇단 가족 동반 자살사건과 관련,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 검토

참고문헌

1.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중증장애인응급안전서비스 사업설명회 자료
2.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3.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동영상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팀 명	사회심리재활팀
일 시	2014년 05월 13일
발표자	조은하, 이해영, 박성목, 김효중, 김서영, 고광원, 정다예
장 소	상담실2



2014년 제1회 사회심리재활팀 팀역량강화 보고서

1. 주 제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 일 시 : 2014년 5월 13일(화) 오후 5시 40분 ~ 7시 40분

3. 대 상 : 조은하, 이혜영, 박성목, 김효중, 김서영, 고광원, 정다예 총7명

4. 내 용 : 법률에 대한 이해 및 법률의 긍정적인 측면과 보완점

1) 긍정적인 측면

- 지적 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에 대한 법률이 일반 지체장애인과 구별된 법안이 신설된 점
을 무엇보다 긍정적이라 사료됨.

발달장애인들의 범죄 연루 나 피해 사건의 경우 사회문제로 대두 될 만큼 발달장애인들의
외부환경과 자극에 민감하여 객관적인 사실 설명이 어렵고 적절한 지지가 필요한 만큼 이러
한 법률의 발의가 늦었긴 하지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듦

- 예산 확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의 기술이 없어 아쉽지만 예산 및 인력확보 등 실질적인 사
업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 조건을 갖출 수 있는 법안이라 사료됨

- 특별한 요구가 있는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전담 검사 체제 등 적절한 최소한의 지원체계가
마련되었다고 생각됨

- 장애인에 대한 권리 뿐 아니라 비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의 보호와 장애인의 권리를 위한
신고의무제 등 책임을 주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생각됨

- 발달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발달장애인의 가족을 위한 지원법률안이라는 점에서 획기적이
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발달장애인가족에게는 긍정적이라 생각됨.

2) 부정적, 보완점

- 예산의 지출 출처가 “국가와 지방정부” 등 다소 두루뭉슬하게 되어 있어 행정기관의 책
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단이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예산관계가 이러하여 법 집행이 가능할까
라는 의구심이 듦. 이에 법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과연 법을 집행하는 경찰서나 파출소 또는 공무원집행을 하는 분들의 인지도는 어떠한지 공
급하며 이의 실제적인 새행을 위해서는 장애인 차별 금지법과 같이 법률의 홍보도 중요하겠
음.

3) 소감문

그 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통과를 위해 애쓰신 분들의 노고가 컸다는
것을 이번 팀역량강화를 통하여 알게 되었다. 지체장애인과 달리 자신의 권리 주장 및 항변
에 지극히 한계가 있는 지적 자폐성 장애 이용인들에게 실효가 있는 법이 되기 위해서 제반
되어야 할 조건들이 있을 것이나 이러한 법이 국회의 합의를 얻었다는 것이 큰 단초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든다.

장애인 복지관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법의 효과와 목적을 이용인과 보호자, 지역사회에 알리고 이용인이 실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경우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자문해 주는 부분도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따라서, 이러한 법률적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실제적인 변호사 등의 전문가들의 섭외, 활용도 요구되고 지역자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팀 의사소통 증진”



팀 명	사회심리재활팀
일 시	2014년 10월 28일
발표자	조은하, 박성목, 김효중, 김서영, 고광원, 정다예, 박은영
장 소	상담실2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사회심리재활팀

제2차 팀역량강화 보고서

1. 일 시 : 2014년 10월 28일(화) 오후 5시 40분 ~ 7시 20분
2. 대 상 : 조은하, 박성묵, 김효중, 김서영, 고광원, 정다예, 박은영 총7명
3. 주 제 : [팀 의사소통 증진]
 - 1) 인문정신에 기반한 사회복지와 비영리조직의 의사소통(김미경:비영리 컨설팅 웰핍 공동대표)
 - 2) 협력적 의사소통 기술(양원석:푸른복지사무소 소장)
4. 내 용

1) 협력의 메커니즘

협력(協力)
[명사] 힘을 합하여 서로 도움.

협력의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힘을 합하여 서로 도움을 의미합니다. 특히 “협(協)”자의 한자적 의미는 “화합할 협”으로 화합하다(和合--), 돕다, 합하다 등의 의미를 가집니다. 힘을 쓰되 혼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도우며, 합하여 함께 힘을 쓰는 것이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로” 도움을 의미합니다. 일방적인 도움이 아니라 상호간의 동등하고 평등하게 돕습니다. 협력이라는 단어 자체에는 상호작용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협력은 가장 바람직한 상호작용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후의 승자는 협력하는 자이다.

- 마틴노와 <초협력자>-

- 30억년전 박테리아 세포가 다른 세포가 번식할 수 있도록 질소라는 영양을 공급하고 죽음으로써 다른 동물들이 번식할 수 있도록 도움.
- 후쿠시마 원전의 복구를 위해서 원전의 현장으로 들어간 20대 청년

실제 우리의 삶은, 인간사회는 협력으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하는 가장 단순한 일조차도 생각보다 많은 협력이 요구되어지고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아침을 행복하게 해주는 카푸치노 한잔도 수많은 사람들의 협력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콜롬비아 농부의 커피콩, 커피를 달게 해주는 사탕수수를 위해서는 브라질 농부의 수고가 필요하며, 크림을 풍부한 우유를 위해 인접한 농가의 젖소를 기르는 축산업자의 노동이 필요하며, 커피를 내릴 수 있는 커피기계를 기계로 만드는 기술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커피기계를 돌릴 수 있는 전기의 힘을 이를 위해 일하는 발전소 직원의 수고가 더해져야 하고 여기에 능력 있는 바리스타의 노력과 재능이 더해져서 우리는 커피한잔을 마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협력이 없다면 우리는 직접 커피콩을 재배할 수 있어야 하고 소를 길러야 하고 전기를 만들어내야 하는 등의 생각하기조차 어려운 수고가 필요합니다. 아마도 결국 카푸치노 마시기를 포기해야 하는게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협력은 단지 공동의 목적을 향해 함께 일하는 것을 넘어 보다 구체적으로 잠재적인 경쟁자들이 경쟁 대신 서로를 돕기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통적인 다윈의 진화론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는 말이 안 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타인을 돕는 행동은 자신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경쟁자의 적합도를 높이기 위해 자신의 적합도를 낮추고 줄이는 것입니다. 내가 1등이 되어야만 살아남는 경쟁의 사회에서 인간은 왜 남을 돕기를 선택할까요? 협력은 이기심이라는 금과옥조를 거스르는 것이 아닐까요? 생존을 위한 투쟁에 관한 다윈의 이론에 따르면 잠재적인 경쟁자를 돕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 행위이며, 비합리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지켜본 바와 같이 가장 하등한 동물에서조차 이러한 협력이 발생합니다.

(2) 간접상호성(평판의 힘)

：“내가 당신의 등을 긁어 주면, 꼭 네가 아니라도 다른 누군가는 나의 등을 긁어 주겠지”

간접상호성은 당신을 향한 내 행동은 당신이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해 왔는지에 대한 평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어 어떤 보답을 받으려 한다면 이후의 또 다른 만남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직접 상호성이 나와 너의 관계에서 작용한다면 간접 상호성은 나와 우리의 관계에서 작용하는 것으로, 다시 말해 ‘내가 당신의 등을 긁어 주면, 꼭 네가 아니라도 다른 누군가는 나의 등을 긁어 주겠지’ 하고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서로가 속이는 짓을 한 후 빠져나가는 것이 쉽지 않은 소규모 공동체에서는 직접 상호성만으로도 협력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인간처럼 사회가 보다 확장되고 복잡해지면서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소문이나 잡담 등을 통해 다른 이들의 평판을 측정하고 그 평판에 근거하여 협력의 여부를 결정하는 간접 상호성은 근대 공동체 사회를 통해 가능하게 합니다. 간접상호성을 통해 좋은 평판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직접 그와의 협력을 경험하지 않았어도 소문이나 평판으로 들을 이야기를 통해 그와 협력하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생명체보다 특히 인간은 이러한 간접상호성이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에 의존하여 발달되어 왔고 이로 인해

어떤 생명체보다 협력이 더 잘 이루어질 수 있었으며 이런 협력의 결과로 복잡한 사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언어로 고도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인간은 다른 어떤 생명체 보다 잘 협력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현대사회는 통신의 발달로 다양한 연결매체를 통해서 간접상호성이 더 발달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가 더 잘 협력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만들어 지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우리는 삶에서 직접 만나지 않고도 많은 사람들과 협력해서 살아가고 있으며 이러한 협력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3) 공간선택(네트워크)

공간선택은 네트워크의 거미줄 혹은 우리가 속한 무수한 집합들에서 벌어집니다. 모든 진화 과정의 핵심에는 번식하는 개체들의 집단이 있으며 이러한 집단의 구조는 진화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공간구조 혹은 사회적 네트워크가 의미하는 바는 어떤 개체들이 특정한 다른 개체들과 더 자주 상호작용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러한 관계 안에서 서로 돕는 네트워크의 뭉침을 형성함으로써 협력자가 우월해 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공간에서 벌어지는 협력으로 가득합니다. 이웃한 사람들과 더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며 설탕이나 망치를 빌리려 할 때 아무에게나 부탁하는 대신 자연스럽게, 그리고 더 편안하게 이웃에게 다가갑니다. 협력의 딜레마를 마주한 사람들 혹은 개체들은 서로 마주칠 확률이 동일한, 즉 무작위로 공간 속에 찍혀 있는 점이 아니라 일정한 동일 영역 안에서 삶을 영위하고 이는 협력의 진화에 영향을 줍니다. 공간 선택은 죄수의 딜레마에 지리적 요소라는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공간 구조 또는 사회적 네트워크가 협력을 촉진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공간 선택의 법칙은 협력과 배신이 들고 나는 동태적 상황을 그려 보이며 배신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하더라도 무리 지은 협력자들은 살아남을 수 있음을 밝혀 줍니다.

(4) 집단선택, 다수준 선택

이 법칙은 특정한 환경에서 협력이 어떻게 개체라는 수준뿐만 아니라 더 상위 수준인 집단에서도 작용할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배신자들은 집단 내에서는 승자가 될 수 있을지언정 집단이라는 수준에서 보면 배신자들로 이루어진 집단은 협력자들의 집단에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협력이 항상 협력적인 개체들을 이롭게 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협력이 등장한 집단들이 완전히 이기적인 개체들의 집단에 비해 보다 곳곳이 버티고 더 빠르게 성장함으로써 협력이 진화할 수 있었습니다. 집단 선택은 공간 선택과 함께 무조건적인 협력자들이 생존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협력의 진화를 추동합니다. 다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나 서로에게 도움 준비가 된, 공동의 이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구성원이 많은 그런 부족이 다른 부족들에 대해 승리를 거둘 것이라는 데에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물론 이것은 자연선택이다.”

(5) 혈연선택

여기서는 가족과 공동 조상이 주는 유대가 결정적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로 표현되는, 같은 조상을 지녔다는 것이 주는 유대감으로 인해 혈연관계가 보다 강할수록 사람들은 더 협력하려 애를 씁니다. 가깝게 연관된 개체들 사이에서 협력이 보다 쉽게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이타적 행동을 낳는 유전자가 친족들 안에서 공유되고 있는 탓에 자연선택을 통해 협력이 번성하게 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겠느냐는 질문에 ‘내 형제 둘이나 사촌 여덟 명이 빠졌다면 목숨을 걸겠네.’라고 답했다는 홀데인의 딜레마로 적절히 설명되는 혈연 선택은 근친도를 파악하여 친족을 인식할 수 있는 경우 협력을 진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법칙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5가지 협력의 메커니즘은 우리가 이기적인 존재가 되기보다는 사회적인 삶에서 더 많은 것을 얻도록 해주었습니다. 여러 세대를 거쳐 이러한 메커니즘으로 우리의 본능이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사랑, 우정, 공동체 정신과 같은 보편적인 행위들이 인간 사회에 존재한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배신하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집단은 살아남지 못하고 많은 수의 사람들이 더 큰 선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고 그런 집단이 더 좋은 결과를 내고 오랫동안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직접상호성과 간접상호성을 통해서 한 번의 선행이 또 다른 선행이라는 결과를 가져오며 자연의 경쟁적인 설정에도 불구하고 간접상호성과 직접상호성이 이기는 전략으로 “자비”를 낳게 합니다. 희망을 가지고 자비롭게 대하고 용서할 수 있으며 새로운 존재를 만나면 협력의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그와 협력의 기초를 세울 수 있다는 희망을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누군가 나를 배신했더라도 협력에 근거하여 관계를 재건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뜻이며 자비는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 작용에 있어 근시안적인 관점을 취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통하여 내가 다소 작은 몫을 누리더라도 전반적으로 생산적이고 도움이 되는 상호작용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며 이럴 때 결과적으로 나눌 파이가 훨씬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분석적, 수량적, 수학적 기초로부터 찾아낸 아이디어가 도덕가들이나 신앙인들이 이야기 하는 내용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결코 이상적이고 관념적인 생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가장 풍

성하게 하고 우리를 가장 이롭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간은 언어를 비롯한 다양한 연결매체를 통하여 협력에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협력은 “나”, “내 생각”, “내 이익”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협력은 나를 내려놓고 남을 잘되게 하는 일 같지만 결국에는 나도 잘되게 하는 "상생(相生)", "WIN-WIN"의 아름다운 생존전략입니다.

수학과 과학, 네트워크 과학, 진화 생물학을 넘나들며 협력의 세계에게 찾은 증거들은 지구상의 그 어떤 종보다 우리 인간이 협력의 법칙을 잘 활용해 온 초협력자임을 가리키고 있다. 창의적인 발상을 끌어올려 최고의 결과물을 얻고자 한다면 기업과 사회조직, 공동체는 협력의 시대로 돌아서야 한다. 이제 당신은 초협력자가 되어야 한다.

- <초협력자> 소개의 글 중에서-

2) 리더십 그리고 협력적 리더십

(1) 리더십은 지위가 아니라 역할을 의미합니다.

리더십이란 ‘조직 내에서 어떤 특정의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조직의 목적 달성에 자발적으로 협력하도록 하는 능력 또는 기술’이라 정의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정의해 볼 때 리더십에 있어서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힘[능력]은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움직이게끔 유도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상급관리자가 직권(職權)의 힘에 의하여 조직 내의 사람들을 강제로 움직이게 하는 헤드십(headship)과는 구별된다. <행정학 사전>

리더십은 영향력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딱 영향력 그 자체이다.

- 존 맥스웰 -

리더십의 본질은 영향력입니다.

영향력이 있으면 누구나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높은 위치에 있더라도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으면 그는 더 이상 리더가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나 리더십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직급이 높을수록 리더십의 중요성은 커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미치는 영향의 범위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리더는 자기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남들이 인정을 해야

리더가 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리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는 높은 자리에 있긴 하지만 아무도 그를 리더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가 가진 파워 때문에 그 앞에서는 비굴한 태도를 보이지만 그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무시하고 경멸하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리더십에서 말하는 영향력이란 장악력과는 구별이 됩니다, 힘이나 권위에 의한 장악력이 아니라 강제하지 아니하는 영향력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자연이나 하늘이 베푸는 영향력과 같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하여 무위이화 즉, 저절로 변화하게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봄이 오면 자연스럽게 얇은 옷으로 갈아입고 잠재되어있는 꽃망울들이 한꺼번에 터지며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게 하듯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나그네의 옷을 벗기기 위해서는 거센 바람의 힘으로 강제적으로 옷을 벗기려 하는 것이라 아니라 태양의 온화한 열기를 통하여 스스로 옷을 벗게 만드는 힘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리(managing)하는 것은 리더가 아닙니다.

리더십은 사람들로 하여금 따라오게 하는 것이고 관리는 기존의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유지하는데 중점을 둡니다. 자신의 조직의 스타일에 맞추는 것에 주안점을 둡니다. 관리를 넘어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관리에 집중하면 현 방향을 유지하는데 급급하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를 만들지 못합니다.

리더가 된다는 것은 팀에 조직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협력적인 리더라면 팀이, 조직이 협력적인 분위기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영향을 주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조직이 협력을 통해서 긍정적이고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협력적 리더십은 직원의 역량을 키우고

새로운 변화와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대안을 만들어 냅니다.

협력적 리더십에 대하여 정의 내릴 수는 없겠지만 한 컨설팅회사에서는 협력적 리더십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협력적 리더십 스타일

협력적 리더들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팀원들에게 제공할 뿐 아니라 팀원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독려할 줄 아는 성향을 가진 리더십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 리더 자신과 팀원들의 아이디어들을 조화롭게 통합하여 조율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도록 노력하는 리더이다. 협력적, 조력적 리더십 스타일은 팀원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데 매우 능숙하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협력적 리더들은 보다 중립적인 견지에서 팀원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조력자 내지는 관찰자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 즉, 객관적인 입장에서 관찰하고 필요할 때 적정 수준에서 조언하는 정도의 역할을 수행하는 퍼실리테이터로서의 역량을 키운다면 보다 효과적인 리더십을 발휘 할 수 있게 된다. <H&K 컨설팅>

협력적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듣는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하는 능력이 아니라 들어주는 능력. 그로 인해서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조직이 리더의 생각으로만 운영되어 지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다양한 참여와 의사결정을 통하여 더 나은 대안이 창출될 수 있고 나아가서는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협력적 리더십의 듣는 힘에서는 선입견과 편견 없이 정답을 가정하지 않고 상대의 의견을 호기심 있게 집중하고 진정성 있게 경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리더가 구성원의 의견을 이러한 자세로 들어줄 때 구성원들은 더 자발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적극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과 조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심지어는 헌신까지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직원들은 자연스럽게 역량이 성장하게 되고 자발적인 참여와 역량이 강화된 직원들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조직은 더 창의적인 대안을 만들어내며 변화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 협력적 리더가 가지는 영향력은 정보나 지식이나 권력이 아니라 잘 들어주는 힘을 통하여 구성원들이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통하여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지하며 자발적인 참여와 의사결정을 이끌어 내는 데에 있습니다.

협력적 리더십은 서로간의 능력이나 지향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들을 서로 협력하게 하면 책임성이나 리더십도 신장된다는 것입니다. 협력하는 문화 속에서는 구성원들은 다른 구성원의 업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하고 문제의 해결과 그들의 결정을 수용함에 있어 책임성을 가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울러 협력의 문화 속에서는 구성원들이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여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하고 함께 정한 조직의 목표가 성취될 수 있도록 합니다.

상명하달식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조직에서는 어떤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도전을 꺼리며, 구성원들은 기관장의 해결 방식에 의존하거나 다른 사람과의 차이에 대하여 비난하고 결정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는 분위기가 됩니다. 이럴 경우 아이디어가 주로 한명의 개인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발전에 한계로 작용하게 됩니다. 협력적 문화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공유하고 점검하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며 이로 인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이 존재하며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대안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협력적인 조직은 정체하지 않습니다. 서로간의 협력을 통하여 끊임없이 발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

3) 사회복지 조직에서 협력적 리더십의 의미

(1) 사회복지의 가치와 실천의 방법들은 협력을 위한 최상의 방법입니다.

사회복지는 당사자와 이웃 및 지역사회와의 연결, 관계에 핵심적인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약자인 당사자가 지역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고 지역사회의 사람과 자원들과 연결되어 협력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이라 표현해도 좋을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당사자가 혼자서 지역사회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경쟁력이 약한 당사자가 도태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송파 세모녀의 자살 사건 등이 이렇게 당사자가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살아가지 못할 때에 극단적인 선택을 통해 살아갈 수 없게 되기까지 이르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에 중요한 것은 일방적인 도움이 아닌 당사자의 주체성을 살리는 관계와 연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적 가치 그 자체가 협력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합니다. 한쪽을 일방적인 수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에서 도움을 주고받는 이웃관계로 만드는 것. 그렇게 서로 협력적인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사회복지적인 실천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사회복지가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바 사회복지 실천의 방법들도 협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역사회복지, 주민조직화, 네트워크, 마을지향 등은 그 자체가 협력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뿐 아니라 개별실천의 방법들 역시 당사자와의 합의,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사례관리 역시 당사자를 중심으로 이웃과 지역사회의 생태체계를 협력적으로 구성해 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강점관점 실천원칙
“우리는 클라이언트와 협력할 때 가장 잘 도울 수 있습니다.”
- 임파워먼트 실천의 대화과정
“이 단계에서는 내담자와의 협력적인 파트너십 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 네트워크의 연계 수준의 분류
“제휴, 조정, 협력, 통합”
-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델의 하나인 델가도의 지역역량 증진 모델
“지역사회의 물리적 환경변화사업은 지역주민과 기관 간의 협력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고 이러한 사업을 통해 강화된 지역사회 역량은 다른 여러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중요한 힘으로 작용될 수 있다.” 등등등...

협력은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데에 있어서 최상의 방법이며, 사회복지의 가치와 실천의 방법들은 이미 협력을 내포하고 있기도 합니다. 사회복지를 잘 실천하는 것은 협력적으로 소통하고 움직이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협력적인 조직 안에서 성장한 직원은 당사자, 지역사회와 잘 협력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협력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사회복지 조직은 당연히 협력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사자의 귀하게 여기고 자기결정권과 주체성을 강조하려며 이를 돕는 그 자신이 귀하고 주체적인 존재로 대우받는 경험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직 안에서 협력적으로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하는 경험들은 사회복지 조직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당사자와 지역사회와 협력적으로 일할 것인지를 체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 대우와 그런 경험이 있는 직원이 그렇지 못한 직원보다 당사자와 지역사회와 훨씬 더 협력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로서의 핵심역량은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프로그램을 잘 기획하고, 행정문서를 잘 만들어 내고, 행사를 잘 해내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사회복지사로서의 중요한 업무역량은 바로 당사자와 지역사회와 잘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입니다. 협력적인 조직문화 속에서 일하고 성장한 직원은 이러한 것을 더 유능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협력적인 조직 안에서 구성원들 사이에 신뢰를 바탕으로 상대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대로그 아니라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토대로 협력할 줄 알게 될 것입니다. 사회복지조직에서 직위가 높아질수록 직접 지역사회와 협력하기 보다는 구성원들이 그들과 잘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직접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리더가 구성원들과 협력하여 일하는

모습을 통해서 본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리더가 직접 당사자와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무자(구성원)가 당사자와 지역사회와 잘 협력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방법이 협력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조직 안에서의 협력은 구성원이 이를 잘 실천할 수 있게 하는 데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조직 안에서의 협력적인 리더십과 문화는 다른 어떤 조직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협력적 리더십을 위해서 중요한 신념들

(1) 협력의 가치를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회복지를 실천할 때처럼 리더십에서도 가치와 관점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이 나 조직과 사람 중에 선택의 상황이 왔을 때 내가 무엇을 선택할지를 결정은 자신의 가치에 기반합니다. 그것이 가치와 철학일 때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것을 선택하게 되지만 그것이 기법일 때는 선택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즉, 효과가 있을 때에는 쓰고 효과가 조금이라도 없어 보일 때는 철회하는 것은 가치나 철학이 아니라 기법입니다. 가치나 철학은 그것에 대한 신념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당장의 손해나 비효과에 집중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에 입각하여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강점관점이 관점일 때는 언제나 이를 중심에 두고 이를 위한 방법을 선택하지만 그것이 기법일 때는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면 금방 문제중심으로 전환해 버리게 됩니다. 또 클라이언트에게는 적용하지만 조직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또 당장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는 적용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다른 것을 적용합니다. 가치나 철학과 기법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기법이 아닌 가치와 철학을 세우는 것이 우선입니다. 내가 계속 그것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렇게 가고 있는지 계속 점검하게 하는 것은 가치나 철학이 있을 때 가능하고 의미 있는 일이 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에 따라 방법을 바꾸는 기법이 아니라 가치와 철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력적 리더십은 철저하게 사람중심이 되어야만 가능한 리더십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와 협력하겠다는, 설령 협력의 결과가 배신으로 돌아온 다해도 다시 협력하는 협력적 가치와 철학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구성원의 능력과 역량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협력적 리더십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회복지 실천의 가치와 방법들은 협력적 리더십의 실천에 매우 유용합니다. 강점관점, 당사자에 대한 존중, 임파워먼트, 네트워크 등의

관점과 실천 원칙들은 협력적 리더십을 구현하는 데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을 당사자라고 생각하고 그들과 협력하는 사회복지 실천원칙들을 적용할 수 있으며 그것이 협력적 리더십을 생각하고 실천하게 되는 데에 큰 도움과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구성원의 강점의 보고 잘하는 것에 주목하고 또 철저하게 믿으며 구성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협력해 나가며 더 나아가서는 조직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입장을 견지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가치와 관점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배신의 경우에도 협력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철저하게 협력의 가치와 철학을 세우는 것, 그것이 협력적인 리더십의 중심이며 시작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청. 잘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협력적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잘 듣는 능력입니다. 핀란드 대통령 타르야 할로넨은 좋은 리더라면 자기 의견을 주장하기에 앞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듣는 좋은 청취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랜 시간 리더의 자리에 있다 보면 자기 판단이 무조건 옳다는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또 앞서 언급했듯이 실무자로서 뛰어난 업무능력을 발휘한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믿는 나머지 다른 이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잘 듣는 능력은 협력적 리더십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잘 들어야만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고 더 좋은 대안, 새로운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지지하는 사람들의 말뿐 아니라 비판가의 시각도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총리 시절 자신을 비판하던 대학교 학생회장인 청년을 자신의 비서로 채용한 타게 에를란데르 스웨덴 총리는 다른 이들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여 좋은 정책을 결정하는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총리였으며 그의 이러한 태도는 그를 비난하던 청년을 스웨덴의 총리로 성장시킵니다.

지위가 올라가면 자신의 이야기를 직원들이 받아들여야만 능력 있는 리더라고 착각할 경우가 많습니다. 직원들보다 내가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업무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팀장이 아니라 실무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시대와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서 내가 아는 것들은 이미 달라졌거나 틀릴 수도 있으며 더 좋은 대안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언제나 여지를 열어두어야 합니다. 회의시간에 구성원보다 리더가 더 많은 말을 하고 있다면 변화와 발전의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일하는 조직이 됩니다. 리더가 진정으로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고 느낄 때 직원들은 더 많은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러한 것이 잘 이루어질 때 좋은 대안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잘 들을 수 있는 능력은 겸손한 능력 겸양지덕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3)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한 사람이 자신감 있는 사람입니다.

짐콜린스는 “Good to Great(좋은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저서에서 5단계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가 말하는 가장 고수는 겸손함을 갖춘 리더입니다. 목소리가 크고 눈을 부라리는 카리스마 강한 리더가 아니라 수줍음을 타는 리더를 최고로 꼽는 것이 특이합니다. 짐콜린스는 5단계 리더십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아래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능력이 뛰어난 개인들로 하여금 각자의 재능과 지식과 기술로 생산적 기여를 하게끔 하는 단계
2단계는 모인 팀원들이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해 개인의 능력을 발휘하며 팀워크를 이뤄 다른 사람들과 효율적으로 일을 함으로서 성과를 내게 하는 단계
3단계는 결정된 목표를 위해 효율적인 방향으로 사람과 자원을 조직하는 역량 있는 관리자의 단계
4단계는 분명한 비전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추구하고 높은 목표를 내도록 자극하는 단계
5단계는 개인적 겸양과 의지를 융합하여 지속적인 성과를 내는 단계. 한 마디로 겸양의 리더십.
위대한 기업의 공통점은 5단계 리더십을 갖춘 리더가 있음

겸손과 강인함은 어울리지 않아 보인다.

위대한 기업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카리스마가 있는 강력한 리더는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수줍어하고, 나서길 싫어하고, 조용한 리더가 많다. 5단계 리더는 여러 모습을 가지고 있다. 겸손하면서도 의지가 굳고, 변변찮아 보이면서도 두려움이 없어 보인다.

협력적 리더십과 맥을 같이 하는 쉘린리의 오픈리더십에서도 겸손을 강조합니다. 그는 오픈 리더십을 위한 6가지 새로운 원칙을 제안하는데 그 첫 번째 원칙으로 목표달성을 위한 헌신을 이끌어 내는 동안 통제의 욕구를 포기할 수 있는 자신감과 겸손함을 갖는 것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겸손은 아직 배울 점이 많다는 깨달음과 성숙한 지성을 갖게 해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리더에게 중요한 2가지 마인드셋으로 낙관주의와 협업주의를 이야기하면서 “훌륭한 리더들은 자신의 한계를 알고 언제나 빠르게 다른 사람들과 협업을 추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더 나은 대안을 찾고자 다른 이들과 협력하는 현명한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시대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새롭고 더 좋은 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다 알 수 없으며 내가 이전에 알던 것들이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맞지 않는 성향이 되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사회복지의 환경도 머물러 있지 않고 변화하며 새로운 실천의 방법들이 생겨나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겸손은 자신의 관점이 변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이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 면에서 겸손은 그들에게 자신을 잘 알게 하고, 자신이 틀렸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자신감을 선사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이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과 더불어 자신이

틀리고 모름을 인정하더라도 자신이 약해지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보여줍니다.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자세, 나는 언제고 틀릴 수도 있다는 자세, 실무자인 직원이 가장 잘 안다는 자세 이러한 겸손한 자세가 협력적인 태도를 취하게 하고 이로 인해 자신의 틀을 넘어서 더 좋은 대안을 찾을 수 있게 합니다.

(4) 권위와 특권을 버리면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협력은 평등한 관계에서 잘 구현됩니다.

많은 리더십 저서에서 리더가 버려야 할 한가지로 특권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높은 권력과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소박하게 살아가고 특권과 권위를 내려놓은 리더는 언제나 많은 이들의 존경의 대상이 됩니다.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하는 스웨덴의 국회의원들, 재임 시에도 관저에 살지 않고 이웃들과 어울려서 평범한 삶을 그대로 사는 우루과이 호세 무히카 대통령 등 특권을 내려놓은 리더들은 한결같이 “특권을 내려놓고 믿음을 얻었다. 또는 특권을 내려놓는 대신 신뢰라는 더 소중한 특권을 갖게 된다.”라고 이야기 합니다.

페루의 한국인으로 시장의 자리에 오른 정홍원 시장에게 시민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를 인간적으로 대해주었고 한 번도 뒷사람처럼 군적이 없어요, 권력을 과시하지도 않았구요. 우리에게는 이런 리더가 필요합니다.” 권위가 특권을 내려놓으면 직원들이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주인이 되었을 때에는 직원들은 주인집에 일하러온 사람이 될 뿐입니다. 권력을 내려놓을수록 더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됩니다.

수직적인 조직이 아닌 수평적인 조직이 되어야 함에 대해서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협력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상호작용이라는 것을 볼 때 수평적인 관계에서 더 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리더의 권위를 내려놓고 구성원들에게 겸손하게 도움을 요청할 때 협력이 증대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신뢰, 경청, 겸손 등 협력적 리더십에서 중요한 신념들은 이렇게 특권을 내려놓을 때만이 가능한 것들입니다.

(5) 진심어린 호기심과 알고 싶어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그 일이 그 사람에게 왜 중요한 지에 대한 호기심이 있어야만 제대로 된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낙관주의 마인드셋을 설명하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호기심”과 “겸손”이라고 합니다. 호기심이 많은 리더는 끊임없이 자신과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을 더 좋게 만들 기회를 찾습니다. 구성원들과 대화할 때 그들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지 진정어린 관심과 호기심이 필요합니다.

기관에서 흔히 벌어지는 풍경 중에 기관장이나 팀장들은 직원들에게 질문을 하지만 직원들

은 그 질문에 대답하기를 두려워합니다. 또 기관장이라 팀장들은 직원들이 의견을 내지 않는다고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직원들이 정말 생각이 없기 때문에 대답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질문을 하는지가 진심어린 호기심과 알고 싶어 하는 자세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번의 경험을 통하여 내가 이렇게 이야기 하면 질문하는 사람의 생각과 의견대로 혼나거나 수정되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말하기를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협력적으로 소통하는 데에는 전제조건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는 질문하는 사람이 대답하는 사람이 어떻게 대답하는가 하고 지켜보며 질문을 하게 되고 대답하는 사람은 정답을 가진 질문에 틀린 답을 말할게 두려워 선뜻 대답하지 못하게 됩니다. 어떤 답을 말하든 질문하는 리더의 생각에 맞는 결론이 날 것이고 그럴 바에 의견을 말하고 혼나거나 수정되느니 대답을 하지 않는 쪽을 택하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은 합의된 좋은 대안, 발전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힘들게 됩니다. 정답이나 방향이나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면 안 됩니다. 최선의 대안은 모인자리에서 만들어 집니다. 진심어린 호기심과 알고 싶어 하는 자세로 함께 할 때 협력적으로 말하게 되고 그 안에서 최선의 대안이 만들어 집니다. 직원들이 아무 말 없이 자신을 말할 따르면 그것은 내가 능력이 뛰어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침묵은 소리 없는 부정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리더는 가장 나중에 말해야 합니다. 리더가 먼저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 해버리면 구성원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집니다. 용감한 구성원이 아닌 이상 대부분은 내가 말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성급하게 먼저 말하지도, 의도와 정답을 가지고 질문하지 말아야 합니다. 진심어린 호기심과 알고 싶어 하는 자세로 질문하고 토의 하여야 합니다. 협력의 전제는 정답은 없다는 것 혹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최선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틀려도 괜찮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가장 최적의 대안을 찾는 것. 그리고 우리가 찾은 대안도 또 얼마든지 변화하고 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두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실천의 방법 중 하나인 해결중심기법에서도 클라이언트와 이야기할 때 "Not-Knowing" 자세가 중요함을 이야기 합니다. 자연주의 사회사업에서는 "결언"에 대해서 이야기 합니다. 주민조직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도 주민 분들의 생각을 알고 싶어 하는 자세에서 출발합니다. 우리는 이미 사회복지 실천의 방법들에서 협력을 위한 다양한 이야기를 배우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묻는다는 것은 순수한 물음이어야 합니다. 그런 물음이어야 상대도 진심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게 됩니다. 진정성 있는 이런 자세만 있어도 협력은 시작 됩니다.

(6) 팀이나 조직은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처음 팀장이 되었을 때 하는 고민이 내가 이 팀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협력적 리더십의 관점에서 본다면 나는 이 팀원들과 어떻게 협력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해 보는 게 어떨까 제안해 봅니다. 그렇게 고민해 본다면 팀 안에서 내 능력을 발휘하려고 애쓰기 보다는 팀원들에 대해서 더 탐구하고 살피게 되고, 내가 팀원과 그리고 팀원과 팀원들이 어떻게 함께 해나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보스가 아닌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보스는 가라고 말하지만 리더는 함께 가자고 말한다”라고 합니다. 조직을 이끌어 가는 것은 리더가 아니라 구성원입니다. 함께 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조직은 리더 혼자만의 생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리더보다도 구성원이 더 강조되어야 합니다. 리더의 역할은 구성원 개인이 또는 구성원들이 서로 어떻게 더 잘 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이를 지원하고 조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지지율 80%라는 기적과 같은 결과를 보여주었던 핀란드 전 대통령 타르야 할로넨은 이렇게 말합니다. “리더란 변화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변화를 만들어 내도록 이끄는 사람입니다. 리더는 홀로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변화를 만들어 가는 사람입니다.”

■ 리더 한사람이 여러 명보다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리더 한사람이 여러 명 보다 더 나은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매우 오만한 생각입니다. 나보다 우리가 똑똑합니다. 능력 있는 실무자가 능력 있는 리더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개인의 역량과 능력에 대한 과신이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결정만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협력적인 리더는 혼자서 의사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미국기업 시스코(Cisco)는 분산된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수많은 훌륭한 결정하며 협업의 도구와 문화에 많은 투자하는 회사로 유명한데 그 회사의 CEO인 존 챔버스는 가장 바뀌기 어려운 사람은 그 조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정보와 권한을 주면 혼자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결정을 내린다는 사실을 결국은 알게 된다고 이야기 합니다. 구성원들이 의사결정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실제 앞서 언급한 시스코는 이러한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회사 내부의 많은 사람들이 대단한 속도로 학습하고 어떤 때보다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7) 구성원들은 언제나 더 잘 하기위해 애쓰는 존재임을 신뢰해야 합니다.

“큰일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직원들을 대우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실제로 큰일을 해낼 것입니다.”

직원을 위한 놀라운 복지제도로 미국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꼽히는 소프트웨어 업체 SAS 사장은 위와 같이 이야기 합니다. SAS의 짐 굿나잇 회장의 직원에 대한 이러한 신

뢰와 믿음이 직원들을 위한 아낌없이 지원하게 하는 복지제도를 가능하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행복한 직장인은 조직과 회사의 든든한 지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직원을 위한 복지제도가 잘되어 있는 기업이 많지만 이것이 충분히 활용되어지고, 그로 인해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은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경우의 차이는 리더의 가치관과 철학에 달려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와 복지시설이 있어도 구성원에 대한 신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를 제대로 누리고 즐기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행복하다고 하는 직장인은 조직과 상사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68점이었는데,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직장인은 해당점수가 41점이었다고 합니다. 즉,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는 조직에서 일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8) 진정으로 구성원의 성장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기관은 조직이라 아니라 공동체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기관을 조직이라고 인식하면 구성원이 한두 명 잘려나가도 조직은 살아있게 된다면 된다는 식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일하는 것은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행복해 지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볼 때 리더는 구성원들이 한편으로 구성원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구성원들이 공동의 뜻을 세우고 각자 맡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고, 구성원들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해 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구성원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리더의 조건입니다.” - 제니퍼소프트 이원영대표

우리가 만나는 당사자가 지역사회 안에서 다른 구성원들과 관계를 맺으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듯이 우리의 조직도 그 안에 있는 한명 한명이 구성원이 진정으로 행복하게 일할 수 있고, 함께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을 위한 도구로서가 아니라 구성원 개인의 성장에 진정으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이든 타인이든 사람을 대할 때 결코 단순한 수단으로서만이 아니라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라” - Kant -

(9) 다양성에 대한 인정합니다, 모두가 같은 색깔이 되는 것은 위험한 조직입니다

다양성에 대한 인정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나 사회복지조직에서 사회복지실천에 정답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시각을 가진 다양한 사람의 협력을 통하여

최선의 대안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력을 통해 가장 최선의 효과적인 대안을 만들어 내고 그것을 적용해보고 또 그것이 효과가 없다면 얼마든지 또 다른 대안을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다름에 대한 인정이 아니라 다른 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좋아하고 선호해야 합니다.

(10) 협력의 시작은 리더나 조직이 먼저입니다.

조직에서 일하면서 신뢰, 협력, 긍정의 요소가 팀을 만들어 가는 데에 있어서 진짜 중요함을 실감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기관에서 오랫동안 한 팀을 맡아왔었고 그 팀안에 나름대로 신뢰를 갖고 협력적으로 일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것이 잘 이루어졌을 때에는 실제로 팀을 위해서 신경 쓸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각자 역할을 너무 잘 해주었고, 필요한 과업을 제시하면 직원들 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빠르게 소통하여 협력하여 과업을 수월하게 수행해냈기 때문입니다. 업무이동으로 새로운 팀과 일하게 되었을 때, 해당 팀은 오랜 기간 리더의 부재 팀의 해체 이후의 재결합 등으로 인해 여러 해 불안정하게 운영되어 왔었습니다. 새로운 팀의 구성원들과 새롭게 일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고 함께 일하면서 전과는 다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전 팀은 새로운 과업 혹 그것이 다소 힘들거나 조금은 불합리한 과업이라 하여도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지 긍정적인 방향으로 토의하고 논의하여 협력하여 가능한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해내는 모습을 보였다면, 새로운 팀은 어떠한 과업이 주어지면 그것이 왜 불가능한지에 대한 저항이 먼저 있었으며 현재의 상황에서 그것을 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에게는 참으로 놀랍고 당황스러운 경험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직원 개인의 문제일까요? 두 팀 중 한 팀은 긍정적인 구성원만 모이고 다른 팀은 부정적인 구성원들만 모인 결과일까요? 신뢰하고 협력할 수 없었던 환경에서 일한 직원은 어떠한 사고를 갖게 되는지는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성원 개인의 역량이 아니라 그들이 처한 환경과 상황이 그곳에 속한 구성원들에게 준 영향입니다. 누구나 그런 불신의 상황에 놓이게 그렇게 사고하게 되고 자신의 것을 지키려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속성이 아니라 조직의 역량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1) 실패에 대한 용서 그리고 보상

■ 값비싼 처벌의 이야기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협력하지 않는 자에 대한 응징 혹은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끔 처벌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처벌이 이를 위한 좋은 방법인지

는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처벌은 반드시 처벌을 하는 대상도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다른 이들의 비용을 치르게 하기 위해서 나도 비용을 치러야 합니다. 자신의 집을 가리는 이웃의 집을 못 짓게 하지 위해서는 나의 위험과 손해를 감수하며 그의 울타리를 자르고 경찰서에 붙잡혀 가거나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처벌은 “값비싼 처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처벌은 반드시 처벌하는 사람의 손해가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을 위해서 더 큰 선을 위해서 우리는 처벌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를 “이타적인 처벌”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즉, 자신이 이득을 볼 수 없을 때조차 처벌하려는 요구가 존재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직접상호성이라는 반복적인 상황이나 간접상호성이라는 평판이 작동되지 않는 단순한 상황에서는 가능한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이것이 작동되는 상황에서는 조금 다른 결과를 가져 온다고 합니다.

배신을 당했을 때 우리가 취해야 할 다음 동작은 배신이나 처벌이 아니라 협력입니다. 실험의 결과가 보여주듯이 그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가장 좋은 결과를 얻는 길입니다. 일에 대한 실수를 그 사람의 무능함으로 보지 않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가 실패한 것이라는 것을 서로가 명확하게 하여야 합니다. 실패에 대한 용서로 그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다시 실패하지 않도록 돕는 것, 즉 다시 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리더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자는 리더십에서 “공포정치가 가장 아래 단계다” 라고 이야기 합니다. 공포정치는 상벌, 두려움, 위협과 협박 등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법제정치로 규정에 의해 조직을 다스리는 것인데 이는 공포정치보다는 낫지만 역시 하수의 리더십입니다. 그 다음은 인의의 리더십으로 인간다운 리더십을 의미합니다. 노자가 말하는 최상의 리더십은 무위의 다스림, 억지가 없는 다스림입니다. 한 마디로 사람들이 리더의 존재를 의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리더의 존재를 인식한다는 것 자체는 리더에 대해 어떤 부담을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리더십은 리더가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한 채 자연스럽게 굴러가는 것입니다. 실제 동양의 태평성대를 구가 하였던 요임금 시절에는 백성들이 왕에 존재를 알지 못하였고 누군가가 왕에 존재를 물어보면 내가 왜 그걸 알아야 하나며 반문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처벌하라 그러면 망할 것이다.” - 마틴노악 -

4) 소감 및 적용점

- 아이디어회의와 평가회의를 구분하라.

- 우리는 때때로 시간절약과 효율이라는 핑계로 간단 명료함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
그러나 새롭고 신선한 아이디어의 발상을 위해서는 아이디어 회의와 평가회의를 구분하고 아이디어 회의 중에는 어떠한 황당한 발상, 사고일지라도 포용하여 받아들인 후 평가회의 때 논리적인 사고를 하여 판단하도록 하겠음
- 아이디어 회의와 평가회의를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에 대한 생각은 유익하였음.
롤플레이어처럼 우리 팀도 향후 아이디어 회의시에는 자유로운 발상을 할 수 있도록지지 응원하도록 하겠음
- 평상시 회의 시간을 정할 때 팀원들이 모두 가능한 시간을 선택하도록 함. 시간에 쫓기면 이러한 규칙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음
- 좋은 아이디어나, 내가 미처 생각지 못한 아이디어를 냈을 경우 각자의 감정과 긍정적인 생각을 언어로 표현, 지지해 주도록 하겠음
- 처음으로 무비판적인 대화를 통하여 모의 회의를 실시하였는데 처음이라 어색한 마음이 들었음. 지속적인 실천으로 이러한 조직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부모양육태도검사의 이해



팀 명	재활치료 1팀
일 시	2014년 3월 19일
발표자	정승영
장 소	상담실2



부모양육태도검사의 이해

심리치료사 정승영

1. 부모양육태도란?

양육태도는 자녀의 요구, 자녀의 미래상에 대한 부모의 희망, 양육 환경, 사회 문화 등이 유기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심리적 상태라고 정의 내립니다. 부모양육태도는 부모의 양육방식과 비슷한 개념으로 상호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부모의 양육방식을 구분하는 데 가장 기초적인 틀은 ①권위적인 양육방식, ②허용적인 양육방식, ③민주적인 양육방식으로 나누어 집니다. 이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이상적인 양육방식이라고 결정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자녀의 성격형성 및 지적능력의 발달은 양육방식뿐만 아니라 자녀의 타고난 본성, 사회적 통념, 부모의 이해등과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바람직한 양육방식은 자녀가 자신의 삶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스스로 행동조절력을 자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또한 성장하면서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게 하고, 또 일정한 수준의 자아존중감을 갖추게 해줄 것입니다. 적당한 절제 능력, 대인관계 능력, 자아 존중감은 개인 성장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 삶의 목표들을 달성해 나갈 수 있게 하는 씨앗이 됩니다. 어떤 직업이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직업적 성공은 반드시 3가지 요소가 함께 발전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신체적 건강, 둘째는 정서적 안정, 셋째는 인지적 능력입니다. 이 삼박자가 함께 어우러질 때, 자녀의 미래는 더욱 긍정적으로 될 것이고, 나아가 사회발전에 좀 더 많이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부모양육방식은 유치원 시기에 분명하게 평가될 수 있고, 이때 평가된 것이 18~19세 무렵까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부모양육방식은 물질이나 많은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들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이 사회에 좀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는 인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기는 어렵지만, 본 검사에서는 부모의 양육방식을 8가지로 나누어 구분하여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방식을 점수화시켜 비교하였습니다.

부모의 양육방식 영역 - 이 검사는 부모들이 자녀를 대하는 양육태도 혹은 심리적 요소를 8가지로 나누어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검사 결과는 (1)지지표현, (2)합리적 설명, (3)성취 압력, (4)간섭, (5)차별, (6)감독, (7)과잉기대, (8)비일관성 영역으로 나누어서 양육자의 마음 상태를 다른 부모님들과 비교하여 백분율(%)로 제시하였습니다.

2. 검사문항

아동 이름 : _____ 성별 : 남·여 나이 : _____ 세 기관명 : _____ 학년 : _____
 주양육자 이름 : _____ 성별 : 남·여 나이 : _____ 세 자녀와의 관계 : _____
 보조양육자 이름 : _____ 성별 : 남·여 나이 : _____ 세 자녀와의 관계 : _____

	전혀 아니다	다소 아니다	중간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자녀에게 무조건 지시하기보다는 왜 그래야 하는지 설명해 주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모든 면에서 남보다 잘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 자녀의 사생활에 대해서 간섭을 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4 작은 잘못에 대해서도 심하게 때린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학교나 어떤 교육을 마친 후에 자녀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부모의 기대만큼 자녀가 따라오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7 같은 일에 대해서 화를 낼 때도 있고, 안 낼 때도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8 자녀에게 좋아한다는 표현을 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9 화난 이유를 자녀에게 잘 설명해 주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0 자녀가 지닌 능력 이상으로 잘 되기를 바라고 이야기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1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심하게 꾸짖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2 자녀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칭찬이나 벌을 줄 때는 자녀가 이해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자녀에게 최고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5 작은 일에 대해서도 "이래라, 저래라" 상관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6 화가 났을 때는 좀 더 심하게 처벌했다.	①	②	③	④	⑤
17 바깥 일 보다는 자녀와 관련된 일을 더 중요시 여기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8 보통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내 자녀는 잘 못하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19 같은 일에 대해서도 어떤 때는 야단을 치고, 어떤 때는 야단을 안 칠 때도 있다.	①	②	③	④	⑤
20 자녀가 힘든 처지라고 생각될 때, 용기를 북돋아 주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1 잘못된 행동을 혼내기 전에 왜 그것이 옳지 않은 지를 설명해 주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2 좀 지켜보면 좋았던 일도 간섭하거나 잔소리 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3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자녀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4 자녀가 힘들어 보일 때에 격려를 해 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5 자녀의 일 중에서 공부에 신경을 가장 많이 쓴다.	①	②	③	④	⑤
26 자녀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막은 적이 가끔 있다.	①	②	③	④	⑤
27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꾸중을 많이 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8 자녀가 생각보다 늦게 들어오면 어디에서 시간을 보냈는지 알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29 자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지 관심을 기울이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0 무엇을 하든지 항상 이겨야 한다고 말하곤 했다.	①	②	③	④	⑤
31 자주 칭찬을 해 주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2 자녀가 외출하면 언제 들어오는지 알고 있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3 자녀의 미래에 대해 너무 걱정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4 자녀가 언제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지켜보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5 내 기분대로 자녀를 대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6 가끔 자녀가 나를 무섭게 생각할 때도 있다.	①	②	③	④	⑤
37 자녀가 무리한 요구를 하면 거절하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38 내 자녀를 자랑스럽게 생각해 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9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자녀가 할 때, 계속 신경이 쓰인다.	①	②	③	④	⑤
40 자녀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41 자녀가 아플 때는 특히 신경을 많이 기울인다.	①	②	③	④	⑤
42 매일 공부한 양을 확인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43 자녀가 공부할 때 들여다 보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수고하셨습니다.

3. 프로파일(유아부모용)

부모양육태도검사 프로파일

• 유아 부모용 •

아동 이름 성별 : 남 · 여 나이 : 세 기관명 :

주양육자 이름 성별 : 남 · 여 나이 : 세 자녀와의 관계 :

보조양육자 이름 성별 : 남 · 여 나이 : 세 자녀와의 관계 :

백분위	지지표현		합리적 설명		성취 압력		간섭		처벌		감독		과잉기대		비일관성		백분위	
	주	보	주	보	주	보	주	보	주	보	주	보	주	보	주	보		
100	45	43	30	30	19	19	26	24	18	18	34	31	15	15			100	
98	44	42	29	29	18	18	25	23	17	17	33	30	14	14	15	14	98	
95																		
90	43	41	28	28	17	17	24	22	16	16	32	29	13	13	14	13	90	
85	42	40	27	27	16	16	23	21	15	15	31	28	12	12	13	12	85	
80	41	39	26	26	15	15	22	20	14	14	30	27	11	11	12	11	80	
75																		
70	40	38	25	25	14	14	21	19	13	13	29	26	10	10	11	10	70	
65																		
60	39	37	24	24	13	13	20	18	12	12	28	25	9	9	10	9	60	
55																		
50	38	36	23	23	12	12	19	17	11	11	27	24	8	8	9	8	50	
45																		
40	37	35	22	22	11	11	18	16	10	10	26	23	7	7	8	7	40	
35																		
30	36	34	21	21	10	10	17	15	9	9	25	22	6	6	7	6	30	
25																		
20	35	33	20	20	9	9	16	14	8	8	24	21	5	5	6	5	20	
15	34	32	19	19	8	8	15	13	7	7	23	20	4	4	5	4	15	
10	33	31	18	18	7	7	14	12	6	6	22	19	3	3	4	3	10	
5	32	30	17	17	6	6	13	11			21	18			3		5	
2	31	29	16	16	5	5	12	10			20	17					2	
0																		0

하위척도	지지표현	합리적 설명	성취 압력	간섭	처벌	감독	과잉기대	비일관성
양육자	주	보	주	보	주	보	주	보
백분위 점수								

답안지의 합계 점수에서 '지지표현'의 점수를 확인한 후, 그 점수를 프로파일의 '지지표현' 세로칸에 해당되는 백분위 점수를 찾아 동그라미 하십시오. 그다음 백분위 점수가 얼마인지를 찾아 프로파일 아래 부분의 '지지표현' 백분위 점수란에 기입하세요. 만일 '지지표현'의 합계 점수가 41점이라면, 백분위 점수는 80이 됩니다(주양육자). '합리적 설명~비일관성' 하위 척도까지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마인드프레스
www.mindpress.co.kr

Korean Copyright © 2010 by Mindpress Publishing. All right reserved.

01

3. 하위척도 결과해석

부모양육태도 검사결과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참고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지지표현 : 애정을 보이는 정도를 평가한다.

- ① 지지표현 상 : 86~100%
- ② 이상적 지지표현 : 65~85%
- ③ 지지표현 하 : 0~64%

(2) 합리적 설명 : 자녀의 잘못을 꾸중할 때 자녀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하는 노력의 정도를 평가한다.

- ① 합리적 설명 상 : 86~100%
- ② 이상적 합리적 설명 : 65~85%
- ③ 합리적 설명 하 : 0~64%

(3) 성취 압력 : 사회적 성공을 강하게 요구하는 정도를 평가한다.

- ① 성취 압력 상 : 71~100%
- ② 이상적 성취 압력 : 50~70%
- ③ 성취 압력 하 : 0~49%

(4) 간섭 : 자녀의 사생활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는 정도를 평가한다.

- ① 간섭 상 : 61~100%
- ② 이상적 간섭 : 40~60%
- ③ 간섭 하 : 0~39%

(5) 처벌 : 주로 신체적 처벌이나 심리적 위협을 가하는 정도를 평가한다.

- ① 처벌 상 : 51~100%
- ② 이상적 처벌 : 30~50%
- ③ 처벌 하 : 0~29%

(6) 감독 : 자녀의 일상 스케줄을 파악하고 있는 정도를 평가한다.

- ① 감독 상 : 51~100%
- ② 이상적 감독 : 30~50%
- ③ 감독 하 : 0~29%

(7) 과잉기대 : 암묵적인 기대 정도를 평가한다. 암묵적 기대란 의미는 부모의 기대 수준에 자녀가 따라오지 못한다고 느끼기는 하지만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① 과잉기대 상 : 41~100%
- ② 이상적 과잉기대 : 20~40%

③ 과잉기대 하 : 0~19%

(8) 비일관성 : 자녀의 행동에 대한 꾸지람의 기준이 비일관적인 정도를 평가한다. 부모의 양육방법 중에서 가장 나쁜 것으로서 자녀의 사회성 발달에 가장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① 비일관성 상 : 31~100%

② 이상적 비일관성 : 10~30%

③ 비일관성 하 : 0~9%

*참고자료 : 임호찬(2010). 부모양육태도검사 마인드프레스

효과적인 상담 방법 연습



팀 명	재활치료1팀
일 시	2014년 9월 26일 (17:50~18:50)
발표자	서미례
장 소	물리치료실



효과적인 상담 방법 연습

1. 촉진적 관계의 형성

인간은 죽을 때까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살며 인간관계를 잘 맺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행, 불행이 결정되기도 한다. 상담자와 내담자 또한 상담 초기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을 개선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도전과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우선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준비가 촉진적 관계형성이다. 촉진적 관계를 위한 상담자의 바람직한 태도 및 행동 특징은 공감적 이해, 수용적 존중, 일관적 성실성 및 전문적 구체성이다. 이러한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전달하느냐가 중요하다.

상담자 태도	내담자의 지각
공감적 이해	‘상담자는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알고 있다.’
수용적 존중	‘상담자는 내가 어떤 생각,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일관적 성실성	‘상담자는 말과 행동이 같고 또 나를 항상 순수하게 대할 것이다.’
전문적 구체성	‘상담자는 내 문제에 대해 안개 속에 있지 않고 실타래의 매듭을 풀 듯 내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갈 능력이 있다.’

2. 공감적 이해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도 다른 사람의 감정을 거의 같은 내용과 수준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내담자는 공감적으로 이해하고 있음이 전다로디면 내담자는 자신이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되며, 상담자를 보다 신뢰하게 되어 자신을 깊이 드러내 보이게 된다.

1) 일상적 정서의 이해

- 두려움 : 위험하거나 위협적인 상황을 느끼면서 그것을 피할 방법을 모를 때 유발된다.
- 불안 : 공포의 원인 혹은 원인을 모를 때 유발되는, 공포의 일반적인 상태라 할 수 있다.
- 기쁨 : 바라던 목표가 달성되었을 때 생기는 것으로, 그 강도는 목표의 중요성, 획득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획득의 우연성의 정도에 의해 결정된다.
- 분노 : 목표달성과 관련되어 있으며, 목표획득을 좌절시키는 사람과 사물에 의해 유발된다.
- 성공감과 실패감 : 자신의 수행 결과를 자신의 기대와 비교해 볼 때 생긴다.
- 자부심과 수치심 : 자신의 행위가 자신의 기대에 미치는지를 평가하여 자신을 좋게 혹은 나쁘게 지각할 때 유발된다.

- 죄책감 :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거나 비도덕적인 것으로 지각되었을 때 유발된다.
- 사랑 : 타인에게 이끌리고 또 이끌리고 싶은 욕망을 느낄 때 유발된다.
- 증오 : 타인을 싫어할 때 뿐만 아니라 그 대상을 파괴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정서이다.
- 질투 : 사랑하는 사람이 타인에게 애정을 준다고 지각할 때 생긴다.
- 시기 : 자신이 바라는 어떤 것을 타인의 소유하고 있다고 지각할 때 생긴다.

지시된 정서를 가장 잘 나타낸 내용은 어떤 것인지 답하시오.

(1) 두려움

- 가. 그 일은 그 사람의 잘못이다.
- 나. 그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나의 잘못이다.
- 다. 나는 내가 비난받을 것임을 알고 있다.
- 라. 나는 곤경에 빠져있지만 어쩔 수 없다.

(2) 불안

- 가. 지금 아주 긴장이 된다. 무엇인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다.
- 나. 이번 시험을 기다리는 것은 너무나 싫다. 나는 낙제할 것만 같다.
- 다. 나는 내 학점에 대해 생각하고 싶지도 한다.
- 라. 아무도 내게 춤을 신청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3) 기쁨

- 가. 나는 정말 놀랐다.
- 나. 나는 정말로 그 파티가 즐거웠다.
- 다. 수년 동안 해 온 노력의 결과, 나는 드디어 그것을 얻었다.
- 라. 확실히 우리팀이 훌륭하다-오늘처럼 이겼으니까

(5) 분노

- 가. 나는 정말 그것을 해낼 수 없을 것 같다.
- 나. 나는 그 사람 근처에 서 있을 수 가 없다.
- 다. 그가 방해하지만 않았어도 이겼을 것이다.
- 라. 이기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더 잘 안되는 것 같다.

(5) 자부심

- 가. 나는 지금 내가 해야할 일을 하고 있다.
- 나. 이겼지만, 최선을 다하지는 않았다.
- 다. 나는 더 잘 할 수 있다.
- 라. 나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승리할 수 있다.

(6) 수치심

- 가. 모든 사람은 내가 잘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 나. 그렇게 쉬운 시험에 실패한 것을 보니 나는 어쩔 수 없는 존재이다.
- 다. 어머니는 내가 잘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신다.
- 라. 나는 공부를 하지 않았고 그래서 실패했다.

(7) 죄책감

- 가. 흠친다는 것은 나쁘다. 나는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
- 나. 내가 잡힌다는 것을 알았어야 했다.
- 다. 나는 더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 라. 그것은 내가 무엇을 흠쳤는가에 달려 있다.

(8) 사랑

- 가. 나는 그녀와 함께 있는 것을 즐긴다.
- 나. 그녀는 내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준다.
- 다. 그녀와 함께 있을 때 나는 달라진다.
- 라. 나는 그녀와 영원히 함께 있고 싶다.

(9) 증오

- 가. 그는 나를 속였다.
- 나. 나는 그를 아주 싫어한다.
- 다. 나는 그가 죽었으면 하고 바란다.
- 라. 나는 그를 잘 모른다. 그래서 그를 인정할 수가 없다.

(10) 질투

- 가. 그는 돈이 필요해서 야근을 해야 한다.
- 나. 그녀는 말뿐이다. 그래서 나는 그녀를 인정할 수 없다.
- 다. 그녀는 내가 가질 수 없는 물건들을 가지고 있다.
- 라. 그는 엄마와 지내느라고 나와 데이트할 시간이 없다.

2) 공감적 이해의 5수준

- 수준1 : 상대방의 언어 및 행동 표현의 내용으로부터 벗어나거나 내용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감정 및 의사소통에 있어서 상대방이 표현한 것보다는 훨씬 못 미치게 소통하는 수준.
- 수준2 : 상대방이 표현한 감정에 반응은 하지만 상대방이 표현한 것 중에서 주목할 만한 감정을 제외시키고 의사소통하는 수준.
- 수준3 : 상대방이 표현한 것과 본질적으로 같은 정서와 의미를 표현하여 상호교류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수준.

·수준4 : 상대방이 스스로 표현할 수 있었던 것보다 더 내면적인 감정을 표현하면서 의사소통하는 수준. 수준4부터는 의사소통이 촉진됨.

·수준5 : 상대방이 표현할 수 있었던 감정의 내면적 의미들을 정확하게 표현하거나, 상대방의 내면적 자기 탐색과 완전히 같은 몰입 수준에서 상대방이 표현한 감정과 의미에 첨가하여 의사소통하는 수준. 상대방의 적극적인 성장 동기를 이해하여 표현 함.

각 반응이 공감적 이해 척도 상 어느 수준에 해당하는지 평정하시오..

(1) “일단 저에게 맡겨주신 업무에 대해서는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제 소신껏 창의적으로 일하고 싶습니다.”

___ 가. “자네 업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간섭받는다고 생각이 되어서 기분이 상했군.”

___ 나. “자네가 알아서 할 일을 내가 간섭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불쾌한 게로 군.”

___ 다. “자네가 지난 번에 처리했던 일이 아마 잘못됐었지?”

___ 라. “믿고 맡겨준다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간섭받는다는 기분이 들면 기분이 썩 안좋겠지.”

___ 마. “기분이 나쁘더라도 상사의 지시대로 해야지.”

(2) “저는 여기서 일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함께 근무하는 다른 선생님들도 다 좋은 분들이고요. 그런데 교장선생님만은 좀 경우가 다르군요. 그 분의 마음을 일일이 맞추어 드리자니 여간 힘든게 아닙니다.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일을 해도 항상 불만이신 것 같아요.”

___ 가. “그럼, 교장선생님께 가서 한번 따져 보시지 않구요? 그냥 지금처럼 가만 계시면 앞으로 더욱 힘들어질 겁니다.”

___ 나. “그 심정을 알 것 같습니다. 저도 6년간이나 그렇게 지내왔으니까요.”

___ 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는데도 교장 선생님은 그걸 몰라주고, 오히려 업무상으로 더 많은 것을 기대하시는 눈치란 말이지요. 정말 참아내기가 어렵겠군요.”

___ 라. “다른 것은 다 좋은데 교장선생님과의 문제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으시군요.”

___ 마. “교장선생님이 당신의 노력을 조금만이라도 인정을 해주시면 더욱 잘 할 수 있을 텐데, 항상 불만을 표현하시니까 참기가 어려우시겠어요.”

3) 공감적 이해의 기본 수준

(1) 40세 남자가 자기 어머니가 불합리하다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 어머니는 아픈 것을 핑계로 나를 퐁퐁 묶어 두고 있어요. 몸이 편치 않으신데, 마음이 약한 제가 어떻게 어머니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완전히 그런 식

이지요. 아마도 일평생 나를 묶어둘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그 책임은 나한테 떨어질 것이 분명하거든요.”

공식반응 : _____하기 때문에 _____하게 느끼시는군요.

(2)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말한다

“성희는 아침에 등교하기를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정말 몸이 아파서 등교를 못하기도 합니다.”

공식반응 : _____하기 때문에 _____하게 느끼시는군요.

3. 수용적 존중의 5수준

·수준1: 의사소통자의 언어와 행동 표현에서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명백히 결여되어 있거나 부정적 배려만이 있는 수준.

·수준2 : 상대방의 감정, 경험 및 잠재력에 대해 거의 존중하지 않는 수준.

·수준3 : 상대방의 감정, 경험 및 잠재력에 대해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존중과 관심을 전달하는 수준.

·수준4 : 상대방에 대해 깊은 긍정적 존중과 관심을 표명하는 수준.

·수준5 : 상대방에게 한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자유인으로서의 잠재력에 대해 깊은 긍정적인 존중을 전달하는 수준.

수용적 존중의 차원에서 어느 수준에 해당하는지를 평정하세요.

(1) “부모님이 저한테 너무 많은 기대를 하고 계세요. 관심도 많으시고 너무 잘 해주시니까 오히려 부담이 돼요.”

___ 가. “당신도 이제 성인이라는 것을 부모님이 모르고 계시는군요.”

___ 나.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부모님 입장이 돼 보세요.”

___ 다. “부모님이 잘 해 줘도 불만이군요.”

___ 라. “부모님이 공연한 참견을 많이 해 신경이 많이 쓰이는군요.”

___ 마. “당신 혼자서 대부분 일을 훌륭하게 할 수 있는데도 부모님이 일일이 간섭하려 하시는군요.”

(2) “부장님이 저에게 아주 심하게 화를 내면서 몰아대더군요. 그게 기안작성한 거냐고요. 저는 무엇이 잘 못된 것인지 정말 모르겠어요.”

___ 가. “부장의 질책 때문에 자기 능력에 대한 회의가 느껴지시는가 보군요.”

___ 나. “뭔가 잘못된 것이 있으니까 그러지 괜히 그러시겠어요?”

___ 다. “저도 전에 그런 일을 당한 적이 있지요.”

____ 라. “뚜렷한 이유도 모르고 상사로부터 그렇게 공격을 받았으니 무척 당황하셨겠군요.”

____ 마. “부장의 공격적인 질책 때문에 놀라셨겠어요.”

1) 높은 수준의 수용적 존중

대화체가 유지될 수 있도록 반응을 가능하면 빨리 기록해 보세요.

(1) “도대체 이 학교가 우리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 알 수가 없군요.”

당신의 반응 : _____

(2) “나는 아내와의 관계에서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인든지 해 주었습니다. 나는 내가 잘못된 것이면 모두 인정을 하고, 심지어 아내의 잘 못이라고 생각되는 것이라도 기꺼이 내 탓으로 돌리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나는 이래도 안되고 저래도 안되는 꼼짝달싹할 수 없는 지경에 빠졌습니다.”

당신의 반응 : _____

4. 일관적 성실성

상담자와 내담자 관계에서 상담자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한 인간으로서 내담자를 만난다는 의미로서 내담자를 만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일관적 성실성의 5수준

·수준1 :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는 무관한 표현을 하거나 부정적인 것에만 진지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전체적으로 파괴적인 영향을 주는 수준.

·수준2 :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 거의 관계가 없는 표현을 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진지성이 주로 부정적인 반응에 대해 나타나는 수준.

·수준3 : 말하고 느끼는 것 중에서 부정적인 단서를 보이지는 않지만 정말 진지한 반응을 나타내는 긍정적인 단서를 제공하지 못하는 수준.

·수준4 : 상대방에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진지한 반응을 나타내며 긍정적인 반응 단서를 건설적인 방식으로 제시하는 수준.

·수준5 : 상대방과의 비타산적인 관계에서 자유롭고 깊게 자기 자신의 모습이 되는 수준.

(1) “선생님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네요. 혹시 제가 뭐 잘못된 거라도 있나요?”

____ 가. “내 기분이 어떻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____ 나. “사실 네가 하는 일을 보면 신경이 쓰이지”

- ___ 다. “별일 아니다. 네가 신경 쓸 필요 없어”
- ___ 라. “네 태도가 좋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걱정이 되지.”
- ___ 마. “그럴 만한 일이 있어서 그래.”

(2) “엄마는 왜 우리를 일보다는 바깥일에 더 신경쓰시는 거예요?”

- ___ 가. “넌 버르장머리 없이 어른 하는 일까지 참견하려고 하니?”
- ___ 나. “너희들이 엄마의 사정을 좀 알아주면 얼마나 좋겠니?”
- ___ 다. “너희들은 너희들 일만 잘하면 되는 거야.”
- ___ 라. “엄마의 입장을 좀 이해해 줄 수 없겠니? 너희들이 불편한 것을 엄마가 모르는게 아냐.”
- ___ 마. “너희들에게 그런 말을 들으니 속이 상하는 구나.”

1) 높은 수준의 일관적 성실성

(1) 김영철씨는 처음 몇회는 시간을 잘 맞추어 오더니 5회가 지나면서부터 계속 10분에서 15분씩 늦게 온다. 그 때마다 그는 거의 비슷한 말을 한다.

“죄송합니다. 지난 번에도 늦어서 오늘은 서두르려고 마음 먹었는데 그만 또 늦고 말았네요. 다음에는 꼭 시간을 지키려고 애쓰겠습니다.”

당신의 반응 : _____

5. 전문적 구체성 5수준

·수준1 : 문제 상황에 대해 오직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수준에서 반응을 보임.

·수준2 : 문제 상황에 관련된 상대방의 감정, 경험, 행동에 대해 언급하기는 하나 언급이 모호하고 추상적인 수준.

·수준3 : 문제 상황과 관련된 자신의 감정, 경험, 행동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도록 하나 개인적으로 의미있는 자료들이 충분히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논의되지 않음.

·수준4 : 문제 상황과 관련된 자신의 감정, 경험, 행동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게 하고 이들이 충분히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논의되도록 의사소통을 이끌어 나감.

·수준5 : 문제 상황과 관련된 자신의 감정, 경험, 행동을 아주 충분히 구체적으로 명료하게 논의되어지고 긍정적 변화를 위하여 깊은 수준의 탐색을 적극적으로 촉진함.

(1) “엄마는 무슨 잔소리를 그렇게 많이 하세요.”

- ___ 가. “넌 엄마가 어떻게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그러니?”
- ___ 나. “자식은 잔소리를 들으면서 커야 사람이 되는 법이다.”
- ___ 다. “내 말은 잔소리가 아니라 꼭 지켜야 되는 일들을 이야기 하는 것 뿐이야.”
- ___ 라. “엄마의 어떤 말이 잔소리로 들리니?”

___ 마. “내 말이 어떻게 잔소리로 들리는지 말 좀 해보려므나.”

(2) “우리 식구들은 말이 통하지 않아요. 말을 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어요.

___ 가. “식구들 끼리는 말을 하지 않고도 다 통하는 것 아니야?”

___ 나. “식구들이 네 이야기를 어떻게 들어주면 좋겠다고 생각하니?”

___ 다. “사람은 말이 많으면 못쓰는 법이야.”

___ 라. “네 말을 누가 들어주지 않았길래 그러니?”

___ 마. “누구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었길래 그러니?”

8) 높은 수준의 전문적 구체성

(1) “친구들에게 제 의견을 분명히 말하기가 무척 힘들어요. 무슨 부탁을 받을 때 싫다고 딱 부러지게 말을 못하겠어요.”

당신의 반응 : _____

6. 결론

아동과의 치료 및 부모 상담 시 보다 효율적인 상담 진행을 위하여 공감적 이해, 수용적 존중, 일관적 성실성, 전문적 구체성을 연습해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상담을 진행하며 반응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중요하리라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이장호·금명자(1992). 상담연습 교본: 법문사.

Normal gait analysis



팀 명	재활치료 1팀
일 시	2014년 12월 04일
발표자	김진봉
장 소	물리치료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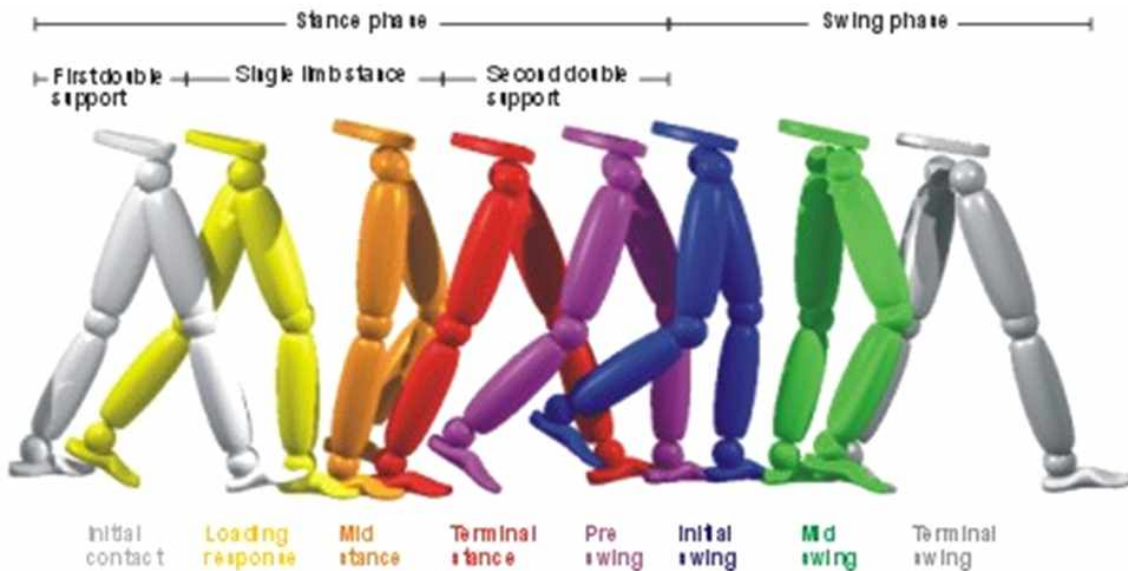


보행의 운동학

보행은 어떤 개체의 기본적 요구에 따라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움직이는 것을 말한다. 보행은 그 자체만으로도 사람들이 매일 기본적으로 하는 활동들 중 가장 흔한 것 중의 하나가 된다. 이상적인 보행을 위해서는 피로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효율성과 낙상이나 손상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정성이 요구된다. 정상적인 사람들은 대화를 나누면서 물건을 나른다거나, 여기저기 쳐다보면서 걷는다거나, 또는 장애물을 피하면서도 별 어려움 없이 걸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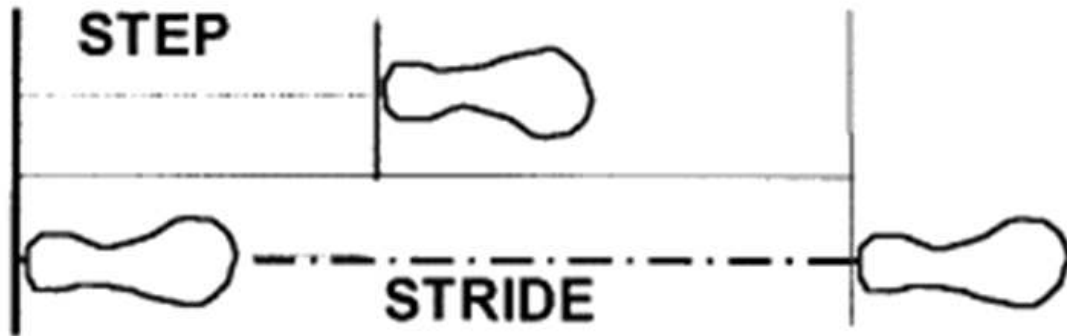
정상적인 성인에게는 보행이 쉬운 과제로 고려되지만, 어린아이나 노인들에게는 보행이 힘든 과제가 될 수도 있다. 어린아이에 있어, 서는 것과 걷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몇 달이 요구된다. 사실 7세 정도가 되어야 성숙한 보행 패턴에 필요한 모든 섬세한 요소들을 완성하게 된다. Patla는 우리의 삶에 있어 보행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독립의 수준과 좋은 삶의 질을 강조하는데 있어,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우리는 어린 아이가 이러한 능력을 계속 발달시킬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게 생각하며, 인생을 통해 이러한 능력을 키우고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I. 보행 주기



보행은 연속적인 움직임들이 주기적으로 일어난 결과이다. 이것만으로도,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보행주기(gait cycle)에 대한 설명이 될 수가 있다. 보행주기는 발이 지면에 접촉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발의 접촉은 일반적으로 발뒤꿈치에 의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보행주기의 시작 또는 0% 지점을 발뒤꿈치 닿기라 한다. 보행주기의 완료 또는 100% 지점은 같은 발이 다시 지면과 접촉할 때 일어난다. 활보(stride, 보행주기와 동의어로 쓰임)는 한쪽 발뒤꿈치 닿기에서부터 또 다시 같은 쪽 발뒤꿈치 닿기까지의 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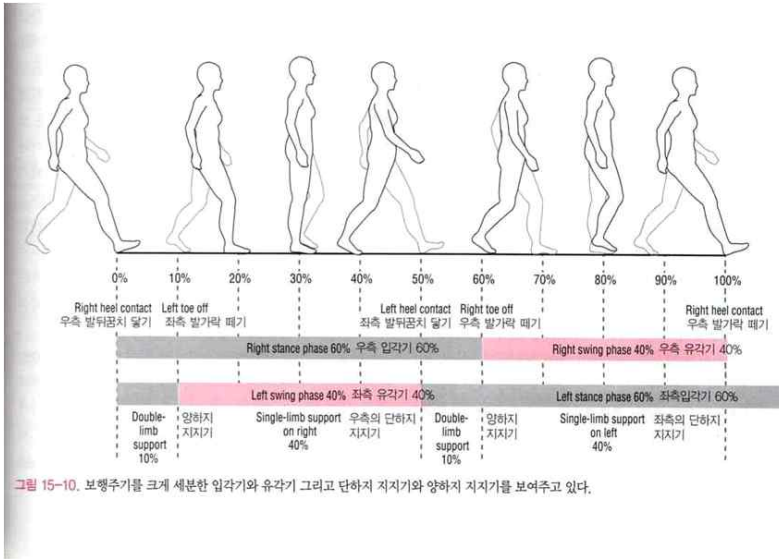
작을 말한다. 이와 비교했을 때, 걸음(step)은 한쪽 발뒤꿈치 닿기에서부터 반대쪽 발뒤꿈치 닿기까지의 동작을 말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우측 발뒤꿈치 닿기와 좌측 발뒤꿈치 닿기 사이를 말한다. 따라서 보행주기는 두 개의 걸음(step)인 좌측 걸음과 우측 걸음을 갖는다.



II. 입각기와 유각기

보행주기 동안 일어난 결과들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 관례적으로 보행주기를 0~100%까지 세분하게 된다. 초기에 언급했듯이, 지면에 발뒤꿈치 또는 발바닥 닿기는 보행주기의 시작(0%)로 간주하고 그 후에 일어나는 같은 발의 지면 접촉은 보행 주기의 끝(100%)로 간주된다. 이 장에서는 기준을 위해 우측하지를 이용한 보행을 설명한다. 우측하지에 의한 완전한 보행주기는 두 개의 중요한 단계인 입각기와 유각기로 나뉘어진다. 입각기(stance phase, 우측 발뒤꿈치 닿기에서부터 우측 발가락 떼기까지)는 오른쪽 발바닥이 지면에 접촉하여 체중을 지지할 때 일어난다. 유각기(swing phase, 우측 발가락 떼기에서부터 다시 우측 발뒤꿈치 닿기까지)는 오른쪽 발이 공중에 있는 시기로, 다시 지면에 접촉할 때까지 발이 앞으로 전진하게 된다. 정상적인 보행속도에 있어 입각기는 보행주기의 약 60%를 차지하고, 유각기는 나머지 40%를 차지한다.

보행주기 동안, 사람은 두 번의 양하지 지지기(double-limb support, 양 발이 동시에 지면에 접촉하고 있는 시기)와 두 번의 단하지 지지기(single-limb support, 단지 한 발만이 지면에 접촉하고 있는 시기)를 경험하게 된다. 첫 번째의 양하지 지지기는 보행주기의 0%와 10% 사이에서 관찰된다. 그 기간 동안, 체중은 좌측하지에서 우측하지로 이동된다. 그런 후, 우측하지는 보행주기의 50% 지점까지 단하지 지지기로 있게 된다. 이 기간 동안, 좌측하지는 유각기로 있게 되어, 좌측하지를 앞으로 전진시킨다. 두 번째의 양하지 지지기는 보행주기의 50%와 60% 사이에서 일어나며, 체중을 우측하지에서 좌측하지로 이동시키게 된다. 마지막으로 보행주기의 60%에서 100%까지는 좌측하지에 의해 다시 단하지 지지기 동안 우측하지는 유각기에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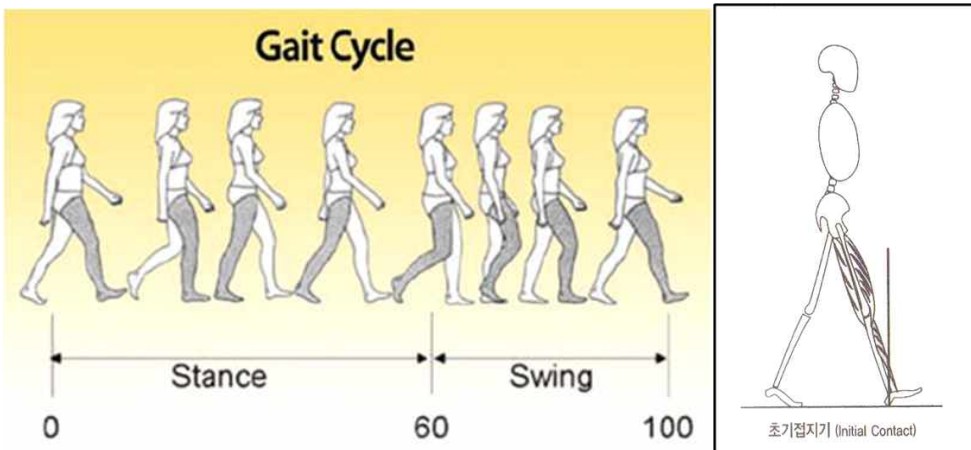
III. Gait cycle

입각기(stance phase)

: 발이 지면에 닿아있는 시기로서 정상 보행 주기의 60% 정도를 차지하며, 특히 양 발이 지면에 닿아 있는 시기를 동시 입각기라고 하며, 입각기의 25%를 차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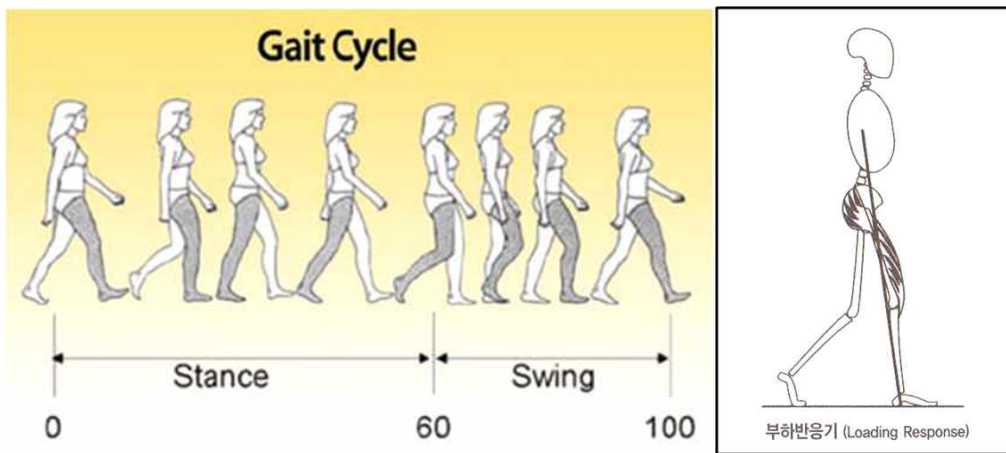
1. 발뒤꿈치 닿기(initial contact(heel strike=heel contact))

입각기에 있어 가장 초기 단계로 발뒤꿈치가 땅에 닿는 동작을 가리킨다. 이 때 고관절(엉덩이관절)이 구부러지고(flexion), 슬관절(무릎관절)은 펴지며(extension), 발목관절은 약간 발등을 위쪽으로 끌어당긴 상태(dorsiflexion)로 발뒤꿈치가 지면에 닿는다. 이는 양 발이 동시에 닿는 동시 입각기으로써 반대쪽 발에서는 입각 말기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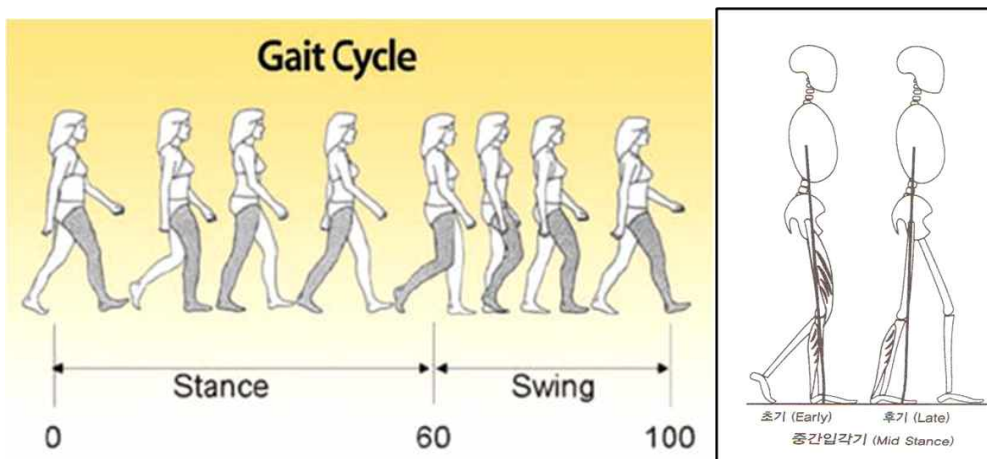
2. 발바닥 닿기(loading response(foot flat=forefoot contact))

발뒤꿈치가 땅에 닿은 후 바로 발바닥 닿기가 발생한다. 이때 체중은 전방에 배치된 하지로 이동하게 된다. 그리고 체중이 과도하게 전방으로 이동하지 않도록 잠금 기능으로서 뒤꿈치가 이용되고 슬관절(무릎관절)은 전방으로 이동된 체중에 대한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슬관절(무릎관절)을 약간 구부리게(flexion) 된다. 또한 발목을 아래쪽으로 펴는 동작(plantarflexion)은 발뒤꿈치의 잠금 기능(heel rocker)을 제한한다. 그 대신 반대쪽 발에서는 발 끝 떼기 동작이 이루어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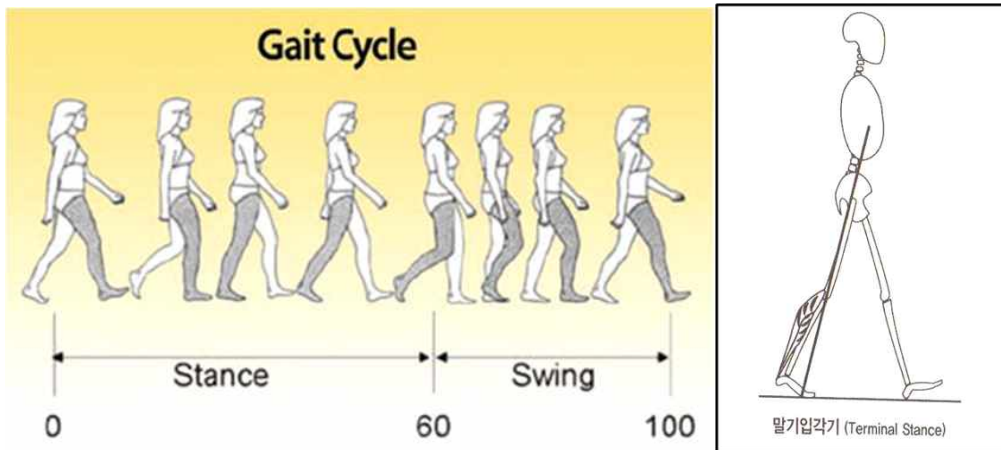
3. 입각 중기(mid stance)

발바닥 닿기 동작이 이루어진 후 신체의 무게 중심이 발바닥의 중심을 지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체중을 한쪽 하지로 지지하게 되고, 고관절(엉덩이관절)은 구부려진 상태(flexion)에서 펴지는 상태(extension)로 변화된다. 이 때 발목 관절은 발등을 위쪽으로 끌어올리는 동작(dorsiflexion)을 수행하는데 이는 발목의 잠금 기능(ankle rocker) 역할을 수행한다. 그 대신 반대쪽 발에서는 유각 중기 동작이 발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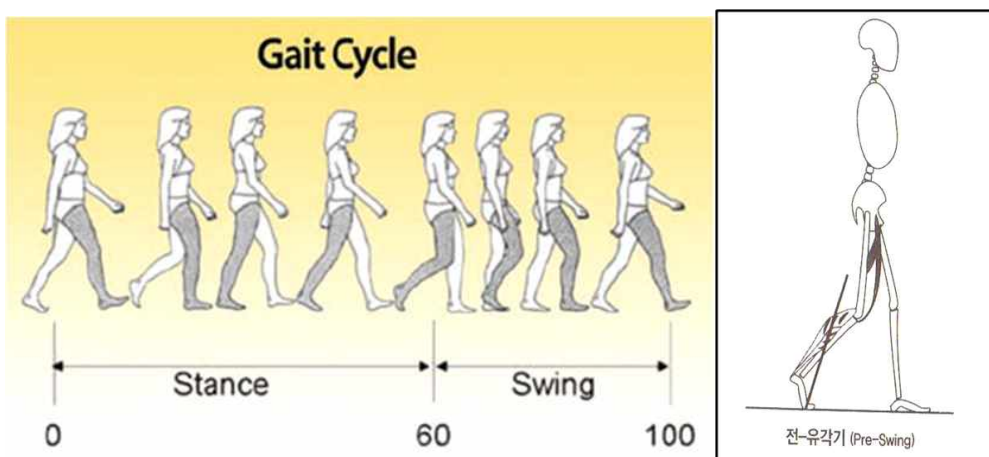
4. 입각 말기(terminal stance(heel off))

입각 중기 이후에 발뒤꿈치가 떨어지는 시기이다. 고관절(엉덩이관절)과 슬관절(무릎 관절)은 점차로 펴지는 상태(extension)를 최대한 유지하게 되고, 발목 관절이 점차 발등은 아래로 쪽 펴면서 (plantarflexion) 신체의 무게 중심이 전방으로 과도하게 이동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 하퇴의 잠금 기능(heel rocker)이 이루어진다. 그 대신 반대쪽 발은 유각기의 감속기로서 발뒤꿈치 당기를 준비하게 된다.



5. 발 끝 떼기(pre-swing(toe off))

입각기의 마지막 단계로 발가락 끝이 지면에서 떨어지는 시기이다. 이 시기는 발뒤꿈치 당기와 같이 양발이 지면에 닿는 시기로 동시 입각기이다. 이 시기에는 고관절(엉덩이관절)과 슬관절(무릎관절)이 점차적으로 구부러지는 동작(flexion)을 수행하게 되고, 발목관절은 발등이 아래쪽으로 쪽 펴지는 동작(plantarflexion)을 수행하게 된다. 그 대신 반대쪽 발은 발바닥 당기가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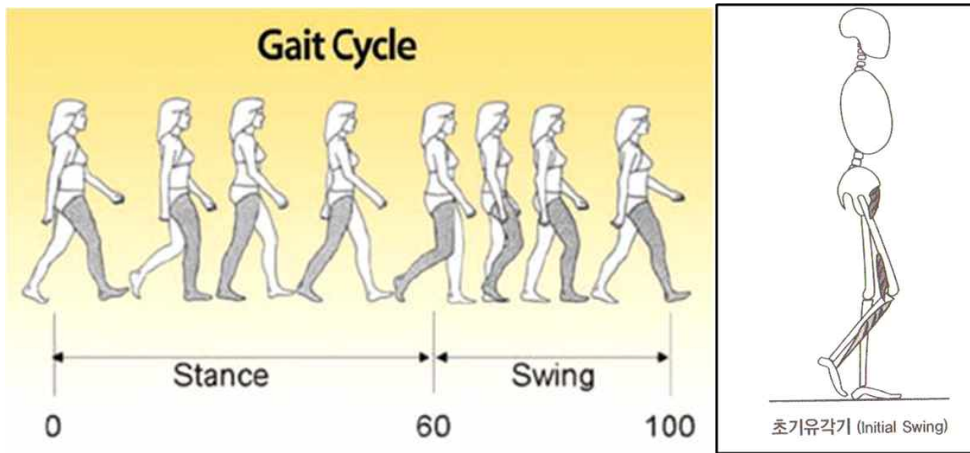


유각기(swing period)

: 발이 지면에서 떨어져 앞으로 나아가는 시기로서 정상 보행 주기의 40%를 차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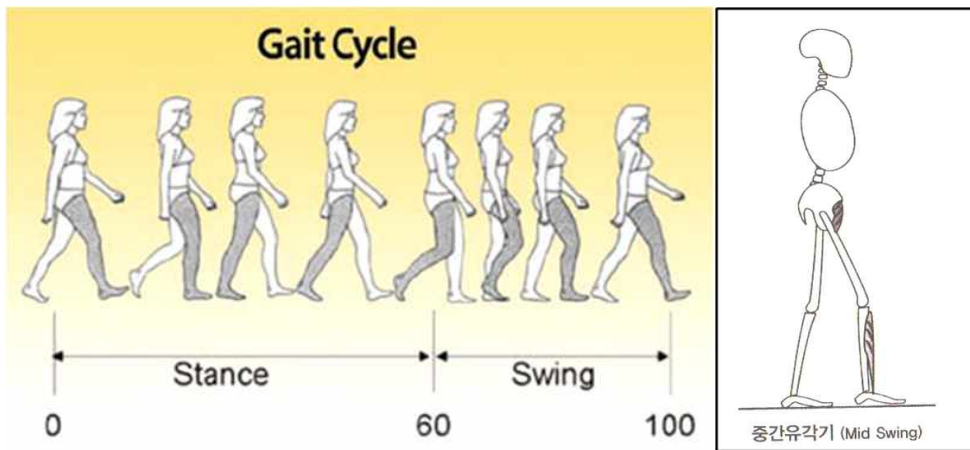
1. 가속기(initial swing(acceleration))

이 시기는 발 끝 떼기 이후 발이 공중에서 스윙하는 동작으로 점차적으로 스윙의 속도가 증가된다. 이 때 고관절(엉덩이관절)과 슬관절(무릎관절)은 굴곡 동작을 수행하게 되고, 발목관절은 단순히 발등을 위쪽으로 끌어당기는 동작(dorsiflexion)을 수행한다. 그 대신 반대쪽 발은 입각 중기의 초기 단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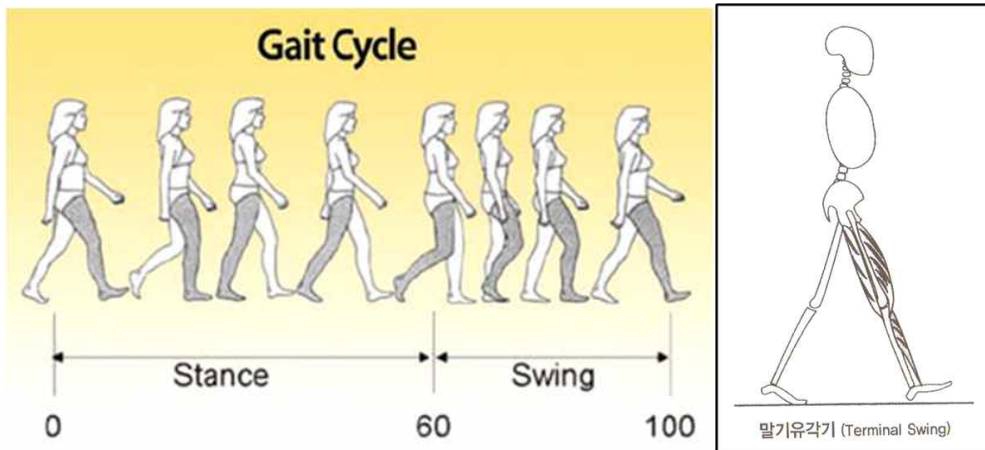
2. 유각 중기(mid swing)

이 시기는 가속기의 마지막 단계이면서 감속기의 초기 단계로 고관절(엉덩이관절)과 슬관절 (무릎관절)이 신체의 중심선을 지나면서 점차로 구부러진 상태(굴곡 상태)에서 펴지는 동작(신전 동작)으로 바뀌게 된다. 그리고 발목 관절은 가속기의 상태인 발등을 위쪽으로 끌어당기는 상태(dorsiflexion)를 유지한다. 그 대신 반대쪽 발은 입각 중기의 마지막 단계이다.



3. 감속기(terminal swing(deceleration))

이 시기는 유각기의 마지막 단계로 발뒤꿈치 닿기를 준비한다. 고관절(엉덩이관절)은 약간 구부러진 상태(flexion)를 유지하지만, 슬관절(무릎관절)은 완전히 펴진 상태(extension)를 유지하게 되고, 발목관절은 발등이 위쪽으로 쭉 펴진 상태(dorsiflexion)를 유지한다. 그 대신 반대쪽 발은 입각 말기 상태이다.



IV. 보행 기능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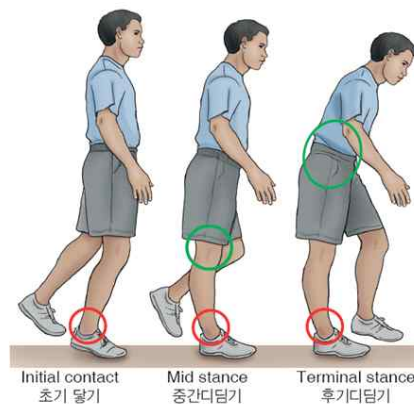
최대의 효율성으로 보행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보행의 각 과정에서 많은 작용들이 동시에 일어나야 한다.

정상적인 보행을 위해서는 보행에 참여하고 있는 각 관절에서의 충분한 가동범위와 근력이 요구된다. 또한 중추신경계를 통한 움직임의 정교한 조절을 요구한다.

비정상 또는 병적인 보행 패턴은 적응을 통해 보행을 보존하려는 노력을 반영한다. 보행이상이 나타나면 에너지 소비와 신체에 적용된 스트레스는 증가하게 된다. 병리적 보행 패턴의 원인들로는 통증, 중추신경계 병변, 근골격계 기능장애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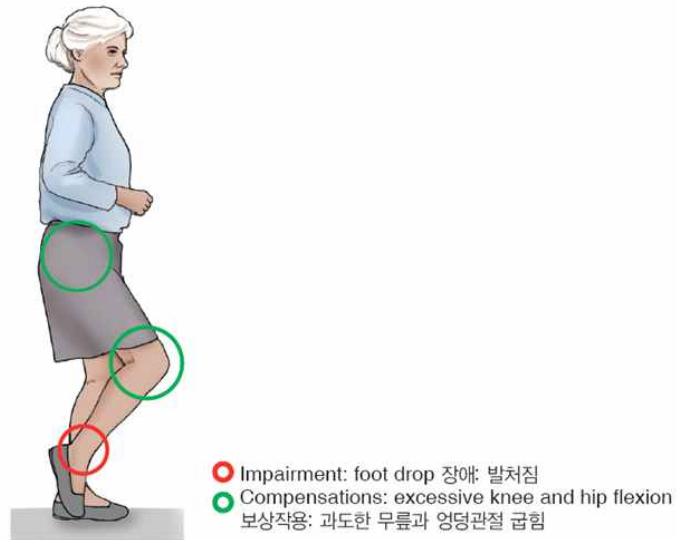
1. 발목 발바닥 쪽 굽힘 구축

발목이 발바닥 쪽으로 굽힘 되는 구축이 있는 환자는 이를 보상하기 위해서 중간 디딤기 단계에서 무릎을 과도하게 펴고 후기 디딤기에서 몸통을 앞으로 기울이는 보상작용을 나타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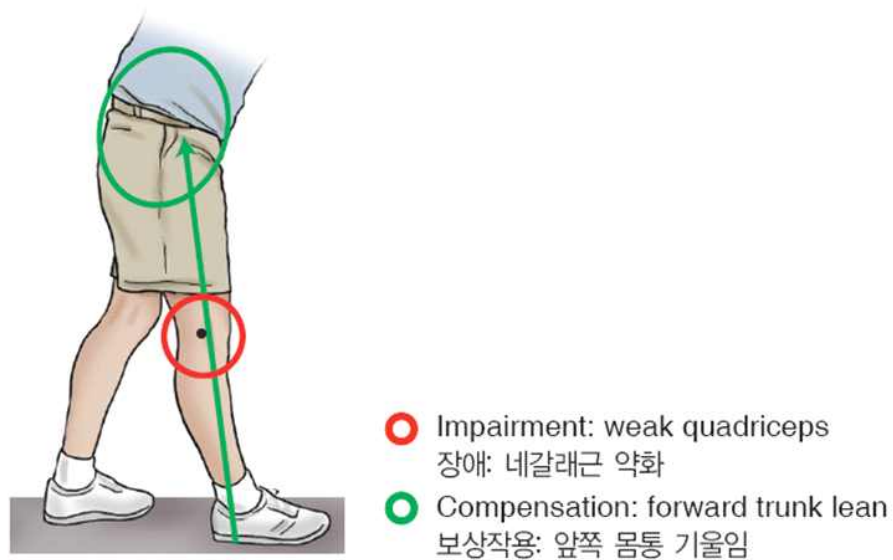
2. 발 처짐

발목 등쪽 굽힘근에 약화가 있는 환자는 발처짐으로 인해서 보행 시 과도한 무릎과 엉덩관절의 굽힘 보상작용을 나타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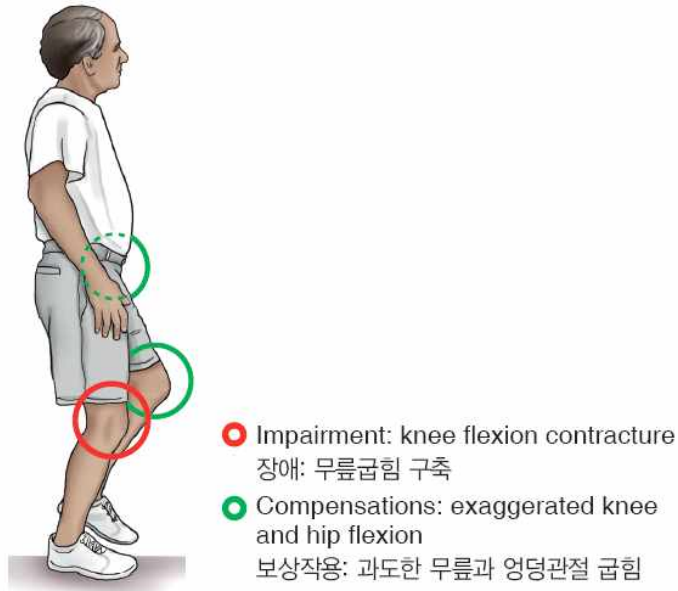
3. 넓다리네갈래근 약화

넓다리네갈래근이라고 부르는 허벅지 앞쪽 근육에 약화가 있는 환자는 이를 보상하기 위해 몸통을 앞으로 기울이는 보상작용을 나타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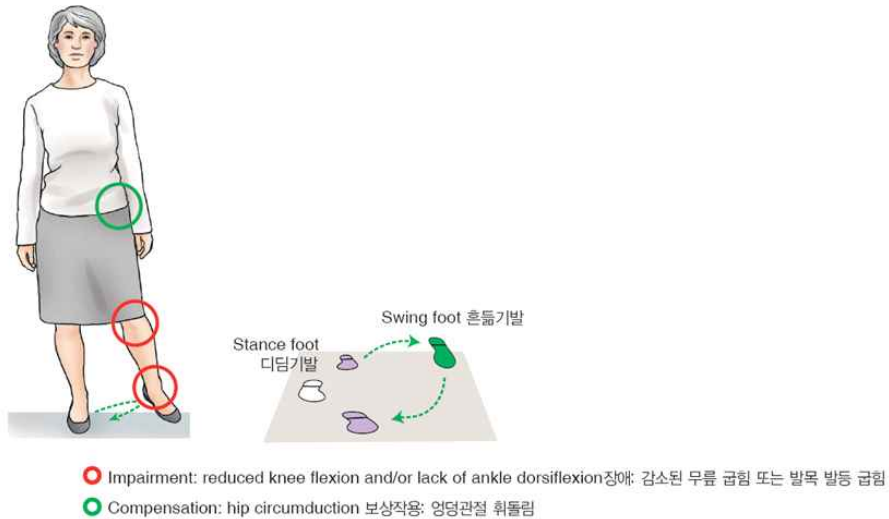
4. 무릎 굽힘구축

무릎에 굽힘 구축이 있는 환자는 보행 시 반대쪽 하지의 과도한 무릎과 엉덩관절의 굽힘 보상작용이 나타나게 된다.



5. 감소된 무릎 굽힘 또는 발목 발등 굽힘

무릎 굽힘과 발목 발등 굽힘이 정상범위보다 감소되면 그에 대한 보상작용으로 엉덩관절의 휘둘림이 나타난다.



V. 결론

보행은 기능을 하기 위해 수많은 관절, 근육의 협응과 양 하지의 상호 작용이 필요한 복잡한 전신동작이다.

기능적 보행은 체간과 사지조절의 정확성을 요구하며 체간은 하지위치가 변화됨에 따

라 하지 위에서 균형과 조절을 유지해야한다. 대칭적인 골반정렬은 하지근위부와 체간의 안정성에 영향을 주어 기능적인 보행을 유발할 수 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선천적 기형, 발달장애, 절단이나 외상 같은 후천적인 문제 그리고 퇴행성의 변화는 이러한 상호작용을 하는 요인들의 균형을 손상시켜 결과적으로 보행의 효율을 저하시킨다. 아이들의 보행패턴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의 수행은 물리치료 또는 외과적인 수술절차의 중재법을 실행하기 이전에 보행능력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최적의 중재법을 선택할 수 있게 해준다. 관찰적 보행분석은 보행편위에 대한 평가서의 작성 시 중요한 핵심의 역할을 하며, 임상적 평가와 연계되어져 보행편위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결정에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본질적인 보행의 문제를 이해할 수 있으며, 병리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어 전문적인 치료를 가능하게 하고 치료의 옵션을 예측할 수 있게 해준다.

보행기능 증진을 위한 열쇠는 움직임 재교육과 기능적 연속성 및 움직임을 수행하는 동안, 체간과 사지의 움직임 패턴들을 조화시키는 치료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Perry Burnfield , MD. Perry의 보행분석. 정 석(역). 영문출판사, 2012.

Donald A. Neumann. 근골격계의 기능해부 및 운동학. 김종만(역). 정담미디어, 2010.

통합체육의 개념과 시행



팀 명	재활치료 2팀
일 시	2014.02.13. 17:30-18:30
발표자	최보람
장 소	대회의실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통합체육의 개념과 시행

1. 통합체육의 배경이해

1) 통합체육의 필요성

현재 특수체육의 세계적 연구 동향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하는 완전통합(Full Inclusion)을 주제로 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완전통합이야말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정상화를 돕는데 필수적인 수단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제도적으로 완전통합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통합교육을 받고 싶어도 장애에 대한 선입견과 사회적인 장벽 때문에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함께 수업을 받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다. 다행히 2000년대 들어와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교육 정책이 특수학교에서의 분리교육으로부터 일반학교로 통합교육을 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교육이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추세에 따라 특수체육에서도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여 체육관련 종사자들이 장애학생에게 신체활동을 통한 건강한 삶의 증진을 돕는데 앞장서고 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1960년대 초까지 장애학생은 또래들과 함께 수업을 받지 못하고 격리, 수용되어 교육을 받았다. 그러나 1967년 공법 90-170이 입법화 되면서 현대적 특수체육이 태동하게 된다. 그리고 1975년 장애아교육법이 공포되면서 특수교육에 혁신을 가져왔으며 이법에서 체육교육은 장애학생 교육 시 반드시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임을 규정함으로써 특수체육과 장애인스포츠에 새로운 전화기를 받게 되었다. 그리고 1970년대 후반부터 특수체육의 범주는 학교로부터 지역사회까지 확대하여,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체육활동에 참여하여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는 통합체육을 강조하게 되었다. (Winnick, 1990). 우리나라에서는 1994년 특수교육진흥법이 법제화되면서 통합교육에 관심이 증가하였고 체육교육 또한 유용한 통합교육의 수단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와 같이 현재 통합교육이 강조되는 이유는 첫째, 장애학생이 또래 학생과 같은 경험을 하고, 사회의 기대에 적절하게 대처하게 하며, 둘째,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함께 활동하는 가운데 사회적 관심(공동체 의식)을 계발하게 하고, 셋째, 동료교수, 협동학습 등으로 학문적 이득을 보게 함으로써 장애학생의 사회통합과 일상적인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이다.(김승국,1999)

2) 통합교육(체육)의 정의

1977년 ‘특수교육진흥법’이 제정된 지 30년 만인 2007년 7월에 새로운 ‘장애인등에 대

한 특수교육법(2008, 이하 특수교육법)’이 제정 및 공포되었다. 역사적으로 보면 1988년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을 통하여 무상교육이 확대되었고 1994년 전면개정과 1997년 부분 개정을 계기로 통합교육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또한, 국내의 특수교육은 양적, 질적인 면에서 많은 성장을 이루어 왔다. 그러나 현장에 배치된 장애학생들에게 충분한 교육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는 반성의 목소리 역시 계속 들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진흥법의 제정은 장애영역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와 장애인 당사자들의 누적된 요구를 바탕으로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욕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에 기여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2008)’에서는 ‘통합교육’을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에 따라 차별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2조제6항)’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통합교육의 정의는 첫째, 각 급 학교의 장은 교육에 관한 각종 시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통합교육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둘째,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 받은 일반학교의 장은 교육관정의 조정, 보조 인력의 지원, 학습보조기기의 지원, 교원여수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하고, 셋째, 일반학교 장은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특수학교 학급 및 각 급 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 및 운영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설비 및 교재, 교구를 갖추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2. 통합체육의 철학 및 가치

1) 특수교육의 패러다임 변화

1950년대까지 특수교육은 분리교육(특수학교에서의 교육)을 당연시 해왔다. 장애인들은 장애인 끼리 어울려 교육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러던 것이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특수교육계에서도 소외계층의 정상적인 생활권 보장을 위한 인권운동이 대두되고, 기존의 사고방식과는 다른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하는 인도주의적 사상을 수용하고,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기 때문에 동등하게 대접받을 권리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사상이 대두되면서 특수교육에서는 장애학생을 특수학교에 분리하여 교육을 시키기보다는 일반학생과 함께 어울리면서 생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생각은 1960년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덴마크, 스웨덴, 벨기에 등)에 의해 도입된 정상화(Normalization) 개념을 미국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오늘날 세계적으로 통합교육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통합교육은 기존의 모더니즘이 포스트모더니즘으로 대체되면서 특수교육에서도 개별

장애인의 특성을 중요시 하여 이들의 능력과 수준에 맞는 수업계획을 작성하여 교육을 시키자는 구성주의 이론을 받아들이게 된다. 구성주의 원리가 장애인의 개별화 교육 및 통합교육을 실시하는데 이론적인 근거를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모더니즘은 이성적인 획일성, 합리성, 규범 지향, 보편성 추구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반면, 포스트 모더니즘은 다양성, 해체, 그리고 이질성의 공존 성격을 가졌다. 포스트모더니즘은 개인이 표준화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의 기준으로 평가받기를 거부하고,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주관적 잣대로 가치를 인정받고자 하는 철학이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지향하는 모더니즘에 대한 반대와 비판에서 유래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심성보, 1993; 최정용, 1994) 다시 말해, 포스트모더니즘은 절대적 가치를 추구하고 순응하는 인간 혹은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지식과 사고의 틀을 가진 인간을 뛰어넘어 모든 인간을 위한 것이며, 다양성을 강조하는 특수교육의 통합교육 성격과 잘 어울린다고 할 수 있다. (김성애, 2002) 이러한 포스트모더니즘 사회에서 통합교육은 모든 개인이 각 개인의 다양성을 인정받으며 소수 인으로서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을 기반으로 성립되었다. 또한 포스트모더니즘은 장애인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을 기존의 의료적 모델에서 장애인인권 모델로, 그리고 최근에는 생태학적 모델로 변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Sherrill(2004)은 장애인의 사회통합에 대한 노력을 언급하면서 그동안 장애인을 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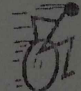
	범주, 결핍 혹은 의료 모델	사회적 약자/장애 인권 모델	생태적 모델
철학 요소	◦ 장애는 불안정하거나 열등한 것이거나 그 이하일 뿐이다.	◦ 장애는 '다른' 존재일 뿐이다; 때문에 열등하지 않고, 다만 단순히 다를 뿐이다.	◦ 장애 외에는 차이를 유발하는 개인-환경간의 상호작용과 차이의 공존을 인정한다.
장애 정의	◦ 개인은 치료를 요하는 공통적인 결손과 예외성을 지니고 있다.	◦ 개인은 단지 사회적 오점이라는 공통성을 지녔을 뿐이고, 이는 반드시 없어야 한다.	◦ 개인은 일부 장벽을 인정하고 극복할 수 있다. 장벽은 제거되어야 한다.
정체성 지각	◦ 사용되는 용어는 부정적이다(가령, 결점, 부족함 등).	◦ 용어는 긍정성, 중립성을 강조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 개인과 환경 변인이 동일하게 강조된다.
용어 사용	◦ 프로그램은 결점, 문제점, 또는 장애인들의 특징에 기반을 두고 있다.	◦ 프로그램은 개인적인 평가 자료, 개개인의 장점, 그리고 약점에 근거하고 있다.	◦ 평가 외에 개인과 환경시스템 요소를 동일하게 취급한다. 목표는 장벽과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다.
서비스 전달 기반	◦ 목적은 조언, 처방, 혹은 치료교육을 주는 것이다.	◦ 목적은 개인에게 자아실현을 위한 능동적인 역할을 생각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이다.	◦ 사회적 약자 모델과 동일하다.
적절한 상징	◦ 그래픽이 수동적이다 	◦ 그래픽이 역동적이다. 	◦ 사회적 약자 모델과 동일하다.

그림 1. 장애인을 보는 시각의 변화

시각의 변화를 언급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특수교육에서의 인본주의 등장

장애학생을 또래 학생들과 분리하거나 배제하지 않고 동일한 학급에 배치하여 교육하는 통합교육은 근본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인간으로 인권을 존중받고, 사회정의도 실현한다는 이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교육은 인간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라고 할 때, 사회는 그 구성원이 어떠한 조건을 가졌더라도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책임을 져야 한다. 장애인도 분명히 사회적으로 열악한 조건을 가진 소수자이다. 이에 국가 및 사회는 이들을 교육할 때 그 어떤 구성원보다도 더 세심하게 배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다수의 논리를 앞세워 장애인의 교육을 분리하거나 경시해 왔다. 그러나 1960년대를 거치면서 장애인도 일반인과 함께 생활하고, 일반사람들이 누리는 혜택을 동등하게 누려야 한다는 정상화 원리가 강조되면서 장애인의 인권 문제도 다시 생각하게 되었으며, 개별 장애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장애인도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삶을 살 수 있게 하자는 인본주의에 바탕을 둔 인권 존중의 시각이 전파되기 시작하였다. 인본주의는 인류가 스스로 존엄성과 가치를 자각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형성된 실천의지로 인간의 존엄 교육도 바로 이러한 시대적, 사회적, 변화와 맞물려 발전해온 것이다.

3. 통합체육의 개념의 변화

1) 정상화(Normalization)

1960년 이전에 장애인들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격리되어 시설에 수용되었다. 이때까지 장애인을 위한 교육으로 가장 적절한 방법은 분리교육이었다. 그 후 정상화의 원리가 강조되면서 통합교육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정사화의 원리’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보통의 사회구성원들처럼 삶을 정상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논리로, 이는 북유럽의 스칸디나비아 반도지역에서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정상화 원리는 장애인에게도 가능한 한 사회의 주류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에 근접한 형태로 살아가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다. (Nirje, 1969; Wolfensberger, 1972). 이는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으로 결함 있는 사람들이 장애로 인하여 겪는 사회적, 환경적 장애를 최소화함으로써 일반사회에 가능한 한 무난히 적응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수교육 입장에서 정상화의 원리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장애인의 삶의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나 장애인에게 정상적인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구호로 그치고 구체적 내용과 실천 방안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은 명시되지 않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 통합(Integration)

통합이란 물리적인 통합의 의미가 강하며, 장애학생을 일반학생 근처에 배치하여 제한적인 상호작용만을 허락한 상태를 말한다. 다시 말해, 지역사회에서 불리한 입장에 있는 시민, 노인, 장애인, 또래 장애학생 등이 지역 주민의 생활 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물리적, 법적, 행정적 노력을 기울여 대등한 시민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일반학생과 함께 교육을 받고, 정상적인 교육 환경에 배치하는 것을 뜻한다. (대한특수교육학회, 1993). 이러한 통합이 교육적 측면에서 특히 필요하게 된 이유는 장애학생을 일반학교에 배치함으로써 장애학생과 일반학생 간에 사회적 상화작용이 증가하고, 장애학생이 일반학생의 행동을 모방하여 자신의 행동에 바람직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을 분리시켜 교육하는 것은 장애학생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킬 뿐만 아니라, 불평등한 교육 경험을 증가시켜 장애학생에 대한 낙인을 심화시키기 때문에 통합은 중요한 일이다. (Dunn, 1968)

이 통합의 개념은 일반교육에서 장애학생이 일반학생과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이후에 물리적 통합뿐만 아니라, 체계적 통합, 참여적 통합, 상호작용적 통합, 연합적 통합 등의 개념을 가져오며, 특히, 장애학생의 권리를 보장하는 포괄적인 통합의 의미를 만들어 내는 시발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일반학생과 장애학생을 통합시켰을 때의 문제점과 장애학생의 개인차에 입각한 교육문제 등의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3) 주류화(Mainstreaming)

주류화란 1975년에 제정된 미국의 전장애아교육법에서 장애학생을 분리하여 교육시키지 말고, 교육환경에서 제한적인 요소를 최소화하는 정상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을 가능한 한 또래 학생들과 동일한 교육환경에 배치하여 상호작용하게 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특수교육을 받도록 하는 점진적, 단계적 통합교육을 의미한다. 즉, 장애학생과 일반학생간의 단순한 물리적 통합에 그치지 않고, 통합 장면에서 장애학생의 독특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다양하면서도 충분히 마련하도록 강조하는 것이다.(Shelrill, 2004). 장애학생에게 학교 체육 프로그램에서의 이런 주류화 교육은 다양하고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인의 긍정적인 태도와 적절한 배치에 초점을 맞추며, 이때 유연한 프로그램의 계획과 활동변형이 바로 장애학생에게 적절하게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류화는 첫째, 공공시설, 사설시설, 보호시설 등에 있는 장애학생들이 또래 학생들과 함께 최대한 적절하게 교육받도록 하며, 둘째, 장애의 상태가 심각하여 보조기구를 사용하고 서비스를 받으며 일반학급에서 교육받지만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때에는 특수학급, 분리 학교교육, 장애학생을 배제

한 일반교육환경 등에서 교육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Gearherart(1980)는 주류화란, 장애학생이 일반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때, 각 학생의 교육적 욕구에 기초하여 관련 전문인들의 팀 접근에 의해 개별지도계획을 수립하고, 일반학급 내에서 가장 적합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해 다각적 노력을 지속하는 교육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단순히 장애학생을 일반학급에 보내거나 적절한 특수교육적 서비스의 제공 없이 그저 일반학급에 머물게 하거나 장애가 중중인 학생을 위한 시설이나 특수학교를 줄이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Eichstaedt 와 Lavay(1992)는 주류화는 종종 제한환경의 최소화(LRE)라는 말과 유사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장애학생들이 또래 학생들과 통합된 시설에서 교육 서비스를 제공받는 실천의 장이며, 이것은 장애유형과 정도에 관계없이 가능한 언제든지 모든 학생들이 함께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분리된 특수학급에 편성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고 하였다.

한편, Dohrmann(1991)은 일반체육에서 주류화의 단점을 지적하면서 “나는 장애학생들이 일반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해 원래의 분리학교로 다시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초등학교 교사들로부터 많이 듣고 있다. 특히, 중증 장애학생에게는 주류화가 성공적이지 못하다. 그러므로 중증 장애학생의 교육배치는 제고해 보아야 한다.” 하고 말하고 있다. 비록, 주류화가 중증 장애학생의 교육에는 별로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지만 대부분의 장애가 경중인 학생에게는 또래 학생과 함께 체육수업에서 교육을 받고 상대방을 알 수 있게 하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주류화의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주류화는 첫째, 제한 요소가 최소인 환경에서 각 학생에게 가장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며, 둘째, 현실적인 명칭보다는 오히려 교육적 요구의 평가를 바탕으로 학생을 배치하는 것이고, 셋째, 일반교육환경에서 장애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일반교사에게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넷째, 장애학생들이 교육기회를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을 하나로 묶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Block, 2000).

4) 일반교육 주도의 특수교육(Regular Education on Initiative)

일반교육 주도의 특수교육은 1986년 미국 특수교육국의 차관보였던 Medeline Will이 처음 사용하였으며, 1990년 미국장애인교육법(IDEA) 공법 101-476이 제정되면서 등장하였다. Will은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이 분리된 이중 교육구조는 장애가 경중인 학생에게는 효과적이지 못하였다고 언급하면서, Will은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의 새로운 합병을 지지하며 전통적인 특수교육 교실의 축소를 권장하였다. 이것은 장애학생을 일반학교 교육에 통합시킨 결과, 그들이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좀 더 적극적인 일반교육 주도의 특수교육이 필요했으며, 이는 주류화가 그 실천 관점에서 교육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일반교육 주도의 특수교육이라는 새로운 특수교육 전달체계가 대두되면서 80년대 후반부터 주류화의 개념은 퇴조하고, 특수교육은 분리교육에서 단계적 통합을 거쳐 완전통합을 지향하는 단계로 발전해 가고 있다. 이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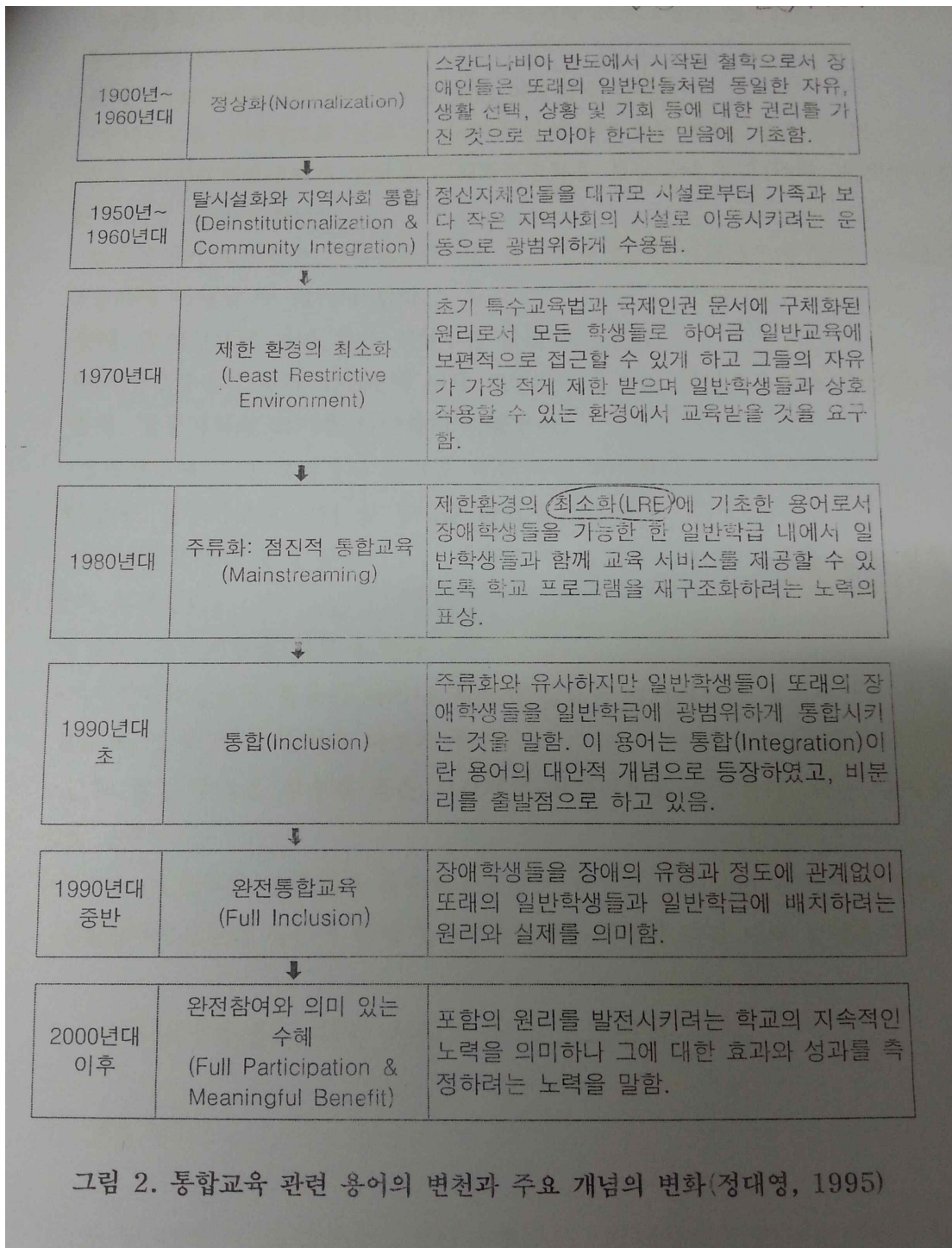
인해 최근에는 일반교육과 특수교육간의 기본적 체제의 벽을 허물어 버리고 상호제휴 및 변환을 강조하면서 좀 더 적극적이고 광범위한 통합교육의 개념으로 완전통합(Full Inclusion)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국립특수교육원, 1994). 이런 특수교육의 통합교육 개념의 변화에 따라 특수체육에서도 일반 체육 주도의 특수체육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이 용어는 일반교육 주도의 특수교육 개념과 유사한 개념으로서, 일반체육교사와 특수체육교사가 일반학생과 장애학생의 체육을 공동으로 책임지고 교육을 시킨다는 뜻이다. 즉, 일반체육 주도의 특수체육은 장애학생에게도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반학생과 동등하게 상호작용을 하게 하여 체육수업을 하자는 것이다.

5) 완전통합(Full Inclusion)

완전통합이란 1990년 일반교육 주도의 특수교육이라는 용어가 나오게 된 시기와 유사하며, 장애학생을 처음부터 또래들과 함께 통합시키자는 것이다. 다시 말해,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환경에서 장애와 능력에 관계없이 각 개인의 요구가 충족되는 교육을 받도록 하는 철학을 반영하기 위해 사용된 용어이다. 이는 장애학생에게 일반교사와 특수교사가 공동으로 책임지고 일반교육 주도의 특수교육을 실시한 결과, 그래도 장애학생의 교육에는 많은 문제점과 어려움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완전 통합이란 장애학생을 교육시킬 때 처음부터 연령,가정환경,장애유형,장애정도,학업상태 등을 객관적으로 검사하여 일반학급에 배치하고 교육하면서 문제점을 나타날 경우에만 그 학생에게 맞는 교육배치를 다시 실시하여 교육시키자는 뜻이다. 즉, 장애학생을 처음부터 일반학교에 가장 적합하게 교육배치를 하고, 그 교육배치 내용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가장 알맞게 제공하되 장애학생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할 때에는 필요한 만큼 분리교육을 시킨다는 뜻으로선 통합교육 후 분리교육을 의미한다. 더 포괄적인 용어로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반체육 교사들은 장애학생을 특수체육 프로그램에 배치하여 교육을 시킬 때 혼란스러움을 느낀다. 일반체육 주도의 특수체육 개념이 경증 장애학생을 위해 개발된 것이지 중증 장애학생을 위해 만들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 교육부에서는 경증과 중증 장애학생을 위해 모든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으나, 지금도 중증 장애학생을 교육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즉, 중증 장애학생은 일반학생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일반학생 역시 장애학생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 중증 장애학생을 교육시킬 때에는 분리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것은 완전 통합에 문제점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특수체육 분야에서도 통합체육을 찬성하기도 하고, 반대하기도 한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완전통합이 장애학생의 교육에 있어 장애와 비장애의 구분을 배척하고, 장애학생의 육에 제한환경의 최소화의 연속성 교육을 이어받아 어릴 때부터 통합교육을 시킬 것을 명시하고, 특수체육에도 일

반체육 주도의 특수체육 개념을 사용하여 장애학생의 교육을 한층 높이는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완전통합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의 문제점, 그리고 분리교육에서의 문제점 등은 여전히 미 해결책으로 남아 있어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이 미국의 통합체육과 관련된 용어 및 주요 개념의 변화를 시대별로 요약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 통합체육 프로그램의 실제(예)

1) 지체장애학생을 위한 통합체육 프로그램 구성 시 고려사항

특수체육교사는 지체장애학생을 위한 통합체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① 지체장애학생의 장애정도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 장애정도를 구체적으로 알고 그 수준에 맞게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② 지체장애학생에게 알맞은 신체활동종목을 선정해야 한다. (특히, 신체활동종목을 변형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 일반학생이 실시하는 신체활동 종목을 참고하여 지체장애학생에게 맞게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변형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장애정도에 따라 참가 인원수를 달리 적용한다.

- 지체장애학생의 참가 인원수에 따라 일반학생의 참가 인원수도 다르게 적용한다.

④ 활동지역의 크기를 다양하게 사용한다.

- 장애정도에 따라 경기장의 크기를 축소 혹은 확대한다.

⑤ 운동기구의 크기 및 무게를 다르게 적용한다.

- 지체장애학생이 쉽게 운동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크기와 무게를 운동 상황과 종목에 따라 달리 적용한다.

⑥ 경기시간을 다르게 한다.

- 지체장애학생들이 힘들어 하거나 지치지 않도록 경기시간과 휴식시간을 적절히 부여한다.

⑦ 승부결정방식을 다르게 한다.

- 승부결정방식은 점수제 혹은 시간제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혹은 즐거움을 느끼는데 주안점을 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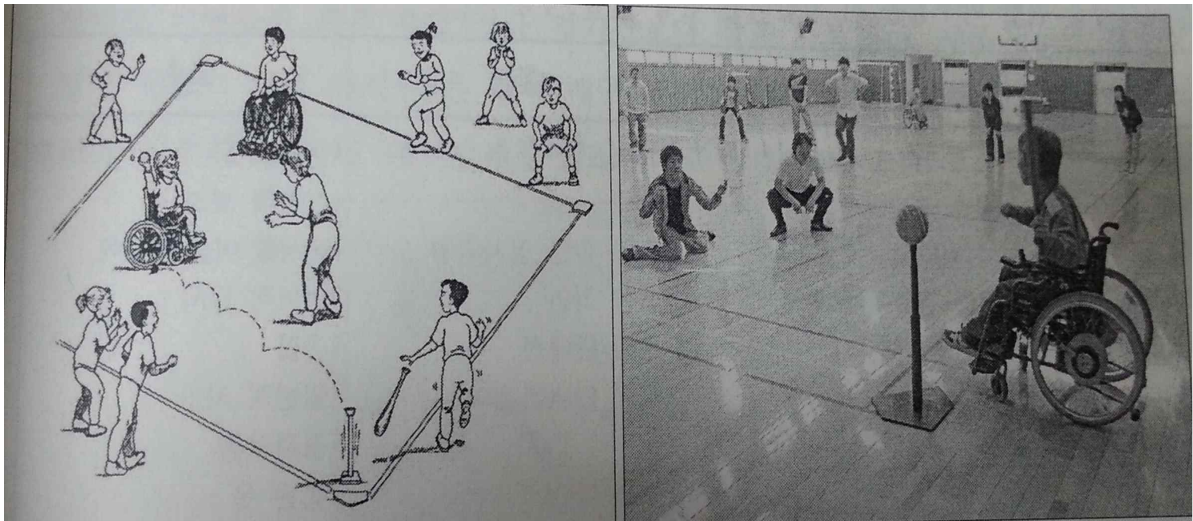
⑧ 체육수업 상황에서 특수체육교사는 탁월한 임기응변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 지체장애학생들의 욕구에 맞게 특수체육교사는 적절한 순간 대처 능력을 길러야 한다.

2) 지체장애학생을 위한 통합체육 프로그램의 실제

[변형야구]

- ① 참가대상 : 비장애인학생, 지적장애학생, 지체장애학생(뇌성마비, 척수장애, 절단장애 등), 청각장애학생이 함께 참가
- ② 경기종류 : 단체경기
- ③ 장 소 : 체육관 혹은 강당(농구장의 모서리를 이용하여 베이스를 만듦)
- ④ 경기목표 : 변형야구를 통해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의 자립심, 협동심, 팀워크 등을 함양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⑤ 경기방법

- 준비물 : 호각, 티볼받침대, 정구공, 비치볼, 탱탱볼 등
- 인 원 : 한팀은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 장애학생들의 장애영역과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실시한다.
- 작은 탱탱볼을 티볼 받침대에 올려놓고 타자는 플라스틱 방망이를 휘둘러 공을 맞춘 후 1루로 뛰어가는 것이 원칙이나, 뺄 수 없는 중증 장애학생의 경우에 공을 굴린 후 대주자를 이용하여 1루로 달리게 한다. (타자에 따라 반드시 방망이가 아니더라도 손이나 발로 공을 찬 후 1루로 달려갈 수 있게 한다.)

⑥ 경기규칙

- 장애영역과 장애정도에 따라 방망이, 손, 발 등으로 공을 치거나 찰 수 있다.
- 가능한 티볼받침대를 사용하여 방망이로 치게 한다.
- 비장애인 학생은 1루로 뛰어갈 때, 뒤기보다는 속보로 걷게 한다.
- 공이 떠서 홈베이스에서 2m 이상 넘어가지 않으면 파울로 간주한다.

⑦ 유의사항

- 양 팀의 선수 구성 시 장애영역과 정도가 비슷한 수준이 되도록 한다.
- 비장애학생들에게는 신체 부위 사용의 범위를 축소하고 장애학생들에게는 확대한다.
- 공에 맞아도 아프지 않는 정구공, 비치볼, 탕탕볼 등을 사용한다.
- 휠체어를 탄 중증 장애학생들에게는 대주자를 사용하여 뛰어가게 한다.
- 승리보다는 즐겁게 참여하는데 중점을 둔다.

⑧ 경기의 효과

- 순발력, 평형성, 민첩성 등을 발달시킨다.
- 책임감, 협동심, 팀워크 함양에 도움을 준다.

■ 장애학생을 위한 야구활동 시 일반적인 변형 지침 사항

장비	규칙	환경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리나는 공 •청각효과 공 •밝은 색 공 •촉각효과 공 •소리나는 공 •너프볼(nerf balls) •윙플볼(wiffle balls) •베이스 워 종 •베이스 워 부저 •라디오 •팬 •배팅 티 •가벼운 배트 •평평한 베이스 •매우 부드러운 공 •큰 공 •가벼운 공 •색깔 있는 공 •다른 사이즈의 글러브 •작은 글러브 •더 부드러운 공 •더 가벼운 공 •벨크로공(velcro balls)과 글러브 •테더공(tetner balls) •큰 글러브 •큰 베이스 •안전한 베이스 •할멧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트라이크 수의 결정 •공수 교대의 결정 •의대에 5명 배치 •배팅 티에서의 히트 •바닥에서의 히트 •태그아웃 규칙 삭제 •베이스에서의 태그아웃 •그라운드 패스 •시간제한 •경계선 제한 •공 던져 주자 아웃시키기 •협력 대 경쟁 •동료가 공 놓아주기 •대주자 •2루타까지 허용 •공간제한 •매달려 있는 공 때리기 •플라이아웃 또는 바운드아웃 •더블플레이 규칙 삭제 •모든 포지션에서의 플레이 •기본적인 규칙 •9 아웃 •티 볼 •5 스트라이크 아웃 •항변 불가능 •두 번의 투수 후 필드플레이 •삼진아웃 규칙 삭제 •스트라이크 없이 3번의 스윙 가능 •안전한 규칙 •공 패스 •점수판 사용 •점수카드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이드 선 •배팅 •카펫 깔린 정사각형 •배팅 라인 •촉각 안내선 •청각 안내선 •콘 •로프 •베이스 뒤에서 박수 •밝은 라인 •개방된 공간 •성공지향 •격려 촉진 •지속적인 중재자의 설명 •포장 바닥 위 •선수 수 •짧은 베이스 간격 •더 많은 내야수 •음악 •베이스 수 •짧은 베이스 코스 •가까운 투수 마운드 •짧은 펜스 •작은 공간 •흰색 베이스라인 •베이스에 마커 표시 •실내 또는 실외 •타격시 안전망 사용 •헤를 등진 상태 •주의산만 제거 •시선 접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료교수 •신체적 보조 •판서를 이용한 교육 •언어적 단서 •근접 •일반적 사인 •점자사용 •밝은 옷 •대면 지도 •일대일 지도 •과제분석 •점감법(slow down) •시범 •피드백 •간접 •직접 •나란히 달리기 •상황중계 •신호 언어 •과제유형 •몸통 회전하기 •수신호 •공이 튀어나가지 않고 계속 받기 •지속적 관계 형성 •문제 해결 •이름 부르기 •따라다니며 지도

[변형배구]

- ① 참가대상 : 비장애인학생, 지적장애학생, 지체장애학생(뇌성마비, 척수장애, 절단장애 등), 청각장애학생이 함께 참가
- ② 경기종류 : 단체경기
- ③ 장 소 : 체육관 혹은 강당 (정규 경기장보다 작은 가로5m, 세로 5m인 배구장)
- ④ 경기목표 : 변형좌식(혹은 입식)배구 경기를 통해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상대방을 이해하고 심신의 발달 및 대인관계를 향상시키는데 있다.



⑤ 경기방법

- 준비물 : 호각, 풍선, 비치볼, 탱탱볼, 네트, 지주 등
- 인 원 : 한 팀은 6명으로 하지만 상황에 따라 1~3명을 가감할 수 있다.
- 공은 풍선, 비치볼, 탱탱볼 등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사용한다.
- 서브는 전위 가운데 선수가 서브하며, 언더핸드 서브로 한다.
- 리시브하는 선수는 신체 어느 부위를 사용하여 공을 받아도 된다. 이때 중증 장애학생에게는 홀딩을 허용한다.
- 선수당 서브는 2개이며, 상대팀에게는 서브가 넘어갔을 경우 포지션을 바꾼다.
- 공이 자기편으로 넘어왔을 때 3회 터치만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5회 터치까지 허용한다.
- 이외의 경기 방법은 배구 경기 방법을 참고한다.

⑥ 경기규칙

- 중증 장애학생에게는 투터치(two touch)를 허용한다.
- 중증 장애학생들에게는 손이나 발 신체 어느 부위를 사용하게 한다.
- 체육교사는 장애유형과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공을 터치하는 신체부위에 제한을 준다.
(예: 일반학생이 오른손잡이일 경우 왼손을 사용하여 경기를 하게 함)

- 한 세트는 15점으로 하며, 3세트 2선승제로 한다.
- 이 외의 경기규칙은 일반 배구 경기규칙을 참고한다.

⑦ 유의사항

- 장애학생의 병력 및 특성을 파악하여 경기 진행시에 참고한다.
- 양 팀의 선수 구성 시 장애유형과 장애정도가 비슷하나 수준이 되도록 한다.
- 비장애학생들에게는 신체부위 사용의 범위를 축소하고 장애학생들에게는 확대한다.
- 승리보다는 즐겁게 참여하는 중점을 둔다.

⑧ 경기의 효과

- 근력 및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심폐지구력, 순발력, 민첩성, 교차성의 발달을 가져온다.
- 비장애학생과 장애학생이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 장애학생을 위한 배구활동 시 일반적인 변형 지침 사항

장비	규칙	환경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구공 •큰공 •작은 공 •가벼운 공 •비치볼 •풍선 •무거운 공 •트레이너 공 •높은 네트 •소리나는 공 •휠체어 •밝은색 네트 •벽 •스파이크 머신 •팔 받침대 제거 •로프 •벤치 •색깔 있는 공 •밝은색 테이프 •접수카드 •호루라기 •과제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대없이 •원바운드 •투바운드 •히트 대신 캐치게임 •볼 다루며 걷기 •세 번의 패스 •네 번의 패스 •무제한 패스 •네트 근처에서 서브 •제한공간에서 역할분담 •협력 대 경쟁 •1회 이상 히트 •모든 사람의 서브 필수 •서브의 변형 •전위에서 기술 덜 사용 •로테이션 없이 •패스 전 이름 부르기 •피하는 사람을 위해 점프금지 •스파이크 금지 •블로킹 금지 •짧은 서브 라인 •동료가 캐치 가능 •원하는 만큼 히트 가능 •공 휴대 금지 •편칭 볼 금지 •어디서든 서브 가능 •오버핸드 또는 언더핸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촉각 경계선 •시각 경계선 •주의산만 제한 •성공지향 •공간제한 •한 번에 한 게임 •방법변형 •모든 학생들의 도움 •의사소통 •스테이션 •벽배구 •평평한 바닥 •비디오 사용 •경계선 축소 •라켓볼 코트 •표면 안쪽 유지 •바닥 재질 표시 •사인 또는 배너 지정 •실내 또는 실외 •한 번에 많은 게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체적 보조 •사인 가르치기 •동료교수 •일대일 지도 •과제분석 •점감법(slow down) •시범 •피드백 •과제유형 •개인 지도 •일반적 신호 •모델 •계속 격려 •명령식 스타일 •인지적 단서 •언어적 설명 •편안한 분위기 •따라다니며 지도 •문제해결 •직접 지도 •언어적 분석 •간접적 지도 •상호 지도 •포괄적 지도

-참고문헌

국립특수교육원(1994). 특수교육연구. 서울: 문영사

김성애(2002a). 구성주의와 탈산업사회교육. 탈산업사회와 특수교육. 서울 : 도서출판 특수교육. 65-89

김승국(1999). 장애학생의 통합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정대영(1995). 개별화 교육의 이론과 배경. 제2회 국내 세미나.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수립과 실천방안. 경기: 국립특수교육원.

2011 장애인스포츠지도자 연수교재

언어장애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개념



팀 명	재활치료2팀
일 시	2014년 4월 12일 17:30~18:30
발표자	권윤해
장 소	상담실2



언어장애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개념

1. 의사소통 : 사람간에 생각이나 의견, 감정등의 의사를 교환하는 것으로,
구어적(verbal) - 언어학적인 것(구어, 문어, 체어)
비구어적(ninverbal) - 비언어학적인것(의사소통 공간, 운동감각, 소리)
2. 말(speech) : 의사소통을 위해서 필요한 근육활동으로 언어학적인 기호를 조음 및 음향학적으로 산출하는 것을 의미(조음(articulation), 발성(phonation), 유창성(fluency))
3. 언어(language) : 세상의 사물, 사건, 생각 등을 표현하기 위해 임의적으로 사용하는 기호로, 주로 대뇌과정 이라고 생각하면 됨
청각(auditory), 문자(graphic), 또는 몸짓에 의한 상징체계
 - 음운론(phonology) : 한 언어에서 음소들이 결합하는 체계, 또는 규칙 (기본단위 : 음소(phoneme))
 - 형태론(morphology) : 한 언어에서 형태소들이 결합하여 낱말을 형성하는 체계 또는 규칙
(기본단위 : 형태소(morpheme) 및 낱말)
 - 구문론(syntax) : 낱말의 배열에 의하여 구, 절, 문장을 형성하는 체계 또는 규칙
 - 의미론(semantics) : 말의 의미(내용)나 이해와 관련되는 언어의 영역
 - 화용론(pragmatics) : 실제 상황적 맥락에서 화자와 상대방의 의해서 쓰이는 말의 기능과 관계되는 영역
 - * 음운론의 발달 : 고진폭빨기, 아동지향어&모성어, 소리내기
 - * 의미론의 발달 : 과소일반화, 과잉일반화, 한귀절말(예:아뜨), 의미할당에서의 제약성
 - * 통사론&형태론 : 주체화표현, 조사, 낱말조합, 전보식문장, 부정적 증거, 평균 발화길이
접속과 복문, 내포문...등

I. 언어발달과정

1. 언어이전단계
 - 1) 말소리의 변별능력
 - 0~2개월 : 말소리의 높이(pitch)와 같은 초분절적 특성에 대해 변별(억양구분의 기초능력)
 - 2~4개월 : 목소리 변별 예) 친숙한/낯선 목소리, 화난/다정한 목소리, 남/녀

목소리

- 6~8개월 : 억양패턴을 변별, 그 패턴을 목소리로 모방
- 8~10개월 : 친숙한 음소나 억양패턴을 구분

2) 말소리 산출능력의 발달

① 발성단계(phonation stage, 0~1개월)

·소리내기 : 반사적 울음소리, 칭얼대는 소리, 그 외 생리적인 소리(기침, 트림, 재채기, 딸꾹질)

·발성과정에 의해서만 산출(비의도적인 반사적인 소리로 조음과정을 거치는 말소리와 구분)

② 초기 웅얼이단계(cooing stage, 2~3개월)

·말소리의 가장 초보적인 형태인 '웅얼이'가 나타남

·후설모음/u와 비슷한 소리 → 자음과 유사한 소리로 발전

·소리장난을 할 수 있는 시기로 소리를 많이 내는 시기에 해당함

·모음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고 자음에 있어서도 뒷소리가 많이 남

·특정언어권의 음소들이라기 보다 '언어보편적인 소리'로 성인들이 따라하기 힘들

* 울음 → 사회적 미소나 웃음(2개월) → 입안 쪽에서 소리가 만들어짐(3,4개월)

→ 자기의 소리를 가지고 놀(4~7개월)

③ 음성놀이단계(vocal play stage, 4~6개월)

·유희적인 음성놀이 - 자신의 구어기관을 탐험하는 행동을 많이 함

·이 시기에 가장 아이를 동기화시키는 것 : 자극

·이때의 유희적 음성놀이가 아동의 말소리 발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

④ 중첩적 웅얼이단계(canonical babbling stage, 7~10개월)

·음절이 확실하게 나타남

·후설모음이 없어지고, 전설모음과 자음이 겹침(양순음, 치조음 / 파열음, 비음이 많이 나타남)

·자음&모음이 섞여서 반복된 음절을 이룸(빠빠빠, 마마마) ⇒ 음절의 반복

·시간, 음성적 조절이 좀더 규칙적이며 성인의 말소리와 비슷한 소리들이 주로 차지함

·특정 언어권의 음소들로 제한되는 경향 有

⑤ 변형적인 웅얼이단계(Variegated babbling stage, 11~12개월)

·음소가 다양하게 변함(예: 아두띠따) : 뒤쪽 자음들도 습득

·억양 : 성인의 구어와 유사해져 마치 단어나 문장을 말하는 것 같이 느껴짐

·True speech가 나타남

2. 구어단계

1) 초기낱말단계(1:0-1:6세, 12-18개월)

2) 음소발달단계(1.6-4세)

·언어 내에서 필요한 음소를 습득해 가는 시기

·음소사용에 일관성이 없는 경우 多 : 같은 음소라도 어떤 때는 정확하게, 어떤 때는 부정확하게

3) 음운체계의 안정단계(4-8세)

·자기가 습득한 음소를 변별하고 구분해 일관성 있게 음소를 발음하는 시기

* 각 음소의 습득 및 숙달, 그리고 출현발달단계

:출현연령단계(25-49%)→관습적 연령단계(50-74%)→숙달연령단계(75-94%)→완전습득연령(95-100%)

음소발달단계

연령	음소 발달 단계			
	완전습득연령 95~100%	숙달 연령 75~94%	관습적 연령 50~74%	출현 연령 25~49%
2;0~2;11	ㅍ, ㅁ, ㅇ	ㄱ, ㅃ, ㄴ, ㄷ, ㄸ, ㅌ, ㄱ, ㅋ, ㅋ, ㅎ	ㅈ, ㅊ, ㅊ	ㅅ, ㅆ
3;0~3;11	ㄱ, ㅃ, ㄸ, ㅌ	ㅈ, ㅊ, ㅊ, ㅆ	ㅅ	
4;0~4;11	ㄴ, ㄱ, ㄷ	ㅅ		
5;0~5;11	ㄱ, ㅋ, ㅈ, ㅊ			
6;0~6;11	ㅅ			

* 개별음소의 조음발달 : 비음→과열음→과찰음→유음→마찰음 (이규식, 권도하 1979)

* 음소발달

· 양순음&비음 : 2-3세에 완전습득

· /ㄱ/계열, /ㄷ/계열 : 3-4세 완전습득

· /ㄱ/계열 : 5-6세에 완전습득

· /ㅈ/계열 : 2-3세에 관습적발달, 3-4세 숙달, 4-5세가 되어 완전습득

· /ㅅ/계열 : 모든 음소들 중 가장 늦게 습득(6-7세 완전습득)

· ㄴ, ㅎ ; 개인차 多 (ㅎ - 숙달기간이 매우 오랫동안 경과되는 것으로 나타남)

· 조음위치상 : 앞 → 뒤쪽

· 조음방법상 : 과열,비음 → 과찰 → 마찰

· 초성에서 오는 소리 → 받침소리

(예외: ㄴ - 종성에서 먼저 나타나기 시작, 초성에 오는 /ㄴ/은 외래어가 多)

2) 첫낱말기(1년 ~ 1년 6개월)

① 의미

- 첫날말= 아이가 흔히 접하고 필요로 하는 것 중에서 선택됨
- 구체적인 참조물이 있는 사물이나 사람인 경우가 多 : 맘마, 물, 까까, 엄마, 이모...등
- 동작이나 상태를 서술하는 것도 있다. : 줘, 가, 앉아, 없다. 있네, 됐다...등
- 1년 6개월 정도 : 보통 50-100개 정도의 낱말이나 어구를 표현 가능
- '의미의 과잉확대(overextension)현상'을 보임 : 멍멍 - 강아지, 고양이, 흰 솜..등 확대해서 사용
 - 이유 : 의미자질들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 멍멍이의 동작기능보다 북실북실한 지각특성에 의존했기 때문, 정확한 대표성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등

② 첫날말기의 화용면

- 특정한 상황에서 다양한 의사소통 기능들을 언어로 표현하기 시작
 - 예) 요구하기, 이름하기를 매우 빈번하게 사용, 거부하기, 부르기, 따라하기, 대답하기...등도 사용
 - 매우 자기 중심적 : 자신의 관심사에 대해 이름하기, 서술하기 시작
 - 매번 응답하지 않는 특성도 有
 - 1세 7개월 경 : 서술하기의 발전이 두드러짐 예) 아퍼, 내려, 버려, 뜨거워...등
- 3) 낱말조합기(1년 6개월전후 ~ 만2세)

① 낱말조합 특성

- 낱말조합의 시작 : 1년 6개월 전후(본격적 낱말조합의 사용 : 만2세)
- 초기낱말조합기 : 조사나 어미변화가 적음, 명사, 형용사, 부사 중심의 두 낱말 조합이 빈번
 - 주어, 목적어, 서술어, 부사어 중 두 가지 결합이 빈번 예) 맘마 줘

② 문법형태소 : 제한적 문법형태소의 사용-생산성이 높지 않음

- 약간의 종결어미 탐색
 - 조사‘가’,‘는’, 보조용언‘-줘’를 사용 (한국어에 예민한 특성 보임)

③ 낱말조합의 의미면

- 행위자, 대상, 행위, 실체, 수식, 소유자, 소유물, 장소, 부정의 개념중심으로 낱말조합 이루어짐
 - 낱말습득에 가속도가 붙음 (분류의 원칙, 사물의 영구성 이해)
 - 만1세 6개월 -5세 : 하루에 평균 5개에서 9개 정도의 새 낱말 습득

④ 낱말조합기의 화용면

- 낱말조합초기 : 요구하기, 서술하기, 거부하기, 이름붙이기 위해 낱말조합 多
 - 예) 물줘, 아가 이빠..등
- 요구하기의 기능 : 두돌을 전후한 아동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
- 행위 중심의 행동요구하기가 나타나고, 소유물이나 필요한 물품 요구하는 경우 有

4) 기본문법탐색기(2세 후반~3세)

① 구문구조(2세 후반~3세)

- 2세 후반기 : 언어표현이 한국어 문법특성에 맞추어짐
- 구문구조에서 '명사구, 동사구' 빈번하게 사용
- '거'를 중심으로 관형절의 발달 활발
- 동사, 형용사를 나열하여 긴 문장 만들
- 3세 아동
 - 우리말에 있는 기본 구문구조를 활발하게 사용
 - 주어+목적어+서술어, 주어+부사어+서술어, 주어+서술어+서술어, 주어+주어+서술어+서술어+{주어, 목적어}+서술어의 구조를 대화에서 빈번하게 사용

- 아직 통사구성상의 중요한 성분이 빠지는 경우 종종
- 부정어와 관련되 실수, 어순실수가 多 예) 안다먹었다. 안공부해...등
- 문장성분을 빼먹거나, 무리하게 어순을 바꾸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多

② 기본문법탐색기(2세 후반~3세)의 문법형태소

- 제한된 범위이나 풍부한 문법형태소를 탐색, 특히 여러 종결어미 사용 예) '-고'
- 주격조사, 여격, 공존조사를 중심으로 조사의 생산적 사용관찰
- 관형형 어미를 시작으로 명사구 확장, 과거시제나 추측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의 사용 활발
 - 관형형어미나 연결어미의 사용이 나타남 예) 고,-니까,-서,-면....
 - 바른 문법형태소의 사용, 실수도 나타남 예) 주격조사의 과잉일반화 - 곰이가, 삼촌가...등
 - 덩이식 문법형태소 표현이 多 예) 바람부네 - 바람부어네, 엄마없고-엄마없어고...등

③ 기본문법탐색기(2세 후반~3세)의 의미면

- 표현 낱말 수 많아짐 : 새 말소리 연결체와 참조물을 재빠르게 연결함
- '크다, '작다'를 중심어로 인지적 부담이 포함된 관계낱말 습득 시작
- 자신이 알고 있는 낱말로 창의적인 낱말표현을 하는 일이 빈번
 - 예) 과일가게 - 딸기집, 마늘로 만드는 마계뜨 빵 - 만들어빵...등
- 의미 전달이 순조롭지 않음 : 듣는이가 배경정도를 많이 알고 있어야 함, 생략된 부분 추측해야 함

④ 기본문법탐색기(2세 후반~3세)의 화용 : 대화자 특성

- 만2세 : 자기의 관심사를 다른 사람이 따라가 주어야 매끄러운 대화 가능
- 3세 : 점차 대화자를 고려함, 아직 자기중심적인 입장에서 말을 함
 - 집단적 독백현상을 보이기도 함 (각자의 대화 주제에 대해 이야기)
 - 집단 속에서 자기의사표현 잘 못하는 경우 종종

과거, 눈앞에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언어적 표현 매끄럽지 못한 경우 多
 - 30개월 전후가 되면 유창성에서 변화가 有, 언어표현 길이 길어짐, 가끔 비유
 창성 관찰됨

5) 기본문법세련기(4,5세)

① 문법(4,5세)

- 관형절이 보다 긴 복문속에서 사용
- 한문장안에서 서로 다른 주어와 서술어가 두 개 이상 사용되는 경우 종종 有
- 4,5세가 지나면 긴 문장, 발화를 대화에서 사용
- 5세 : 우리말에 있는 절을 자유롭게 사용
- 관형절, 서술절, 인용절, 부사절의 사용이 다양해짐 (명사절 사용 드물다)
- 접미사를 이용한 피동이나 사동 서술 표현이 가끔 대화에서 사용
- -지다, -게 하다는 구조를 활발하게 탐색(사동, 피동의 실수를 함)
- 높임 '요'를 사용, 4세 아동의 목적격조사 '를'의 사용 빈번(2세 -주격조사)
 인용의 '-고'가 종종 등장
- 관형어를 만드는 경우 적절한 시제 표시

② 기본문법세련기(4,5세)의 의미면

- 빠른 속도의 낱말수 증가 예) 유치원생활, 책보기..등 언어경험을 통한 다양
 한 낱말습득
- 관계낱말의 습득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짐 예) 길다-짧다, 넓다-좁다...
- 상대지시적 표현을 자유롭게 사용 예) 이/그/저, 오늘/내일/어제, 오다/가다
- 낱말을 정의하는 능력발달 시작 (단편적 경험이나 지각적 특성에 의해 낱말을
 정의함)

③ 기본문법 세련기(4,5세)의 화용 및 담화 : 대화

- 자기주장과 반응 적절, 적극적인 대화자가 됨(언어탐색의 장을 넓혀감)
- 과거의 일을 표상하거나, 자신의 의도를 효율적으로 상대방에게 전달(5세)
 ↔ 4세 : 과거경험에 대한 서술은 가능하지만 시간적, 논리적 순서가 맞지 않은
 경우가 종종 有

④ 기본문법세련기(4,5세)의 담화 : 이야기

- 이야기가 논리적으로 순서 지어져 있다는 것을 이해 (이야기 내용 : 단순한 행
 동기술로 이루어짐)
- 생략이나 불분명한 표현 多 : 듣는 사람이 이해 못하는 경우 종종
- 직접화법을 써서 이야기의 언어구조를 단순화함
- 4세 : 논리적, 시간적, 순서가 불분명한 경우 多, 불분명하기는 하나 직관적으
 로 이야기 내용 연결

⑤ 기본문법세련기(4,5세)의 실수

- 형태소가 음운, 통사와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형태론적 실수 종종

- ‘-으’ 삽입현상 : 씻으는거/씻는거, 잡으자/잡자, 놀으구/놀구..등
 - 복합문의 경우 어미사용이 부적절한 경우 가끔 관찰 예) 내가 아프더니 아빠가 오셨지...
 - 세분화된 형태소 분절을 하기 위해 가끔 실수
 - 예) 그럼 그 살에 사주세요, 아기 세 개가 있었는데...
 - 5세 : 문법실수의 빈도가 매우 낮아져, 우리말 문법의 기본이 갖추어져 있음을 느낌
- 6) 고급문법기(학령기, 6-7세)

① 문법

- 우리말 문장의 구문구조와 문법형태소의 복잡한 세부적 특성 습득
- 복문에서의 절의 사용 발달
- 특정 문법형태소의 한정사용, 시제조건 등을 만족하는 절을 산출 함

② 고급문법기(6-7세)의 의미면

- ‘한자어+하다’류의 사용 증가
- 추상적인 명사의 사용 증가 (어른스런 대화함)
- 다양한 부사어가 대화에서 사용, 각 낱말이 뜻의 보다 어른의 의미에 가까워짐
 - 예) 그때 (막연한 시간에서 구체적인 특정시간으로...)
- 상위어나 하위어를 사용, 객관적인 낱말서술 가능

③ 고급문법기(6-7세)의 대화특성

- 듣는 사람의 입장 고려하면서 대화하는 여유 보임
- 다양한 담화적 결속장치 사용, 참조 및 추론능력이 보다 세련화 됨
- 연결어미의 사용이 매끄러워짐
- 한 낱말의 부적절한 중첩사용 줄어들음
- 학령기의 언어발달 = 읽기발달과 밀접하게 연관

3. 언어의 발달 - 인지적측면 / 사회적측면 / 언어학적측면

1) 인지적 측면 : 감각-운동기의 인지적 기초능력(0-2세, 대상영속성)

·감각-운동기에 언어가 사물을 상징하고 언어를 사용 하므로써 자신의 의사를 손쉽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됨

·물리적, 감각적 경험을 통해 사물을 인식 → 상징적 사고가 생기기 시작 → 놀이&언어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시작

** 인지영역 중 언어나 의사소통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영역

㉠ 수단-목적개념 : 문제해결을 위한 수단(도구)로 여러 사물을 사용하는 능력

㉡ 인과성 : 다른 사물이나 사람이 어떤 행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
사람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발달과 밀접 예) 놀아줘!!!

㉢ 사물영속성 : 사물이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이나 즉각적인 현상과는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이해

㉔ 모방력 : 동작이나 음성을 사용하여 제시된 행동을 모방할 수 있는 능력

㉕ 도식 : 다양한 기능과 관련하여 사물을 구별하여 행동할 수 있는 능력

예) 사물-사물기능관계를 아는 것

㉖ 상징놀이 : 어떤 사물이나 행동을 다른 사물이나 행동으로 상징화 할 수 있는 능력

예) 실제사물을 상징으로써 사용 - 빈컵이 놓여있을 때 마시는 흉내는 내며 카~라고 소리냄

① 수단-목적 및 인과성 개념

·수단-목적 : 문제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여러 가지 사물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

12-18개월 : 자신의 목적을 위해 도구사용(막대, 끈...등)

18-24개월 :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 의사소통기능(설명하기, 요구하기, 명명하기...등을 나타냄)

·인과성 개념인식 : 다른 사물이나 사람이 어떤 행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4-8개월 : 자기중심적인 인과성 개념(나=모든 행동의 기본적인 원인)

12-18개월: 다른 사람도 행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음

② 사물영속성 개념

·사물영속성

= 사물이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이나 즉각적인 현상과는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능력

0-1개월 : 시야에서 갖고 놀던 사물이 없어지면 더 이상 찾지 않음

1-4개월 : 고개 돌려 없어진 사물 추적

8-12개월 : 일부 가려진 사물도 전체로 인식 가능

12-18개월 : 완전히 가려진 사물도 그 존재 인식 가능

③ 동작 및 소리 모방력

·동작이나 음성을 사용하여 제시된 행동을 모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

·반사기(0-1개월) : 다른 아기가 울면 따라 우는 경우는 모방보다는 반사행동임

·1-4개월 : 성인이 모방한 자신의 소리나 행동에 대해서 모방가능

·4-8개월 : 아동의 음성 목록에 있는 소리나 동작은 모방가능

·8-12개월 : 새로운 소리나 몸동작도 모방할 수 있음, 단 자신이 자신의 몸동작을 볼 수 있는 것만 모방(손벽치기)

·12-18개월 : 자신의 몸동작을 볼 수 없는 것도 모방

·18-24개월 : 전에 모방한 소리나 몸동작을 기억해 표현

④ 도식 및 상징놀이 개념

·도식의 발달 : 사물을 구별해 내는 데서 시작됨

·상징놀이 : 어떤 사물이나 행동을 다른 사물이나 행동으로 상징화할 수 있는 능력

⑤ 초기어휘발달

·적극적으로 직접 조작해 본 사물에 대한 낱말을 먼저 습득 : 초기 어휘는 아동의 경험과 관련 多

·‘동작이나 조작에 대한 행위어’ > 상태어 예) 명사, 동사 > 형용사, 부사

·의사소통 기능이 높은 낱말 먼저 습득 :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말 예) 비켜, 아니, 싫어, 주세요..등

·지금, 여기.... (‘현재상황’에 대한 말을 먼저 습득) : 과거보다 막 끝낸 행동을 활용

·초기 첫낱말 목록 중 명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예외) 만다린어

·사물의 기능이나 특성을 표현해 주는 것이 중요

예) 선풍기-이건 선풍기야 보다는 빨리돈다, 시원하다

·부정보다는 ‘긍정’을 먼저 습득 예) 큰/작은 보다는 큰/안큰을 먼저 습득, 큰>작은

2) 사회적측면 - 화용적인 면의 강조, 의사소통 의도분석 중요시함

① 초보적 의사소통행동단계(primitive communicative behaviors, 0-3개월)

·초보적 의사소통행동 보임 : 울음, 미소, 눈맞춤...등 - 반사적이나 막강한 의사소통 능력 지남

·일방적 의사소통시기, 아이의 입장에서 생리적, 반사적 반응에 초점 맞춤

·아직 수단-목적, 인과성 개념 형성 ×

: 즉 자신의 행동이 환경이나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인식 못함

예) 엄마가 태엽을 감아준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그것이 멈췄을 때 자신의 손을 뺀어 그것을 잡으려고 하나 엄마를 ‘행위자’로 활용하지 못함

② 목표지향적인 의사소통행동단계(perlocutionary communicative behaviors, 4-7개월)

·자신의 소리내기, 몸짓, 눈맞추기가 성인의 행동이나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됨

·유아의 관심과 행동, 의사소통 신호 : 즉각적인 목표에 한정되어 있음

·사물과 사람의 인식이 확실하게 분리되지 않음 : 장난감을 잡을 수 없을 때 울음으로 성인이 그 물건을 잡아주게는 하지만 성인의 얼굴을 쳐다보거나 그 물건을 요구하는 등 좀더 변별적인 행동은 나타나지 않음

·막연한 관계를 안다. , 아이의 행동 : 환경의 변화를 위해 나름대로 많은 것을 시도

·전의도적, 목표지향적인 행동을 하는 시기

예) 눈길로 관심 있는 물건을 표현, 성인의 눈길을 따라 감
 흥미 있는 행동재연 예) 장난감을 작동시켰다가 멈추면 다시 반복함
 좀더 다양한 소리를 냄 (자음과 모음의 결합 및 반복-중첩적 용알이)
 익숙한 사회적 게임 (예) 짹짹, 까꿍)에 나오는 말에 반응하나 성인의
 과장된 운율패턴, 문맥적 상황에서 단서를 찾는 듯 보임
 습득한 음소나 단어의 범위내에서 성인의 소리나 말을 모방
 말을 못하더라도 소리내기로서 성인과 차례를 돌려가며 소통함

③ 도구적 전환기 행동단계(instrumental behaviors, 8-11개월)

·점차적인 도구적 전환시기로, 미리 계획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분명한 신호를 사용

예) 안아달라고 팔벌리기, 성인의 웃음을 자아내기 위해 우스꽝스런 행동을 함
 ·의도성을 가진 표현시작, 즉 수단-목적관계를 이해함

④ 언어이전의 의도적 의사소통 행동단계(illocutionary communicative behaviors, 11-14개월)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하는 행동
 ·신호를 보내기 이전에 그 신호가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쳐서 어떤 행동적인 결과를 초래하리라는 인과관계를 충분히 이해하는 것을 의미(신호에 대한 인과관계 충분히 이해)

예) 손을 흔들어 인사하는 것 : 빠이빠이

⑤ 언어적 의사소통 행동단계(locutionary communicative behaviors, 14-16개월이후)

·말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의사소통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시기
 ·16개월 전후로 몸짓 또는 몸짓+발성 ⇒ 몸짓+말, 말의 형태로 변화

** 10-18개월 정도에 나타나는 의사소통행위 (Halliday)

·도구적 기능 - 자신의 물질적 필요나 욕구를 채우기 위한 의사소통 행위(물건요구하기 기능)

주세요, 원해요와 같은 의사를 내포하고 있음 예) 자동차 주세요

·조정적 기능 - 다른 사람을 조절 또는 통제하기 위한 의사소통 행위 (행동요구하기, 지시하기)

“하라는 대로 하세요.”와 같은 의사를 내포하고 있음

예) 놀아줘, 안아줘, 열어줘...등

·상호작용적 기능 - 다른 사람과 교류 또는 상호작용을 하기 위한 의사소통 행위 (주고받기기능)

인사하기, 타인을 공통적인 관심이나 활동에 끌어들이기 등의 기능을 나타냄 “나와 너”의 의사를 내포 예) 인사하기, 주고받기

- 개인적 기능 -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의사소통 행위
자신의 감정, 태도, 흥미 등을 표현
“ 저 여기 있어요”와 같은 의사 내포 예) 빠이빠이
 - 발견적 기능 - 환경을 탐구하고 정리하려는 의사소통 행위(정보요청하기)
“ 왜 그런지 말해주세요” 와 같은 의사 내포 예)이거뭐야?
- 왜 그래?
- 가상적 기능 - 가상의 상황을 만드는 의사소통 행위로서
“우리~척해요”와 같은 의사내포

☞ 아동의 의사소통 기능을 다양하게 발달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 아동이 말이나 몸동작으로라도 얼마나 다양한 의사소통기능을 표현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러한 기능을 다양화 시켜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기초 작업임

3) 언어학적 측면 - 언어학적 능력을 기초로 한 언어발달

- 초기 언어습득단계에서는 언어이해력이 언어표현력보다 다소 먼저 발달하다가 발달 단계가 높아갈수록

언어이해력과 언어표현력간의 균형이 동등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아동이 낱말을 습득하는 원리
 - 상관성 원리 : ‘아동은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낱말을 배우게 됨’
 - 변별성 원리 : 상대방에게 필요한 정보를 어휘로 사용함
 - 확장성 원리 : 정신적 표상이 확장되기 때문에 생각을 표현할 언어도 확장할 필요성이 有
 - 반응효율성 원리 : 처음에는 여러 가지 체계사용
⇒ 상대방의 반응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나타나는 즉 가장 효율적인 체계 사용

① 언어이해력의 발달

- ① 1단계 : 말소리 및 초분절 특성에 대한 변별기(0-10개월)
 - 말소리(음소)를 구분, 억양이나 강세 등과 같은 초분절적 특성에 대해 구분된 반응보임
 - 0-2개월 : 음소변별행동 나타남, 음의 높이에 대해서도 변별
 - 2-4개월 : 목소리를 변별 예) 친숙한 소리/낯선목소리, 화난목소리/다정한목소리, 남녀목소리
 - 6-8개월 : 억양패턴 변별, 패턴을 목소리로 모방하기도 함
 - 8-10개월 : 친숙한 음소-억양패턴 구분함

㉞ 2단계 : 어휘-의미적 이해기(10-30개월) - 낱말을 많이 이해함

·초기: 친숙한 낱말이나 간단한 문장에 대해 바르게 반응(문맥, 몸동작, 억양 등 언어와 동반된 단서에 의존함) 예) 엄마가 강한 어조로 “안돼”라고 말하면 행동을 멈춤

· 낱말의 뜻을 이해할 때 사용하는 단서 : 비구어적 단서, 상황적 단서, 준언어적 단서

- 비구어적 단서: 성인의 몸짓, 얼굴표정, 눈길...등

- 상황적 단서 : 크레파스를 끼우면서 하는 말은 끼우자, 치우자로 이해

- 준언어적 단서 : 운율 또는 강세 (목소리 크기, 문장 끝의 올림세나 내림세)

· 12개월 정도가 되면 초분절적 단서 없이도 한낱말을 이해

· 16-18개월 정도: 다단어 문장이해능력 확대-간단한 지시 수행, 문장 의미관계 이해

· 문법형태소, 낱말 배열순서 등 구문론적 지식에 의존하지 못함

· 2세 아동들에게 자주 사용되는 문장이해전략 : 실현가능성 전략

· 어순에 의한 문장이해를 잘 못함 : 어순전략(주+목+서) = 3세 이후에 사용되는 전략임

㉟ 3단계 : 구문-문법적 이해기(30-36개월) : 전체문장이해시기

·문장내에 포함된 문법형태소나 구문구조, 그리고 낱말 배열순서 등에 의존하여 문장이해

·초기 - 동사, 평용사, 부사 등 이해하는 낱말의 품사가 다양해 짐

·후기 - 문장의 어순 등을 이해하게 됨

② 언어표현력의 발달

㉠ 음성발달기(0-10개월) : 용알이 ⇒ 중첩적 용알이 ⇒ 변형적 용알이

·언어습득과 가장 관련 깊은 초기 음성 : 용알이

(용알이의 가장 초기형태: 모음과 비슷한 소리나 목울림소리)

·6-8개월 : 음절에 가까운 소리로 변화함(양순음, 비음, 치조음 등이 모음과 섞여 반복된 음절이름)

·음성발달기 : 아동이 자신의 발성 및 조음기관을 탐험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키워나가는 중요한 시기

㉡ 한낱말 발화기(10-14개월)

·남아가 여아에 비해 한낱말 발화가 늦은편임

·대개 명사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편

(의사소통 방식이나 경험에 따라 기능어가 많이 나타나기도함)

·한낱말 발화기 후반에는 어휘 확장이 급속하게 일어남

㉔ 문법으로서의 전환기(14-18개월) : 조사&문법어휘

·두 낱말의 사용이 나타나기는 하나 그 어순이나 억양패턴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이 불규칙함

·아직 문법규칙이 습득되었다고는 볼수 없는 시기임

㉕ 여러 낱말 발화기(18개월 이후) : 자발적 발화

·낱말과 낱말간의 의미적인 관계가 있는 문장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

·다양한 의미적 유형을 습득시켜 나중에 복잡한 문장을 만드는 기초적인 능력을 형성시켜 주는 것이 중요함

㉖ 복문사용기(2-3세 이후) : 예) 나열 > 연결 > 내포

****참고1 - 의사소통 촉진활동 ****

- ① 물체에 대하여 상대방과 함께 주목하기(joint attention)
- ② 공통적인 활동하기 - 함께 행동이나 활동에 참여하기(joint activity)
- ③ 선 행동과 연계된 반응 제시하기(contingent responding)
- ④ 교대 활동을 통하여 의사소통 순서 익히기(turn-taking)
- ⑤ 참조하기(referencing)
- ⑥ 사회성 게임하기(social gaming)
- ⑦ 인지적 도식 확장시키기(scaffolding for cognitive schemes)
- ⑧ 의사소통 기술 확장시키기 (scaffolding for communication)
- ⑨ 지칭하기(labeling)
- ⑩ 아동을 모방하기

**** 참고2 - 신생아기부터 취학전까지의 전반적 언어발달행동**

㉑ 0-6개월

· 소리에 놀람, 같은 소리 반복, 목구멍소리, 목구멍을 꾸르르 울리는 소리, 즐거운 소리 냄

· 다른 생리적인 욕구들에 대해 구별된 울음

· 미소, 목소리 인식, 소리 근원지 찾음, 경청, 웅얼이 보임

· 자신이 원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소리&제스처 사용, 소리모방, 음도&강도

변화

㉒ 7-12 개월

· '안돼'의 소리 이해, 자신의 이름 이해한 후 반응, 일상용품 단어 인식

· 장/단을 사용하여 웅얼이를 함, 웅얼이시 노래 같은 억양 사용, 성인구어와 비슷한 억양 모방

· 웅얼이 → 자곤형태로 바뀜, 처음으로 의도적 구어사용, 명사사용, 간단한 지시이해

㉔ 13-18개월

- 성인과 유사한 억양패턴 사용, 반향어&자곤사용, 중성자음, 초성자음 생략
- 불명료한 구어산출, 간단한 지시수행, 2낱말구사용, 몸짓과 소리내기 병용, 원하는 물건 요구

㉕ 19-24개월

- 자곤보다 낱말을 자주사용, 50-100개↑표현어휘, 300↑수용어휘, 명사+동사 결합
- 대명사 사용 시작, 음성 조절 능력 불안정, 질문시 적절한 억양사용
- 구어명료도(낯선사람에게 25-50%), 무언에 대한 질문에 대답, 이야기 듣는 것을 즐김
- 5개 정도의 신체부위 안다. 익숙한 물건 정확하게 명명, 2단계 지시수행

㉖ 2-3세

- 50-75%의 구어명료도, 하나&전부 이해, 배설욕구를 말로 표현, 명명하여 물건요구

- 관정의문문에 반응, 일상용품들 명명, 낱말 듣고 그에 해당하는 그림 지적하기 가능

- 여러가지 신체부위 수용, 간단한 지시수행, 간단한 질문에 대답, 짧은 이야기 즐겨 듣기

- 1,2낱말 질문, 3,4낱말 구 사용, 현재 진행형, 수동, 목적격 형태소 사용
- 문장어미, 과거시제, 미래시제, 공존격조사, 주격조사, 아니야, 안돼 등을 사용
- 몇가지 형태의 질문, 의문사 이해(왜, 누가, 누구의, 얼마나)
- 창조적인 구어가 힘든 경우 반향어 사용

- 500-900 이상의 수용어휘, 50-250 이상의 표현어휘, 다양한 문법적 오류범함
- 아동에게 말하는 대부분을 이해, 처음절에 반복현상 자주 보임, 큰소리로 말함
- 음역의 증가, 모음을 정확하게 사용, 초성자음을 정확하게 조음, 어중에 있는 자음생략

- 중성자음 생략 또는 대치, 약 27개의 음소사용

㉗ 3-4세

- 물건의 기능이해, 상대적인 의미이해, 2-3단계 지시 수행, 단순한 질문에 대답
- 단순질문사용(누가, 무엇, 어디, 왜), 질문자주하고 그에 대해 구체적인 반응요구
- 간단한 구어적 유추, 언어로 감정표현, 4-5단어 문장사용, 6-13음절 문장을 정확하게 따라함

- 물건의 이름 말하면 이해, 성인과 친구들을 조정하려고 함, 반향어를 사용할 때도 있음

- 6단어 문장까지 사용, 명사&동사 가장 자주사용, 과거&미래 인식
- 1200-2000개 수용어휘, 800-1500개 이상의 표현어휘
- 말하는 동안 더듬거나 말이 막히고 호흡이 자연스럽게 못하며 얼굴 찡그리는

경우 有

·구어 속도 증가, 속삭여 말하기도 함

·자음정확도 50%정도, 구어의 명료도 80%정도, 문장의 문법적인 측면에서의 진전보임

·일어난 순서에 따라서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 할 수 있음

·긴 대화에 참여, 모든 의문사 사용, 미래시제 사용, 진행형 사용, 왜냐하면 접속사 사용

⊗ 4세

·모방을 하면서 5가지 셈, 셋까지의 개념이해, 계속해서 공간적인 개념 이해해 나감

·1-3가지 색인식, 2800개 이상의 수용어휘, 10가지 외워서 셈, 짧고 단순한 이야기 경청

·기능에 대한 질문에 대답, 문법적으로 정확한 문장을 사용, 900-2000개 이상의 표현어휘

·4-8단어 문장사용,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 복잡한 질문에 대답, 단어의 정의에 대해 질문

·분만 185개의 낱말정도를 말함, 더듬는 횟수가 줄, 리듬이나 노래, 무의미 음절 등을 즐김

·90% 정도의 자음정확도, 자주 나타내던 생략이나 대치와 같은 조음 오류 많이 줄어들

·어중에 나오는 자음을 자주 생략, 아동의 구어는 낯선 사람에게도 명료하게 들림

·놀이터나 친구 집에서 있었던 경험 이야기 가능, 긴 이야기를 정확하게 연결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고 그에 대해 간단한 질문, 피동형의 문장 사용

◎ 5-6세

·6가지 기초적인 색깔과 3가지의 기초적인 모양 말함, 집단에게 주어진 지시수행

·3단계 지시 수행, 의문부사 '어떻게'를 이용하여 질문, '안녕'과 같은 인사말에 구어로 대답

·과거&미래시제를 적절하게 사용, 접속사를 사용, 1300개 정도의 표현어휘 습득, 반의어를 말함

·요일을 순서대로 말함, 30까지 외워서 셈, 빠른 어휘 증가를 계속해 나감

·4-6단어 정도로 문장 길이가 줄, 때때로 음소를 바꾸어 발음, 정보를 교환하거나 질문을 함

·상세한 문장 사용, 문법적으로 완벽한 문장 사용, 이야기를 정확하게 엮어 나감

·노래나 자장가 등을 끝까지 부름, 성인 및 다른 아동들과 쉽게 의사소통

·대부분 적절한 문법 사용

⊗ 6-7세

·약간의 절차, 숫자, 돈의 단위 명명, 순서대로 수를 셈, 왼쪽&오른쪽 이해
·차츰 더 복잡한 묘사를 함, 대화에 참여, 20000개 정도의 수용어휘 습득
·대략 6개 낱말정도의 문장길이를 나타냄, 시간적 개념 이해, 절차외움,
·100까지 외워서 셈, 대부분의 문법표지를 적절하게 사용, 수동형의 문장을 적절하게 사용

** 참고3 - 언어획득과 관련된 화용론적 발달연구

- 1) 말의 출현이전에 나타나는 의사소통 행동을 포함해서 언어적표현의 발달이나 의사소통 의도연구
- 2) 의사소통주고받기, 방해, 되ane기, 주제의 변경을 알리기 등과 같은 규칙의 습득과 대화기술의 발달연구
- 3) 이야기를 조직화하는데 사용되는 언어적 장치를 어떻게 통제하고 발달시키는 지 연구
- 4) 존칭규칙과 같은 문화적으로 다르게 결정되는 언어사용의 규칙연구
- 5) 의미론적이 아닌 의사소통 기능적으로서의 언어적 형태를 습득하는 과정연구
- 6) 대명사와 지시어 획득에서 화용론적 요인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연구

** 참고4 - 언어이전단계 & 언어표현단계의 의사소통

- 1) 언어이전단계 의사소통 : 주의환기, 요청하기, 인사하기, 전달하기, 저항하기, 반응하기, 알리기
- 2) 언어표현단계 : 다양한 의사소통 기능사용, 전제하기, 담화이야기능력의 발달, 보이지 않는 대상에 대해 언급하기, 미래, 과거에 관한 일상적인 사건에 대한 표현, 탈문맥적 표현(18-24개월)

출처 : 민우의 언어치료 www.club.cyworld.com/mwslp

통합체육의 개념과 시행



팀 명	재활치료 2팀
일 시	2014.02.13. 17:30-18:30
발표자	최보람
장 소	대회의실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통합체육의 개념과 시행

1. 통합체육의 배경이해

1) 통합체육의 필요성

현재 특수체육의 세계적 연구 동향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하는 완전통합(Full Inclusion)을 주제로 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완전통합이야말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정상화를 돕는데 필수적인 수단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제도적으로 완전통합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통합교육을 받고 싶어도 장애에 대한 선입견과 사회적인 장벽 때문에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함께 수업을 받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다. 다행히 2000년대 들어와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교육 정책이 특수학교에서의 분리교육으로부터 일반학교로 통합교육을 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교육이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추세에 따라 특수체육에서도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여 체육관련 종사자들이 장애학생에게 신체활동을 통한 건강한 삶의 증진을 돕는데 앞장서고 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1960년대 초까지 장애학생은 또래들과 함께 수업을 받지 못하고 격리, 수용되어 교육을 받았다. 그러나 1967년 공법 90-170이 입법화 되면서 현대적 특수체육이 태동하게 된다. 그리고 1975년 장애아교육법이 공포되면서 특수교육에 혁신을 가져왔으며 이법에서 체육교육은 장애학생 교육 시 반드시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임을 규정함으로써 특수체육과 장애인스포츠에 새로운 전화기를 받게 되었다. 그리고 1970년대 후반부터 특수체육의 범주는 학교로부터 지역사회까지 확대하여,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체육활동에 참여하여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는 통합체육을 강조하게 되었다. (Winnick, 1990). 우리나라에서는 1994년 특수교육진흥법이 법제화되면서 통합교육에 관심이 증가하였고 체육교육 또한 유용한 통합교육의 수단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와 같이 현재 통합교육이 강조되는 이유는 첫째, 장애학생이 또래 학생과 같은 경험을 하고, 사회의 기대에 적절하게 대처하게 하며, 둘째,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함께 활동하는 가운데 사회적 관심(공동체 의식)을 계발하게 하고, 셋째, 동료교수, 협동학습 등으로 학문적 이득을 보게 함으로써 장애학생의 사회통합과 일상적인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이다.(김승국,1999)

2) 통합교육(체육)의 정의

1977년 ‘특수교육진흥법’이 제정된 지 30년 만인 2007년 7월에 새로운 ‘장애인등에 대

한 특수교육법(2008, 이하 특수교육법)’이 제정 및 공포되었다. 역사적으로 보면 1988년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을 통하여 무상교육이 확대되었고 1994년 전면개정과 1997년 부분 개정을 계기로 통합교육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또한, 국내의 특수교육은 양적, 질적인 면에서 많은 성장을 이루어 왔다. 그러나 현장에 배치된 장애학생들에게 충분한 교육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는 반성의 목소리 역시 계속 들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진흥법의 제정은 장애영역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와 장애인 당사자들의 누적된 요구를 바탕으로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욕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에 기여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2008)’에서는 ‘통합교육’을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에 따라 차별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2조제6항)’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통합교육의 정의는 첫째, 각 급 학교의 장은 교육에 관한 각종 시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통합교육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둘째,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 받은 일반학교의 장은 교육관정의 조정, 보조 인력의 지원, 학습보조기기의 지원, 교원여수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하고, 셋째, 일반학교 장은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특수학교 학급 및 각 급 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 및 운영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설비 및 교재, 교구를 갖추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2. 통합체육의 철학 및 가치

1) 특수교육의 패러다임 변화

1950년대까지 특수교육은 분리교육(특수학교에서의 교육)을 당연시 해왔다. 장애인들은 장애인 끼리 어울려 교육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러던 것이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특수교육계에서도 소외계층의 정상적인 생활권 보장을 위한 인권운동이 대두되고, 기존의 사고방식과는 다른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하는 인도주의적 사상을 수용하고,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기 때문에 동등하게 대접받을 권리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사상이 대두되면서 특수교육에서는 장애학생을 특수학교에 분리하여 교육을 시키기보다는 일반학생과 함께 어울리면서 생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생각은 1960년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덴마크, 스웨덴, 벨기에 등)에 의해 도입된 정상화(Normalization) 개념을 미국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오늘날 세계적으로 통합교육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통합교육은 기존의 모더니즘이 포스트모더니즘으로 대체되면서 특수교육에서도 개별

장애인의 특성을 중요시 하여 이들의 능력과 수준에 맞는 수업계획을 작성하여 교육을 시키자는 구성주의 이론을 받아들이게 된다. 구성주의 원리가 장애인의 개별화 교육 및 통합교육을 실시하는데 이론적인 근거를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모더니즘은 이성적인 획일성, 합리성, 규범 지향, 보편성 추구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반면, 포스트 모더니즘은 다양성, 해체, 그리고 이질성의 공존 성격을 가졌다. 포스트모더니즘은 개인이 표준화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의 기준으로 평가받기를 거부하고,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주관적 잣대로 가치를 인정받고자 하는 철학이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지향하는 모더니즘에 대한 반대와 비판에서 유래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심성보, 1993; 최정용, 1994) 다시 말해, 포스트모더니즘은 절대적 가치를 추구하고 순응하는 인간 혹은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지식과 사고의 틀을 가진 인간을 뛰어넘어 모든 인간을 위한 것이며, 다양성을 강조하는 특수교육의 통합교육 성격과 잘 어울린다고 할 수 있다. (김성애, 2002) 이러한 포스트모더니즘 사회에서 통합교육은 모든 개인이 각 개인의 다양성을 인정받으며 소수 인으로서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을 기반으로 성립되었다. 또한 포스트모더니즘은 장애인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을 기존의 의료적 모델에서 장애인인권 모델로, 그리고 최근에는 생태학적 모델로 변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Sherrill(2004)은 장애인의 사회통합에 대한 노력을 언급하면서 그동안 장애인을 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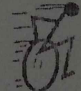
	범주, 결핍 혹은 의료 모델	사회적 약자/장애 인권 모델	생태적 모델
철학 요소	◦ 장애는 불안정하거나 열등한 것이거나 그 이하일 뿐이다.	◦ 장애는 '다른' 존재일 뿐이다; 때문에 열등하지 않고, 다만 단순히 다를 뿐이다.	◦ 장애 외에는 차이를 유발하는 개인-환경간의 상호작용과 차이의 공존을 인정한다.
장애 정의	◦ 개인은 치료를 요하는 공통적인 결손과 예외성을 지니고 있다.	◦ 개인은 단지 사회적 오점이라는 공통성을 지녔을 뿐이고, 이는 반드시 없어야 한다.	◦ 개인은 일부 장벽을 인정하고 극복할 수 있다. 장벽은 제거되어야 한다.
정체성 지각	◦ 사용되는 용어는 부정적이다(가령, 결점, 부족함 등).	◦ 용어는 긍정성, 중립성을 강조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 개인과 환경 변인이 동일하게 강조된다.
용어 사용	◦ 프로그램은 결점, 문제점, 또는 장애인들의 특징에 기반을 두고 있다.	◦ 프로그램은 개인적인 평가 자료, 개개인의 장점, 그리고 약점에 근거하고 있다.	◦ 평가 외에 개인과 환경시스템 요소를 동일하게 취급한다. 목표는 장벽과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다.
서비스 전달 기반	◦ 목적은 조언, 처방, 혹은 치료교육을 주는 것이다.	◦ 목적은 개인에게 자아실현을 위한 능동적인 역할을 생각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이다.	◦ 사회적 약자 모델과 동일하다.
적절한 상징	◦ 그래픽이 수동적이다 	◦ 그래픽이 역동적이다. 	◦ 사회적 약자 모델과 동일하다.

그림 1. 장애인을 보는 시각의 변화

시각의 변화를 언급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특수교육에서의 인본주의 등장

장애학생을 또래 학생들과 분리하거나 배제하지 않고 동일한 학급에 배치하여 교육하는 통합교육은 근본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인간으로 인권을 존중받고, 사회정의도 실현한다는 이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교육은 인간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라고 할 때, 사회는 그 구성원이 어떠한 조건을 가졌더라도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책임을 져야 한다. 장애인도 분명히 사회적으로 열악한 조건을 가진 소수자이다. 이에 국가 및 사회는 이들을 교육할 때 그 어떤 구성원보다도 더 세심하게 배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다수의 논리를 앞세워 장애인의 교육을 분리하거나 경시해 왔다. 그러나 1960년대를 거치면서 장애인도 일반인과 함께 생활하고, 일반사람들이 누리는 혜택을 동등하게 누려야 한다는 정상화 원리가 강조되면서 장애인의 인권 문제도 다시 생각하게 되었으며, 개별 장애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장애인도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삶을 살 수 있게 하자는 인본주의에 바탕을 둔 인권 존중의 시각이 전파되기 시작하였다. 인본주의는 인류가 스스로 존엄성과 가치를 자각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형성된 실천의지로 인간의 존엄 교육도 바로 이러한 시대적, 사회적, 변화와 맞물려 발전해온 것이다.

3. 통합체육의 개념의 변화

1) 정상화(Normalization)

1960년 이전에 장애인들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격리되어 시설에 수용되었다. 이때까지 장애인을 위한 교육으로 가장 적절한 방법은 분리교육이었다. 그 후 정상화의 원리가 강조되면서 통합교육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정사화의 원리’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보통의 사회구성원들처럼 삶을 정상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논리로, 이는 북유럽의 스칸디나비아 반도지역에서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정상화 원리는 장애인에게도 가능한 한 사회의 주류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에 근접한 형태로 살아가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다. (Nirje, 1969; Wolfensberger, 1972). 이는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으로 결함 있는 사람들이 장애로 인하여 겪는 사회적, 환경적 장애를 최소화함으로써 일반사회에 가능한 한 무난히 적응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수교육 입장에서 정상화의 원리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장애인의 삶의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나 장애인에게 정상적인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구호로 그치고 구체적 내용과 실천 방안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은 명시되지 않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 통합(Integration)

통합이란 물리적인 통합의 의미가 강하며, 장애학생을 일반학생 근처에 배치하여 제한적인 상호작용만을 허락한 상태를 말한다. 다시 말해, 지역사회에서 불리한 입장에 있는 시민, 노인, 장애인, 또래 장애학생 등이 지역 주민의 생활 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물리적, 법적, 행정적 노력을 기울여 대등한 시민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일반학생과 함께 교육을 받고, 정상적인 교육 환경에 배치하는 것을 뜻한다. (대한특수교육학회, 1993). 이러한 통합이 교육적 측면에서 특히 필요하게 된 이유는 장애학생을 일반학교에 배치함으로써 장애학생과 일반학생 간에 사회적 상화작용이 증가하고, 장애학생이 일반학생의 행동을 모방하여 자신의 행동에 바람직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을 분리시켜 교육하는 것은 장애학생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킬 뿐만 아니라, 불평등한 교육 경험을 증가시켜 장애학생에 대한 낙인을 심화시키기 때문에 통합은 중요한 일이다. (Dunn, 1968)

이 통합의 개념은 일반교육에서 장애학생이 일반학생과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이후에 물리적 통합뿐만 아니라, 체계적 통합, 참여적 통합, 상호작용적 통합, 연합적 통합 등의 개념을 가져오며, 특히, 장애학생의 권리를 보장하는 포괄적인 통합의 의미를 만들어 내는 시발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일반학생과 장애학생을 통합시켰을 때의 문제점과 장애학생의 개인차에 입각한 교육문제 등의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3) 주류화(Mainstreaming)

주류화란 1975년에 제정된 미국의 전장애아교육법에서 장애학생을 분리하여 교육시키지 말고, 교육환경에서 제한적인 요소를 최소화하는 정상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을 가능한 한 또래 학생들과 동일한 교육환경에 배치하여 상호작용하게 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특수교육을 받도록 하는 점진적, 단계적 통합교육을 의미한다. 즉, 장애학생과 일반학생간의 단순한 물리적 통합에 그치지 않고, 통합 장면에서 장애학생의 독특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다양하면서도 충분히 마련하도록 강조하는 것이다.(Shelrill, 2004). 장애학생에게 학교 체육 프로그램에서의 이런 주류화 교육은 다양하고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인의 긍정적인 태도와 적절한 배치에 초점을 맞추며, 이때 유연한 프로그램의 계획과 활동변형이 바로 장애학생에게 적절하게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류화는 첫째, 공공시설, 사설시설, 보호시설 등에 있는 장애학생들이 또래 학생들과 함께 최대한 적절하게 교육받도록 하며, 둘째, 장애의 상태가 심각하여 보조기구를 사용하고 서비스를 받으며 일반학급에서 교육받지만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때에는 특수학급, 분리 학교교육, 장애학생을 배제

한 일반교육환경 등에서 교육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Gearherart(1980)는 주류화란, 장애학생이 일반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때, 각 학생의 교육적 욕구에 기초하여 관련 전문인들의 팀 접근에 의해 개별지도계획을 수립하고, 일반학급 내에서 가장 적합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해 다각적 노력을 지속하는 교육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단순히 장애학생을 일반학급에 보내거나 적절한 특수교육적 서비스의 제공 없이 그저 일반학급에 머물게 하거나 장애가 중중인 학생을 위한 시설이나 특수학교를 줄이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Eichstaedt 와 Lavay(1992)는 주류화는 종종 제한환경의 최소화(LRE)라는 말과 유사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장애학생들이 또래 학생들과 통합된 시설에서 교육 서비스를 제공받는 실천의 장이며, 이것은 장애유형과 정도에 관계없이 가능한 언제든지 모든 학생들이 함께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분리된 특수학급에 편성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고 하였다.

한편, Dohrmann(1991)은 일반체육에서 주류화의 단점을 지적하면서 “나는 장애학생들이 일반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해 원래의 분리학교로 다시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초등학교 교사들로부터 많이 듣고 있다. 특히, 중증 장애학생에게는 주류화가 성공적이지 못하다. 그러므로 중증 장애학생의 교육배치는 제고해 보아야 한다.” 하고 말하고 있다. 비록, 주류화가 중증 장애학생의 교육에는 별로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지만 대부분의 장애가 경중인 학생에게는 또래 학생과 함께 체육수업에서 교육을 받고 상대방을 알 수 있게 하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주류화의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주류화는 첫째, 제한 요소가 최소인 환경에서 각 학생에게 가장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며, 둘째, 현실적인 명칭보다는 오히려 교육적 요구의 평가를 바탕으로 학생을 배치하는 것이고, 셋째, 일반교육환경에서 장애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일반교사에게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넷째, 장애학생들이 교육기회를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을 하나로 묶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Block, 2000).

4) 일반교육 주도의 특수교육(Regular Education on Initiative)

일반교육 주도의 특수교육은 1986년 미국 특수교육국의 차관보였던 Medeline Will이 처음 사용하였으며, 1990년 미국장애인교육법(IDEA) 공법 101-476이 제정되면서 등장하였다. Will은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이 분리된 이중 교육구조는 장애가 경중인 학생에게는 효과적이지 못하였다고 언급하면서, Will은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의 새로운 합병을 지지하며 전통적인 특수교육 교실의 축소를 권장하였다. 이것은 장애학생을 일반학교 교육에 통합시킨 결과, 그들이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좀 더 적극적인 일반교육 주도의 특수교육이 필요했으며, 이는 주류화가 그 실천 관점에서 교육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일반교육 주도의 특수교육이라는 새로운 특수교육 전달체계가 대두되면서 80년대 후반부터 주류화의 개념은 퇴조하고, 특수교육은 분리교육에서 단계적 통합을 거쳐 완전통합을 지향하는 단계로 발전해 가고 있다. 이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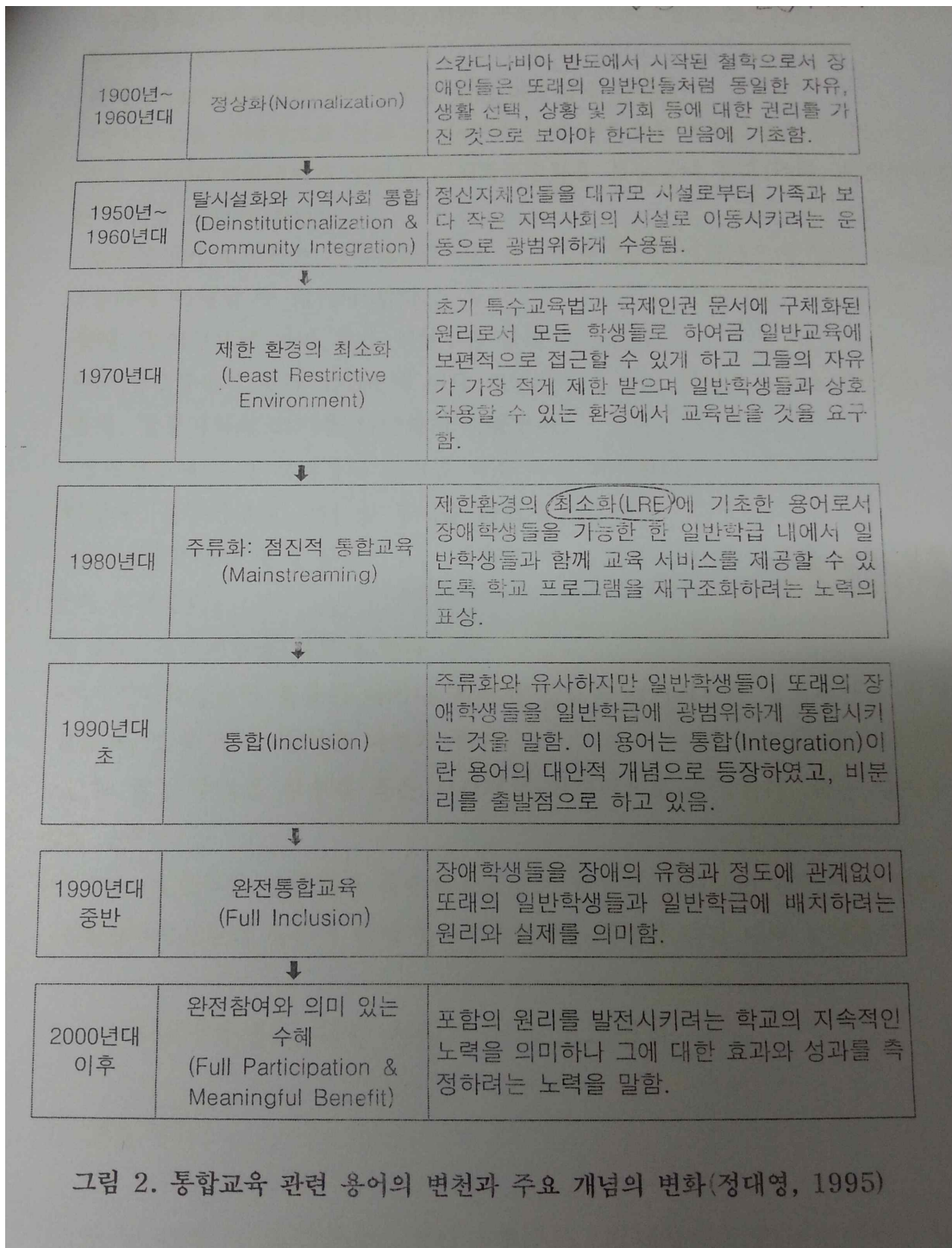
인해 최근에는 일반교육과 특수교육간의 기본적 체제의 벽을 허물어 버리고 상호제휴 및 변환을 강조하면서 좀 더 적극적이고 광범위한 통합교육의 개념으로 완전통합(Full Inclusion)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국립특수교육원, 1994). 이런 특수교육의 통합교육 개념의 변화에 따라 특수체육에서도 일반 체육 주도의 특수체육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이 용어는 일반교육 주도의 특수교육 개념과 유사한 개념으로서, 일반체육교사와 특수체육교사가 일반학생과 장애학생의 체육을 공동으로 책임지고 교육을 시킨다는 뜻이다. 즉, 일반체육 주도의 특수체육은 장애학생에게도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반학생과 동등하게 상호작용을 하게 하여 체육수업을 하자는 것이다.

5) 완전통합(Full Inclusion)

완전통합이란 1990년 일반교육 주도의 특수교육이라는 용어가 나오게 된 시기와 유사하며, 장애학생을 처음부터 또래들과 함께 통합시키자는 것이다. 다시 말해,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환경에서 장애와 능력에 관계없이 각 개인의 요구가 충족되는 교육을 받도록 하는 철학을 반영하기 위해 사용된 용어이다. 이는 장애학생에게 일반교사와 특수교사가 공동으로 책임지고 일반교육 주도의 특수교육을 실시한 결과, 그래도 장애학생의 교육에는 많은 문제점과 어려움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완전 통합이란 장애학생을 교육시킬 때 처음부터 연령,가정환경,장애유형,장애정도,학업상태 등을 객관적으로 검사하여 일반학급에 배치하고 교육하면서 문제점을 나타날 경우에만 그 학생에게 맞는 교육배치를 다시 실시하여 교육시키자는 뜻이다. 즉, 장애학생을 처음부터 일반학교에 가장 적합하게 교육배치를 하고, 그 교육배치 내용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가장 알맞게 제공하되 장애학생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할 때에는 필요한 만큼 분리교육을 시킨다는 뜻으로선 통합교육 후 분리교육을 의미한다. 더 포괄적인 용어로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반체육 교사들은 장애학생을 특수체육 프로그램에 배치하여 교육을 시킬 때 혼란스러움을 느낀다. 일반체육 주도의 특수체육 개념이 경증 장애학생을 위해 개발된 것이지 중증 장애학생을 위해 만들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 교육부에서는 경증과 중증 장애학생을 위해 모든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으나, 지금도 중증 장애학생을 교육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즉, 중증 장애학생은 일반학생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일반학생 역시 장애학생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 중증 장애학생을 교육시킬 때에는 분리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것은 완전 통합에 문제점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특수체육 분야에서도 통합체육을 찬성하기도 하고, 반대하기도 한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완전통합이 장애학생의 교육에 있어 장애와 비장애의 구분을 배척하고, 장애학생의 육에 제한환경의 최소화의 연속성 교육을 이어받아 어릴 때부터 통합교육을 시킬 것을 명시하고, 특수체육에도 일

반체육 주도의 특수체육 개념을 사용하여 장애학생의 교육을 한층 높이는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완전통합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의 문제점, 그리고 분리교육에서의 문제점 등은 여전히 미 해결책으로 남아 있어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이 미국의 통합체육과 관련된 용어 및 주요 개념의 변화를 시대별로 요약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 통합체육 프로그램의 실제(예)

1) 지체장애학생을 위한 통합체육 프로그램 구성 시 고려사항

특수체육교사는 지체장애학생을 위한 통합체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① 지체장애학생의 장애정도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 장애정도를 구체적으로 알고 그 수준에 맞게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② 지체장애학생에게 알맞은 신체활동종목을 선정해야 한다. (특히, 신체활동종목을 변형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 일반학생이 실시하는 신체활동 종목을 참고하여 지체장애학생에게 맞게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변형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장애정도에 따라 참가 인원수를 달리 적용한다.

- 지체장애학생의 참가 인원수에 따라 일반학생의 참가 인원수도 다르게 적용한다.

④ 활동지역의 크기를 다양하게 사용한다.

- 장애정도에 따라 경기장의 크기를 축소 혹은 확대한다.

⑤ 운동기구의 크기 및 무게를 다르게 적용한다.

- 지체장애학생이 쉽게 운동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크기와 무게를 운동 상황과 종목에 따라 달리 적용한다.

⑥ 경기시간을 다르게 한다.

- 지체장애학생들이 힘들어 하거나 지치지 않도록 경기시간과 휴식시간을 적절히 부여한다.

⑦ 승부결정방식을 다르게 한다.

- 승부결정방식은 점수제 혹은 시간제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혹은 즐거움을 느끼는데 주안점을 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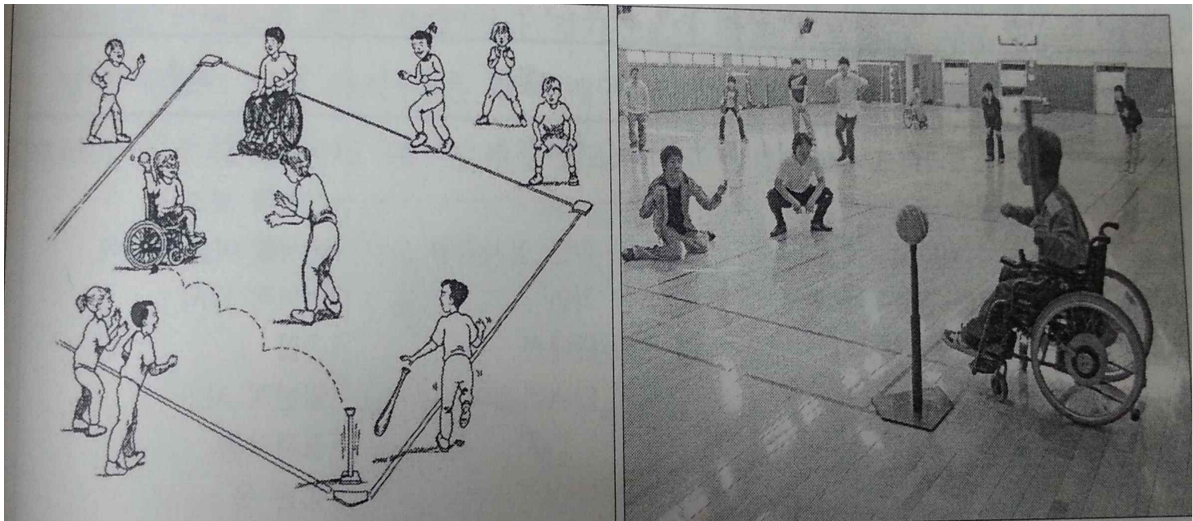
⑧ 체육수업 상황에서 특수체육교사는 탁월한 임기응변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 지체장애학생들의 욕구에 맞게 특수체육교사는 적절한 순간 대처 능력을 길러야 한다.

2) 지체장애학생을 위한 통합체육 프로그램의 실제

[변형야구]

- ① 참가대상 : 비장애인학생, 지적장애학생, 지체장애학생(뇌성마비, 척수장애, 절단장애 등), 청각장애학생이 함께 참가
- ② 경기종류 : 단체경기
- ③ 장 소 : 체육관 혹은 강당(농구장의 모서리를 이용하여 베이스를 만듦)
- ④ 경기목표 : 변형야구를 통해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의 자립심, 협동심, 팀워크 등을 함양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⑤ 경기방법

- 준비물 : 호각, 티볼받침대, 정구공, 비치볼, 탱탱볼 등
- 인 원 : 한팀은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 장애학생들의 장애영역과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실시한다.
- 작은 탱탱볼을 티볼 받침대에 올려놓고 타자는 플라스틱 방망이를 휘둘러 공을 맞춘 후 1루로 뛰어나가는 것이 원칙이나, 뺄 수 없는 중증 장애학생의 경우에 공을 굴린 후 대주자를 이용하여 1루로 달리게 한다. (타자에 따라 반드시 방망이가 아니더라도 손이나 발로 공을 찬 후 1루로 달려갈 수 있게 한다.)

⑥ 경기규칙

- 장애영역과 장애정도에 따라 방망이, 손, 발 등으로 공을 치거나 찰 수 있다.
- 가능한 티볼받침대를 사용하여 방망이로 치게 한다.
- 비장애인 학생은 1루로 뛰어갈 때, 뒤기보다는 속보로 걷게 한다.
- 공이 떠서 홈베이스에서 2m 이상 넘어가지 않으면 파울로 간주한다.

⑦ 유의사항

- 양 팀의 선수 구성 시 장애영역과 정도가 비슷한 수준이 되도록 한다.
- 비장애학생들에게는 신체 부위 사용의 범위를 축소하고 장애학생들에게는 확대한다.
- 공에 맞아도 아프지 않는 정구공, 비치볼, 탕탱볼 등을 사용한다.
- 휠체어를 탄 중증 장애학생들에게는 대주자를 사용하여 뛰어가게 한다.
- 승리보다는 즐겁게 참여하는데 중점을 둔다.

⑧ 경기의 효과

- 순발력, 평형성, 민첩성 등을 발달시킨다.
- 책임감, 협동심, 팀워크 함양에 도움을 준다.

■ 장애학생을 위한 야구활동 시 일반적인 변형 지침 사항

장비	규칙	환경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리나는 공 •청각효과 공 •밝은 색 공 •촉각효과 공 •소리나는 공 •너프볼(nerf balls) •윙플볼(wiffle balls) •베이스 워 종 •베이스 워 부저 •라디오 •팬 •배팅 티 •가벼운 배트 •평평한 베이스 •매우 부드러운 공 •큰 공 •가벼운 공 •색깔 있는 공 •다른 사이즈의 글러브 •작은 글러브 •더 부드러운 공 •더 가벼운 공 •벨크로공(velcro balls)과 글러브 •테더공(tether balls) •큰 글러브 •큰 베이스 •안전한 베이스 •할멧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트라이크 수의 결정 •공수 교대의 결정 •의대에 5명 배치 •배팅 티에서의 히트 •바닥에서의 히트 •태그아웃 규칙 삭제 •베이스에서의 태그아웃 •그라운드 패스 •시간제한 •경계선 제한 •공 던져 주자 아웃시키기 •협력 대 경쟁 •동료가 공 놓아주기 •대주자 •2루타까지 허용 •공간제한 •매달려 있는 공 때리기 •플라이아웃 또는 바운드아웃 •더블플레이 규칙 삭제 •모든 포지션에서의 플레이 •기본적인 규칙 •9 아웃 •티 볼 •5 스트라이크 아웃 •항변 불가능 •두 번의 투스 후 필드플레이 •삼진아웃 규칙 삭제 •스트라이크 없이 3번의 스윙 가능 •안전한 규칙 •공 패스 •점수판 사용 •점수카드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이드 선 •배팅 •카펫 깔린 정사각형 •배팅 라인 •촉각 안내선 •청각 안내선 •콘 •로프 •베이스 뒤에서 박수 •밝은 라인 •개방된 공간 •성공지향 •겨려 촉진 •지속적인 중재자의 설명 •포장 바닥 위 •선수 수 •짧은 베이스 간격 •더 많은 내야수 •음악 •베이스 수 •짧은 베이스 코스 •가까운 투수 마운드 •짧은 펜스 •작은 공간 •흰색 베이스라인 •베이스에 마커 표시 •실내 또는 실외 •타격시 안전망 사용 •헤를 등진 상태 •주의산만 제거 •시선 접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료교수 •신체적 보조 •판서를 이용한 교육 •언어적 단서 •근접 •일반적 사인 •점자사용 •밝은 옷 •대면 지도 •일대일 지도 •과제분석 •점감법(slow down) •시범 •피드백 •간접 •직접 •나란히 달리기 •상황중계 •신호 언어 •과제유형 •몸통 회전하기 •수신호 •공이 튀어나가지 않고 계속 받기 •지속적 관계 형성 •문제 해결 •이름 부르기 •따라다니며 지도

[변형배구]

- ① 참가대상 : 비장애인학생, 지적장애학생, 지체장애학생(뇌성마비, 척수장애, 절단장애 등), 청각장애학생이 함께 참가
- ② 경기종류 : 단체경기
- ③ 장 소 : 체육관 혹은 강당 (정규 경기장보다 작은 가로5m, 세로 5m인 배구장)
- ④ 경기목표 : 변형좌식(혹은 입식)배구 경기를 통해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상대방을 이해하고 심신의 발달 및 대인관계를 향상시키는데 있다.



⑤ 경기방법

- 준비물 : 호각, 풍선, 비치볼, 탱탱볼, 네트, 지주 등
- 인 원 : 한 팀은 6명으로 하지만 상황에 따라 1~3명을 가감할 수 있다.
- 공은 풍선, 비치볼, 탱탱볼 등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사용한다.
- 서브는 전위 가운데 선수가 서브하며, 언더핸드 서브로 한다.
- 리시브하는 선수는 신체 어느 부위를 사용하여 공을 받아도 된다. 이때 중증 장애학생에게는 홀딩을 허용한다.
- 선수당 서브는 2개이며, 상대팀에게는 서브가 넘어갔을 경우 포지션을 바꾼다.
- 공이 자기편으로 넘어왔을 때 3회 터치만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5회 터치까지 허용한다.
- 이외의 경기 방법은 배구 경기 방법을 참고한다.

⑥ 경기규칙

- 중증 장애학생에게는 투터치(two touch)를 허용한다.
- 중증 장애학생들에게는 손이나 발 신체 어느 부위를 사용하게 한다.
- 체육교사는 장애유형과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공을 터치하는 신체부위에 제한을 준다.
(예: 일반학생이 오른손잡이일 경우 왼손을 사용하여 경기를 하게 함)

- 한 세트는 15점으로 하며, 3세트 2선승제로 한다.
- 이 외의 경기규칙은 일반 배구 경기규칙을 참고한다.

⑦ 유의사항

- 장애학생의 병력 및 특성을 파악하여 경기 진행시에 참고한다.
- 양 팀의 선수 구성 시 장애유형과 장애정도가 비슷하나 수준이 되도록 한다.
- 비장애학생들에게는 신체부위 사용의 범위를 축소하고 장애학생들에게는 확대한다.
- 승리보다는 즐겁게 참여하는 중점을 둔다.

⑧ 경기의 효과

- 근력 및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심폐지구력, 순발력, 민첩성, 교차성의 발달을 가져온다.
- 비장애학생과 장애학생이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 장애학생을 위한 배구활동 시 일반적인 변형 지침 사항

장비	규칙	환경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구공 •큰공 •작은 공 •가벼운 공 •비치볼 •풍선 •무거운 공 •트레이너 공 •높은 네트 •소리나는 공 •휠체어 •밝은색 네트 •벽 •스파이크 머신 •팔 받침대 제거 •로프 •벤치 •색깔 있는 공 •밝은색 테이프 •접수카드 •호루라기 •과제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대없이 •원바운드 •투바운드 •히트 대신 캐치게임 •볼 다루며 걷기 •세 번의 패스 •네 번의 패스 •무제한 패스 •네트 근처에서 서브 •제한공간에서 역할분담 •협력 대 경쟁 •1회 이상 히트 •모든 사람의 서브 필수 •서브의 변형 •전위에서 기술 덜 사용 •로테이션 없이 •패스 전 이름 부르기 •피하는 사람을 위해 점프금지 •스파이크 금지 •블로킹 금지 •짧은 서브 라인 •동료가 캐치 가능 •원하는 만큼 히트 가능 •공 휴대 금지 •편칭 볼 금지 •어디서든 서브 가능 •오버핸드 또는 언더핸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촉각 경계선 •시각 경계선 •주의산만 제한 •성공지향 •공간제한 •한 번에 한 게임 •방법변형 •모든 학생들의 도움 •의사소통 •스테이션 •벽배구 •평평한 바닥 •비디오 사용 •경계선 축소 •라켓볼 코트 •표면 안쪽 유지 •바닥 재질 표시 •사인 또는 배너 지정 •실내 또는 실외 •한 번에 많은 게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체적 보조 •사인 가르치기 •동료교수 •일대일 지도 •과제분석 •점감법(slow down) •시범 •피드백 •과제유형 •개인 지도 •일반적 신호 •모델 •계속 격려 •명령식 스타일 •인지적 단서 •언어적 설명 •편안한 분위기 •따라다니며 지도 •문제해결 •직접 지도 •언어적 분석 •간접적 지도 •상호 지도 •포괄적 지도

-참고문헌

국립특수교육원(1994). 특수교육연구. 서울: 문영사

김성애(2002a). 구성주의와 탈산업사회교육. 탈산업사회와 특수교육. 서울 : 도서출판 특수교육. 65-89

김승국(1999). 장애학생의 통합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정대영(1995). 개별화 교육의 이론과 배경. 제2회 국내 세미나.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수립과 실천방안. 경기: 국립특수교육원.

2011 장애인스포츠지도자 연수교재

프로포절 작성의 이해 (삼성복지재단 양식 중심으로)



팀 명	직업재활팀
일 시	2014. 03. 21(금) 18시~20시
발표자	강명진
장 소	보람터



프로포절 작성의 이해

(삼성복지재단 양식 중심으로)

I. 프로포절 작성 카테고리

1. 제목 및 사업 핵심 개요
2. 사업의 필요성
3. 선행경험
4. 사업목적
5. 대상자 범위 및 선정 방법
6. 지향가치 · 철학 · 방향 설정
7. 사업목표
8. 프로그램의 내용
9. 네트워크 구성
10. 프로그램 평가
11. 예산편성

II. 제목 및 사업 핵심 개요

1. 작성법

제목은 사업의 핵심을 1~2줄로 요약해서 표현한 것이다. 제목은-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주제(主題)와 부제(副題)로 구분하여 핵심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과 독자에게 친숙한 슬로건으로 구성될 수도 있다. 어떻게 표현하든간에 ‘누구에게, 어떤 관점으로, 무엇을 지향하는 사업인지’에 대한 정보는 반드시 담겨야 한다. 사업 핵심 개요는 그야말로 작성된 내용을 7~8줄로 간명하게 설명하는 글이다. 여기에서는 사업 참여자에게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작동시킬 것인지, 그로 인해 무엇을 달성할 것인지, 목표 달성을 통해 지향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나타내야 한다.

2. 자기 점검

- 1) 제목은 제안서 핵심 내용을 집약적으로 반영하고 있는가?
 - 기관 내 검토 과정 및 결재 과정에서 바뀐 내용에 따라 제목도 수정하였는가?
 - 사업 핵심 개요를 한 줄로 표현하면 제목과 유사해지는가?
- 2) 사업 핵심 개요의 내용이 전체 사업을 압축적으로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는가?
 -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이념과 가치를 가지고 어떤 사업을 개괄적으로 수행하는 것인지를 표현하고 있는가?
 - 성과 목표와 사업 내용 그리고 평가 방법이 일관되게 구성되어 있음을 알리고 있는가?

3. 관전 포인트

제목이 이후 내용을 예측하는 바로미터 역할을 했는지 살핀다. 사업 핵심 개요를 읽고 작성자가 전체 프로그램의 내용을 머릿속에 구조화하였는지를 점검한다. 구조화 정도에 따라 전체 프로그램을 자기 것으로 완전히 소화했는지, 계획서 작성에의 정의와 열정이 있는지를 엿볼 수 있다. 이후 사업의 본 내용을 살펴볼 때 사업 핵심 개요의 작성내용과 일치하는지를 살필 것이다.

Ⅲ. 사업의 필요성

1. 작성방법

사업을 기획하는 것은 세 가지 이유에서이다. 첫 번째는 유사한 프로그램을 시행하다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중단된 것을 보다 발전시켜 사업을 계속해야겠다고 판단하는 경우, 두 번째는 특정 대상에게 사업을 실시하다가 문제의식을 느껴 제안한 내용의 사업을 추가적으로 실시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 경우, 세 번째는 지역 사회의 아픔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가 더 이상 방관하는 것을 참을 수 없어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려는 경우다. 어느 것이건 간에 사업 기획에의 동기와 필요성이 있다. 여기에서는 제안한 사업과 관련하여 ① 우리 사회는 얼마만큼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 ② 우리 지역 사회의 실정은 어떠한지에 대해 기술하게 된다. 전자는 우리 사회의 실정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출발하라는 의미이며, 후자는 왜 우리 기관이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하는지를 지역 사회 특성, 타 사회복지 기관의 분포 및 역할 등을 반추하여 살펴보고 아울러 왜 이 문제를-다른 문제가 아니고-동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다루려고 하는지를 뚜렷하게 부각시키라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2. 자기점검

‘우리 지역 사회에서 왜 이 이슈가 제기되는가’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있는가?

- 지역 사회의 지리적 특성, 최근 정책의 변화에 따른 지역 사회에의 영향력, 타 복지기관 또는 단체들의 사업과의 중복 여부 또는 사각지대 존재 등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고 이를 정리하였는가?

3. 관전포인트

작성자가 지역 실정을 꿰뚫고 있어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자신의 심정만으로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이를 제3자에게 설득하고 있는지를 살핀다.

Ⅳ. 선행경험

1. 작성법

작성자(소속 기관)는 이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경험, 그리고 열정을 포함한 실력이 있음을 여기에서 보여주어야 한다. 이를 보여주는 방식은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선행 프로그램을 고찰하는 것이다. 삼성복지재단 및 타 복지 재단, 한국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서 이미 지원하여 사업 결과 보고서가 나온 프로그램 중에서 작성자가 제안하고자 하는 프로그램과 유사한 것이 없는지를 살피고, 만약 있다면 이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진행되었고 그에 따른 성과와 한계는 무엇이었는지를 간략하게 기술해야 한다. 아울러 작성자가 제안코자 하는 프로그램은 그러한 선행 프로그램과 어떠한 차별성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작성자(소속 기관)의 유사 프로그램 시행 경험을 서술하는 것이다. 동일한 내용이 아니라 하더라도 유사한 내용을 시행한 경험이 있다면 그 내용을 간단하게 기술한다. 이 때 그러한 경험이 제안 프로그램을 구상하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또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데 어떠한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셋째는 최초 시행 고찰에 관한 것이다. 선행 프로그램도, 유사 프로그램 경험도 없는 경우에는 첫째 및 둘째의 내용에 대해서는 적을 것이 없으므로 본 란(보유 전문성)을 활용한다. 이 경우에는 제3자로 하여금 이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를 갖게 한다. 실험적 정신은 높이 살 만하지만 그 가치만큼 작성자는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근거를 보여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문적 근거를 인용해도 좋고, 외국의 사례를 이해하기 쉽게 소개하여도 무방하다. 국내외적으로 아무런 선행 검토가 없는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유사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성자의 불찰로 이를 검토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만큼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참고로 선행 프로그램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채택하거나, 대상 또는 세부 프로그램의 구성이 독특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최초 시행이라기보다는 선행 프로그램에서 고찰하고 차별성을 드러내는 것이 옳다.

2. 자기점검

1) 삼성 「작은나눔 큰사랑」에서 지원한 프로그램 중 본 사업과 유사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의의와 한계를 분석한 후 본 사업은 어떠한 차별성이 있는지를 기술하고 있는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타 복지 재단에서 지원한 사업 중 참고하고 숙지해야 할 내용에 대한 리뷰는 하였는가?

2) 제안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종전에 유사한 가치를 지향하거나 내용을 적용한 프로그램의 시행 경험을 적시하였는가? 나아가 단순한 요약 서술이 아니라 그러한 경험들이 어떻게 본 사업의 성공적 수행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분석적으로 기술하고 있는가?

3) 신규 사업이라서 선행 프로그램이나 유사 프로그램 진행 경험이 없을지라도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충분한 열정과 자질이 있음을 국내외 문헌 또는 경험을

통해 제시하고 있는가?

3. 관전 포인트

작성자가 이 프로그램을 작성함에 있어 기존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었고 그에 따른 성과와 한계는 무엇인지를 충분히 검토한 후 이를 토대로 본 프로그램을 기획하려는 노력의 흔적을 면밀히 살피며, 유사 프로그램 시행 경험이 있거나 또는 없더라도 이 프로그램을 둘러싼 국내외 논의들을 충분히 검토했는지를 살핀다.

V. 사업목적

1. 작성법

사업 목적은 사업을 의도한 바대로 원활하게 진행해서 설정된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바를 의미한다. 그러한 사업 목적에 대한 진술은 제목과 사업 목표 설정 사이에 있다. 즉, 사업 목적은 제목과 방향을 같이 해야 하며, 사업 목표가 달성되면 사업 목적을 이루는 데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자기점검

1) 사업 목적이 서술의 전후 관계에서 연속성을 갖고 있는가?

- 사업 핵심 개요에서 진술한 내용과 일치하는가?

- 이후에 제시할 과정 목표 및 성과 목표와 동일 맥락에 있는가? 즉, 과정 목표 및 성과목표를 달성하면 사업 목적 달성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게 되는 것을 확신하는가?

2) 표현된 사업 목적이 명확하게 이해되는가?

3. 관전 포인트

목적 진술이 명확한지, 아니면 미사여구에 불과한지를 살핀다. 이후에는 사업 목표를 검토할 때 목적과 목표 간의 관련성을 따져볼 것이다. 즉 사업 목표가 달성되면 직간접적으로 사업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지를 살핀다.

VI. 대상자 범위 및 선정 방법

1. 작성법

여러분들은 이 대목에서 의아해 할 것이다. 목적이 나온 이후에는 목표가 나오는 것이 통례인데 갑자기 대상자 범위 및 선정 방법이 나왔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앞의 흐름을 되짚어 보자. 제목이 결정되고-물론 내용이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고 제목을 확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흐름 그대로만 보면-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 이를 수행하는데 역량이 있음을 보여주고, 이 사업의 목표가 무엇인지가 나름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다. 그런데 여기에서 목표가 나와 버리면 사업 참여자 누구의 무엇을-예를 들어 결혼 이주 여성의 남편의 자아 존중감을-어떻게 바꿀 것인가가 제시되어야 하는데 독자들은 아직 사업의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목표의 타겟이 나와 버리면 논리적으로 전도(顛倒)가 되는 꼴이 되고 만다. 그러므로 이 사업에

참여할 대상이 먼저 확정이 되어야 한다.

여러 복지 재단 또는 공동 모금회에 신청된 사업 계획서를 다년간 심사하면서 느낀 것은 작성된 대상자 범위가 너무 추상적이거나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장애인의 역량 강화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읽어보아야만 그 장애인이 초등학교 학령기에 있는 장애 아동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것도 시설 아동이나 재가 아동이나에 따라 또 세분화될 필요가 있다. 결국에는 초등학교 고학년(4~6학년) 재학 중인 재가 장애 아동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정확한 표현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대상 몇 명을 사업에 참여시킬 것인지,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과 우선 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지, 모집 절차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만약 응모자가 적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고민도 보다 구체화되어야 한다. 이를 강조하는 이유는 이에 대한 고민이 구체화되지 않으면 선정되어 예산을 지원받고 나서라도 대상자가 모집되지 않아 한참동안 사업이 진전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기 때문이다. 개념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현실은 다른 것이다. 물론 그러한 결절(breakage)은 아무리 충분히 고민하더라도 일어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사업의 필요성을 구구절절하게 쓸 만큼의 열정이 존중받기 위해서는 대상자 모집 등 행정 절차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판단하는 대목이 반드시 요구된다 하겠다. 아래에서는 냉정하게 조목조목 짚어보아야 할 대상자 범위 및 선정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고자 한다.

1) 프로그램 대상자 범위

대상자 범위는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여 종결 시까지 함께 할 서비스 이용 대상자의 개념적 경계를 뜻한다. 즉, ‘누구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전개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를 작성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

첫째, 개념적 범위이다. 이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을 선정할 수 있는 기준에 해당한다. 예를 들면 ‘차상위 계층 한 부모 가족 내 부(모)와 초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라고 정해 볼 수 있다.

둘째, 신청 기관에서 기존 프로그램 시행 과정에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욕구를 발견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삼성에 신청하는 경우 새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할 대상의 일부는 이미 염두에 두어져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이들이 어떤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참여하게 된 기관 이용자인지’에 대해 기술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관 이용자란을 비워두면 된다.

2) 대상자 구분

프로그램 참여 대상이 확정되더라도 모두가 동일한 비중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한 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 개선에 관한 것이면 양측이 동일 비중을 가지게 될 수 있는 반면, 그러한 가족 내 아동의 사회적 관계망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면 아동이 주된 참여자이고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모)가 주변참여자로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 대상으로 간주될 수 있다.

장애-비장애 형제간의 관계개선 프로그램에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 이 때 주된 참여자는 장애 및 비장애 형제이고 주변 참여자를 부모로 간주할 수 있다.

3) 대상자 선정방법

여기에서는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과 그 대상을 어떻게 모을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선 그 기준이 무엇인지, 그 기준이 명확한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대상 모집 홍보 방법을 기술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선정에 따른 애로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는지, 그러한 애로사항을 타개할 방법은 무엇인지를 미리 고민해 두어야 한다.

프로그램 참여 대상자 발굴이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다. 그만큼 발굴이 늦어져 프로그램 진행이 지연될 수도 있다. 아울러 참여 대상자를 적절하게 발굴·유지한다는 것은 마치 시작이 반인 것처럼 이미 성공의 절반을 예약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참여 대상자 발굴이 매우 중요한데 그 방안 중의 하나는 참여 대상자 발굴 과정 자체를 하나의 프로그램 내용으로 포함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다문화 가정의 아빠를 중심으로 한 가족을 발굴하기 위해 지역 내 저명한 강사분을 모셔 특강을 개최하고 특강에 참여하는 사람 중에서 프로그램 참여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는 방법도 프로그램 진행과 관련된 분위기를 고조시키면서 기관 및 프로그램 홍보도 하고 대상자 모집도 적극적으로 공략해 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2. 자기점검

1) 동 사업에 참여할 대상의 범위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2) 대상자 선정 방법 및 절차가 구체적이고 우선 순위가 분명한가? 그러한 방법으로 진행하면 순조롭게 대상이 모집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3) ‘주된 참여자’와 ‘주변 참여자’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서술하고 있는가?

- 프로그램 내용에 등장하게 될 참여자들이 동일한 비중인지 다른 비중인지를 설명하고 있는가?

- 자기 기관과 함께 협력하여 사업을 수행할 파트너를 대상자에 포함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지 않는가?

3. 관전 포인트

대상자 범위를 보면서 얼마나 치열하게 프로그램 구상에 고민의 시간을 투여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대상은 곧 프로그램에의 참여자이며 프로그램의 성격을 규정하는 주요 요인이기 때문이다. 명확하게 기술되었는지도 따질 것이다. 주된 참여자와 주변 참여자를 개념 있게 구분하는 것도 프로그램 구성 논리와 흐름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이들 간의 관계도 면밀히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상자 선정 방법도 상투적인 것인지(예를 들어, 단순히 저소득층 위주라든가, 참여하고 싶은 의지가 강한 사람 등의 서술 방식), 이 프로그램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고민하여 적은 것인지 살펴볼 것이다.

VII. 지향가치 ■ 철학 ■ 방향 설정

1. 작성법

20여 년 전 사회복지 기관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당시에는 현물 또는 현물 구매를 위한 현금을 지급하던 단순함에서 벗어나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그러한 지원이 이루려고 한 바를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진행 과정을 잘 관리할 것인지를 포괄하는 ‘프로그램’이 실천 현장에서 활성화되기를 바랐던 의도가 있었다. 하지만 그러한 의도와는 달리 열악한 현장의 상황을 이해하다 보면 정말 이러한 사업, 저러한 프로그램이 꼭 필요하다고 느껴 실무자들이 복지 재단에 자금 지원을 신청하게 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부족한 것을 단순히 지원하는’ 사업을 ‘복지 재단’에서 지원해야 할 당위성을 어떻게 찾아야 할까? 그러한 것은 오히려 정부에서 해야 할 몫이 아닌가? 예를 들어 OO군(郡)에 소재해 있는 어떤 복지관이 지적장애인의 성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데 관련 예산이 없어 복지 재단에 지원 신청을 하게 되면? 만약 그러한 프로그램의 매뉴얼이 수차례 개발된 바 있고 많은 논의를 더한 성과물이 이미 존재함에도 그 프로그램의 시행하는 데 재원이 필요하다 하여 지원 신청한 것에 대해 복지 재단은 어떤 매력을 느낄 수 있을까? 물론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다. 지역적으로 자원 배분이 형평성을 잃었고 정보 접근 또한 제약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보다 열악한 지역이나 기관에 지원의 우선권을 배분하는 것도 틀린 바가 아니다. 그러나 그러한 형평성의 개념은 한국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각종 지부에서 담당해 주는 것이 옳다고 본다. 대신 복지 재단에서는 여러 사회복지 기관 또는 실천 현장에 함의를 던져줄 수 있고 새로운 관점에서의 창의적인 접근 방식이 시도되며 그에 따른 결과물들이 축적되게 만드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에 더 무게 중심을 두었으면 좋겠다는 판단이다. 그러므로 사회복지 기관에서는 해당 지역 사회에 이 프로그램이 꼭 필요하다는 것은 ‘사업 필요성’에서 진술한 바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필요한 그 사유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을 시행하는 접근 방식, 이루고자 하는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해 보다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발달장애인의 제한적 경험을 뛰어넘기 위해 계절별 역사 유적지를 탐방하더라도 그들의 ‘발달 지원’을 위해 어떤 프로그램이 고안될 수 있는지, ‘선택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서 탐방 기획 및 과정에서 어떻게 선택권의 가치를 녹여 넣을 것인지, 그러한 탐방이 장애인 인권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등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다. 단순히 ‘매주 토요일 여가 시간이 많아진 학령기 아동에게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니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한 재원을 달라’고 하면 복지 재단으로서는 그러한 환경 변화에 따라 프로그램 사업이 더 필요하게 되었는데 왜 하필 그 기관에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하는지, 그렇게 지원했을 때 타 기관들에게 주는 함의는 무엇인지를 자문해 보게 된다. 한편, 모든 기관에 지원해야 하는 것이라면 지원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같은 지원이라 하더라도 접근하는 방식에서,

지향하는 가치에서 차별성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러한 지향 가치, 철학 등이 전체 사업에 대한 것인지, 세부 프로그램에 대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전체 프로그램을 이끌어 가는 지향가치가 있을 수 있고, 이와는 별개로 세부 프로그램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지향 가치가 병렬적으로 제시될 수도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자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사업인데 이를 위해서는 세부 프로그램으로 당사자에 대한 ‘이용자 참여(user participation)’이 강조되어야 할 때 이를 모두 적시해도 상관없다. 아울러 「작은나눔 큰사랑」에서는 최근의 사회 서비스 제공의 가치와 방향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관심을 둔다. 예를 들면, 반찬 배달 서비스라도 종전의 방식과 달리 어떻게 서비스 이용자의 주체적인 참여를 담보해 낼 것인지, 농어촌 지역의 모형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등 서비스 제공 방식과 가치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핵심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프로그램 내용으로 구성하고 이를 성공적 경험으로 이끌고 부족한 부분을 피드백하여 보다 나은 프로그램으로 유도하는 방향성을 내포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단순히 서비스의 결핍 자체를 사각지대로 간주하기보다는 종전에는 시도해 보지 않았던 방식과 가치를 사각지대라고 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기관의 노력을 삼성복지재단이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

2. 자기점검

1) 제시되고 있는 지향 가치가 최근의 사회 서비스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않는가?

2) 지향 가치가 문제의 원인 진단과 연결되어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3) 지향 가치와 방향이 어떻게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으로 연결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는가?

4) 거시적 차원에서 사업을 이끌어 가는 가치와 (있다면) 세부 프로그램이 지향하는 가치가 모두 표현되고 있는가?

3. 관전포인트

문제 원인을 어디에 두고 있어서 그러한 지향 가치를 설정했는지 관련성을 따져볼 것이다. 또 그러한 가치가 실제 세부프로그램과 그에 따른 세부 활동에 녹여져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만약 그러한 가치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본다.

VIII. 사업목표

1. 작성법

목표 설정에는 목표 범위, 목표 내용, 목표 측정 가능성, 하위 목표의 적절성 등이 포함된다. 목표는 프로그램의 목적으로부터 연역되는데, 프로그램 목적의 달성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측정 지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목표는

구체적이면서 지향하는 바가 뚜렷하게 제시되어야 하고 측정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1) 목표 종류

목표는 분류 기준에 따라 상위 목표와 하위 목표, 과정 목표와 성과 목표, 기관 목표와 활동 목표, 영향 목표와 서비스 목표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에서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과정 목표와 성과 목표이다.

과정 목표는 프로그램 수행 과정별로 이루어지거나 설정될 수 있는 목표로서 대상 10명을 모집한다든지, 서비스 회기를 8회로 한다든지 등을 의미하며 ‘내가, 우리 기관이 이 프로그램을 기획·진행하면서 이 정도의 내용을 갖추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성과 목표는 일련의 프로그램이 과정 목표에 따라 진행된 결과 종국적인 변화 대상의 변화치를 나타내는 최종적인 목표를 뜻한다.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면 ‘한 부모의 만족도를 30% 향상시킨다든지, 참여자 90%가 자격증을 획득한다든지’ 하는 목표를 말한다. 전자가 실무자 또는 기관 입장에서 어떠한 것을 하겠다는 것이라면 후자는 서비스 이용자 입장에서 어떠한 면이 얼마만큼 변화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목표를 설정·표현할 때는 과정 목표와 성과 목표를 연결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아울러 과정 목표의 내용은 이후 세부 단위 프로그램에서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2) 목표 내용

첫째, 목표 내용은 목적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아니라 본 사업을 통해 구체적으로 달성 가능한 지점을 명시하는 것이 목표 내용으로 되어야 한다.

둘째, 목표 간 배타적이어야 한다. 물론 목표 1과 목표 2가 전혀 별개의 것이 될 수 없는 것은 한 목적 아래에서 도출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목표 2가 목표 1의 하위 목표임에도 별도로 설정되어서는 곤란하다.

셋째, 목표는 측정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목표는 평가 지표 및 도구와 연결되어 있다. 왜냐하면 세워진 목표는 실제 사업 종료 시점에서 달성되었는지, 얼마나 달성하였는지를 측정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목표는 이후 평가 부분과 반드시 함께 패키지로 검토해야 한다.

넷째, 수단과 목표 간의 일치성이다. 제시되어 있는 문장에서 양자 간 논리적 모순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다섯째, 프로그램 성립 및 진행의 전제 조건을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 종종 목표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필수적인 전제 조건에 해당하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제시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발달장애 아동 부모들의 자조 모임을 통한 자아 존중감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의 구성 요소로 두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하면서 첫 번째 목표로 ‘발달장애 아동의 부모들로 구성되는 자조 모임을 구성한다’를 드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것은 목표로 설정될 수 없다. 자조 모임을 구성하지 않으면 이 프로그램의 성립조차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어차피 해내야 할 사업의 일환인데 그것이 목표로 제시되는 것은 마치 전제 조건을 본 내용의 하위 구성 요소로 두는 오류와 유사하기 때문에 이를 유심히 살펴보아야 한다.

2. 자기 점검

1) 목표 범위

- ① 프로그램 시행의 목적이 충분히 목표에 반영되어 있는가?
- ② 프로그램 성립의 사전 요건적 성격의 내용이 목표에서 배제되어 있는가?

2) 목표 내용

- ① 목적과 목표를 혼동하고 있지는 않는가?
- ② 과정 목표와 성과 목표가 모두 적절하게 제시되었는가?
- ③ 설정된 목표 간에 중복이 일어나거나 포함 관계에 있지는 않는가?
- ④ 설정된 목표가 측정 가능한 것인가? (목표 달성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수단이 이미 강구되었는가?)
- ⑤ 하위 목표 달성이 제시된 상위 목표 달성 여부를 가늠할 수 있게 하는가?

3. 관전 포인트

성과 목표에 설정될 수 있는 내용들이 제시된 것인지를 먼저 살펴보고 이것이 어떻게 평가될 것인지에 대해 이후 평가 부문에서 제시된 내용과 함께 검토하여 상호 일관성이 있는지를 조목조목 따져 볼 것이다. 이는 이후 평가 부문에서 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가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으며 이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연결되는 관점을 가지고 접근한 것인지 살펴볼 것이다.

IX. 프로그램의 내용

1. 작성법

프로그램의 내용은 사업 기획의 본체에 해당한다.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수단에 해당하는 단위 프로그램 내용과 작동 방식을 모두 포함한다. 이를 담아내기 위해서는 세부 프로그램이 어떠한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인지를 밝혀야 한다. 또 그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세부 활동들이 무엇이며 요구되는 자원들은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한다. 작성 양식에서 요구하고 있는 틀은 종전의 것과 매우 다르다. 그만큼 종전 양식은 프로그램 내용을 기술하는 데 필요 이상으로 정보를 중복적으로 요구하여 작성자로 하여금 불필요한 작업을 계속 하도록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성과 목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각 세부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활동들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담아내는데 한계가 있었다. 아래에서는 기존의 양식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짚어보고 이를 반추하여 새로운 양식의 작성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1) 기존 양식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이에 대해 비판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많은 내용이 중복적으로 기재하게 되었다. 총 5페이지에 걸쳐 작성하게 되어있는 이 표들의 세부 구성 항목을 살펴보면

프로그램명은 3번, 프로그램 매개체와 사회복지사·클라이언트의 역할과 과업은 2번, 소요 시간과 장소도 반복적으로 적게 되어 있다. 전체적인 틀을 재구성해야 할 필요성이 생기게 된다. 둘째, 상투적으로 적는 내용들이라는 것이다.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프로그램 진행자, 중재자, 옹호자 등의 역할일 것이 뻔하고 클라이언트의 역할도 적극적인 참여자에 지나지 않는다. 이를 계속해서 적게 만드는 구조가 과거의 양식이다. 셋째, 프로그램 수행 인력은 작성자와 작성자를 보조할 인력임이 분명하다. 프로그램의 주(主) 담당자와 부(副) 담당자는 사업 개요에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여기에서 중복 기재할 이유가 없다. 넷째, 선정된 이후 자문 교수와 상의해서 얼마든지 변경 가능한 것을 심사 내용에 포함시켜 놓고 정작 심사 시에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면 굳이 이를 작성하게 할 이유가 없다. 장소 또는 소요 시간 등이 그러하다. 다섯째,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서 기존의 양식으로는 어떻게 사업이 작동될 것인지, 어떻게 세부 프로그램들 간에 연결되어 있는지, 이러한 세부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성과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는 적어야 할 양은 매우 많은데 심사자의 입장에서는 판단할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또 작성자가 제시된 양식을 떼워 나가면서 스스로 자기 논리를 공고히 해 나가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었다. 이런 관점에서 종전의 양식의 대체하는 틀은 작성자가 프로그램의 구조를 밝히고, 이를 구성하는 특정한 세부 프로그램을 왜 고려하게 되었고 또 어떻게 작동하는지, 서로의 관계는 어떠한지, 추진 일정 등에 대한 내용을 명료하게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2) 구체적인 작성 내용

제시한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으로서의 사업 내용은 다양한 묶음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는데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성과 목표로부터 도출되는 세부 프로그램

제시되는 세부 프로그램이 어떤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인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한 세부 프로그램을 기술하는 데 필요한 것은 세부 프로그램을 완결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들(activities), 요구되는 전문성(예를 들어, 아동의 그림을 보고 이를 해석하고 행동 변화를 위한 개입 기술을 분석·제시하는 능력, 집단 프로그램 운영 능력 등)이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것이다. 아울러 그러한 활동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프로그램 신청 기관 외의 도움이 필요한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기술한다. 도움의 내용으로는 자원봉사자, 전문 강사, 장소 제공, 후원 물품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이를 기술하는 것이다. 한편, 세부 프로그램은 성과 목표와의 관계에 있어서 배타적인 성격을 띠는 것이 아니라 한 세부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성과 목표 달성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는 프로그램 3 및 4가 굵은 연결선으로 성과 목표에 닿아 있는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다.

② 세부 프로그램의 구현 방식 및 선정 사유

세부 프로그램을 선정함에 있어 다양한 대안들이 고려될 수 있다. 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이 한 가지로 국한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작성자도 이 때 제일 고민이 될 것이다. 이 방법을 쓸 것인지, 저 방법을 쓸 것인지 또 논리를 무엇으로 가져갈 것인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이 이어질 것이다. 이를 정리하는 작업을 여기서 하자는 것이다. A도 B도 아닌 C의 우수성, 적합성을 설명해 내야 한다. 여기에는 지리적 여건, 기존 사업의 연속성, 전문가 확보 가능성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숨어 있을 수 있다. 이를 드러내야 한다. 이때 실행 가능성(기술적, 경제적, 사회윤리적, 정치적 요인)과 바람직함(효과성, 효율성, 적합성, 형평성) 등을 기준 삼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그러한 세부 프로그램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물론 앞에서 세부 프로그램의 구조도에서 핵심 내용은 설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제시되는 내용이 도식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작동되는지에 대해서는 그것만으로는 이해가 부족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오해를 할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앞의 구조도를 중언부언하기보다는 작동 방식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된다.

③ 세부 프로그램 간의 관계

세부 프로그램 간에 어떤 선행 관계를 갖는지, 상호 어떤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지, 배타적 관계라면 그렇게 몇 가지로 구성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

④ 추진 일정

추진 일정은 추진 일정표로 제시하되, 일정 설계에서 주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표 아래에 적시해야 한다. 예를 들면 아동의 학기 중과 방학을 구분하여 프로그램을 편성하거나 농촌 지역의 농번기와 농한기를 고려한다든지, 복지관의 연중 프로그램과의 유기적 연계를 고려한 일정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2. 자기 점검

1) 제시한 가치에 적합한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는가?

- 당위론적으로 학문적 연구가 있다는 것으로 프로그램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하지는 않는가?

2) 여러 세부 프로그램 중에 제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목표 달성을 위해 가장 적합한 것임을 어떻게 주장할 것인가?

3) 성과 목표로부터 세부 프로그램이 도출되고 있는가?

4) 세부 프로그램간의 상호 관련성이 충분히 설명되고 있는가?

5) 추진 일정이 사업 대상 및 내용, 기관의 형편 등을 고려하여 구성되었는가?

3. 관전 포인트

프로그램 구조도를 보면서 각 세부 프로그램이 어떻게 작동되며 또 실제로 그러한 과정을 통해 성과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인지를 검토한다. 물론 핵심 역량이나 외부 지원 필요 내용의 기재도 형식적으로 적은 것인지 고민을 구체화한 것인지를 따져본다. 아울러 왜 하필이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세부 프로그램을

업무에 두었는지가 납득되는지를 살핀다.

X. 네트워크 구성

1. 작성법

타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성은 그 기관이 위치한 지역 실정 또는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대도시에서는 사회복지 및 관련 기관·단체가 많아 연계·협력할 가능성이 높지만 농어촌 지역에서는 절대적으로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구성할 대상 또는 사업 내용이 많지 않다. 기존의 프로그램 내용을 검토해 보면 ‘네트워크 구축 등’ 기관 간 연계를 전제로 한 경우도 있었던 반면, 단독 사업으로 하더라도 우리가 가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서비스 이용자 중심으로 2개 기관 이상이 협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거나 제안자가 소속된 기관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전문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기관에서 사업을 주도해 나가겠다는 오만과 독선의 경우도 없지 않다. 비단 이 사례뿐만 아니라 더러 개별 기관 중심 프로그램 운영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의문에 대해 속 시원한 대답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단독 사업 수행의 모습을 보이는 사업 계획서 제안을 보게 된다.

그러나 이제는 바꾸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2~3개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보다 이용자 친화적인 서비스 제공 방식을 개발해야 한다. 물론 그런 방식의 개발·적용이 사회복지 시설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게 되는 발판이 되어야 한다. 언제까지 경쟁하는 제로섬 게임의 패러다임에 사로잡혀 있어야 하는가!

작은나눔 큰사랑에서는 타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성을 지향한다. 여기서의 기관은 사회복지 기관 및 단체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업의 내용에 따라 경찰서, 은행, 중소기업 등과도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다. 여기에는 사업 신청 기관이 주 기관이 되고 타 기관이 관련 기관이 되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방안과 2~3개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 계획서를 제안하는 방안이다.

1) 신청 기관 중심의 네트워크

사업 계획서 신청 기관이 사업 수행에의 핵심적 역할을 감당하되, 관련 기관의 연계·협력의 필요성을 미리 인식하고 어떤 세부 프로그램에 이들로부터 어떤 협력을 받을 것인지를 미리 예측하고 이에 대한 협조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2) 2~3개 기관 컨소시엄 구성

2~3개 기관이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작은나눔 큰사랑」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금액은 기관의 수에 따라 상향 조정될 수 있지만 대신 아래의 사항들을 준수하여야 하여 선정 이후에도 컨소시엄의 형태에 맞는 자문에 응해야 한다.

① 프로포절 작성 단계

㉠ 컨소시엄 구성의 필요성과 구성 시 발생하는 시너지 효과에 대해 설명하여야 한다.

㉞ 참여 기관 모두가 사업 범위를 확정하고 세부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데 참여하였음을 밝혀야 한다.

㉟ 각 참여 기관이 사업 수행 과정에서 수행하게 될 역할에 대해 명확하게 진술하여야 한다.

㊱ 각 참여 기관은 사업을 수행하면서 어떤 형태의 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할 것인지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㊲ 각 참여 기관들 간의 파트너십 수준을 제시하고, 제시한 수준의 타당성을 설명해야 한다. 아울러 네트워크 운영에의 각 참여 기관의 역할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㊳ 사업 평가에 대해 각 참여 기관의 소관과 모든 참여 기관의 공동 책임인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㊴ 사업 예산은 참여 기관의 사업 소관과 양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

㊵ 사업 평가에 대해 각 참여 기관의 소관과 모든 참여 기관의 공동 책임인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㊶ 사업 예산은 참여 기관의 사업 소관과 양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

㊷ 최종 보고서에 네트워크의 구성·운영 및 서비스 이용자 중심적 서비스 프로세스에 대한 내용을 담아내는 데 공동의 책임이 있다.

2. 자기 점검

1) 지역 내 관련 기관들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제시되었는가?

2) 이들 기관과의 네트워크 체계도가 제시되었는가?

3) 네트워크가 작동하기 위해 신청 기관 및 타 기관의 역할이 분명하게 제시되었는가?

4) 업무 연계·협력의 방식이 상세하게 기술되었는가?

5) 어떤 수준에서 컨소시엄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제시되었는가?

3. 관전 포인트

네트워크라고 제시되어 있는 것이 그림에 선만 그어놓은 것인지, 실제 관계를 맺는 기관들 간에 역할 분담이 명확한지, 그리고 그에 따라 어떻게 사업이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진술이 명확한지를 살펴볼 것이다

XI. 프로그램 평가

1. 작성법

프로그램을 기획·구성하는 데 평가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그만큼 평가를 왜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살펴보면 자신이 의도하고 기획한 프로그램의 목적, 목표가 정말 정확하게 표현되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처음에 다소 부정확하였다 하더라도 이후 보완할 기회를 평가 지표 설정, 평가 방법 등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가질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평가를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다가도 어느 순간에서는 평가자가 되어야 하는 역할 변신도 필요하게 된다.

평가는 단순히 ‘의미가 있었다’,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왔다’, ‘성공적이었다’라는 표현으로 그쳐서는 곤란하다. 오히려 어떤 내용들이 진행되었고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냉정하게 되돌아보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은 평가 방향, 평가 범위, 평가 방식이다.

1) 평가 방향

프로그램 평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산출(과정) 목표와 성과 목표가 실제 달성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실제로 계획한 횟수만큼 모든 것이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서 서비스 이용자들이 얼마나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산출(과정) 목표는 프로그램 선정 이후 자문 교수와의 협의 과정에서 변화될 수도 있고 컨설팅 과정에서 끊임없이 산출 목표 변경 또는 달성 정도가 점검된다. 둘째는 프로그램에 대한 과정 평가이다. 이는 과정 목표에 대한 달성도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프로그램의 진행 과정에서 겪었던 다양한 시행착오와 난관들, 그러한 애로사항에 대해 실무자가 어떻게 타개 방안을 제시했으며 그 방안을 추진함에 있어 당초 계획과 어떻게 프로그램 내용이 달라졌는지, 그 과정에서 시사해 주는 함의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물론 프로그램을 시행한 이후라면 실무자의 노력을 통해 그 내용이 ‘의미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다. 그러나 그것이 평가의 전부는 아니라는 의미다. 이 프로그램의 실시 결과 ‘보기 좋았더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보다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이 프로그램을 응용하여 실제 자신의 기관에 적용하고 싶은 또 다른 실무자에게 의미 있는 내용을 전달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평가자는 평가를 통해 자기만족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수행 과정별로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가 평가 내용에 함께 포섭되어야 한다.

2) 평가 범위

① 범위 확정을 위해 고려해야 할 것

평가의 범위는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나 모든 세부 프로그램의 내용을 평가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그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목적과 목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왜 이 프로그램을 시작했는지에 대한 좌표 설정이 유동적이면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프로그램 하나하나가 다 의미 있어 보이기 때문에 전체 흐름과 체계를 망각하기 쉽다. 그러므로 먼저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대표적 평가 방법을 미리 제시해 두고, 그 평가 방법을 수행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별 과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체크 리스트를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다.

② 범위 확정을 위한 질문들

아래는 평가 범위를 확정함에 있어 고려해 보아야 할 것들이다.

㉠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변화의 흐름을 보여주어야 할 필요가 있는가?

㉡ 필요하다면,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반드시 평가해야 할 시기는 언제인가?
(예를 들어 프로그램 시작 전, 중간 몇 회기 경과 후, 종료 등)

㉔ 정말 이 평가가 필요한가? 최선인가? 목표 측정에 반드시 필요한가?

㉕ 각 세부 프로그램 하나하나에 대해 다 평가하자면 실무자는 평가에 매달려 실제 프로그램 수행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투입·과정·산출을 통해 얻게 되는 성과는 포괄적인 의미를 지닌다. 그러한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나 지수가 이미 개발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각 프로그램마다 고유의 내용과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모두 반영하기 어렵다.

㉖ 그렇다면 그러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대표 지표를 선정하여 이를 정확하게 측정·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한 대표 지표를 선정할 때에는 이것이 목표 달성 여부와 정도를 판단하는 데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3) 평가 방식

평가는 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양적 평가 방법으로는 각종 설문 조사와 실험 설계가 가장 많이 쓰이고 질적 평가 방법으로는 면접(interview)과 참여 관찰 방법이 자주 쓰인다.

양적 평가를 위해 활용되는 사회복지 분야의 척도들은 반포종합사회복지관과 서울대학교 실천사회복지연구회에서 펴낸 자아 개념 척도, 심리 및 정신건강 척도, 사회적 기능 척도, 가족 관련 척도, 사회적 관계망 척도, 조직 및 직무 관련 척도 등 6분야의 106개의 척도 중 어느 하나를 채택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척도들이 프로그램 성과 측정을 위해 개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기관 내부의 논의와 자문 교수의 자문을 거쳐 일부 수정한 척도를 새롭게 개발·적용하는 것도 일정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다고 본다.

4) 목표에 대한 평가 방법

위의 설명을 종합하여 기재하여야 할 평가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성과목표	목표에 대한 평가 방법			
	성과 지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측정 도구·방법)	자료수집 시기
1.	자아효능감 변화율	아버지	설문조사	사전(4월)/사후 (12월)
2.	00만족도 향상	자녀	만족도조사	사후(12월)

2. 자기점검

- 1) 프로그램 평가 틀이 성과 목표와 연결하여 적절하게 제시되었는가?
- 2) 성과 지표가 오류 없이 정확하게 제시되었는가?
- 3) 자료 수집 방법이 타당하게 제시되었는가? 그렇게 하면 적절한 자료가 수집되는가?
- 4) 그렇게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미리 예측해서 필요한 내용들이 산출되게 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였는가? (각종 기록지 등의 작성 방식을 어떻게 하겠다든지 등)

5) 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갖고 있는가?

6) 질적인 과정 평가와 성과 평가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가?

3. 판전 포인트

성과 목표-성과 지표-자료 수집 방법 등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는지, 꼭 필요한 평가 항목으로 구성되었는지, 실제 평가 가능할 것인지, 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가 (필요에 따라) 균형 있게 제시되었는지, 양자 간의 관계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등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지표로 설정될 수 없는 것을 적었을 때는 심사자에게 매우 불리한 정보로 작용할 것이며 과욕을 부리는 것은 제대로 하지 못할 가능성을 내포하게 되기 때문에 심사자는 이 또한 주의 깊게 경계할 것이다.

XII. 예산편성

1. 작성법

예산은 제안자가 기획한 사업을 실제 집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예산 편성에는 예산 편성표 구조, 예산 편성 세부 내용 및 수입 발생 처리 문제가 포함된다.

1) 예산 편성표 구조

현재로서는 흔히 사용되고 있는 예산 편성표는 두 가지로 작성되고 있다. 첫 번째는 직접 경비와 간접 경비를 나눈 것이고 두 번째는 삼성 신청분과 기관 배합 자금으로 나누어진다. 그러나 본 매뉴얼에서는 아래와 같이 작성토록 한다.

① 인건비는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 다만, 추가 인력 채용 등 불가피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지만 아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삼성과 해당 기관이 함께 인건비를 부담한다. 그러므로 부담 비율과 그에 따른 부담금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③ 지원 사업 종료 후에 기관의 해당 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 계획이 어떠한지에 대해 서술하여야 한다.

④ 수용비(관리 운영비 예를 들면, 수도 요금, 전기료 등 각종 공과금)는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아니한다.

⑤ 신청 예산은 삼성 신청분과 기관 배합 자금으로 나누어 기재하되, 전체 내용을 한 표로 작성한다.

2) 예산 편성 세부 내용

삼성에서는 예산 집행에 대한 정산 개념이 없다. 어떻게 쓰든지 자문 교수와 협의하면 프로그램의 목적 달성을 위해 가장 최적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데 걸림돌이 없고 예산변경 등에 소요되는 시간적 비용 또한 최소화하고 있다. 그러므로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과도하게 상식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를 허용한다. 또 지역적 격차도 인정한다. 그러면서도 아래의 항목들은 작성 전에 반드시 짚어보아야 한다.

① 사업의 내용과 예산 편성의 세부 항목이 연결되어 있는가? 사업 내용은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누락된 것은 없는가?

② 세부 프로그램을 수행하는데 심사자가 납득할 만한 정도의 객관성을 담보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을 수 있는 항목은 표 아래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서비스 단위 생산량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3) 수입 발생 처리 문제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면 프로그램 참여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을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수입에 대해서는 기관이 잡수입으로 처리해서는 안 되고 삼성에 신청한 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계상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데 사용하여야 한다.

2. 자기 점검

1) 사업비(인건비 및 수용비 제외)에 대하여 삼성 신청분과 자부담분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는가?

2) 사업의 내용과 예산 편성의 세부 항목이 연결되어 있는가? 사업 내용은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누락된 것은 없는가?

3) 세부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데 심사자가 납득할 만한 정도의 객관성을 담보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을 수 있는 항목은 표 아래에 그 사유를 명시하고 있는가?

4)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수입이 발생하였을 때(참가비 등)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3. 관전 포인트

앞의 내용을 보다 보면 어떤 때 예산이 소요되겠다는 감각이 생기는데 예산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으면 일관성 결여로 간주된다. 또 작성자가 작성 내용의 전·후를 꿰뚫어보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남기게 된다. 한편 과다 계상된 예산은 신뢰성을 떨어뜨린다. 그러므로 세부 프로그램의 내용과 예산 편성간의 일관성, 편성액의 신뢰성이 주된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

VIII. 제언

1. 단위프로그램 반영

1) 프로그램 진행의 필요성, 목적, 목표 설정시 프로포절 작성법에 맞추어 작성
2) 평가방법 작성시 보다 실효성 있는 평가, 목표달성에 대한 정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

3) 단위프로그램 평가서 작성시 목표달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

4) 사업명을 프로포절 작성법에 맞추어 작성

2. 연간 사업계획서/평가서 작성시 반영

1) 목적, 목표 설정시 반영

2) 평가서 작성시 과정평가, 효과평가 작성을 통해 목표 달성에 대한 평가 실시

작업표본평가의 이해



팀 명	직업재활팀
일 시	2014. 09. 25. 17:00~19:30
발표자	강 명 진
장 소	사무실, 평가실



작업표본평가의 이해

< 작업표본평가지 유념사항 >

직업평가는 피검자의 잔존능력/최대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임을 기억하고 아래의 사항을 준수한다.

* 매뉴얼 숙지

: 정확한 평가를 위해 평가매뉴얼을 숙지한다. 매뉴얼이 통일되지 않을 경우 평가자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 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진다.

* 환경셋팅

: 평가용지, 도구 등 평가에 필요한 물품을 확인하고, 평가공간은 편안하고 깔끔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정돈한다.

* 사전설명

: 피검자가 최선을 다해 검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검사의 목적, 소요시간, 내용 등 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설명함으로써 동기를 부여한다.

: 경우에 따라 검사자의 기록행위에 대해 관심을 갖거나 의심, 불안해 하는 피검자가 있으므로 기록을 한다는 것을 사전에 공지한다.

* 정확한 설명 및 시범

: 시범은 매뉴얼에서 제시하는 수행방법에 맞추어 정확하게 수행하며, 오류와 관련된 시범도 실시하여 오류발생의 가능성을 낮춘다. 인지가 낮은 피검자일 경우에는 피검자와 같은 방향에 서서 시범을 보여 이해도를 높인다.

* 보조지시를 적절하게 활용하기

: 평가실시 전 주의사항을 알려주고 장애인이 숙지하였다고 판단하였을 때 평가를 시행한다.

: 평가시 평가도구에 따라 장애인이 오답을 한 경우에는 다시 시행하도록 배려하고, 재시행에도 불구하고 다시 오답을 한 경우에는 더 이상의 시범 및 지시문을 알려주지 않는다.

* 피검자의 최대능력 발휘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

: 직업평가는 피검자가 가진 기본능력, 잠재된 능력, 최대능력을 파악하기 위한 과정이므로 평가 중 피검자에 맞는 칭찬과 격려, 제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촉진하여야 한다. 또한, 관찰된 특이사항은 타 검사자가 기록용지만으로도 파악할 수 있도록 반드시 기록해 놓는다.(예: 칭찬을 했을 때 수행률이 높아짐.)

* 총체적 평가

: 피검자의 인지, 동기를 포함한 심리, 신체기능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 시간에는 3가지 영역을 엄두에 두고 관찰한다.

: 피검자의 강점뿐만 아니라 제한점도 파악하여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 실시보다 해석과 제언이 더욱 중요한 과정이며, 해석과 제언이 직업평가를 완성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손을 고려하기**

: 평가도구의 매뉴얼에서 정하고 있는 손으로 평가하며, 평가 시작 전에 항상 우세 손을 확인한다.

: 양손 협응력 평가는 비교적 기능이 좋은 손으로 평가한다.

*** 장애인의 전반적인 능력 고려하기**

: 운동능력, 지시이해력 부족 등 기질적인 뇌손상으로 인해 장애인의 수행력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능력은 있지만 흥미와 동기가 낮아서 수행력이 낮게 나온 것인지를 판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 기질적 뇌손상으로 인하여 수행력이 부족할 경우, 반복적으로 검사를 시행해 보고 잘 수행하지 못한다면 그 임상적 사항을 기록한다.

: 장애인이 건강상태나 심리상태로 인하여 참여동기가 낮을 경우, 적절한 시간을 협의하여 재검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쉬는 시간 갖기, 평가 날짜 변경하기, 간식 먹기 등)

: 위축감과 긴장감으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 반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사는 편안한 억양으로 평가를 진행한다.

: 작은 소리를 말하거나 의사표현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신체로 표현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주의가 산만한 상태로 평가에 임하는 장애인이 있다면, 큰 소리로 주의집중을 유도하여 평가를 시도하는 등 평가진행의 융통성을 발휘한다.

*** 평가지 기록**

: 추후 평가시기 및 평가자에 따른 추정, 만 연령에 대한 계산, 우세손에 따른 채점을 위해 평가일, 평가자, 피검자의 우세손은 평가 시작 전에 반드시 기록한다.

< 평가보고서 작성 >

* 평가일 / 피검자의 인적사항 기록

* 평가목적 : 직업평가를 왜 실시하며, 평가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중심으로 기록

* 평가방법 : 평가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된 평가도구 기록

* 직업평가 내용 및 결과 : 실제 사용된 각 평가도구의 내용 및 결과 작성

* 종합소견 및 직업재활방향 : 평가결과를 토대로 나타난 장애인의 직업적 강·제한점, 직업수준 및 목표, 직업권고, 종합소견 기록

* 예시(현재 사용 양식)

직업평가 소견서

등록번호	직14-09	이 름	한**	성 별	남
생년월일	1993.11.29.	주장애(급)	지적장애(3)	동반장애	-
진단일	2014. 07. 23	나 이	20.08	우세손	우

< 장애 및 주 호소내용 >

- 지적장애 3급 남성으로 직업적응훈련반 이용을 위해 접수하였으며, 프로그램 적합성 판단을 위해 직업평가를 실시함. 보호자는 적응능력 향상 후 취업을 원하며, 본인은 취업욕구가 없고 2017년 5월부터 취업하고 싶다고 표현함.

< 평가내용 >

- 직업적성(잠재력) - MDS(장애인평균 : 55, 비장애인 평균 : 100)

영역	언어-인지 (113.1)		감 각 (79.75)			운 동 (83.95)			정 서 (57.5)		통합-대응 (68.33)	
	검사 항목	K-WAIS	PPVT	BVMGT	HVDT		MAND			OEI-R	EBC	BRS
R					L	소근육	대근육	총점				
표준 점수	-	113.1	100	55	64	73	91.27	83.95	57.5	-	68.33	-

- ① 언어-인지 전문직, 감각 전환적훈련, 운동 전환적훈련, 정서 하위확장된 작업활동, 통합대응 상위확장된 작업활동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예측되는 직업수준은 90.37로 준전문직 수준(85.0-92.4)임.
- ② 수준 정의 : ‘직업탐색, 기술훈련 그리고 도제적인 배치가 이 수준에서 강조된다. 경험과 훈련을 통하여 개인은 보다 높은 수준의 기술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기도 한다. 최소한의 직업탐색 지원과 함께 직업상담과 안내는 필요할 것이다’임.
- ③ 개입해야 할 우선순위 : 정서→통합대응→감각→운동→언어인지

< 평가결과 >

- **관찰평가**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이었으며, 본인의 보고에 따르면 183cm라고 함. 평가 수행과 관련이 없는 말로 흐름을 끊는 일이 자주 발생하였으며,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이는 등 전반적으로 산만하고 인내력이 낮은 모습이었음. 또박또박 말하지 않고 말끝을 흐리는 경향이었으며, 아토피가 있는지 몸을 긁는 모습도 자주 관찰됨. 평가를 받으러 내방한 이유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평가를 받지 않고 귀가하겠다고 하는 등 동기가 저조한 모습이었음.

<p>■ 언어인지</p>	<p>수용언어 이해능력을 파악하기 위한 그림어휘력 검사 수행에서 백분위 점수 113.1점으로 평가되었으며, 이는 8세 6개월~8세 11개월 이상에 해당되는 수준임.</p> <p>자기표현이 원활하였으며, 지시에 대한 이해수준이 양호하였음. 반면, 연습문제 수행 시 제시어를 못 들었다고 하거나 하품을 하는 등 주의집중력이 낮은 수준으로 판단되었음. ‘연습문제이므로 제시어를 한 번 더 들려주지만 본문제에서는 추가로 들려줄 수 없다’고 설명하자 본문제에서 제시어를 되묻는 일이 없었음. 집중력 향상과 동기형성이 이루어진다면 수행수준이 보다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p>																				
<p>■ 감각</p>	<p>눈과 손의 협응력, 시각적 단서에 대한 주의집중력, 환경에 대한 조직력, 시지각 처리능력 확인을 위한 벤더도형(BVMGT) 검사에서 100점으로 채점되어 전문직 수준으로 평가되었음.</p> <p>도형을 비교적 정확하고 깔끔하게 묘사하였으며 인지 및 협응에 특별한 제한이 없을 것임. 연필을 잡은 모습이나 왼손으로 종이를 고정하지 않고 수행에 임하는 모습, 신속하게 그리는 모습 등 무성의한 자세가 관찰되었으며, 전반적인 산만함이나 동기저하와 무관하지 않은 모습이었음.</p> <p>시지각 및 피부감각 수용능력 파악을 위한 HVDT 검사에서는 오른손(R)-하위 확장된 작업활동(55), 왼손(L)-상위 확장된 작업활동(64)의 수준을 보이고 있음. 하위영역별 표준점수는 아래 표와 같고, 모양 전문직, 크기 하위 확장된 작업활동, 감촉 하위 확장된 작업활동, 형태 작업활동 수준을 보이고 있음.</p> <table border="1" data-bbox="432 1182 1410 1361"> <thead> <tr> <th>HVDT 하위점수</th> <th>모양</th> <th>크기</th> <th>감촉</th> <th>형태</th> </tr> </thead> <tbody> <tr> <td>R(55)</td> <td>85</td> <td>40</td> <td>61</td> <td>55</td> </tr> <tr> <td>L(64)</td> <td>118</td> <td>61</td> <td>55</td> <td>40</td> </tr> <tr> <td>평균</td> <td>101.5</td> <td>50.5</td> <td>58</td> <td>47.5</td> </tr> </tbody> </table> <p>‘가만히 있으면 머리가 아프다, 자꾸 지치고 하품이 난다’ 등 평가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음. BGT 상의 검사결과와 차이를 확연하게 드러내고 있으므로 시각정보에 의한 조정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시각정보를 차단하는 것이 집중력을 더욱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언어인지나 운동기능에 비해 낮은 수행수준으로 미루어 공간 및 상황에 대한 인지력이 낮을 가능성이 있어 부적절한 행동이 나타날 수 있을 것임.</p> <p>작업배치시 시각적 단서가 제한되지 않도록 고려하며 추가적인 시각정보를 제공할 경우 작업수행 수준이 향상될 수 있을 것임. 또한 부적절한 행동양식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사회기술훈련 등 대인관계 및 사회성 향상을 위한 개입이 반드시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p>	HVDT 하위점수	모양	크기	감촉	형태	R(55)	85	40	61	55	L(64)	118	61	55	40	평균	101.5	50.5	58	47.5
HVDT 하위점수	모양	크기	감촉	형태																	
R(55)	85	40	61	55																	
L(64)	118	61	55	40																	
평균	101.5	50.5	58	47.5																	

<p>■ 운동</p>	<p>대·소근육 사용과 관련된 운동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MAND를 실시하였으며, 소근육 전환적훈련(73), 대근육 준기능직(91.27), 전체 전환적훈련(83.95) 수준을 보이고 있음. 하위영역별 점수는 아래 표와 같고, 지속적인 통제평균(PC) 전환적훈련, 근육의 힘 평균(MP) 상위확장된 작업활동, 운동지각의 통합평균(KI) 준기능직, 양손의 정교성 평균(BD) 상위확장된 작업활동 수준으로 나타났음. 오른손 평균(R) 전환적훈련, 왼손 평균(L) 전환적훈련 수준으로 나타났음.</p> <table border="1" data-bbox="432 533 1409 669"> <thead> <tr> <th>항목</th> <th>Fine</th> <th>Gross</th> <th>PC</th> <th>MP</th> <th>KI</th> <th>BD</th> <th>R</th> <th>L</th> </tr> </thead> <tbody> <tr> <td>표준점수</td> <td>73</td> <td>91.27</td> <td>82</td> <td>76.75</td> <td>90.4</td> <td>65</td> <td>71.5</td> <td>78.25</td> </tr> </tbody> </table> <p>운동기능이 강점으로 평가되나 양손의 정교성(BD) 수준으로 인해 소근육 수행 수준이 낮게 평가되었음. 검사자의 시범과 설명에 따르지 않고 손의 위치와 움직임이 정확하지 않았으며, 작업방법을 수정한 이후 수행시간이 단축되었음. 검사자가 강경하게 개입할 때 보다 집중하는 모습이 관찰되었음. 낮은 수준의 작업동기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p>	항목	Fine	Gross	PC	MP	KI	BD	R	L	표준점수	73	91.27	82	76.75	90.4	65	71.5	78.25
항목	Fine	Gross	PC	MP	KI	BD	R	L											
표준점수	73	91.27	82	76.75	90.4	65	71.5	78.25											
<p>■ 정서</p>	<p>母的 설문을 통한 검사에서 57.5점으로 평가되었으며, 이는 하위확장된 작업활동 수준에 해당함. 사회화를 제외한 하위영역이 모두 결합적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자아개념이 특히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음.</p> <p>BVMGT 검사 상 Koppitz의 정서지표에서는 특별한 사항이 채점되지 않았음. 평가 중 관찰된 부주의하고 산만한 모습과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 정서기능이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상담 및 치료 등 전문적인 개입이 이루어진다면 전반적인 기능수준이 향상될 수 있을 것임.</p>																		
<p>■ 통합대응</p>	<p>母的 설문을 통해 지역사회와 직업에서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능력을 평가하였으며, 68.33으로 상위확장된 작업활동 수준으로 평가되었음. 교육 및 훈련이 가능한 수준이며, 고등학교 졸업 이후 특별한 사회경험이 없었던 것을 고려할 때 적절한 개입이 제공된다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임.</p>																		

<p>< 종합소견 및 직업재활 방향 ></p>	
<p>■ 직업적 강점, 제한점</p>	<p>① 강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시이해력이 있음. -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자기표현력이 있음. - 신체기능이 우수함. - 정해진 일정을 준수할 수 있음. - 지도방식에 따라 행동수정이 가능함(강한 어조, 분위기 필요). <p>② 제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중력이 약하며 주의가 산만한 경향이 있음. - 취업 및 직업준비에 대한 동기가 약함. - 상황에 대한 지남력이 부족함. - 직업경험이 없음.

■ 직업재활 방향	① 수준 : 지원고용 가능 ② 직업권고 : 상하차 직무, 대형마트 자유포장대 정리 ③ 권고 프로그램 : 직업적응훈련, 지원고용, 취업알선, 취업후적응지도 - 개인 및 사회생활 적응훈련 : 사회기술훈련, 지역시설이용, 예절교육 등 - 직업준비 및 수행 적응훈련 : 직업탐색, 직업인식, 태도 및 습관 형성 - 직무능력 향상/유지 적응훈련 : 작업활동, 현장실습
■ 종합소견	피검자는 지적장애 3급 장애인으로 일반학교 특수학급을 이용하여 졸업하였음. 고등학교 졸업 이후 장애인사이클연맹의 선수로 활동하고 있으며, 母는 지인의 소개로 본관 직업적응훈련반을 알게 되었음. 훈련을 통해 취업까지 목표로 하고 있으나 피검자 본인은 취업을 하고 싶은 이유, 취업의 뜻 등 직업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은 수준임. 직업평가 결과 피검자의 장점은 언어인지 능력과 운동능력에서 나타났으며, 제한점은 정서기능이었으며, 관찰평가 결과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의 집중력과 동기가 가장 큰 제한점이라고 판단되었음. 현재 운동활동(사이클)에만 집중되어 있으므로 생활패턴을 직업생활과 관련지어 변화시켜줌으로써 직업에 대한 동기를 형성할 필요가 있으며, 집중력과 정서기능을 향상하기 위한 개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또한 대인관계 훈련을 통해 상황에 맞게 반응하기 등 사회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임.
< 조치결과 >	

작성일 : 2014. 07. 23

작성자 : 강명진 (인)

<평가결과 해석시 고려사항>

- * 직업평가계획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결과를 해석한다.
- * 평가결과 해석시 장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쉬운 용어를 사용한다.
- * 평가결과에 대한 해석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장애인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직업정보 등에 대안점을 제시한다.
- * 직업평가 해석단계에서 장애인이 충분히 관여하여 결과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 평가사는 정확한 해석을 위해 다양한 검사도구와 평가방법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 평가사는 해석 시 검증되지 않은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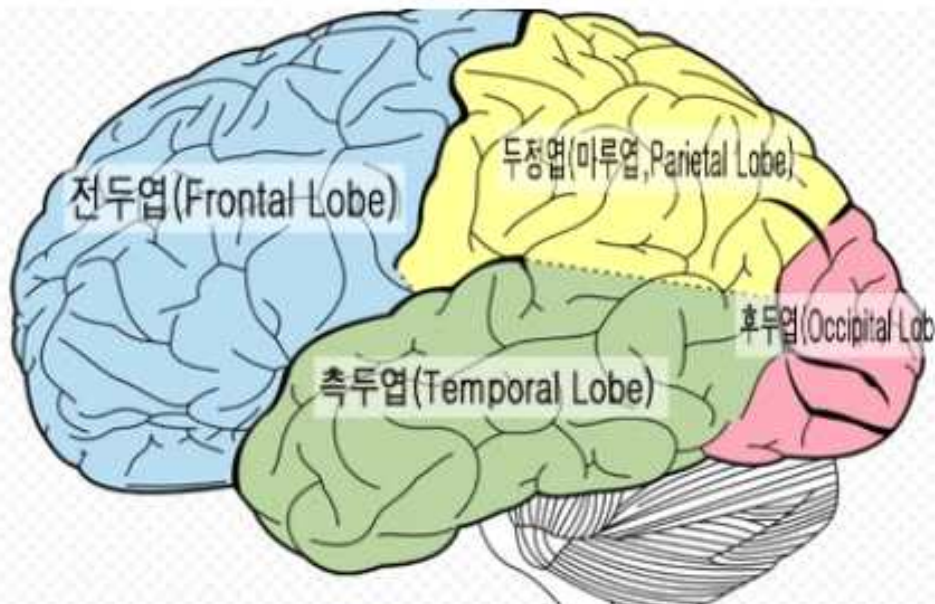
< MDS의 이해 >

I. MDS의 신경심리학적 이해

1. MDS의 이해

- 1) MDS는 1973년 신경심리학적 장애를 가진 내담자의 신경 및 행동을 측정하여 교육적, 직업적 잠재능력을 예측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많은 재활기관과 공립 학교, 임상실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음.
- 2) 신경생리학적 관점에서 개발된 도구
- 3) 고등의 피질기능(뇌의 가장 바깥 부분) 평가 : 인지, 기억, 언어, 인식, 수의적 운동, 정서
- 4) 피질기능이 보다 발달할수록 복잡한 행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작업(work)을 더 잘 수행할 수 있음.
- 5) 신경생리학적 손상을 가진 내담자의 교육/직업 잠재력 평가에 적합
- 6) 대상 :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학습장애인, 신경심리학적 장애를 가진 내담자
- 7) 장점 : 내담자의 작업속도와 질에 대한 측정 가능

2. 뇌구조의 이해



1) 전두엽

- ① 기억력, 사고력 등의 고등행동 관장
- ② 관리기능 : 인지적 유연성, 창의성, 계획력, 추상적 사고, 통찰력, 자발성, 억제력, 적절한 정서, 성격 및 사회적 행동
- ③ 손상 : 교통사고성 뇌외상, 뇌혈관성 질환, 퇴행성 뇌질환, 뇌종양, 주요 정신

과적 질환(정신분열증, 기분장애), 발달장애(ADHD)

2) 두정엽

- ① 감각연합령, 감각령, 읽기, 맛보기, 말하기
- ② 감각해석 : 통증, 온도, 압력, 몸과 사지의 자세 인식, 신체상
- ③ 장소에 대한 지남력(자신이 놓인 상황을 시·공간적으로 바르게 파악하는 것)에 관여
- ④ 손상 : 신체에서 느끼는 감각이 없어지고 동작이나 행동에도 지장이 발생하므로 작업상황에서의 위험도가 증가함.
- ⑤ HVDT, BGT로 판별 가능

3) 측두엽

- ① 청각영역이 위치하며, 청각과 관련된 사고기능을 담당
- ② 듣고 이해해서 산출하는 기능으로 언어기능과도 밀접한 관련
- ③ 베르니케 영역(언어 이해, 해석, 말을 할 때 단어를 정확히 구문으로 종합해 줌)과 브로카 영역(말하기 담당)이 있음.
- ※ 브로카 실어증 환자의 경우 머리 속에 알고 있지만 말로 정확히 산출하기 어렵음을 겪으며, 베르니케 실어증 환자의 경우 말은 산출하지만 상관없는 내용으로 상황과 맥락에 맞지 않은 경우가 다수임.

4) 후두엽

- ① 시각영역이 위치
- ② 인간은 외부 정보의 90%를 시각을 통해 인지하는데, 후두엽에서 수많은 시각정보를 일차적으로 처리하여 다른 부분으로 전달함.

5) 반구의 이해

좌반구	우반구
언어 분석	비언어적 정보, 시공간 정보 통합
환경으로의 정보를 처리, 분석하는 능력	촉지각-운동감각 인식
언어 획득, 산출, 이해, 관념화, 표현능력	형태, 모양, 공간, 방향, 지리적 이미지, 음악 멜로디 → 예술가형

- ① 반구 기능에는 성별 차이가 있음.
- 예) 좌반구가 개입된 뇌손상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언어손상이 덜하며, 예후도 좋음.

6) 대뇌기능

- ① 특정 뇌 영역의 병변으로 기인하는 결함을 보상하기 위해 각각의 반구는 유연성을 가짐.
- ② 복잡한 언어/공간 과제를 수행하는 것은 양측 반구 기능의 협력이 필요한 작업
- ③ 일반적으로 특정 과제 수행에는 뇌의 특정영역이 우세하게 활동함.
- ④ 욕구조절, 항상성을 관장하는 영역
- ⑤ 주의집중, 자극의 변별, 자극연습(헤마)을 통한 학습, 기억 관장

※ 지적장애의 경우 단기 기억능력이 제한적이므로 반복훈련을 통해 장기 기억 저장소로 이동시켜야 함.

7) 감각피질

① 신체감각, 청각, 시각 자극 인지, 인식, 연합

※ 자폐증의 경우 감각의 통합에 제한이 있으므로 감각통합치료를 실시해야 함.

② 운동 피질은 감각세포를 매우 많이 가지고 있으므로 운동과 감각은 완벽히 분리되지 않음.

8) 신경심리학적 평가

① 뇌 앞부분 손상-운동, 뇌 뒷부분 손상-감각

② 편측 측정이 불가능할 경우 가능한 편측의 점수를 적용

3. MDS 평가 요인

1) 언어-공간 인지영역

① 언어능력은 인지능력과 일치하므로 PPVT로 측정 가능

② PPVT는 환경적 결핍(가족환경, 교육적 자극)이나 청각장애 반영

2) 감각영역

① 환경으로부터의 정보를 수용, 인식하는 기본적 체계 평가 : 응용능력-적응력이 얼마나 빨리 적용되는가를 확인할 수 있음.

② 적절한 감각기능은 인지발달과 운동기능발달에 필수적

※ 정신장애의 경우 약물로 인해 감각기능 저하가 나타날 수 있음.

3) BGT

① 연령, 중추신경의 병리상태, **심각한 정서적 상태에 영향**

※ 정신장애(조현증)의 경우 그림에 첨가하는 경우 다수임.

② 통합 실패는 전반적 뇌기능 장애(지적장애)와 관련 : 각이 있는 그림의 완성도가 낮으며, 통합점수 낮음.

③ 기초적인 감각운동기능의 해체와 관련

4) HVDT

① 피부운동감각과 시각적 정보처리 기능 평가

② 입력된 감각자극과 이미 가지고 있던 개념을 조직화하는 상위의 피질기능은 촉각-시각 과제와 매우 높은 연관성이 있음. : 이미 알고 있는 것과 통합해서 산출하는 인지기능과도 관련 있음.

③ 쉬운 '모양' 영역도 변별하지 못하는 경우 두정엽 손상 의심

④ 공간지각력 장애는 행동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됨(행동장애가 공간지각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음).

⑤ 우반구 병변 : 좌우 양측 사물인식 장애, **모양/형태<크기/질감**

⑥ 좌반구 병변 : 크기변별↓

⑦ 오른손↓, 왼손↑ : 좌반구 기능 손상, 학습영역↓, 공간지각↑

- ⑧ 오른손↑, 왼손↓ : 우반구 기능 손상, 공간지각 장애, 학습↑
- ⑨ 촉지각의 어려움은 기초 직업전, 직업기능의 문제를 의미(작은 도구 사용, 작은 부속 변별, 조립과제 수행)
- ⑩ 좌우의 점수차이를 통해 뇌손상을 예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KI(운동통합) 수준이 낮으며, 표준점수 차이가 2 표준편차 이상일 경우 두정엽에 중등도 이상의 기능장애가 있음을 의미함. 이러한 경우 감각해석, 장소에 대한 지남력, 언어 기능에 장애가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음.
- ※ 지적장애의 경우 단순 인지장애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촉지각의 제한으로 인한 것임.

4) MAND

- ① 인간이 발달하면서 안구신경을 통제하는 신경근육과 눈과 손의 협응력이 기초 학습과제(쓰기, 읽기)를 배우는 데 영향 미침.
- ② 운동행동의 영역(소뇌 기능의 영향을 받는 영역) : 운동의 속도와 방향, 운동의 협응력, 운동과 관련된 힘, 평형감각과 위치감각
- ※ 정신과적 약물이 소뇌기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정신장애의 경우 지적장애인 수행모습과 동일하게 수행함.

5) Persistent control(지속적인 통제)

- ① 손을 사용하는 작업의 질 저하, 오류↑, 사고발생↑
- ② 단순운동기능 제한만이 원인이 아닐 수 있으므로 시력검사를 의뢰할 필요 있음.
- ③ 불안/충동성 조절의 어려움

6) Bimanual dexterity(양손 정교성, 협응력)

- ① 성인 지적장애인의 직업훈련잠재력 예측에 매우 효과적
- ② 손이 운동자극을 수용하지 못함, 차별적인 운동기능 수행하지 못함, 정밀하지 못하고 정확하지 못한 수행

7) 정서요인

- ① 뇌질환, 뇌손상 및 뇌기능 이상에 의한 기타 기질성 인격 및 행동장애 평가
- ② 시각-운동지각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 직장, 가정에서 실패를 더 많이 경험함으로써 욕구좌절됨.
- ③ 정서문제는 지각문제에 대한 이차적 발생이므로 교사, 부모와 추가적으로 상담하여 정보를 제공해야 함.
- ④ OEI, BGT의 경우 해석시 관찰소견을 반드시 포함할 필요가 있음. 낮은 영역에 대한 체크 이유와 특별한 행동에 대한 보고를 받아야 함.

II. MDS 실행 및 채점 시 주의 사항

1. 실행 순서

: HVDT-R ⇒ BGT ⇒ 그림어휘력검사 ⇒ BGT recall ⇒ HVDT-L ⇒ MAND

: HVDT는 우세손과 관계없이 R부터 시행하며, 先수행으로 인해 L수행시 학습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최대한 시간 차이를 두기 위함.

: BGT의 경우 recall을 위한 시간간격(10분~15분)을 두어야 함.

2. BGT : 검사 완료 후 내담자에게 이름을 검사지 맨 위에 쓰도록 함 : 눈과 손의 통합, 협응능력, 인지능력 확인을 위함.

3. HVDT : 오른손 실시 후 왼손을 정상적으로 실시할 때는 연습문제 실시하지 않음. 장애가 심하거나 나이가 어린 아동의 경우에만 실시함.

4. 막대에 구슬끼기 : 편마비인 경우 막대를 고정하고 실시하며, 이는 작업현장에서 지원도구가 제시된 상황에서의 손기능 측정이 가능하게 함. 평가보고서에 조정사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함.

5. 멀리뛰기 : 허리손상, 발목손상 등으로 인해 부상을 당할 가능성이 높은 내담자는 이 검사를 시행하지 말 것. 대부분의 청각장애인은 평형장애를 가지고 있으므로 청각장애인에게는 절대 실시하지 않음.

6. 한발로 서기 : 소리를 내어 시간을 세어주는 것은 동기를 부여하여 수행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음.

7. 양손의 표준범수 차이가 15점 이상일 때 신경학적 장애를 의심할 수 있음.

8. 단순 점수로만 해석하지 말고 관찰사항으로 함께 판단할 것

예) 다운증후군은 장애특성상 손끝이 뭉툭하기 때문에 수행력이 낮을 수 있음.

9. 편마비 장애인의 경우 가능한 기능을 양쪽으로 적용하여 채점, 해석함.

예) 진술

“자폐성장장애인의 개념 및 특성”



팀 명	주간보호팀
일 시	2014년 04월 25일
발표자	김은숙, 이지원, 임명호, 김세리
장 소	늘푸른동산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2014년도 1차 팀역량강화-김은숙>

자폐아동 부모의 역할

작성자 : 이화여대 특수교육과 이소현교수님

목 차

I. 들어가는 말

II. 자폐 범주성 장애의 이해

1. 자폐 범주성 장애의 정의
2. 자폐 범주성 장애의 원인
3. 자폐 범주성 장애 아동의 발달 특성
 - 1) 인지적 특성
 - 2) 사회-정서적 특성
 - 3) 의사소통 특성
 - 4) 행동 특성

III. 자폐 범주성 장애 아동의 양육

1. 교육의 기본적인 원칙
2. 다양한 교육 방법의 선택

IV. 맺음말: 부모의 역할

I. 들어가는 말

자폐(autism)는 1943년 Kanner에 의하여 처음으로 소개된 이래 지금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받으면서 연구되어 온 장애 영역이다. 장애를 이해하기 위한 학문적인 영역에서도 여러 가지 이론을 거쳐 왔으며, 자폐 장애를 지닌 아동을 교육하기 위한 접근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되면서 그 이론적 기반을 다져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에 이루어진 특수교육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자폐성 장애’라는 용어로 독립된 장애 범주로서 인정받기 시작하였다.

특히 최근에는 자폐가 정확하게 있다/없다로 양분되는 장애라기보다는 “자폐적 성향 (autistic propensity)”의 연속선으로 이해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자폐와 함께 나타나는 다양하고 폭넓은 증상들로 인하여 일반적인 결함과 자폐만의 독특한 결함을 구분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폐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결함을 보이는 동시에 전형적인 신체적 성장과 발달을 보이는 경우가 많으며, 특이한 기술이나 지식 및 능력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지적인 면에서도 정인지체를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기도 한다. 다시 말해서, 자폐는 **평균적이거나 평균을 능가하는 지적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에서부터 중도 정인지체나 구어의 완전한 결손과도 같은 심각한 장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위의 능력을 보이곤 한다.** 이와 같이 다양한 관련 특성을 지닌 아동들을 지칭하기 위하여 자폐 범주성 장애(autism spectrum disorders: ASD)라는 용어가 소개되었으며, 이 용어는 자폐의 범주에 해당되는 폭넓은 범위의 하위 유형들과 심각한 정도를 모두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자폐는 자폐 범주성 장애라는 용어가 시사 하듯이 개인별로 매우 다양한 특성을 지닌 장애이기 때문에 장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만 올바른 교육을 할 수 있다. 부모의 양육에 있어서도 장애의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어떤 교육 방법이 있는지를 잘 알고, 자녀의 특성에 맞는 교육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을 때 가장 바람직한 형태의 양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자폐 범주성 장애의 개념을 살펴보고, 자폐 범주성 장애를 지닌 아동을 위한 교육의 원칙과 방법들을 알아보고, 부모로서 양육의 역할을 감당할 때 중점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자폐 범주성 장애의 이해

1. 자폐 범주성 장애의 정의

자폐 범주성 장애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있어서의 일탈적인 발달을 보이면서 활동과 관심 영역이 제한된 특성을 보이며, 이러한 특성이 생후 3세 이전에 나타나는 장애다. 자폐의 정의할 때 가장 많이 참고하는 진단 기준은 정신장애 진단통계편람(DSM-IV-TR)에서 제시한 기준이다. 이 편람에 의하면 자폐는 전반적 발달 장애(pervasive developmental disorder: PDD)라고 불리는 커다란 집단에 포함되는 다섯 가지 장애 유형의 하나다. 전반

적 발달 장애는 매너리즘, 부적절한 사회적 행동, 비전형적이면서도 지체된 말과 언어의 발달 등을 포함하는 비정상적인 사회적 관계로 특징 지워지는 심각한 발달장애로 정의되며, 하위 유형으로는 자폐성 장애(autistic disorder), 아스퍼거 증후군(Asperger syndrome), 레트 장애(Rett's disorder), 소아기 붕괴성 장애(childhood disintegrative disorder), 비전형성 전반적 발달장애(PDD-NOS)의 다섯 가지가 있다.

DSM-IV-TR에서 제시하는 진단 기준에 의하면, 자폐는 다음의 특성을 포함한다: (1) 사회적 상호작용의 질적 결함, (2) 의사소통의 질적 결함, (3)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상동적 특성을 보이는 행동, 관심, 활동, (4) 사회적 상호작용, 사회적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 상징놀이나 상상놀이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역에서의 발달지체나 비정상적인 기능이 3세 이전에 나타남.

2. 자폐 범주성 장애의 원인

지금까지 자폐 범주성 장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수많은 노력이 기울여져 왔으며 현재까지도 그러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아직도 그 정확한 원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에 의하여 자폐 범주성 장애가 어머니의 양육 태도와 같은 후천적인 심리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다는 주장은 더 이상 수용되지 않고 있으며, **두뇌 기능의 생물학적 이상에 의하여 발생한다는 주장이 보편적으로 수용되고 있다.**

자폐 범주성 장애의 원인으로 추측되는 단일 요인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그 발생과 관련된 것으로 여겨지는 다양한 요인들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두뇌 발달, 유전적 요인, 임신 중의 특정 요소들과 같은 생물학적인 요인들이 자폐 범주성 장애의 발생과 관련된 것으로 추측되고 있으나 이러한 요인들의 대다수의 경우 원인 인자로서 분명하게 입증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뇌손상의 경우 뇌간이 손상되거나 전두엽의 기능 이상으로 인하여 자폐 범주성 장애가 발생한다는 가설이 제시되고 있다. 유전의 경우 자폐 범주성 장애의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입증할 만한 자료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유전되는지에 대한 가설은 아직 입증되지 않고 있다. 출생 중 산소 결핍이나 임신 중 수면제 복용과 같은 임신 관련 요소들과 함께 선천성 풍진, 뇌염, 홍역 등의 바이러스 감염도 자폐 범주성 장애의 발생과 관련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또한 약제 X 증후군이나 결절성 경화증(tuberous sclerosis)과 같은 특정 의학적인 상태에 놓인 경우 자폐 범주성 장애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상의 생물학적인 원인 외에도 환경오염, 소화기 기능 이상, 백신 접종 등의 다양한 요인들이 자폐 범주성 장애의 발생과 관련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그러나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원인론의 경우 그 치료를 위한 잘못된 접근을 하게 할 수도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예를 들어, MMR(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백신 접종이 자폐 범주성 장애의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주장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입증되지 않은 주장은 부모들로 하여금 자녀의 예방 접종을 피하게 함으로써 아동이 특정 질병에 노출되게 하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3. 자폐 범주성 장애 아동의 발달 특성

1) 인지적 특성

(1) 지적 능력 및 학업 성취

자폐 범주성 장애로 진단된 아동들 중에는 평균이나 그 이상의 지적 기능을 보이는 아동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약 70~80% 정도는 정신지체를 지닌다. 자폐 범주성 장애 아동들 중 정신지체를 함께 보이는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서 학업이나 일반적인 생활에 있어서 더 낮은 수행 수준을 보인다. 이것은 자폐 범주성 장애로 인하여 나타나는 언어 및 사회성 결함, 행동 조절의 어려움, 일과에 대한 집착 등의 특성에 정신지체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정신지체를 함께 보이는 자폐 범주성 장애 아동의 경우 그 성취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자폐 장애와 관련된 근본적인 결함이 다양한 수준의 지적 기능과 결합되어 서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자폐 범주성 장애를 지닌 아동의 학업 성취는 이들의 다양한 지적 수준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며, 동시에 자폐 장애가 지니는 특정 문제들로 인해서도 영향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실행 기능(executive functioning)에 있어서의 문제는 숙제를 조직적으로 수행하거나 숙제 및 시험을 제 시간에 완수하거나 정해진 시간을 배정해서 특정 과제를 수행하는 등의 학업 성취와 관련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주의집중의 어려움, 충동성, 과잉행동, 상동행동, 감각과 관련된 비전형적인 반응(예: 특정 감각에 대한 집착이나 회피) 등의 특성은 자폐 범주성 장애 아동의 학업 성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교사들은 주의집중이나 과제 수행을 위한 자기-조절 능력을 교수함으로써 이들의 학업성취를 증진시킬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 고기능 자폐 및 아스퍼거 증후군

자폐 범주성 장애를 지닌 아동의 약 20% 정도는 평균 및 그 이상의 지적 기능을 보이는 고기능 자폐(high functioning autism: HFA)들이다. 이들 중 대다수는 일반학급에 통합되어 교육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교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이것은 이들이 지적 기능에 있어서 평균 이상의 능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폐로 인한 장애의 특성은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학업 성취에 있어서 평균 이상의 성적을 보이는 아동들도 학교라는 조직사회에 적응하고 사회적인 기대 수준에 맞는 행동을 하는 데에는 여전히 어려움(예: 정해진 시간에 숙제 제출하기, 친구들과 협동 과제 수행하기, 교실 간 이동하기, 잠재적 교육과정 이해하기 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학급에 통합된 고기능 자폐 아동들의 경우에는 학업 성취뿐만 아니라 사회적 및 환경적인 적응이나 교우 관계 등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지적으로 우수하고 고도의 성취를 보이는 경우의 자폐 범주성 장애 학생들은 고등학교를 최우수로 졸업하기도 하고 대학원에서 학위를 취득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도 번역되어 소개되어 있는 『어느 자폐인 이야기』(박경희 역, 1996)와 『나는 그림으로 생각한다』(홍한별 역, 2005)의 저자인 템플 그랜딘은 자폐 범주성 장애를 지니고도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대학 강단에서 가르치며 동물 심리학 영역의 전문가로 생활하고 있다.

비교적 최근까지는 자폐 범주성 장애 아동들 중에서도 정신지체와 다양한 행동문제를 보이는 아동에 대한 교육에 많은 관심이 기울어져 왔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는 경도 자폐성 장애 아동의 교육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들이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증진시키는데 교육의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였다. 특히 고기능 자폐로도 많이 판별되어 온 아스퍼거 증후군 아동들에 대한 많은 관심이 기울여지고 있다. 아스퍼거 증후군은 자폐성 장애와 함께 전반적 발달장애(PDD)의 한 하위영역으로 포함된다. 아스퍼거 증후군을 지닌 아동은 평균에서 평균 이상의 지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들이 지니는 인지적 능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별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아스퍼거 증후군 아동은 기계적인 암기력이 우수한 경우가 많아 학업 성취에서도 우수한 결과를 보이기도 하지만, 특정 관심 영역에 대한 집착이나 융통성 없는 사고 스타일, 문제 해결력이나 조직력에서의 어려움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심각한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아스퍼거 증후군 아동들 중에는 학습장애를 지닌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적절한 지원이 주어지면 학교에서의 학업 성취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실제로 학업 성취 면에서 우수한 성적을 보임으로써 대학 진학 및 성공적인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도 종종 보고되고 있다.

(3) 우수성 증후군

자폐 범주성 장애로 진단받은 아동들 중 약 10% 정도가 특정 영역에서 뛰어난 능력이나 기술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뛰어난 능력이나 기술은 “자폐적 우수성(autistic savant)” 또는 “우수성 증후군(savant syndrome)”으로 불리며, 음악, 미술, 수학, 암기력, 기계 조작 등의 특정 영역에서 평균 이상의 뛰어난 능력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서, 달력의 날짜와 요일을 계산하거나 역사의 특정 내용을 모두 암기하거나 복잡하고 어려운 연산을 빠르고 정확하게 하는 등의 능력을 보일 수 있다. 우수성 증후군을 설명하기 위하여 중앙응집력(central coherence)의 결함이나 지각 기능 강화 등의 가설이 제시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타당한 이론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특정 영역에서의 뛰어난 능력을 보이는 아동들의 경우 이러한 능력이 자신의 전반적인 지적 능력이나 일반적인 기능과는 무관하게 나타나며, 기타 다른 영역에서는 매우 낮은 수행을 보이곤 한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이들이 보이는 특정 능력이나 기술은 일반적인 암기력을 기반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정보처리과정에 있어서의 특이한 현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교사들은 우수성 증후군을 보이는 아동의 경우 이러한 우수성을 활용하여 좀더 기능적이고 유용한 기술들을 교수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직접교수 및 집중적인 연습을 제공해야 한다.

2) 사회-정서적 특성

(1) 사회-정서적 결함의 전반적 특성

사회적 행동에 있어서의 일탈적 결함은 자폐 범주성 장애의 핵심적인 결함이다. 자폐 범주성 장애 아동들은 장애의 진단 기준상 다음과 같은 사회적 행동에 있어서의 결함을 지닌다: (1) 비구어적 행동의 사용에 있어서의 손상; (2) 발달 수준에 적절한 또래 관계의 결여; (3)

즐거움, 관심, 또는 성취를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나누려고 하지 않음; (4) 사회적 또는 정서적 상호성의 결여. 이와 같은 사회적 행동에 있어서의 결함은 <표 1>에서와 같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난다.

<자폐 범주성 장애의 사회적 결함 및 그에 따른 행동 특성> 진단 기준상의 결함

- ★ 사회적 상호작용을 조절하기 위한 비구어적 행동의 사용에 있어서의 손상
 - 눈 맞춤이나 응시행동에 있어서의 문제
 - 대화 중 몸짓을 거의 사용하지 않음
 - 얼굴 표정을 거의 사용하지 않거나 이상하게 사용함
 - 독특한(평범하지 않은) 억양이나 음성을 사용함
- ★ 연령에 적절한 또래 관계 형성의 실패
 - 친구가 없거나 매우 적음
 - 자기보다 나이가 많거나 적은 아동들, 또는 가족 구성원들과만 관계를 형성함
 - 특별한 관심을 근거로 관계를 형성함
 - 집단 상황에서 상호작용하는 데 어려움을 보이며, 게임의 협동적인 규칙을 지키기 어려워 함
 - 다른 사람들과 즐거움, 성취, 또는 관심을 나누지 않음
 -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 TV 프로그램, 장난감만을 즐기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려고 하지 않음
 - 활동이나 관심이나 성취에 대한 다른 사람의 관심을 요구하지 않음
 - 칭찬에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거나 반응하지 않음
- ★ 사회적 또는 정서적 상호성의 결여
 - 다른 사람에게 반응하지 않음(마치 청각장애인 것처럼 보임)
 -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음(다른 사람의 존재를 염두에 두지 않음)
 - 다른 사람이 다치거나 흥분할 때 관심을 보이지 않음(위로하지 않음)

(2) 양육자 상호작용

자폐 범주성 장애 아동의 사회-정서적 행동을 대표하는 가장 특징적인 행동 중의 하나는 양육자와 공동관심(joint attention)을 잘 나누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폐 범주성 장애 아동은 양육자를 향한 애착 행동에 있어서 결함이나 일탈적 특성을 보임으로써 자신의 환경 내에서의 중요한 대상과 사회-정서적인 관계를 제대로 형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자폐 범주성 장애를 지닌 많은 아동들이 양육자와는 기대하는 만큼의 애착 관계를 보이지 않으면서도 특정 사물에 대해서는 이상한 집착 행동을 보이곤 한다. 그러나 최근에 이루어진 많은 연구들에 의하면 자폐 범주성 장애를 지닌 아동들도 어머니와 낯선 사람들을 구분하며 애착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애착 형성의 측면에서는 발달이 지체된 다른 아동들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자폐아들이 어머니와의 안정된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폐 범주성 장애 아동의 애착행동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직절인 면에 있어서 일반 아동들과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모와 분리되었다가 재결합할 때 나누거나 보여주기 등

의 행동 빈도가 훨씬 낮으며, 상호적인 눈맞춤 행동의 비율도 낮고, 애착행동을 표현하는 긍정적인 감정을 잘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자폐 범주성 장애 아동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자신에 대한 애착행동을 보인다고 말한다. 이것은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자폐 범주성 장애를 지닌 아동들이 비록 질적인 면에서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분명한 애착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부모 면담을 통해서 자폐를 진단할 때 애착관계의 형성 여부를 아는 것은 그다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부모들에게 아동의 애착행동을 설명하게 하고 애착 관계를 형성함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요소나 상황에 대한 그들의 감정을 표현하게 하는 것이다. 실제로 자폐 범주성 장애 아동의 어머니들은 다른 어머니들에 비해서 더 많은 일방적이고 직접적인 양육을 제공하며 아동의 장애로 인하여 양육에 대한 정신적인 부담을 더 많이 경험하곤 한다. 이와 같은 현상으로 인해서 부모들은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정신적인 부담을 더 적게 느끼게 되며, 자녀의 사회적 결함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자해행동이나 상동행동과 같은 위험하고 부적절한 행동들로 인해서 더 많은 정신적인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또래 상호작용

대부분의 자폐 범주성 장애 아동들은 성장함에 따라서 성인과의 관계 형성 및 유지에 있어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향상을 보이곤 한다. 그러나 또래와의 관계는 이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 특히 만 5세가 지나면서 자폐 장애와 관련된 사회적 결함이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성인과는 다른 두드러진 결함을 보이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설명될 수 있다.

첫째, 성인들은 또래들에 비해서 자폐 범주성 장애 아동의 행동을 사회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더 많은 반응을 보이며, 또한 아동에게 사회적 행동을 시작하는 사람으로서 역할하곤 한다.

둘째, 자폐 범주성 장애 아동들은 상호작용을 시작하고 반응함에 있어서 제한된 종류의 행동을 보이기 때문에 또래들의 행동과는 다른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전형적인 발달을 보이는 또래들은 자폐 범주성 장애 아동의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셋째, 성인과의 상호작용은 또래들과의 상호작용과는 달리 자폐 범주성 장애 아동에게 여러 가지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넷째, 자폐 범주성 장애 아동이 보이는 상상놀이의 결함은 또래와의 관계 형성을 어렵게 만든다.

마지막으로, 성인(부모나 교사)과의 집중적이고도 빈번한 접촉 기회와 경험 자체가 성인과의 관계를 또래와의 관계와 다르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

(4) 놀이 특성

자폐 범주성 장애 아동은 또래와의 놀이 활동에 있어서 장애가 없는 아동과 비교할 때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이들의 놀이 활동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린 시절 성인과 함

게 하는 무릎놀이에도 잘 참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깎깎놀이와 같은 게임에도 별 흥미를 보이지 않는다. 놀이 활동에서의 사회적인 참여가 부족하며, 사물을 반복적이고 상동적으로 조작하거나 비기능적으로 활용하곤 한다. 예를 들어, 장남감 자동차를 가지고 놀 때 자동차의 기능을 드러내는 놀이 행동을 보이기보다는 바퀴 등의 특정 부분에 집착하거나 자동차를 뒤집어 놓고 바퀴를 돌리는 등의 행동에 몰두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아동들은 성장함에 따라 다른 아동과 함께 상징놀이나 사회적 놀이 활동에 참여하게 되는데, 자폐 범주성 장애 아동들은 자발적인 상징놀이 활동을 거의 보이지 않으며, 보이더라도 상당히 경직되고 상동행동적인 형태의 상징놀이를 보이곤 한다.

자폐 범주성 장애 아동의 사회적 놀이에 있어서의 결함은 그 원인이 아직까지 규명되고 있지 않지만, 놀이의 구성요소들을 직접 교수함으로써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의사소통 및 모방 기술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수가 자폐 범주성 장애 아동의 놀이 행동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놀이-중심의 중재가 이들의 사회-의사소통 기술을 증진시킬 수 있음을 인식하고 구체적인 교수를 계획하고 실행해야 할 것이다.

3) 의사소통 특성

(1) 말/언어 특성

자폐 범주성 장애 아동의 언어 및 의사소통에 있어서의 문제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말을 전혀 습득하지 못하는 아동들도 있으며, 말을 하는 아동들도 말의 출현 및 발달이 지체되곤 한다. 또한 말을 할 때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산출되는 반향어의 형태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은데, 말을 할 줄 아는 자폐 아동의 약 80% 정도가 반향어(echolalia)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폐 범주성 장애 아동들 중에는 반향어가 아닌 의미 있는 말을 자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기능적인 말의 사용 정도는 아동에 따라서 매우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자발적인 말도 언어의 형태 면에서는 일탈적인 특성을 보인다. 특히 조음상의 실수를 빈번하게 보이고 알아들을 수 없거나 적절하지 않은 발성을 하기도 하며 말의 강세, 높낮이, 리듬 형태 등으로 구성된 운율학적인 면에서도 문제를 보인다. 언어의 운율학이란 이야기를 듣는 사람에게 언어적인 신호를 이해하도록 단서를 제공해주며, 동시에 상대방의 심리적인 상태나 기분 등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언어의 이와 같은 요소를 정확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문법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말의 사회적인 요소에 주의를 기울이고 해석하는 능력 또한 필요하다. 결국, 자폐 범주성 장애 아동이 언어의 운율학적 측면에 있어서 심각한 결함을 나타내는 것은 이들이 사회성 발달에 있어서 주요 장애를 보이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자폐 범주성 장애 아동은 말의 사용에 있어서 다양한 정도의 지체와 일탈의 특성을 보인다. 그러나 이들의 말/언어상의 문제는 단순한 말의 습득과 사용에 있어서의 장애가 아니라 말을 대체할 수 있는 비구어적 의사소통에서도 장애를 보임으로써 사회-인지적인 측면에서의 장애와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장애 특성은 기타 말/언어장

애와 자폐를 구분하는 주요 판별 요인으로 사용될 수 있다.

(2) 비구어 의사소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비구어적 행동을 보이곤 하는데, 이때 얼굴 표정이나 비구어적 발성, 자세, 동작, 몸짓 등이 사용된다. 이와 같은 비구어적 행동은 이야기를 듣는 사람의 감정이입적인 반응을 도와주며, 실제로 정서나 감정을 표현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비구어 의사소통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회-정서적 행동 특성 부분에서도 설명하였듯이, 자폐 범주성 장애 아동은 눈 맞춤 행동에 있어서 질적 결함을 보이며,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얼굴 표정을 사용하지 못하고, 의미 있는 몸짓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양적, 질적으로 다를 뿐만 아니라, 특히 공동관심을 위한 가리키는 행동에 있어서 결정적인 결함을 보인다. 또한 이러한 특성들 외에도 상대방을 모방하는 것이 의사소통의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모방 기술 자체도 많이 제한되어 있으며,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신체적으로 가까이 접촉하는 것을 즐기지 않기 때문에 의사소통 기술의 발달에 영향을 받게 된다.

(3) 의사소통의 의도

자폐아동은 말/언어 및 비구어적 수단의 습득과 사용에 있어서 일반적인 지체뿐만 아니라 질적인 결함의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그러나 자폐 범주성 장애 아동의 의사소통상의 결함은 이와 같은 말/언어 및 비구어적 수단의 습득과 사용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고자 하는 의도 표현 및 의사소통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었다는 사실에서 가장 큰 문제를 찾아볼 수 있다.** 의사소통을 하고자 하는 의도는 의사소통적 행동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요소이다. 왜냐하면 사람의 행동이 의사소통적인 행동으로 이해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히 표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의사소통을 하고자 하는 의도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표현될 수 있다. 과거에는 자폐 범주성 장애 아동의 의사소통적인 시도가 단순히 결여된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현재는 많은 연구들에 의해서 적절한 의사소통적 신호들을 특정 목적에 사용하는 능력에 있어서 결함을 보이는 것으로 설명된다. 자폐 범주성 장애 아동들은 자신의 언어 수준과는 상관없이 자발화의 결함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방법으로나마 의사소통을 하고자 하는 시도를 보인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의사소통을 하고자 하는 의도는 지니고 있지만 그 의도를 사회적으로 적절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데 문제를 지닌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나름대로의 독특하고도 비전형적인 방법의 의사소통 수단(예: 자해행동, 공격행동, 반항어)이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것은 의사소통을 하고자 하는 의도는 지니고 있으나 전통적인 방법의 의사소통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능력과 자신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려하는 능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4) 행동 특성

자폐 범주성 장애 아동들은 반복적이고 상동적인 형태의 제한된 행동을 보인다는 특성을 지닌다. 특히 이들은 제한된 범위의 관심 영역에 지나치게 강도 높은 독특한 관심을 보이며, 동일한 일과를 따르는 등의 동일성에 대한 비합리적인 집착을 보이고, 상동적이고 반복적인

운동기능상의 습관을 보이며, 사물의 특정 부분에 대한 집착을 보이는 등의 행동 특성을 보인다.

< 자폐 범주성 장애의 행동 특성에 따른 구체적인 행동의 예 >

- ★제한된 범위의 관심 영역에 지나치게 강도 높은 독특한 관심을 보임
 - 특정 주제에만 지나친 관심을 보이고 다른 주제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음
 - 특정 주제나 활동을 종료하는데 어려움을 보임
 - 다른 활동에 방해가 됨(예: 활동에 집착하느라 식사나 화장실 가는 일을 지체함)
 - 독특한 주제에 관심을 보임(예: 물뿌리개, 영화 등급, 우주 물리학, 라디오 방송에서 읽어주는 편지)
 - 특정 관심 영역에 대한 비상한 암기력
- ★특정 비기능적인 일과나 의례적 행동에 융통성 없이 집착함
 - 정확한 순서에 따라 특정 활동을 수행하기를 원함(예: 자동차에서 내려 문을 닫을 때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행동함)
 - 일과의 사소한 변경에 대하여 쉽게 흥분함(예: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다른 갈로 변경할 때)
 - 모든 변화에 대하여 사전 통보를 필요로 함
 - 일과나 의례적인 행동이 지켜지지 않을 때 매우 불안해 함
- ★상동적이고 반복적인 운동성 습관을 보임
 - 흥분했을 때 양 손을 펴서 흔들
 - 손가락을 눈앞에 대고 흔들거나 꿈틀거림
 - 손의 자세가 특이하거나 기타 손의 움직임을 보임
 - 장시간 빙빙 돌거나 몸을 앞뒤로 흔들
 - 발뒤꿈치를 들고 걷거나 뽀뽀
- ★사물의 특정 부분에 대하여 지속적인 집착을 보임
 - 사물을 비기능적으로 사용함(예: 인형의 눈을 손가락으로 두들김, 장난감 자동차 문을 계속 열었다 닫았다 함)
 - 사물의 감각적인 부분에 관심을 보임(예: 사물의 냄새를 맡거나 눈 가까이에서 봄)
 - 움직이는 사물을 좋아함(예: 선풍기, 흐르는 물, 돌아가는 바퀴)
 - 독특한 사물에 집착함(예: 오렌지 껍질, 줄)

특정 사물에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관심의 영역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다는 행동적인 특성은 특정 사물에 지나친 관심을 보이게 함으로써 한 번 집중하기 시작하면 매우 오랜 시간동안 하나의 사물만을 가지고 놀이를 하게 만들곤 한다. 또한 환경의 변화(예: 학교의 실내 환경 변화)나 일과의 변경(예: 예고 없이 이루어지는 시간표 변경)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게 한다. 이와 같은 동일성에 대하여 집착하는 특성은 일상생활에서의 변화나 전이(또는 이동)에 대한 극도의 어려움을 가져다준다. 특히 자폐 범주성 장애 아동이 보이는 반복적이고 상동적인 행동은 아무런 기능적인 목적이 없이 행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최

근의 연구들은 이러한 행동이 때로는 지루함이나 감정의 동요(예: 불안함)를 나타내기 위한 의사소통적인 시도의 목적을 지닐 수도 있으며, 자신의 의식 수준을 조절하기 위한 기능을 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동은 학습을 방해하거나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통합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자폐 범주성 장애를 지닌 아동은 반복적이고 상동적인 행동 외에도 공격행동, 자해행동, 성질부리기(tantrum), 기물 파손 등의 문제행동을 보이곤 한다. 특히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심각한 해를 끼칠 수도 있는 자해행동이나 공격행동은 신속하고도 적절한 교수를 필요로 한다. 장애 아동이 보이는 문제행동의 약 75~80% 정도가 의사소통적인 기능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문제행동이 지니는 의사소통적인 기능을 대신 해줄 수 있는 적절한 대체행동을 교수함으로써 이들의 문제행동에 접근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자폐 범주성 장애 아동들은 감각(또는 감각-지각)이나 운동기능에 있어서도 문제를 보이며,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ADHD)를 보이기도 한다. 자폐나 아스퍼거 증후군을 지닌 아동의 상당수가 감각 및 운동기능 장애를 보이며, 그 나타나는 시기, 증상, 형태는 다양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들의 대부분의 경우는 감각 자극에 대한 과잉반응을 보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과소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운동기능 장애의 경우 특이한 자세나 얼굴, 머리, 몸통, 팔다리 등의 비정상적인 움직임, 독특한 걸음걸이 등의 특성으로 나타난다.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ADHD) 역시 자폐 범주성 장애 아동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행동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충동성과 함께 기타 관련 행동 특성들(예: 낮은 좌절 인내력, 빈약한 집중력,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과도한 집착, 불안정한 감정)을 보이곤 하는데, 과잉행동은 학령기가 되어서 감소되기도 하지만 주의력 결핍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남아 학업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III. 자폐 범주성 장애 아동의 양육

1. 교육의 기본적인 원칙

1) 통합교육

자폐 범주성 장애를 지닌 아동들은 사회성 및 의사소통에 있어서의 결함이라는 장애의 특성으로 인하여 통합교육을 통한 접근이 더욱 강조된다. 이것은 사회성이나 의사소통의 발달이 또래와의 자연스러운 경험을 통하여 습득될 수 있으며, 습득된 특정 기술들도 또래와의 자연적인 상호작용 맥락에서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자폐 범주성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그 성과가 인정되고 있는 모델 프로그램들은 전형적인 발달을 보이는 또래와의 통합 경험을 프로그램의 핵심적인 구성요소로 포함하기도 한다. 실제로 미국에서 통합교육의 형태로 이루어진 조기교육을 받은 아동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아동들에 비해서 초등학교 통합 비율이 더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자폐 범주성 장애 아동을 입학 초기부터 통합교육을 제공하는 미국의 월덴유치원(Walden Preschool)의 경우 79%에 이르는 아동들이 졸업 후 초등학교 일반학급에 통합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것은 미국 전체 초등학교 일반학급에 통합된 자폐 범주성 장애 아동의 비율이 5%도 채 되지 않으며, 하루 일과의 20% 이상을 일반학급에서 보내는 아동도 약 20%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사실과 비교해볼 때 매우 고무적인 성과가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자폐 범주성 장애 아동의 통합교육은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시작하여 자연적인 상황에서의 사회성 및 의사소통 기술을 습득하고 활용하게 함으로써 장애의 일탈적 발달 특성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 사회성 발달 장애를 고려한 교육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연적인 교수 환경 내에서 교사나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발달과 학습을 성취하게 된다(예: 교사의 수업, 또래와의 놀이). 그러나 자폐 범주성 장애 아동의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사회성 발달에 있어서의 일탈적인 결함을 보인다는 특성으로 인하여 이와 같은 자연적인 교수 환경만으로는 발달과 학습을 촉진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단일 목표행동을 습득시키기 위한 행동주의적 접근은 한계가 있으며, 일탈적 발달 현상을 보이는 특성으로 인하여 단순한 발달주의적 접근도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자폐 범주성 장애 아동을 위해서는 분리된 개별 행동을 학습시키기보다는 장애의 주요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좀 더 폭넓은 행동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교수해야 한다. 최근에는 이와 같은 인식에 따라 자연적인 환경에서의 전반적인 사회성 발달을 고려한 교수목표를 설정하여 자연적인 상황에서 구조화된 환경이나 성인의 관심, 프로그램 전반의 일관성 등의 행동주의 요소들을 결합시킨 종합적인 교수방법이 제안되고 있다.

(1) 사회성 및 의사소통 중심의 교육과정

다른 장애와 마찬가지로 자폐 범주성 장애 아동의 교육에 있어서 가르쳐야 할 교육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자폐 범주성 장애 아동의 교육은 장애의 주된 특성이 사회적 발달에 있어서의 일탈적인 결함에 따른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거나 기능적인 상호관계를 보이지 못하는 것이라는 사실에 근거하여 기능적인 사회적 행동과 의사소통 기술의 학습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되어야 한다. 사회적 발달 촉진을 위한 교육과정은 사회성 및 사회적 관계를 구성하는 모든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일탈적 발달 현상이 나타나는 사회성 및 사회적 관계의 모든 측면을 포함하는 것 외에도 사회적 발달의 결함으로 인하여 사회성을 대체해서 나타나곤 하는 부적절한 행동, 또는 비전형적인 방법의 의사소통 행동 등을 위한 교육적 접근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청소년기나 성인기에 이른 자폐 범주성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사회생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여가활동 및 직업교육도 강조되어야 한다.

(2) 조기교육

자폐 범주성 장애 아동의 교육에 있어서 성공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공통적으로 조기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만 5세 이전에 교육을 시작한 아동들에게서 나타난 뛰어난 교육적인 성과가 보고되었으며, 3세 이전에 교육이 제공되는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그 교육적 성과가 더 긍정적이었다. 또한 조기교육이 자폐 범주성 장애 아동의 지적, 교육적, 사회적, 정서적 행동적인 면에서 확실하고도 지속적인 발달을 가져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3세 이전의 자폐 범주성 장애 아동을 교육시키기 위한 지원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교육 체계 내에서 자폐 범주성 장애 아동의 조기 발견 및 적절한 교육 제공을 위한 지원의 틀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3) 통합교육

특수교육에 있어서 통합교육은 이미 그 당위성 주장의 단계를 지나서 방법론적인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을 정도로 시대적인 흐름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수교육 중에서도 자폐 범주성 장애 아동의 교육에 있어서의 통합교육의 중요성은 자폐 장애가 근본적으로 사회성 발달 장애라는 사실을 통하여 더욱 강조되고 있다. 자폐의 주요 장애가 사회성 발달에 있어서의 일탈적 발달 현상을 보이는 장애임을 인식한다면 전형적인 사회적 발달을 보이는 또래들과의 통합교육을 통하여 사회성 발달을 위한 자연스러운 환경과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4) 일반화를 강조한 교수방법

일반적으로 특정 기술이나 행동을 학습한 아동이 그 학습한 내용을 교수 이외의 상황에 일반화하지 못하거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지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효과적인 교수방법이라고 할지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교수의 효과는 없는 것으로 말할 수 있다. 특히 자폐 범주성 장애 아동은 사회성 발달에 있어서의 일탈적 발달이라는 자폐 장애의 특성으로 인하여 일반화의 어려움을 보이며, 이로 인하여 기술 일반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교육의 주요 구성요소로 강조되어야 한다. 앞에서 설명한 사회성 및 의사소통 기술을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의 운영과 아동을 통합 환경에 적응시키기 위한 교육이 그 내실적인 면에서의 성과를 인정받기 위해서도 일반화 중심의 교수방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3) 기능성 중심의 의사소통 교육

언어 및 의사소통 교육은 이 영역이 지니는 사회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특별히 기능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특히 자폐 범주성 장애 아동의 의사소통장애가 사회-인지적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장애이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의사소통 교육은 특별히 기능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따라서 언어나 의사소통의 형태를 습득시키는 것보다는 습득한 기술을 자신의 환경에서 어떻게 기능적으로 사용하게 할 것인가 하는 점을 더욱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우유”라고 발음하게 하는 것보다는 우유가 마시고 싶을 때 우유를 가리키거나 “우유”라고 말하게 함으로써 우유를 마실 수 있는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기능성 중심의 언어 및 의사소통 기술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원칙들을 이해하고 적용해야 한다.

(1) 발달 수준 및 기능적인 기준을 근거로 한 교수목표

교사는 아동의 발달 수준과 기능적인 기준을 근거로 가르칠 목표행동을 선정해야 한다. 아동의 발달 수준을 근거로 한다는 것은 아동의 언어 및 의사소통 발달에 관한 현행 수준을 이해하고 적절한 교수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2) 자연적인 상황에서의 기능성이 강조된 교수

자폐 범주성 장애 아동에게 의사소통 기술을 교수함에 있어서 진보된 언어 형태(예: 어휘, 문법)를 강조하기보다는 모든 자연적인 상황에서의 언어 및 의사소통의 기능적인 사용을 강조해야 한다. 이들의 언어교육에 있어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우선순위는 아동에게 일련의 언어적 행동을 학습시키는 것이 아니라 언어적이거나 비언어적인 수단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동에게 의사소통을 하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며, 또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3) 상호적 의사소통의 촉진

의사소통 대상자와의 균형을 이룬 상호적인 의사소통을 촉진하기 위해서 자연적인 환경이 제공되어야 한다. 양방 간 상호작용적인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아동은 수동적인 대화자가 되거나 자신의 의도를 주장하기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예: 공격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게 된다. 그러므로 아동으로 하여금 언어나 의사소통 행위를 시작하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교수 영역의 하나이다.

(4) 의사소통의 주요 대상자 교육

교육의 주요 대상자가 자폐 범주성 장애 아동으로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아동 주변의 주요 인물들이 촉진적인 상호작용 스타일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대상자로 포함해야 한다. 의사소통이란 두 사람간의 협력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의사소통 촉진을 위한 교수목표는 두 사람 모두의 행동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5) 행동지원 프로그램과의 병행

기능성 중심의 의사소통 교육을 위해서는 자폐 범주성 장애 아동이 보이는 문제행동 지도를 위한 프로그램이 의사소통 프로그램과 전적으로 통합된 형태로 실시되어야 한다. 자폐 범주성 장애 아동의 언어 및 의사소통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은 단순한 언어 학습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 능력에 있어서의 발전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 장소, 사건들에 접근하게 함으로써 아동 개인의 생활을 강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2. 다양한 교육방법의 선택

자폐 범주성 장애 아동을 교육하는 많은 전문가와 부모들은 아동에게 적절하고 효율적인 교육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자폐 범주성 장애를 지닌 아동들에게 적절하다고 주장되는 수없이 많은 중재와 치료의 방법들이 존재하며, 이들 중 많은 방법들은 과학적인 타당성이 입증되지 못하였거나 거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부모들이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다양한 중재와 치료의 방법들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자녀에게 가장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부모와 전문가들이 자폐 범주성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고안된 중재나 치료의 과학적인 타당성을 인식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Autism Spectrum Disorder: Interventions and Treatments』(Simpson, 2005)라는 책이 출간되었으며, 한국어 번역판(이소현 역, 2005)도 출간되었다. 이 책은 부모와 전문가들이 자폐 범주성 장애를 지닌 것으로 진단된 아동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가장 큰 가능성을 지닌 방법들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집필되었다. 물론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효과적인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특정 방법이 다른 방법들보다 좀 더 나은 결과를 보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며, 이러한 정보는 정확하고 간단한 형태로 제시될 수 있어야 한다.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든 중재와 치료 방법들은 <표 3>에서와 같이 정리된다.

IV. 맺음말: 부모의 역할

자폐 범주성 장애는 최근에 들어서면서 그 출현률이 증가하고 있는 장애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장애의 성격을 규명하고 적절한 교수방법을 적용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장애 영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의 정확한 속성이나 그 원인 등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아직까지도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폐 범주성 장애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들은 장애를 이해하고 자녀의 특성에 맞는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결정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특수교육 지원 체계 자체가 지금까지 자폐 범주성 장애 아동을 위한 특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자폐 범주성 장애를 지닌 아동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일 자체가 부모에게 더욱 큰 부담으로 가중되어 왔다.

그러나 자녀의 양육이란 그 일이 어렵다거나 지원 체계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이 사실이다. 현재 처해진 상황에서 자녀를 위한 가장 바람직한 결정을 내리고 가장 바람직한 형태의 지원을 제공해 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자폐 범주성 장애를 지닌 자녀를 둔 부모의 역할로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 세 가지를 소개하며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 부모들은 무엇보다 먼저 자폐 범주성 장애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다른 장애도 마찬가지로이겠지만 특히 자폐성 장애는 그 특성이 독특하여 장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만 올바른 지원이 가능해진다. 자폐 범주성 장애를 지닌 아동들은 많은 경우 정신지체를 함께 보이기도 하며, 지적 능력의 결함과 자폐 범주성 장애의 특성으로 인하여 학업 성취에서도 어려움을 보이곤 한다. 특히 사회성 및 의사소통 영역에서의 일탈적인 발달과 행동 문제들로 인하여 일반적인 사회에서의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보이기 때문에 적절한 지원을 필요로 한다. 자폐 범주성 장애를 지닌 아동들이 일반 사회 및 교육 현장에서 잘 적응하고 교육적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적 접근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진단하고 교육을 시작하되 사회성 및 의사소통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통합교육을 통하여 자연적인 학습 상황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

어야 하며, 학습한 기술들을 일반화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자폐 범주성 장애 아동의 양육을 위해서는 아동이 속한 환경 내의 모든 사람들, 다시 말해서 가족, 교사, 또래들을 포함하는 모든 사람들이 장애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장애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적 접근을 계획하고 실행해야 한다. 자폐 아동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는 부모들이 자녀의 장애 특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접근하게 될 때 그 자녀를 교육하는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통하여 지원 체계가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되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자폐 범주성 장애 내에서도 장애의 정도나 특성이 다양하므로 부모들은 장애를 이해하는 것 외에도 자녀 개인의 특성이나 선호도 등을 함께 이해해야 한다. 자폐 범주성 장애는 복합적인 생물학적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행동적 증후군(behavioral syndrome)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아직까지 그 정확한 원인을 단정적으로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원인에 따른 일관성 있는 치료적 접근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자폐 범주성 장애를 지닌 아동을 교육할 때에는 원인이나 장애명에 따른 치료적 접근보다는 개별 아동이 보이는 행동적 증후를 기초로 하는 다양한 교육적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접근 방법임을 인식해야 한다. 개별 자녀의 특성을 이해할 때에는 자폐라는 장애 특성의 측면에서만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자녀가 지니는 강점이나 성격 등을 함께 이해해 주어야 한다.

셋째, 자폐 범주성 장애를 지닌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녀의 행복한 삶, 즉 자녀의 삶의 질에 가장 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이것은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부모들에게 적용되는 내용일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녀가 장애를 가졌거나 가지지 않았거나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다. 간혹 부모들 중에는 자녀의 장애로 인하여 장애를 치료하거나 좀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하는 일에 최우선적인 관심을 두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최우선적인 관심이 자녀들의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한 수단이어야 하며, 그 자체가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이 자녀가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임을 고려한다면, 자녀들 스스로가 행복하다고 여기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마도 부모의 가장 큰 역할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자녀와 함께 삶을 살아가는 부모가 자녀와 함께 살아가는 자신의 삶을 행복하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다.

자폐성 발달장애에 대한 이해

주간보호팀 이지원 사회복지사

순 서

1. 자폐성 발달장애의 정의
2. 자폐성 발달장애의 원인
3. 자폐성 발달장애의 특징
4. 자폐성 발달장애의 유병률
5. 자폐성 발달장애의 분류
6. DSM-4의 발달장애 진단기준

1. 자폐성 발달장애의 정의

자폐성 발달장애란 사회적 관계의 결핍, 의사소통 능력의 결핍, 계속적인 강박행동, 변화에 대한 저항 등으로 특정 지어지는 아동기 증후군이다(홍강의 외, 1997).

Kanner(1943)가 처음 규명한 자폐성 발달장애는 사람과의 정감적 접촉을 발달시키고 조절하는 생물학적 체계의 선천적 결함으로 정의했으며, '정서적 접촉의 정서적 장애(Autistic Disturbance of Affective Contact)'라는 논문에서 유아자폐증(infantile Autism)이라는 진단명을 처음으로 사용하였다(Kanner, 1943).

처음으로 이 장애에 대해 체계적으로 기술하고 또 자폐성 발달장애가 보이는 기능장애의 유사성을 지적한 사람은 Kanner였으나, 이러한 Wing(1996)과 Frith(1991)는 역사문헌, 임상 보고, 소설, 그리고 성직자들의 전기에서 자폐성 발달장애가 오래 전부터 존재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흥미 있는 사례들을 찾을 수 있다.

2. 자폐성 발달장애의 원인

자폐성 발달장애의 원인은 1960년대 이후에 다양한 지각적, 인지적, 운동 기능의 장애 등을 통해 뇌 기능의 장애로 보기 시작했다(Baumann & Kemper, 1994). 지각장애와 운동장애는 자폐증의 기본적인 원인으로 자폐성 발달장애인들이 보이는 모든 비정상적인 행동들이 왜곡된 감정 반응의 결과라고 설명했다(Ornitz, 1974).

자폐의 원인을 병리신경생물학적(pathoneurophysiological)인 뇌의기능장애로 보는 최근의 관점들에도 불구하고, 자폐성 발달장애인의 뇌에 대한 사후 검사에서 어떤 일관된 신경병리학적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생화학 연구가들도 신경전달물질의 일관된 비정상을 발견하는데 실패하였다. 이러한 많은 정보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모델로 이러한 다양한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총체적 이론은 아직 없다. 그 원인을 출생 전에 생긴 뇌의 발달장애로 보는 증거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도 자폐성 발달장애가 어느 하나의 원인으로 발생한다고 단정짓기는 힘들다(김수지 외 공역, 2002)

3. 자폐성 발달장애의 특성

1) 일반적 특성

자폐성 발달장애의 필수 증상은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이 현저하게 비정상적이며 발달이 장애되어 있고, 활동과 관심의 종류가 현저하게 제한되어 있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장애의 표현은 개인의 발달 수준과 생활 연령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DSM-IV, 1994).

대부분의 경우에 중간 정도(지능지수 35-50)의 정신지체가 동반되고, 약 75%는 정신 지체 수준에서 기능한다. 인지 기술의 발달이 비정상적이고, 수용성 언어 수준이 표현성 언어 수준보다 더 낮다. 다양한 행동 증상을 보이는데, 과잉행동, 짧은 집중 시간, 시간 충동성, 공격성, 자해 행동을 보이고, 특히 어린 소아에서는 분노 발작을 포함한 행동 증상을 보인다. 감각 자극에 대한 이상 반응을 보이기도 하며, 식사, 수면에 이상이 있을 수 있다. 기분이나 정동에도 이상을 보이며, 위험 대상에도 일반적이지가 않다. 청소년기나 초기 성인기 생활에서, 병식을 가질 만큼 지적 능력을 갖춘 자폐성 발달장애가 있는 소수의 자폐성 발달 장애인들은 자신의 심각한 장애에 대한 인식 때문에 우울해 질 수 있다(DSM-IV, 1994).

2) 청소년기 특성

일부의 경우 청소년기에 더 문제가 증가하고 정서와 행동의 장애가 증가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청소년기는 상당히 안정적인 시기가 된다. 청소년기에 향상되는 경우는 보다 능력이 있는 아동의 경우로, 이들은 자신의 문제점을 더 잘 인식하고 이러한 문제점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찾아낸다.

4. 발생률

한 연구에 따르면 **만 명당 6.6-13.6명**의 정도로 일어난다고 보고 있으며(Gillberg, 1990), 여성보다 남성에서 4배 내지 5배 더 많고, 이 장애가 있는 여성은 더 심한 정신지체를 나타낸다(DSM-IV, 1994).

3세 이전에 발병하며, 유용한 추정에 의하면, 단지 소수의 자폐성 발달장애인들만이 성인기에 독립적으로 일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며 3분의 1은 부분적인 독립이 가능하다. 자폐성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성인이 가장 높은 수준에서 기능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현저하게 제한된 관심과 활동뿐만 아니라 사회적 상호 작용과 의사소통에서 지속적인 문제가 나타난다(DSM-IV, 1994).

5. 윙과 고울드의 아동기 자폐성 장애인의 4가지 분류

사회적 손상의 유형에 따라 자폐성 발달장애인들의 아동기를 세 집단으로 나눌 수 있다고 시사한 Wing과 Gould(1979)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아동기의 분류로 성인기를 예측, 판단해볼 수 있다(Wing & Gould, 1979)

첫 번째, 무관심한 집단으로 실제 이러한 아동들은 혼자 남겨졌을 때 가장 행복해 보이는 아동들이다. 일부는 거친 놀이를 꽤 즐기기도 하지만, 대개의 경우 눈길을 회피하고 신체접촉을 싫어한다. 대인과 대물의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타인의 느낌이나 감정에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아동들을 ‘자신만의 세계 속에 있다’고 표현한다. 신체의 통증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으며, 부모와의 분리에도 불편해하지 않는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친숙한 성인에게 애착을 형성하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다른 아동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아동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고립되고 반응을 잘 하지 않는다.

두 번째, 수동적인 집단으로 가장 혼하지 않은 자폐성 발달장애인의 집단으로 시사하였다. 이 아동들은 적극적으로 접촉을 피하지는 않으나 접촉을 시도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손가락으로 알리거나 표현하는 일은 결코 없으며, 원하는 것에 대해 사람이나 물건 옆에 가서 서있으므로 타인이 알아채기를 기다린다. 이러한 아동들은 눈맞추라는 지시 따르기가 가능하고, 일반 아동들에게 수동적으로 말 잘 듣는 놀이상 대역을 해주기도 한다.

세 번째, 적극적이거나 이상한 집단으로 지적 능력이 비교적 높은 아동들의 경우이다. 사회적 장벽에 대한 사회인지 기능의 부족으로 모르는 타인에게도 기꺼이 다가가서 이야기하기도 한다. 강박적인 관심사에 대해 아무에게나 다가가서 자신의 관심사를 확인하며, 만나는 모든 이에게 이야기하려고 한다. 신체적 표현을 매우 잘하나 사회적 규칙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부적절한 행동이나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Wing & Gould, 1979)

최근에 Wing(1996)은 **네 번째 집단을 첨가하였는데, 지나치게 형식적이고 척하는 집단**이다. 이러한 유형은 후기 청소년기 또는 초기성인기에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며, IQ가 높고 표현언어 능력이 매우좋은 사람에게서 전형적으로 나타난다. 이 집단은 가족을 낳진 사람처럼 대하며, 항상 지나치게 공손하고 형식적이어서 친구들의 놀림감이 되기도 한다. 규칙에 대해 지나치게 철저하며 규칙 위반한 사람에게 화를 잘 내므로 집단 안에서의 사회 생활에 문제를 일으킨다(Wing, 1997)

6. 발달장애 DSM-4 진단기준

1) 사회적 상호작용의 질적인 결함

- 여러가지 비언어적 행동(눈맞춤, 얼굴표정, 몸짓,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제스처)를 사용하는데 심한 결함이 있다.
- 발달수준에 적합한 또래관계를 형성하지 못한다.
- 자발적으로 다른사람들과 기쁨, 흥미, 성취를 나누려고 하지 않는다. 즉 관심 있는 것을 보여주거나 가져오거나 가리키지 않는다.

- 사회적 혹은 정서적 상호교류적인 면이 부족하다.

2) 의사소통의 결함

- 말이 늦거나 혹은 말을 거의 하지 못한다. 이 때 제스처나 몸 동작과 같이 말 이외의 다른 것으로 보상하려는 시도도 부족하다.
- 말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데 있어서 심한 결함을 보인다.
- 반복적인 말을 사용하거나 의미 없는 이상한 말을 한다.
- 발달수준에 적합하게 다양하고 자발적인 가상놀이 혹은 사회적 모방놀이를 하지 못한다.

3) 제한되고 반복적이며, 상동증적인 행동, 관심, 활동들

- 고집스럽고 지나치게 한두가지 제한된 면에 관심을 갖는다.
- 특정한 불합리한 일상이나 의식에 집착한다.
- 상동증 행동, 이상한 자세들(예를 들면 손이나 손가락을 흔들거나 꼬는 행동)
- 물건의 일부분에 집착한다.

--->적어도 3세 이전에 세가지 영역 중에서 지연이나 기능이상 발생해야 한다.

--->세가지 영역에서 6개 이상 해당해야 하며 적어도 1번에서 2개 2번, 3번에서는 각 1개씩 해당해야 함.

※DSM-4 ?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심리적인 증상과 증후군을 위주로 정신관련 장애를 분류한 책

참고자료

- 강진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3 국내석사
“성인 자폐성 발달장애인의 사회인지 기능을 위한 음악치료적 접근“
- 이연주,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0 국내석사
“성인자폐성장애인을 돌보는 부모의 돌봄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자폐증

자폐증(autism) - 전반적 발달장애

자폐증은 3세 이전부터 언어 표현-이해, 어머니와의 애착 행동, 사람들과의 놀이에 대한 관심이 저조해지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이는 3세 이후에는 또래에 대한 관심의 현저한 부족, 상동증(반복행동), 놀이행동의 심한 위축, 인지 발달의 저하 등이 함께 나타나는 발달상의 장애이며, 전반적 발달장애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다.

대표적 증상으로는 사회적 상호 작용에 질적인 문제를 보이고 언어와 의사소통에 장애를 보이는 것이다. 또한 특정 행동을 반복하는 상동증을 보이고 기분과 정서의 불안정성을 보이기도 한다. 75%의 자폐증 환자는 정신 지체 문제를 보인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

자폐스펙트럼장애(자폐성장애)를 가진 사람 중에는 누구도 똑같은 특성과 증후군을 가지진 않는다.

각자 신체생리학적 특성, 살아온 환경, 가족의 유전인자, 교육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들이 조합하여 다양한 성향을 보일 수 있는 것이다.

마치 햇빛은 한 가지의 색처럼 보이지만 프리즘을 통하면 다양한 색깔로 펼쳐져 보이는 스펙트럼처럼 자폐스펙트럼장애(자폐성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증상적 특성과 성향이 각양각색으로 보이기 때문에 자폐성장애라는 말에 ‘스펙트럼’이라는 용어를 첨가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자폐스펙트럼장애(자폐성장애)는 1)사회성의 결여와 2)언어적 또는 의사소통의 문제 3)제한되고 반복적인 양상을 보이는 행동 등을 특징으로 하는 3가지의 핵심적인 증상을 보이고 있다. 즉 근본적으로 자폐스펙트럼장애라는 단일체로 묶인 아동들이 평가라는 프리즘을 거치면 세 가지 핵심손상과 관련하여 다양한 증상과 수준을 보인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폐스펙트럼장애에서는 세 가지 영역에서의 손상이 항상 연결되어 문제가 나타나지만 이러한 문제의 정도는 개인 간에 현저한 차이가 있으며 또한 각 영역에서 손상이 나타나는 정도는 한 개인 내에서도 차이가 있다.

자폐성장애의 특성

1. 인지

- 25% 내외는 정상 또는 경계선급 인지기능을 보이고, 75% 내외는 지적장애 범위에 속함
- 기억력이 뛰어난 경우도 있으나(오래전의 사건 기억, 일가친척의 생일 기억, 텔레비전 채널 외우기 등), 상황에 부적합하거나 무의미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됨.
- 상상력을 요구하는 놀이나 게임을 하기 어려움 (예 : 소꿉놀이).
- 감각기관을 통해 들어온 감각정보를 뇌에서 해석하고 통합하는데 장애가 있음.

2. 언어

- 과반수의 자폐성장애인은 말 또는 비언어적(몸짓, 손짓, 표정 등) 의사소통 수단이 없음.
- 25% 정도는 정상언어와 비언어기술을 습득하고, 25% 정도는 제한된 의사소통기술을 가짐.
- 말을 할 수 있어도 무의미하게 또는 자기 자신만이 알고 있는 특이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자기의 욕구를 표현하기 위한 의사소통 수단으로 사용 못 하는 경우가 많음.
- 텔레비전 선전광고나 동요를 정확하게 외우지만, 상황에 맞거나 의사소통에 사용하지 않음.
- 남이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 반복함.
- 의사소통을 어느 정도 하는 아이도 표현력보다 남의 말을 이해하는 수용언어 능력이 더 떨어짐.
- 영아기에 웅얼이하지 않고, 엄마의 말을 흉내 내는 모방행위가 없음.
- 말을 할 때 억양이 단조롭거나 또는 비정상적이고 고음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음.
- ‘나’와 ‘너’, ‘자기’와 ‘다른’ 사람과의 구별이 어려움. 때로는 “밥 주세요” 대신에 “밥 줄까?”라고 말함.

3. 사회성

- 정서적인 상호반응 또는 정신적인 유대감 형성이 어려움(친한 관계 형성이 안 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함).
- 엄마와의 애착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형성이 어려움. 따라서 엄마와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울거나 매달리지 않음. 그러나 3~4세 경에는 엄마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됨.
- 눈을 마주치지 않음.
- 안아주어도 신체적인 접촉을 좋아하지 않거나 피하는 경향이 있음.
- 주위 사물이나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고(형제에게까지), 또래와의 관계 형성이 안 됨.
- 자기 스스로 원하는 놀이나 욕구를 찾지 않음.
- 주로 혼자 시간을 보냄

4. 기타 특이한 행동

- 주의가 산만한 경향을 보임.
- 한 자리에 앉아있지 못하고 계속 돌아다님(과잉행동).
- 얼굴 일부를 찢룩거리거나, 눈을 계속 깜박이거나, 딸꾹질을 하는 등의 틱 증상을 보이거나,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행동을 보이기도 함.
- 1차 가족 (예를 들어 어머니나 아버지 등)만을 알아보는 등 일반아동과 친밀도가 다름.
- 몸을 빙글빙글 돌리기, 손가락을 계속 쳐다보기, 장난감 자동차 바퀴를 계속 돌리기, 책장 넘기기, 팔짝팔짝 뛰면서 침대 위나 소파 위에서 계속 뛰기, 까치걸음으로 걷기 등의 상동 행동을 보임.
- 변화에 대한 저항이 많음 (가구 위치를 변경했을 경우 소리 지르면서 신경질 부릴 수 있음.)
- 똑같은 것을 고집하고 이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경향 때문에 새로운 환경이나 경험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함(항상 같은 길로 다님).
- 반복적으로 몸 전체, 또는 일부를 흔드는 행동을 보이기도 함.
- 자신의 몸을 때리는 행동(자해행동)을 보이기도 함.
- 이물질을 집어먹는 행동을 보이기도 함.

- 종이 찢는 행동을 보임.
- 남들이 자기한테 해를 끼쳐도 이를 방어하지 못함.
- 전체적인 운동 면에서 유연성이 결여됨.
- 여러 능력 면에서 불균형한 발달수준을 보임(예 : 언어 등은 심한 지체를 보이지만 기계적인 기억, 특정한 조작능력 등은 정상아보다 뛰어날 수도 있음).
- 주위 환경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자극 중 한가지에만 집착하여 과잉반응을 보이고, 다른 자극에 대해서는 무시함.

자폐성장애의 원인

미국 Johns Hopkins 대학병원의 소아정신과 주임교수였던 Dr. Leo Kanner는 유아기 자폐 성장애에 대한 원인으로 소위 '냉장고 엄마(refrigerator mother)'를 제시하였다. 즉, 차갑고 정이 없는 엄마가 아기에 대하여 냉혹하고 거부감을 보임으로써, 아기가 이로 인하여 발달이 지연되면서 자폐성장애를 보인다고 하였다. 이 외에도 환경오염, 백신, 소화기 기능 이상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자폐 범주성 장애의 발생 원인으로 설명되기도 하지만, 현재로서는 두뇌 기능의 생물학적 이상의 문제라는 측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처럼 자폐스펙트럼장애(자폐성장애)의 정확한 발생 원인에 대하여 말할 수는 없지만, 현재로서는 뇌의 생물학적인 이상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자폐성장애를 야기한다는 것이 정설로 알려져 있다.

부모의 자폐 발생 원인에 대한 잘못된 믿음은 치료의 방향을 잘못 설정하게 만들기도 한다. 예를 들어, '자폐 아동의 부모가 잘못된 양육을 했기 때문'이라는 가설은 이미 수용되기 어려운 가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잘못 양육했기 때문에 자폐 범주성 장애를 가지게 되었다는 죄책감을 지니는 것은 교육 및 치료의 방향을 부모와 아동의 관계에만 초점을 두게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자폐중재법/중재 선정 기준

-조기중재법

조기교육(early education) 혹은 조기 중재(early intervention)는 만 3세 이전에 시작한 교육과 치료교육을 의미한다.

-보완적 중재

음악치료, 미술치료, 운동치료, 감각통합치료 등 개별적 특성에 따라 모자라거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중재 방법

-행동주의적 중재

보상과 강화에 근거한 행동의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행동주의적 중재는 특정 기술을 발달시키거나 특정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에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목표행동을 작은 단계들로 나누어서 하위목표를 만들고, 작은 단계의 목표 행동이 발생토록

촉진하고, 목표행동이 발생하면 보상하는 것이다.

-의학적 중재

자폐성장애틀 지닌 사람에게 의학적 처치가 이루어지는 중재 방법으로써 일반적으로 약물치료는 과잉행동, 상동행동, 불안과 긴장, 우울, 강박, 자해행동, 공격행동 등 특정 행동적인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폐스펙트럼장애(자폐성장애틀)를 지닌 것으로 진단받은 아동들이 현재 받을 수 있는 중재는 그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것부터 연구에 의해서 효과가 검증되고 있는 것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이렇게 다양한 중재들 중에서 특정 중재를 선정하는 것은 부모에게 어려운 과제이다.

부모들은 자녀에게 꼭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중재를 판단하기 위해서 자녀의 현재 연령, 어떤 기술을 시급하게 습득해야 하는가, 어떤 강점을 지니고 있으며 또한 부족한 점은 무엇인가 등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다음에 제시되고 있는 몇 가지는 부모가 자폐스펙트럼장애(자폐성장애틀)를 지닌 자녀에게 적합한 중재나 치료를 선택하고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하는 점들이다.

- 선택하고자 하는 특정 중재가 자녀에게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지니고 있지는 않은가? 즉 부작용은 없는지, 신체적 혹은 정신적 해로움을 끼치는 요소들은 없는 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 선택하고자 하는 특정 중재가 좋다는 것을 확신할만한 어떤 근거들이 있는 것인가?
- 선택하고자 하는 특정 중재가 자폐 범주성 장애를 지닌 아동을 위해 개발된 것인가? 만약 아니라면 이들에게도 효과적이라는 증거는 있는가?
- 선택하고자 하는 특정 중재가 효과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즉 효과를 측정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 선택하고자 하는 특정 중재를 사용하였을 때 우리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 선택하고자 하는 특정 중재를 받기 위한 경제적 비용이 부담스럽지는 않은가?
- 선택하고자 하는 특정 중재를 개발하고 실행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얼마나 오랫동안, 어떤 연령층을 대상으로 실행해 왔는가? 실행하는 사람들은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들인가?

부모가 중재를 결정하고 실행할 때 유의해야 하는 것은 단기간에 즉각적인 치료 효과를 기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며, 또한 성공과 실패를 경험한 수기나 부모들이 언급한 치료를 무조건 믿고 결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대나 믿음보다는 오히려 내 자녀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자기 자신을 믿고, 여러 가지 제공되는 자료나 정보들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출처] 한국자폐인사랑협회

[출처] 발달장애 및 자폐스펙트럼 장애아동과 가족에 대한 지원방안 “내 아이는 무엇이 다른걸까” 차성희외, 생각나눔

[출처] 이승희외 『자폐스펙트럼장애의 이해』, 학지사 (2011)

< 자폐성장애 : Autistic Disorder >

주간보호센터 임명호

1. 자폐성장애란?

- 한 가지 일차적 손상이라기 보다는 여러 발달적 측면의 결함이 복합된 장애이다.
- 사회적 상호작용, 의사소통 기술 발달의 손상, 제한된 행동양식과 제한된 관심을 보이는 전반적 발달장애이다.
- 1943년 Kanner가 최초로 임상증후군으로 기술했고, 그는 자폐증의 핵심특징을 사람과 상황에 대해서 반응할 수 없는 '자기 안에 갇혀있기'라고 표현했다.
- 아동은 통상적으로 명백하게 정상 발달단계를 거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상 증상을 3세 이전에 분명히 보인다.
- 진단을 내리려면 발달이상은 첫 3세 이내에 있어야 하지만, 이 진단은 어떤 나이군에서도 내릴 수 있다.
- 자폐증 80%가 정신지체를 동반하고 있으며, 약 60%는 IQ 50미만이다.
- 여자보다 남자가 4배 정도 더 많이 발생하지만, 여자의 경우 자폐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난다.

2. 자폐성 장애의 특징

(1) 사회적, 정서적 상호교류 결핍 (극도의 자폐적 고립)

자폐성 장애인들의 애착장애와 극단적 고립은 사회로부터 철회현상이 아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사회에 속해있지 않았다. 자폐아동은 이름을 불러도 전혀 반응이 없고, 대답을 하지 않으며, 눈도 마주치지 않고 사람과 대면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 또한 집단에 어울리지 못하고, 주로 혼자서 놀며, 주변에 사람이 있어도 전혀 관심이 없고, 지시나 명령을 무시하며, 다른 사람과의 정서적 교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자폐아동의 사회적 고립은 언어와 또 다른 영역의 발달장애원인으로 작용한다.

(2) 의사소통 장애

자폐성 장애인의 약 50%는 말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며, 또한 이들은 언어를 획득하기 전에도 의사소통의 결함이 보인다. 전반적으로 언어발달이 늦으며, 특히 언어이전기술이 결여되어 있다. 사람들의 말소리를 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부르거나 말을 걸어도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며 반응이 없다. 반향언어의 증상으로 다른 사람이 말한 것을 그대로 반복해서 말하거나 또는 그 장면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말과 이전에 다른 사람이 말한 것을 갑자기 독백처럼 되풀이하는 지연성 반향현상이 나타난다. 또한 대명사의 전도현상이 심해서 '너'와 '나' 및 '우리' 등의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 특히 음성언어 뿐만 아니라 몸짓이나 제스처를 사용하는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형성이 어렵다.

(3) 지적기능

자폐장애인의 지적수준(IQ)은 다양하기는 하나, 전체의 70~80%정도는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정신지체에 해당한다.

(4) 강박적, 의식적 행동 (상동행동)

자폐성 장애인은 동일성의 유지에 대한 욕구가 매우 강해서 같은 동작이나 단순한 놀이를 강박적, 의식적으로 반복한다. 언제나 다니는 길, 동일가구의 배치, 매일 같은 좌석과 일을 고집하고, 변화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반항하며, 전혀 적응하려고 하지 않는다. 또한 특정한 물건과 움직이거나 빛을 내는 것 등 기이한 현상에 관심을 가지고 강하게 집착하면서 그 물건이 없거나 약간의 변화가 있어도 소리지르고, 흥분하는 행동이 나타난다. 이외에도 숫자나 도형 및 선풍기와 같이 어떤 일정한 패턴이 있는 것을 선호해서 자기자극행동으로 반복해서 만져보거나 응시한다.

(5) 감각입력과 반응의 문제

감각자극에 대한 과잉반응과 미온적 반응은 자폐성 장애인에게서 일반적이다. 때때로 큰소리에 무반응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특정한 단조로운 소리에는 극심한 고통을 야기하는 반응을 하기도 한다.

(6) 기타 특징 및 장애

자폐성 장애인의 14~22%에서 자신의 신체 일부를 물거나 때리고, 또는 벽이나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거나 머리카락을 잡아 뜯는 등의 자해행동을 하며, 이는 심한 정신체체가 동반되었을 때 더욱 그러하다.

또한 침착하지 못하고, 집중력이 부족해서 과다행동적인 특성이 있다. 추상적, 상징적, 상상력 능력이 결핍되어 있으며, 과제해결에 있어서는 기억력이나 시각적, 공간적 능력을 포함한 과제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기도 한다. 또한 용변훈련에 어려움이 있다.

3. 원인

< 생물학적 요인 >

① 유전적 요인

자폐증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결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폐증에 대한 유전적 연구를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불구하고 여러 연구에서 검증된 증거들이 자폐증에 관한 유전적 기초를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자폐성 장애인의 형제가 자폐증에 걸릴 확률은 일반의 형제보다 약75배나 높다. 또한 이란성 쌍둥이의 발병일치율은 20% 미만이지만,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 60~91%로 3~4배 정도 높다. 이는 자폐증에서 나타나는 의사소통과 사회성발달의 장애까지 광범위한 결손이 유전과 관련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② 기질적인 요인

자폐증의 기본적인 장애는 표면적인 대인관계 어려움이나 특유한 행동이 아니라, 그 행동을 일으키는 지각, 인지, 언어면에서의 장애이기 때문에 생물학적, 기질적 원인이 자폐증을 유발한다고 보는 것이다. 예로 임신 중에 풍진에 감염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아기의 경우, 뇌의 기질적 손상으로 인해 자폐증을 일으킬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③ 신경계의 장애요인

자폐성 장애인의 뇌파에 관한 EEG연구에서 자폐증으로 진단받은 이들 중에 약 40%가 간질이나 또는 그와 유사한 뇌파 이상을 보이며, 또한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간질 발작을 일으키는 예도 적지 않다. 이는 자폐증이 대뇌 신경계의 장애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4. 치료적 접근

(1) 행동치료

자폐증에 대한 행동치료는 이미 오래 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또한 그 어느 치료법보다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3단계 지시법

사람의 말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지시에 따라 올 수 있는 자폐성 장애인의 자해행동의 수정방법은 1단계로 즉시 큰 소리로 “안돼”라고 언어로 지시한다. 지시에 따라오지 않을 경우에는 엄한 표정과 함께 고개를 저으면서 “안돼”라고 말하고, 시키는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요구하는 것을 주지 않겠다고 경고한다. 자해행동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3단계로 손으로 머리를 붙들고 “안돼, 하지말라”고 하면서 다른 자리로 옮겨 앉게 한다. 그리고 자해행동이 다시 출현될 때마다 일관성있게 훈련을 반복한다.

◆ 신호제지

책상이나 식탁 등에 벨을 설치해 놓고, 자폐장애인의 공격이나 자해행동이 나타나면 즉시 경보의 형식으로 부모나 치료사가 벨을 누른다. 경보소리에 놀란 장애인이 자신의 행동을 멈추게 되면 잘못을 이해시키고, 올바른 행동을 가르쳐준다. 경보기 사용훈련은 이동의 문제행동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계속한다.

◆ 처벌

자폐증 장애인 중에는 자기의 머리를 벽에 부딪치거나 눈을 손으로 찌르고 머리카락을 잡아 뜯는 자해행위를 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침을 뱉거나 얼굴을 때리는 등의 공격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행동은 주로 자기의 기분에 거슬리거나 욕구불만의 표현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부모나 교사는 이러한 행동을 할 경우에는 절대로 원하는 것을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심한 자해행동이 출현할 때마다 손을 수건으로 묶고 들어 올리거나, 또는 입에 레몬즙이 묻은 수건으로 입을 가리기와 같은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다.

◆ 과잉행동수정

자해행동이나 남을 향한 공격행동이 일어날 때마다 즉시 손과 팔을 이용한 운동을 지칠때까지 시킨다. 과잉행동에 의한 과제수행은 적어도 20여분간 강제로 시키고, 또한 문제행동이 발생할 때마다 일관성 있게 실행한다.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용되는 단점이 있으나 치료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부모교육과 상담

부모에 의해 제공되는 온화한 보살핌과 정성어린 교육이 병원이나 특수교육기관의 치료보

다 훨씬 효과적이라는 보고가 나오고 있다. 이는 자폐성 장애인의 치료가 낫선 병원보다는 친숙한 가정이 효과적이라는 것과 또한 부모들이 장애인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훈련하고 교육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는 치료에 부모의 역할을 대단히 중요시하고 부모교육과 상담에 많이 치중하고 있다.

먼저 부모교육을 통해 자폐성 장애인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치료 및 재활방법을 배우게 한다. 또한 부모상담을 통해 부모의 고충과 문제를 해결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게 함으로써 자녀에 대한 부모의 태도의 변화로 자폐성 장애인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대인관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한다.

(3)약물적 치료

아직 자폐증이나 관련된 발달 장애 아동들을 치료하기 위해 법적으로 허가된 치료제는 있지 않다. 따라서 이들에게서 약물치료를 시행할 때는 이같은 한계를 인식한 후에 다른 치료에 병행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따라서 자폐증 치료의 일반적인 원칙들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치료에 앞서 우선 평가척도를 이용한 증상의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이 평가를 위해서 다양한 척도들이 개발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주제에 벗어나기 때문에 생략한다. 그리고 진단에 특수한 치료법이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인 적응력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적인, 환경적인, 사회적인 접근들과 함께 약물 치료가 이용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칙들이 있다.

1. 심리사회적 치료가 약물 치료에 병행되어야만 한다.
2. 약물투여에 대해 안전하고, 지속적인 관리, 모니터링이 되는 생활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3. 병합되는 질병에 대해 주의깊게 살펴보고, 적절하게 치료할 수 있어야 한다.
4. 시간경과에 따른 약물의 증상에 효과를 모니터하는 방법을 세워야 한다.
5. 약물투여에 따른 득실을 계산하고, 환자와 가족에게 이들을 교육시켜야 한다.

자폐증 아동, 청소년 및 성인에 약물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대개 다음과 같은 목표 증상들을 갖는 경우이다. 여기에는 과다활동(hyperactivity), 분노발작(tempertantrum), 자극민감성(irritability), 위축(withdrawal), 상동증(stereotypies), 공격성(aggressiveness), 자해 행동(self-injurious behavior), 우울(depression), 강박행동(obsessive-compulsive behavior)이다 (Campbell 등 1996).

이들 증상은 연령에 따라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아동기 초기에는 과다활동, 자극민감성, 분노발작이 두드러지는데 비해, 후기에는 공격성과 자해 행동이 특징적이다. 청소년기와 성인기에 이르러, 특히 높은 기능수준을 갖는 경우, 우울이나 강박 행동이 문제가 된다. 임상 경험과 연구 결과를 통해서 얻어진 결론은 약물 치료에 의해 특수 교육이나 혹은 다른 심리사회적 치료법의 효과를 증진시키며, 학습을 촉진할 수 있다.

(4)치료약의 종류

◆도파민계 약물 및 항정신병 약물(neuroleptics)

-할로페리돌(haloperidol)과 기타 항정신병 약물

-비전형 항정신병 약물들(클로자핀 clozapine, 리스페리돈 risperidone)

◆세로토닌계 약물(및 항우울제들)

-펜푸루라민(fenfluramine)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차단제들(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s, SSRIs) 및 클로미프라민(clomipramine)

◆삼환계 항우울제들

◆신경펩타이드계 약물

◆기타약물

-비타민 비6(vitamin B, pyridoxine), 엽산(folic acid), 항경련제(anticonvulsants), 리튬(lithium), 안정제(anxiolytics)

“응용행동분석의 이해”



팀 명	주간보호팀
일 시	2014년 09월 18일
발표자	김은숙, 이지원, 임명호, 김세리
장 소	늘푸른동산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ABA-Applied Behavior Analysis-의 간단한 정의

작성자 : 주간보호 김은숙

응용행동분석은 과거에 미국의 심리학자인 에드워드 쏘다이크(Edward Thorndike)가 정리한 효과의 법칙(Law of Effect)을 기초로 하여 하바드 대학의 심리학자인 비 에프 스키너(B. F. Skinner) 박사가 체계화한 작동적 조건화(Operant Conditioning)를 모체로 하여 탄생된 행동 관리 학문이다.

비 에프 스키너 박사의 작동적 조건화가 바로 과거에 선풍을 일으켰던 행동수정이론(Behavior Modification)이다.

그러나 초기의 기대와는 달리 행동수정이론(Behavior Modification)은 운영상 적지 않은 문제점을 노출하였기에 이를 과학적으로 행동수정하여 탄생시킨 이론이 바로 응용행동분석이다.

그러나 응용행동분석 이론도 행동수정의 이론적 기초를 바탕으로 하였기에 행동 수정의 기초적 이론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또한 이 이론은 최근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을 위한 교육적인 모델로 더욱 체계화시킨 미국 UCLA의 이바 로바스(Ivar Lovaas) 박사의 이름을 예우하기 위해서 로바스 방법(Lovaas Method)라고 말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응용행동분석의 구성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변별 학습 이론(DTT: Discrete Trial Teaching)이 그 명칭으로 대체하여 사용되기도 한다.

응용행동분석의 효과성에 관한 확실한 과학적 검증 자료로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UCLA)의 이바 로바스 교수 팀의 연구 결과가 있다.

어린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들을 2 년간 철저히 응용행동분석에 의한 교육을 실시한 후에 89%의 아동들의 현격한 변화가 관찰되었는데 특히 47%의 아동들은 성공적으로 통합할 수 있었으며 지적 능력이나 적절한 행동에 대한 테스트 결과도 평균적인 일반 아동들과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McEachin, et al,1993).

응용행동분석은 다음에 소개하는 기초적인 내용을 그 중심으로 하고 있다.

1. 응용행동분석의 중요 내용

(1) 모든 행동은 학습된다.

응용행동분석의 초점은 아동들이 보이는 모든 행동들은 배워 익힌 것(learning)이고 또한 이렇게 배운 행동들은 상실될 수도 있는 것(unlearning)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들이 보이는 행동적인 증상도 학습된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언제든지 상실하게 할 수 있다(unlearning).

말하자면 문제가 되는 부적응 행동들을 행동치료를 통해서 없애거나 다른 행동으로 바꿀 수 있다는 원리인 것이다.

(2) 변별학습이론 (DTT: Discrete Trial Teaching)

모든 학습된 행동이나 기술은 전제적 자극(Antecedent)에 기인하여 학습되는데 이미 학습된 내용이나 행동 혹은 기술은 후속자극(혹은 결과 유발, Consequence)에 의해서 강화되고 유지하거나 혹은 소멸시킬 수 있다.

그래서 A-B-C 공식이 탄생된 것이고 이것이 바로 변별학습 공식이다.

전제자극(Antecedent) --> 행동 (Behavior) --> 후속자극 (Consequence)

예를 들어 교사가 아동에게

“철수야! 1+2가 뭐니?”(전제자극: Antecedent)라고 질문을 하였는데 아동이 “3” (행동; Behavior)이라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교사는 그가 더 잘 맞추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사탕을(후속자극:Consequence) 보상으로 제공하였다.

이럴 때 아동은 위의 A-B-C의 변별학습 공식에 따라서 학습 내용을 배우게 되는 것이다. 이번에는 행동적인 면에서도 적용을 할 수 있는데 그 예를 들어본다.

아동이 어느 순간에 텐트럼(행동: Behavior)을 보았다면 자신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았기 때문에(전제자극: Antecedent) 발생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텐트럼 행동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타임아웃과 같은 응벌(후속자극: Consequence)을 제공해야 한다. 여기에서도 변별 학습 공식이 적용되어 아동의 행동을 치료하는 것이다.

하나 더 예를 들어 본다. 11개월 된 아기가 더운 여름 날(전제자극: Antecedent)에 우연히 방안을 기어 다니다가, 구석에 놓인 물이 담긴 세수 대야에 우연히 손을 넣었더니(행동: Behavior) 시원함을 느껴서 미소를 지었다(후속 자극: Consequence).

원래 이 아기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물이 담긴 세수 대야에 손을 넣으면 시원해진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지만 우연히 손을 넣은 행동 후에 뒤따른 시원한 보상적 상황(후속 자극)이 이어지기 때문에 나중에는 수시로 손을 넣는 행동을 보이게 된다.

이와 같이 어떤 특정한 행동 후에 유쾌한 보상적 상황이 이어지면 그 행동의 재발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그 행동 후에 불쾌한 응벌적 상황이 이어지면 그 행동

의 재발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이다. 만약에 같은 아이가 더운 날(전제 자극) 방에서 기어 다니다가 구석에 놓여있는 뜨거운 커피 잔에 우연히 손가락을 넣었을 경우(행동) 즉시 아동은 불쾌한 응벌적 상황(후속 자극)을 경험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커피 잔 근처에는 전혀 접근하지 않으려 한다. 이러한 변별 학습 과정을 통하여 아동은 위험의식을 인지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변별 학습은 새로운 개념을 학습하거나 부적응행동을 치료하는데 중요하게 쓰이는 중요한 학습 과정인 것이다.

이는 스키너 박사의 작동적 조건화(operant conditioning) 이론, 즉 행동 수정(behavior modification) 이론을 설명할 수 있는 사례가 되는 것이다. 그의 이론 맥락은 어떤 행동이 발생하였을 때 이어지는 상황이 유쾌한 상황, 즉 보상적 상황(rewarding conditions)이 따르면 그 행동의 재발 가능성이 높아지며, 만약 그 행동에 이어지는 상황이 불쾌한 상황, 즉 응벌적 상황(punishing conditions)이 따르면 그 행동의 재발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스키너 박사의 행동 수정 이론에 첨가하여 그 행동이 일어나는 이유나 원인적 전제 상황을 추가함으로써 변별 학습의 공식과 이론이 성립된 것이다.

(3) 과제 분석(Task Analysis)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들은 학습과 인지적인 능력에서 지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학습방법으로는 별로 반응을 나타내지 못했다.

그 이유로 아동들이 집중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지금까지 갖추고 있는 기술의 수준이 객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일반 아동의 진도 수준으로는 학습이 가능하지 않다.

이러한 아동들에게는 아무리 기능도가 낮은 기술을 가르칠지라도 기술을 세분화하고 과제 분석해서 가르쳐주는 것이 유리하다.

이러한 과제 분석으로 가장 성공을 거둔 사람이 바로 헬렌 켈러(Helen Keller) 여사이다.

이 과제 분석의 기초적 원리는 어린 아이가 떠나는 것은 간단한 기술이지만 세분화한 기능으로 나누어 순서대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제일 먼저 그 아동은 기어 다니는 방법을 배워야 하고, 그 다음은 일어나 앉는 법, 그 다음은 일어서는 법, 마지막으로 걷는 법을 배우고 난 후 뛰는 법을 배우는 것이 효과적인 것이다.

바로 이것이 과제 분석의 기초 원리이고 아무리 기능이 낮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일지라도 이러한 방법으로 기술 교육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4) 측정 가능성(Measurable)

모든 행동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학습하기 위해서는 기록을 하고 데이터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응용행동분석에 의한 행동관리와 학습방법은 모든 행동을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어서 평가가 합리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객관적인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는 행동치료나 학습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는지의 여부도 평가할 수 있어서 아동의 필요를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갖추어가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된다.

이를 위해서 다음에 소개하는 바와 같이 치료의 대상이 되는 행동을 측정 가능한 방법으로 정의 내리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학계에서는 작동적 정의(operational definition)라고 하고 그 반대를 개념적 정의(conceptual definition)라고 한다. 응용행동분석학계나 심리학계에서는 학적인 연구를 위해서 작동적 정의에 초점을 두고 있다.

-개념적 정의(측정불가)

1. 아동이 항상 자제력이 필요하다.
2. 아동이 다른 사람들이 집에 오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 것 같다.
3. 아동이 지금 공부할 기분이 아닌 것 같다.
4. 아동이 일반적으로 성격이 포악하다.
5. 아동의 말이 발전되고 있다. (위의 다섯가지의 관찰력은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작동적 정의(측정가능)

1. 아동이 하루 평균 열 차례의 텐트럼을 보인다.
2. 아동이 친구나 친척이 방문할 때 그들에게 다가가서 악수하고 안긴다.
3. 아동이 과제나 지시를 주면 울고 고개를 돌린다.
4. 아동이 다른 사람을 꼬집으면서 발로 찬다.
5. 지난 주에 네 단어를 모방했는데 이번 주에는 일곱 단어를 모방했다.

(5) 일관성 있는 적용과 구조적 환경

(Consistent administration and structured environments)

모든 행동 치료나 학습의 방법은 용어 사용에서 적용할 때까지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며 일관적인 심리적 물리적인 환경을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모든 치료 교사들이 항상 팀워크를 유지해야 하며 서로간에 의사소통을 이루어야 한다.

그러한 가운데 교사의 프로그램 적용이나 행동관리 규정이 통일성을 이루고 일관적

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2. 응용행동분석의 장점

(1) 교육을 받는 아동에게 언어의 사용은 필수적이지 않다.

따라서 의사소통 능력이 지체되어 있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들에게 큰 유리하다.

(2) 증세의 원인을 제거하는 과정으로 여타의 치료 방법과는 다르게 아동의 증상의 원인에 대한 정보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까지 구체적인 원인을 알기 어려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아동에게 특히 유리하다.

(3) 측정성이 높아 객관적인 측정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어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

(4) 현재까지 연구된 무궁무진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참조할 연구 자료가 많다.

예를 들어 외국의 사례에 관련된 참고 문헌 중에서 응용행동분석을 통한 사례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5) 학계에서는 현재까지 보고된 치료모델 중에서 가장 으뜸가는 것으로 여기고 있어서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되는 "탁월한 (choice)"이라는 수식어가 응용행동분석방법에 붙여 사용되는 예우를 받고 있다.

미국에서 가장 우수한 자폐 아동 치료 교육 기관인 May Institute, New England Center, Autism project Center 외에 여러 기관에서 응용행동분석을 선호한다 (Treatment of Choice).

(6) 운영방법이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소정의 연수만 받고도 집에서 사용할 수 있어서 24시간 체계의 운영이 가능해진다.

(7) 집중성이 떨어지거나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아동에게는 더욱 쉬운 단계로 과제 분석을 나누어서 교육할 수 있기 때문에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에게는 이상적인 모델이 될 수 있다.

(8) 응용행동분석 방법이 일정한 패턴(Pattern)과 일관성 있는 적용을 중심적인 원

리로 여기기 때문에 이러한 성향을 보이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들에게는 이상적인 모델이 된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들을 위한 의사소통 및 언어 훈련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발안하는데 과거에는 주로 음운론적, 문장론적, 조음론적 접근 방법을 적용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 아동의 자발성과 동기 함양에 훈련의 초점을 두게 되면서 응용행동분석에 의한 교육 방법이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예를 들어 언어를 하나의 행동(speech act)으로 간주하면서 이에 대한 보상 방법을 통하여 동기와 발화 능력을 함양하는 화용론적 접근 방법과 가장 적합한 모델이 바로 응용행동분석 방법이다.

팀역량계발 14-17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과 장애인생산품 인증의 차이점



팀 명	열린일터팀
일 시	2014년 3월 24일(월) 17:30-18:30
발표자	양 정 현
장 소	열린일터 작업장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과 장애인생산품 인증의 차이점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추진 배경

- 1991년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에서 물품 구매 시, 일정비율로 구매하도록 의무화
- 2008년 장애인생산품 구매에 있어 운영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정
- 2010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촉진을 위해, 특별법에 의거 우선구매 촉진위원회구성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계획 수립
- 2011년 일정비율의 의무구매화에 있어 장애인생산품을 품목에 상관없이 공공기관 총구매액의 1%이상을 구매하도록 의무화

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2항에 근거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의무화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고용 확대와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여 사회적 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다.

가. 도입목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생산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함.

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요건과 심사기준

1) 지정요건

구분	기준	비고
장애인근로자 최소고용인원수 ※ '13년부터 7인, '15년부터 10인 이상	7인 이상	근로장애인수 ≥ 7인
전체 근로자대비 근로장애인 비율	70% 이상	(전체근로장애인수 ÷ 근로장애인수) × 100% ≥ 70%
전체 근로장애인대비 중증장애인 비율	60% 이상	(전체근로장애인수 ÷ 중증장애인수) × 100% ≥ 60%
총 근로시간대비 장애인근로시간	50% 이상	(전체근로시간 ÷ 장애인근로시간) × 100% ≥ 50%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의 비율이 30%이상이면 된다.(공공시설관리, 청소용역, 주차관리 경비용역 등의 서비스)

2) 심사기준

- ①신청자 적격성
- ②생산공정
- ③생산시설 및 설비의 구비 및 운영
- ④전문기술인력 등 보유여부와 생산인력
- ⑤생산공정 별 직접생산 여부 확인
- ⑥제조물품 등의 완제 여부 및 기타사항

1. 신청자의 적격성

가. 신청자격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에 한한다.

나. ‘장애인복지단체’의 경우 장애인직업재활 등 장애인복지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및 해당부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으로 주무관청으로부터 수익사업 승인을 득하였거나, 법인 정관에 수익사업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단, 수익사업은 장애인복지단체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이어야 한다.

2. 장애인근로자 고용 및 비율

가. 장애인근로자 등의 정의

1) “장애인근로자”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교부받은 장애인이 생산시설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상 계속해서 해당 품목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계약에 따라 매월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를 말한다. 단, 해당 품목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영업직 등의 직원은 제외한다.

2) “전체 근로자”란 생산시설의 대표자를 제외한 전체 근로자로서 일용근로자도 포함한다. 단, 정부 정책에 따라 임금이 지원되는 근로자(장애인근로자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직업훈련교사 포함)는 인원 산정에서 제외한다.

3) “중증장애인근로자”란 장애인근로자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①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호흡기장애인, 언어장애인
- ② 뇌병변장애인(1~3급), 심장장애인(1~3급)

- ③ 시각장애인(1~2급), 지체장애인(1~2급), 청각장애인(2급), 신장장애인(2급)
뇌전증장애인(2급), 간장애인(1~2급), 안면장애인(2급), 장루·요루장애인(2급)
- ④ 손가락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3급)
- ⑤ ③에 해당하는 장애를 2가지 이상 가진 장애인(3급)

나. 장애인근로자 최소 고용인원 수('13년부터 7명, '15년부터 10명 이상)

- 1) 해당 품목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근로를 제공하는 장애인이 최소 7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각 품목 별로 근로를 제공하는 장애인이 최소 5명 이상이어야 한다.
- 2) 퇴사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장애인근로자 최소고용인원 수가 미달되었으나, 퇴사일 기준 1개월 이내에 충원되어 충족된 경우에는 장애인 근로자 최소 고용인원수를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장애인근로자 고용비율(70% 이상) 및 중증장애인 고용비율(장애인근로자 중 60%이상, 제5조 각 호의 품목은 장애인근로자 중 30% 이상) 장애인근로자 및 중증장애인근로자 고용비율을 확인하는 산식은 아래와 같다.

- ① 장애인근로자 고용비율 산정방법 : (장애인근로자/전체근로자) × 100%
- ② 중증장애인근로자 고용비율 산정방법 : (중증장애인근로자/장애인근로자) × 100%

3. 장애인근로자 생산공정 참여율(총 근로시간 50% 이상)

가. 장애인근로자 생산 공정 참여율을 확인하는 산식은 다음과 같다. 생산 공정 참여율 : (장애인근로자 근로시간/전체근로자 근로시간) × 100%

나. '가'의 근로시간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근로시간"이란 1개월 총 근로시간으로, 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동안 실질적으로 근무한 시간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 2) 해당시설에서 채용하고 있는 일용직근로자도 근로시간에 포함하며, 일용직근로자의 경우 업무내용, 근로시간, 임금지급 내용 등 해당인력에 대한 관련 증빙 서류로 확인되어야 한다.

4. 중증장애인생산품 직접생산 여부

가. 직접생산의 정의

- 1) "직접생산"이란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상 생산 공장에서 해당품목의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필요한 시설, 설비, 생산 인력 및 전문기술 인력 등을 갖추고 사실적으로 해당 품목을 직접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 2) 특정업체로부터 원부자재를 구입하여 완제품의 형태로 동 업체에 납품하는 경

우 직접생산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 생산 공장

- 1) 해당품목 관련 업종에 대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공장등록증 명으로 확인한다. 다만, 건축법 등의 이유로 공장등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으로 갈음한다.
- 2) 생산 공장의 협소로 인해 설립승인 지역 내 생산 공장을 추가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임차계약서, 임차료 지급 여부 등 관련서류가 확인되어야 한다.
- 3) 생산 공장의 실 소재지, 사업장명, 대표자 등이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명서’, ‘영업신고증’ 등 관련서류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 4) 임차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생산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① 생산시설 명의의 임대차계약서와 임차료 납부내역, 생산시설 재무제표 상 보증금등채여부, 소유자의 등기부등본 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임차료지원을 통해 생산시설의 운영법인 명의로 임차한 경우로서 운영법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와 임차료 납부내역, 운영법인 재무제표 상 보증금 등채여부, 소유자의 등기부등본 등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② 임대인이 생산시설의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지 아니하더라도 임대공장에서 생산하는 품목과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③ 해당 생산시설이 운영하는 생산공장에 다른 사람 명의의 사업장이 중복 등록되어 있거나, 생산공장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 ④ 생산시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인 등 생산시설과 무관한 제3자가 부담하는 경우
 - ⑤ 타 업체의 사무실 또는 공장과 명확히 분리되어 있지 않거나, 생산시설이 타 동종 업체의 공장 또는 사업장 내부에 칸막이 설치 등을 통해 형식적으로 구분하고 있는 경우
 - ⑥ 생산공장을 무상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다만, 생산공장의 소유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생산시설의 운영법인 등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⑦ 타 업체의 제2공장 또는 지점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 5) 기증의 경우, 기증관련 서류로 이를 확인하고 공증인의 공증이 있어야 하며 건물등기부에 생산시설의 소유로 등재되어야 한다. 단, 조건부 기증 등 형식적인 기증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6) 동일 소재지에 복수의 자가 생산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각각의 생산공장이 벽으로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각각의 출입구가 있어야 한다.
- 7)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 및 ‘업종’란에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해당품목 관련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다. 생산 설비의 구비 및 운영

- 1) 생산·검사설비의 구매 또는 설치 증빙서류(계약서, 지급내역, 생산시설 재무제표 상자산 등재 등)를 기초로 현장의 설치 설비와 대조 확인하여 일치하여야 한다.
- 2) 해당 품목의 직접생산에 필요한 설비를 반드시 구비하여야 하며, 생산시설 소재지에 동 설비가 설치 및 가동이 되어야 하고, 생산시설 명의의 구입에 따른 증빙서류, 생산시설 재무제표 상 자산등재 등을 통해 해당시설의 설비 임의 증빙 되어야 한다.
- 3) 임차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하지 아니한다.
 - ① 생산시설 명의의 임대차계약서와 임대료 납부내역, 생산시설 재무제표 상 보 증금 등재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② 임대인이 생산시설의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
 - ③ 생산설비를 타 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 ④ 생산설비 임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인 등 생산시설과 무관한 제3자가 부담하는 경우
 - ⑤ 생산설비를 무상임차 하여 사용하는 경우. 단, 생산설비의 소유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있는 경우는 제외
- 4) 기증의 경우, 기증관련 서류로 이를 확인하고 공증인의 공증 및 생산시설 재무제표 등에 등재되어야 한다. 단, 조건부 기증 등 형식적인 기증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5) 생산설비 가동 여부는 전기요금 납부내역, 유류사용내역 등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단, 수주물량 미비 등으로 인해 전기요금 납부내역, 유류사용내역 등이 없는 경우현장 확인 시 생산설비의 가동 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마. 생산 공정별 직접생산 여부 확인

- 1) 생산시설의 생산인력, 생산설비, 원부자재 등을 활용하여 해당 품목을 직접생산 하고 있는지 여부가 생산 공정별로 현장 확인되어야 한다.
- 2) 원·부자재 수불대장 관리, 생산품 재고관리, 판매관리, 임금지급 등 직접생산 관련서류의 비치 여부 및 일체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생산시설의 대표자의 결재여부로 확인되어야 한다. 이 경우 운영법인 등과 생산시설의 회계가 명확히 분리되어 생산시설 명의로 처리되어야 한다.
- 3) 원부자재 수급, 가공 및 완제품 생산, 판매 등 일체 업무처리 명의를 생산시설 명의로 일치하여야 한다.

바. 제조물품 등의 완제 여부 및 기타사항

- 1) 타 업체 등에서 제조된 반제품 또는 완제품 등을 시설·설비 구축 및 가동 없이 단순히 조립 공정 등 노동력에 의존하여 완성하는 것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2) 해당품목의 제조·판매 등을 위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인·허가, 면허, 등록, 신고, 표시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이에 따른 인·허가, 면허, 등록, 신고, 표시 등이 생산시설 명의로 되어있어야 하고, 기타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인·허가, 면허, 등록, 신고, 표시 등의 대상을 법인으로 한정하는 경우 동 인·허가, 면허, 등록, 신고, 표시 등이 생산시설의 운영법인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한다.
- 3) 타 업체 등과 형식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생산시설의 생산설비·작업장 등이 타 업체와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부적합으로 처리할 수 있다.
- 4) 생산시설 운영상 어려움 등으로 인해 동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인건비, 원부자재구입비 등)를 제3자로부터 지급받을 경우 이사회 의결, 정상적인 대출 등을 통해 확인되어야 하며, 확인되지 않은 무상·임의지급 등은 부적합으로 처리한다.
- 5) 생산품목별 납품실적 등이 확인되지 않거나, 일시적으로 생산·납품한 경우 부적합으로 간주 처리할 수 있다.
- 6) 물품의 경우 해당물품 또는 포장지에 생산시설 명의로 제조·판매원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해당품목의 특성상 생산시설 명의로 표시가 어려운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절차



3.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기준 및 현황

-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직접 생산하는 생산품 또는 용역·서비스를 말한다.

*시설현황(2014년 3월 7일)

- 생산시설 수 : 총 382개소(직업재활시설 278개소, 장애인복지단체 104개소)
- 판매시설 수 : 총 16개소

*생산품정보

분류	상품명
사무용지	복사용지, 신문용지, 접착식메모용지
사무용품	토너, 카트리지, 상자케이스, 걸재판, 클리어화일
화장지	두루마리화장지, 물티슈
인쇄/광고	리플렛, 현수막, 달력, 상장, 카타로그, 명함
식료품	빵, 쿠키, 케이크
섬유	방한복, 내복, 작업복
화훼/공예	꽃바구니, 난
서비스	지하철택배(장애인근로자가 직접 지하철을 이용하여 고객이 원하는 곳까지 배송), 청소용역(바닥청소, 건물관리, 소독/방역), 지도제작(관광안내지도, 새주소안내), 의료세탁
일회용품	중량제봉투, 종이컵, 포대
위생용품	마포걸레, 천연비누, 빗자루, 쓰레받기
전기/전자	광고판, LED전광판
조명기구	형광등
가구	테이블, 롤스크린

4. 장애인생산품 인증제도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운영을 위해 생산시설 관보공고로 시도지사가 장애인생산품을 확인해주었으나 관보공고제의 낮은 실효성으로 국민들과 공공기관에서 장애인생산품을 확인하기 어렵고, 장애인생산품을 사칭하여 강매하는 행위 등으로 인해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부정적인식이 확산되어 장애인생산품의 품질을 인정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신뢰성을 확보하며 경쟁력 강화와 판매촉진을 위해 도입됨.

가. 도입목적

- 장애인의 자활·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이 떨어지며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판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경쟁력 강화, 인식제고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장애인생산품 인증제 시행이 필요함.

나. 지정절차



다. 심사기준

- ① 신청시설의 적격성
- ② 생산자원의 보유
- ③ 임금지급
- ④ 안전대책 체계마련
- ⑤ 자체품질관리
- ⑥ 품질유지 및 정보제공
- ⑦ 품질관리 사후체계
- ⑧ 작업장 환경
- ⑨ 최저임금지급여부(근로작업시설만해당)
- ⑩ 최저임금지급여부(보호작업시설만해당)
- ⑪ 교육훈련
- ⑫ 품질인증의 획득

5.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원제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및 생산품인증 획득 시설을 대상으로 장애인생산품 품질향상 및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품질인증획득 지원 사업 및 포장디자인 지원사업, 홍보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가. 품질인증획득 지원사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및 장애인생산품 인증 획득시설에서 생산한 물품의 공인기관 품질인증 획득 또는 갱신·유지 및 품질관련 각종 검사 등에 대한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제품품질 및 품질시스템인증(ISO,

KS, Q마크, 환경마크, HACCP 등)획득을 위해 소요되는 인증신청료, 인증심사비, 시험검사비용 및컨설팅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13년 기준)

○ 품질인증규격별 지원한도금액

(단위 : 천원)

구분	ISO			친환경	KS	Q	식품 및 축산물 HACCP	기타 인증1)	품질 검사2)
	9001	14001	22000						
최초인증	2,700	2,700	3,000	3,000	4,000	2,500	4,000	1,000	3,000
갱신유지	1,000	1,000	1,500	2,000	-	1,500	-		

※ 법적근거를 두고 시행되는 품질인증 및 품질관련 검사는 모두 신청가능하며 지원 한도금액은 최종심사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지원절차



2. 포장디자인 지원산업

포장용기 디자인 및 스티커, 포장지 등의 제작과 지원을 통하여 소비자의 구매욕구를 촉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인식개선 및 매출 증가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3. 홍보지원

(‘13년 기준)

○ 개소당 지원금액 : 1개소당 24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박스(케이스)디자인 또는 라벨스티커, 비닐포장지 등에 대한 포장디자인소요비용
- 포장디자인 제작 실시 후, 최초 마스터필름 및 금형 제작비 포함다
- 단, 포장디자인 목적이 아닌 기관 홍보용 제작(홈페이지, 판촉물, 쇼핑백 등)은 불가

○ 지원절차



장애인생산품 홈페이지운영과 언론홍보, 중증장애인생산품 카탈로그 제작 및 배포 모바일용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 다양한 방식의 홍보를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생산품 인증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의 차이점>

구분	장애인생산품인증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적용시기	2008년 5월	2008년 9월
관련법	· 장애인복지법 제45조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34조 ~ 제37조	·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시행령
도입 배경	·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및 경쟁력 제고	· 장애인복지법 제44조 등에 따른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실효성 미흡 등으로 제정
대 상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은 품목에 한한다.	·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획득 시 이점	· 품질인증획득 지원 및 포장디자인 지원 등	· 지정받은 품목에 대하여 공공기관 등에서 우선 구매 · 품질인증획득 지원 및 포장디자인 지원 등
신청서 접수시기	· 수시접수	· 보건복지부의 지정계획 공고에 따름
제공시설의 요건	· 장애인 5명 이상 · 총 근로자 중 장애인이 100분의 70이상(중증장애인은 1.5배로 산정)	· 근로장애인은 5인 이상 · 총 근로자 중 장애인은 100분의 70이상
심사기준	· 신청시설의 적격성, 생산지원보유, 임금지급, 안전대책체계 마련 4개 항목 - 적합·부적합으로 평가 · 품질관리 및 작업장환경 등 7개 항목 - 수·우·미·양으로 평가	· 이 중 중증장애인은 100분의 60이상 · 총 근로시간 중 장애인의 근로시간 100분의 50이상 · 직접생산 여부

-한국장애인개발원 보도자료-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태조사' 실시

- 8월 한 달 동안 약 380여 개 공공기관 대상 구매품목, 우선구매실적 증감 원인 등 설문조사 실시

보건복지부(장관 진영)와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변용찬)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8월 한 달 동안 진행되는 이번 실태조사는 국무총리실 외 약 380여 개 공공기관 및 국가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설문으로 진행되는 이번 실태조사 내용은 공공기관의 연간 구매품목 내역, 각 기관의 전체 구매품목 중 납품가능한 중증장애인생산품 품목 조사, 전년도 대비 우선구매 실적이 큰 폭으로 가감된 기관에 대한 원인 파악 등이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제작할 수 있는 신규아이템을 발굴하고, 기관 맞춤형 생산품에 대한 가능성, 생산시설 연간 구매 수요 파악, 우선구매 증가 및 감소 요인을 파악하여 궁극적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해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매년 구매액(재화, 용역)의 총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구매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해당 기관들의 평균 우선구매율은 0.49%(2,518백만 원)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팀역량강화 14-18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팀 명	열린일터
일 시	2014년 7월 17일(목) 17:30-18:30
발표자	이보경
장 소	열린일터 작업장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5.11.21. 법률 제12618호, 2014.5.20. 제정]

1. 제안이유

- 발달장애인은 인지력·의사소통능력 등이 부족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스스로 보호하는 것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학대·성폭력, 인신매매, 장기적인 노동력 착취 등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와 인프라는 그 필요량에 비해 지원 규모가 부족하여 발달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부모나 보호자들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정서적인 부담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발달장애인 직업훈련이나 평생교육 등 능력개발을 위한 지원 체계가 미흡함.
- 따라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구체적인 장애 범위, 그 가족이나 보호자 등의 특수한 수요에 부합될 수 있는 지원체계 및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립의 근거를 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 보호자 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여 국민 전체의 행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새롭게 설치 운영되는 기관

중앙 및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센터 내 운영위원회, 위기발달장애인쉼터,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 중증발달장애인 직업훈련 전문 직업재활시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시설

■ 새로운 서비스

발달장애의심 영유아에 대한 정밀진단 비용 지원, 재활치료서비스를 성인기까지 제공, 발달장애인을 위한 여가, 문화, 체육 및 예술활동 지원,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 돌봄지원, 발달장애인 보호자를 위한 정보제공 및 교육지원 등

■ 차별화된 서비스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별도의 독립적 전달체계를 통한 원스톱 서비스 지원 환경 구현 등

- 1)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그들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옹호 등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은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2) 지원대상을 아동 및 성인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으로 함.(안 제2조)
- 3)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의사소통도구 개발 및 지원, 발달장애인 전담조사제(검찰·경찰),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의 신고의무,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조사권 부여 등을 정함.(안 제8조부터 17조까지)

- * 성년후견제도 : 장애, 질병 등으로 인해 정신적 제약이 있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사람을 대신하여 의사결정을 해줄 사람을 법원이 정하여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 발달장애인 전담조사제 :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은 전담검사 및 전담사법경찰관을 지정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발달장애인을 조사 또는 심문하게 하여야 하며,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대한 전문지식과 의사소통방법 및 발달장애인 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4)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조기진단 정밀검사비 지원, 치료 및 재활체계 구축, 발달장애인에 특화된 직업훈련 서비스제공, 평생교육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 * 재활 및 발달 지원
 - ①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장애에도 불구하고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 등을 제공하도록 노력함.
 - ② 발달장애의 원인규명과 치료 및 행동문제 등의 완화를 위한 연구 및 의료 지원 체계를 구축함.
 - ③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료지원을 위하여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을 지정할 수 있음.
 - ④ 자해·공격 등 행동문제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는 발달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음.
 - *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 ①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② 장애의 정도가 심한 발달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적합한 직업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에 특화된 직업훈련을 하는 직업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 *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등 지원
 - ① 발달장애인이 영화, 전시관, 박물관 및 각종 행사 등을 관람, 참여, 향유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음.
 - ②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흥미에 적합한 방식으로 설계된 시설, 놀이기구, 프로그램 및 그 밖의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음.
 - ③ 발달장애인의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생활체육 행사 및 생활체육 관련 단체를 지원할 수 있음.
- 5) 발달장애인의 가족에 대해서 부모교육 및 상담, 정보제공, 휴식지원 등 부모지원, 비장애 형제·자매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 *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 발달장애인을 적절하게 보호 및 양육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교육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함.
 - * 휴식지원 : 발달장애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 비장애 형제·자매로서 아동 및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서발달과 심리적 부담 해소 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함. 이에 따른 지원을 제공할 때에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대상 및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음.

- 6) 복지정보 제공, 발달장애인 학대 등 신고접수 시 현장출동·조사·보호조치, 상담 및 인식개선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안 제 33조 및 제34조)

*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업무

- ① 발달장애인에 대한 연구수행 지원
- ② 발달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복지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 제공
- ③ 발달장애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지침·편람 마련 및 교육지원
- ④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 발달장애인 지원 프로그램 개발
- ⑤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지원
- ⑥ 후견인 후보자의 추천
- ⑦ 발달장애인 권리침해의 모니터링 및 권리구제의 지원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업무

- ①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 ②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
- ③ 발달장애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 ④ 발달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의 축적 및 관리
- ⑤ 발달장애 조기 발견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홍보
- ⑥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지원
- ⑦ 성년인 발달장애인 중 보호자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로 지명하는 사람에 대한 감독
- ⑧ 후견인에 대한 감독지원 및 후견업무의 지원
- ⑨ 현장조사 및 보호조치 등 발달장애인의 권리구제 지원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그들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옹호 등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장애인을 말한다.

가. 지적장애인: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나. 자폐성장아인: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다.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보호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의 보호자(발달장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나.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

다.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이 아닌 사람 중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또는 같은 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자로서 사실상 해당 발달장애인을 보호하는 사람

라. 성년인 발달장애인 중 나목 및 다목의 보호자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로 지명하는 사람(나목에 따른 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

제3조(발달장애인의 권리)

① 발달장애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신체와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② 발달장애인은 자신에게 법률적·사실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스스로 이해하여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③ 발달장애인은 자신과 관련된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자기의 견해와 의사를 표현할 권리가 있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적절한 발달과 원활한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를 최대한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장애를 완화하고 기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와 조사를 지원하여야 하며, 발달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과 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장애로 인하여 차별을 받는 등 권리가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권익옹호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발달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제5조(국민의 책무) 모든 국민은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발달장애인의 실태 파악과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대상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나 복지지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2장 권리의 보장

제8조(자기결정권의 보장)

- ① 발달장애인은 자신의 주거지의 결정,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나 거부, 타인과의 교류, 복지서비스의 이용 여부와 서비스 종류의 선택 등을 스스로 결정한다.
- ② 누구든지 발달장애인에게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과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와 의사결정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의 의사결정능력을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자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성년후견제 이용지원)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년인 발달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를 위하여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1. 일상생활에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매우 부족하여 의사결정의 대리 또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2.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하여 줄 가족이 없는 경우
 - 3. 별도의 조치가 없으면 권리침해의 위험이 상당한 경우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후견인 후보자로 하여 그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임하여 줄 것을 함께 청구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를 추천하여 줄 것을 의뢰할 수 있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의 후견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의 요건, 후견인 후보자의 자격 및 추천절차, 후견인 후견사무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사소통지원)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과 각종 복지지원 등 중요한 정책정보를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 ② 교육부장관은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의사를 원활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학습에 필요한 의사소통도구를 개발하고 의사소통지원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발달장애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 등을 통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민원담당 직원이 발달장애인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지침을 개발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책정보의 작성 및 배포, 의사소통도구의 개발·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민원담당 직원에 대한 의사소통 지침 개발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자조단체의 결성 등)

- ① 발달장애인은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자조단체(自助團體)를 구성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라 자조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형사·사법 절차상 권리보장)

- ①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에게 발달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확산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발달장애인이 재판의 당사자가 된 경우 그의 보호자, 제33조에 따른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발달장애인지원센터"라 한다)의 직원이나 그 밖에 발달장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 ③ 법원은 발달장애인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발달장애인 본인, 검사, 보호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재판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달장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 ④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제2항 및 제3항을 따라야 한다.

제13조(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담조사제)

- ①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檢事長)으로 하여금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이하 이 조에서 "전담검사"라 한다)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발달장애인을 조사 또는 심문하게 하여야 한다.
- ②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발달장애인 전담 사법경찰관(이하 이 조에서 "전담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발달장애인을 조사 또는 심문하게 하여야 한다.

- ③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은 전담검사 및 전담사법경찰관에게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대한 전문지식과 의사소통 방법 및 발달장애인 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④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은 전담검사 및 전담사법경찰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⑤ 해양경찰청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도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제14조(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방지)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범죄(이하 "유기등"이라 한다)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1. 「형법」 제271조에 따른 유기 또는 존속유기
 - 2. 「형법」 제273조에 따른 학대 또는 존속학대
 - 3. 「형법」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에 따른 약취, 유인, 인신매매, 상해·치상, 살인·치사, 수수·은닉 등
 -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의 아동학대범죄
 - 6. 그 밖에 발달장애인에게 특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
- ②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의 발생 사례가 없는지 소속 경찰공무원·해양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에게 관할 지역을 정기적으로 탐문하고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신고의무)

- ① 누구든지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1.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3.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과 같은 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의 장
 -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의 의료기사
 -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 6. 「소방기본법」 제34조에 따른 구조대 및 구급대의 대원
 - 7.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8. 「영유아보육법」 제10조 각 호의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 9.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유치원의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유치원의 강사, 기간제 교사 또는 명예교사 등
 - 10.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 또는 강사 등
 - 1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와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 등 종사자
 - 1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 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1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 1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1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건강가정사 등 그 종사자
- 1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의 장기요양요원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 등에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에 대한 신고 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또는 수사기관의 장이나 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현장조사)

- ①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의 신고를 접수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그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은 서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의 현장에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소속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동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② 제15조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의 행위가 행하여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발달장애인 또는 유기등 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직원은 그 발달장애인의 보호를 위한 범위에서만 조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 ④ 누구든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폭행이나 협박을 하거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보호조치 등)

- ①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이 발생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발달장애인을 그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부터 격리하거나 치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달장애인을 임시로 보호하기 위하여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쉼터(이하 "위기발달장애인쉼터"라 한다)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발달장애인이 안전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②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발달장애인을 격리하여 보호하는 경우 그 사실을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고, 그 격리기간은 7일을 넘을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7일 이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③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격리기간이 끝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 발달장애인의 복리를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또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시설 입소를 통한 보호조치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 ④ 위기발달장애인쉼터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의 장애인 거주시설 중에서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보호조치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복지지원 및 서비스

제18조(복지서비스의 신청)

- ① 발달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복지지원 및 서비스(이하 "복지서비스"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따른 사회보험,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를 스스로 신청하여야 한다.
 - 1. 「장애인복지법」 제55조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 2.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지원,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가족지원,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지원,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지역사회 전환 서비스지원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문화·예술 등 복지지원
 - 3.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 지원, 제27조에 따른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등 지원,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및 제32조에 따른 휴식지원 등
 -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비스
- ② 발달장애인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자의 신청은 발달장애인의 신청으로 본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지원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신청은 발달장애인의 신청으로 본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자는 해당 발달장애인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인별 복지서비스에 관한 제공계획(이하 "개인별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줄 것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복지서비스의 대상, 복지서비스 및 개인별지원계획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을 신청받은 경우 대상자 선정 여부 및 복지서비스 내용을 결정하여 제33조제2항에 따른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에게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을 의뢰하여야 한다.

- ②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을 의뢰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라 결정된 복지서비스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의 특성을 고려하여 복지서비스의 내용, 방법 등이 포함된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③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의사소통의 방식으로 의견진술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 ④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복지서비스 대상자에 대하여 수립된 개인별지원계획의 승인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개인별지원계획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적합성 심사를 거쳐 승인을 얻은 경우 효력을 가진다.
- ⑤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의 적합성 심사 결과를 발달장애인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⑥ 개인별지원계획을 통보받은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는 발달장애인의 복지 욕구를 고려하여 개인별지원계획의 변경·수정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⑦ 개인별지원계획을 변경·수정하는 경우에는 제4항과 제5항의 절차를 따른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의 의뢰 방법 및 절차, 수립 방법 및 내용, 승인통보·신청·변경·수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발달장애인과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등의 연계)

- ①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하여 복지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개인별지원계획에 따라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등을 연계하여야 한다.
- ②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복지서비스 대상자와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등을 연계할 때에는 복지서비스 대상자에게 복지서비스 제공시간 및 방법·비용부담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관련 정보의 제공방법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계좌의 관리 등)

- ① 발달장애인이 지급받을 복지지원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의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예금의 인출 및 다른 계좌로의 이체 등 관리도 발달장애인 스스로 하여야 한다.
- ② 발달장애인에게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제1항에 따른 계좌 관리를 대행할 수 있으며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달장애인을 대신하여 계좌를 관리할 사람(이하 "계좌관리인"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③ 계좌관리인의 자격 및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계좌 관리의 점검 등)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보호자 및 계좌관리인이 발달장애인의 계좌를 발달장애인의 이익을 위하여 적절하게 관리하는지 점검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보호자와 계좌관리인의 경우에는 그 계좌 관리를 점검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하는 때에는 통장 등 필요한 자료의 열람 또

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달장애인의 보호자 및 계좌관리인은 점검에 협조하여야 하며 통장 등 필요한 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 요구 등에 따라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현금으로 지급된 복지지원이 발달장애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발달장애인의 이익을 위하여 관리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계좌관리인을 변경하거나 후견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계좌 관리, 점검의 절차·대상·내용, 조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조기진단 및 개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검사도구의 개발, 영유아를 둔 부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등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하여 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재활 및 발달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장애에도 불구하고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에게 적절한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 등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발달장애의 원인규명과 치료 및 행동문제 등의 완화를 위한 연구 및 의료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료지원을 위하여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해·공격 등 행동문제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는 발달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거점병원의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발달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적합한 직업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에 특화된 직업훈련을 하는 직업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평생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에게 「교육기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도록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지정 기준과 절차,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기준, 교육제공인력의 요건 등은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등 지원)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영화, 전시관, 박물관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개최하는 각종 행사 등을 관람·참여·향유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흥미에 적합한 방식으로 설계된 시설, 놀이기구, 프로그램 및 그 밖의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생활체육 행사 및 생활체육 관련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소득보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특수한 어려움을 고려하여 발달장애인이 적절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애인 연금제도 등 관련 장애인 복지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거주시설·주간활동·돌봄 지원)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거주시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활동 및 지역사회 참여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주간활동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특성과 요구에 따른 돌봄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

제30조(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보호자가 발달장애인을 적절하게 보호 및 양육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련 교육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와 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과 교육실시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과 동거하는 보호자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심리상담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 서비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휴식지원 등)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형제·자매로서 발달장애인이 아닌 아동 및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들의 정서발달과 심리적 부담 해소 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제공할 때에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대상 및 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제33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 활동,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등을 담당하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다.
- ③ 시·도지사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시·군·구에 설치하는 경우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 구역의 발달장애인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직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⑤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보호자를 포함한다)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른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 ①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발달장애인에 대한 연구수행 지원
 2. 발달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복지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 제공
 3. 발달장애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지침·편람 마련 및 교육지원
 4.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
 5. 발달장애인 지원 프로그램 개발
 6.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지원

7. 제9조제3항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의 추천
8. 발달장애인 권리침해의 모니터링 및 권리구제의 지원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2.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
 3. 발달장애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4. 발달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의 축적 및 관리
 5. 발달장애 조기 발견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홍보
 6.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지원
 7.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감독
 8. 제9조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에 대한 감독지원 및 후견업무의 지원
 9.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현장조사 및 보호조치 등 발달장애인의 권리구제 지원
 10.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변호사 등 필요한 인력을 적절히 배치하여 발달장애인이 복지 및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 동료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을 채용할 수 있다.
-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력 배치 및 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현황 등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제25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직업재활시설
2.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어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
3.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4.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5.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6.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4조에 따른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7.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장애인활동지원기관
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9조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
9.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10.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11.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12.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
1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각 기관별로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내용, 제공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인 처리와 기록 및 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37조(서비스의 제공 등)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제공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제공하는 경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 인력의 수급 상황, 제공기관 현황과 서비스 수요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지정권자"라 한다)으로 하여금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등을 지정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제공 방법 및 절차, 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서비스제공기관의 변경지정 등)

- ① 제37조제2항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정받은 기관 등(이하 "서비스제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의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 ② 서비스제공기관이 폐업 또는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폐업 또는 휴업 예정일 전 30일까지 지정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지정권자는 인근 지역에 대체할 서비스제공기관이 없는 등 서비스 제공에 중대한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서비스제공기관의 폐업 또는 휴업 철회를 권고하거나 그 밖의 다른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③ 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권자는 서비스제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를 정지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 등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40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과 보고 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한 경우
 5.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누설한 경우
- ④ 제3항에 따라 지정취소를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다시 지정될 수 없다.
- ⑤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39조(지도와 감독)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제40조(보고와 검사)

-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서비스제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제출과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41조(위임·위탁)

-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지정하여 제25조제2항에 따른 직업재활시설이나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8조에 따른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 ③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위기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 및 제22조에 따른 계좌 관리의 점검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지정하여 제3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장 벌칙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규정된 서비스 또는 지원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받게 한 자
- 2.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 또는 직원

제4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2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사람
 - 3.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계좌 관리 상황과 관련한 자료열람 또는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발달장애인의 보호자 및 계좌관리인
 - 4.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
 - 5.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업·휴업 시 신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40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제12618호, 2014.5.20.>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에 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사례연구의 실제



팀 명	남동사회복지시설 그루터기
일 시	2014년 4월 24일 목요일
발표자	김진애, 장성진, 정진옥, 황수빈, 송현식
장 소	그루터기 상담실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사례연구의 실제

I. 사례연구 이론

1. 사례연구 목적 확정

- 조사문제는 무엇을 알고자 하는 것인가? 연구 주제의 확정
- *연구 주제의 성격, 사례연구의 내용, 사례연구의 기여분야
- *우리는 왜 이 주제를 이해하여야 하는가?

2. 사례연구의 적용범위(가설)의 설정

- 개념적 정의 : 사례연구주제, key word의 의미 확정
- 검증가능한 가설 : 사례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변수간의 상관 관계 설정
- 조작적 정의 : 사례연구에 활용되는 모든 변수의 의미 확정

3. 조사설계

- 필요 정보결정 : 사례연구를 설명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확정
- *개념적 정의, 가설, 조작적 정의를 통해 확정된 변수 정리
- 연구분석단위 결정 : 가설을 설정할 때 활용된 변수중심으로 정리
- 정보원천 선택
- 자료수집-분석-보고서 작성 계획 확정

4. 자료의 수집

- 2차 자료 수집
- 1차 자료 수집 : 설문조사(설문설계-모집단확정-표본추출-설문시행)
- 1차 자료 수집, 비설문조사(관찰법, 실험법)

5. 자료의 분석

- 자료의 편집/ 분류
- 자료의 신뢰도 검토
- 자료분석 : 변수의 이해(독립변수, 종속변수), 현황 파악, 미래 예측

6. 보고서 작성 및 발표

- 사례연구 주제 : 필요성과 목적을 기승전결 식으로
- 사례연구 방법 : 논리적 체계 제시 및 변수 설명
- 사례연구 결과 : 가설의 검증 결과
- 시사점과 향후 연구과제

II. 사례연구의 실제

1. 정신장애인 정서조절 및 스트레스 관리에 미치는 영향 - 황수빈

구분	작성 내용	수퍼비전 내용
주제	·정신장애인 정서조절 및 스트레스 관리에 미치는 영향	·사례 개입 내용과 주제의 상이 → 정신장애인의 인지재구조화 과정이 긍정적 사고 전환에 미치는 영향 or 정신장애인의 인지재구조화 과정이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사례 개입 내용과 연관된 주제명으로 변경 필요)
가계도	·이혼 상태 표시 누락 ·현 동거 가족 표시 누락	·가계도 작성 방법 안내
사례선정 사유	·사고의 재구조화 필요 ·긍정적인 변화 가능성	·임파워먼트모델 적용 계획으로 사례 선정 시 클라이언트의 강점 사정이 필요
개입이론의 적용	·인지행동이론 ·임파워먼트행동 이론	·사례개입을 위해 이론 적용을 위한 시도 긍정적임 ·사례개입 방법 및 실천적인 측면에 계획 이루어짐
사례개입 계획	·인지재구조화 - 부정적인 사고 (개별상담, 역기능적 사고 기록지 작성) - 긍정적인 사고 (스트레스 대처방법, 정서조절 향상)	·명확한 개입 목표와 실천 방법 수정 필요 → 역기능적 사고 기록지 작성 중심으로 반복적인 부정적인 사고 확인이 필요 → 역기능적 사고 기록지 활용을 위해서는 담당자가 인지치료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며, 클라이언트는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됨. ·재발경고징후 체크 : 매일재발경고징후를 체크하며 부정적인 사고 확인과 함께 증상관리 참고자료 : 인지치료 이론과 실제(하나의학사)

2.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훈련의 효과성 연구(외부훈련을 중심으로)

- 장성진, 정진욱

구분	작성 내용	수퍼비전 내용
연구 필요성	·주제 선정 배경-본 시설에서 제공하고 있는 직업재활프로그램 소개 ·이론적 배경	·주제에 적합한 필요성 제시 ·직업재활 관련 용어 추가 설명 필요 예: 외부훈련, 직업재활훈련 등
개입 계획	·대상, 개입방법, 평가 도구, 진행일정, 업무분장	·외부훈련이 정신장애인의 취업에 대한 적극성, 역량강화, 증상관리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인을 위해서는 외부 훈련 경험 유무의 회원들에 대한 분석 또한 필요함. ·평가도구 사용 중 ‘정신사회재활 서비스 사정 및 성과평가 척도개발연구’의 110문항 중 76문항만 사용하는 이유 제시 필요함. ·사례 수가 적어 일반화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 참여 회원들의 대한 인터뷰로 질적 평가 추가하는 것 의의 있을 것임.
개입 목표	·장·단기 목표 제시	·단기 목표 달성에 대해 수치화하여 구체적인 목표 달성을 제시함. ·그러나 목표 달성 10% or 15%등의 향상 수치에 대한 기준이 모호함. 명확한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수치로 제시가 필요함.
참고문헌	·보고서 마지막에 참고문헌 작성	·참고 문헌 제시 적절함. 단, 본문 중 재인용에 대한 표시 누락 되어 수정 요구됨

3. 정신장애인의 건강관리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체중관리를 중심으로)
- 송현식

구분	작성 내용	수퍼비전 내용
주제	·정신장애인의 건강관리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체중관리를 중심으로)	·정신장애인의 건강관리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시도 적절하며, 신선함. ·그러나 현재 클라이언트가 경험하고 있는 무릎 통증에 대해 체중감량으로 통증을 완화하여 삶의 질 향상이라는 것은 한계가 많음. 무릎 통증은 현재 클라이언트의 상태로 보아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임.
사례 개요	·life-story(장애발생배경, 양육배경, 가족역동 포함)	·클라이언트 시설 이용 초기상담 내용 요약임. ·2007년 이후 시설 이용하면서 재활 과정-변화 등이 더 중요한 개인력임. 현재 50대인 클라이언트에게는 출생당시, 학창시절보다 성인기, 발병이후 재활 과정, 현재 건강상태, 가족역동 등이 더 중요한 정보임으로 이에 대한 내용 추가 및 수정 필요함
사례에 대한 문제의식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 ·장애인의 건강상태	·주제에 적절한 문제의식을 제시할 수 있는 주제임. 그러나 서술된 내용과 사례연구 주제의 연관성이 약함. 적절한 내용으로 사례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 제시가 필요함.
개입 목표	·장기목표 -체중조절을 통해 건강관리를 한다. -건강관리를 통해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 할 수 있다. -체중조절을 통해 무릎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다. ·단기목표 -c't의 체중을 월 500g씩 감량한다.	·장기목표는 보다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목표 달성하고자 하는 방향성이 라면 단기 목표를 장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목표가 됨. 때문에 장기 목표 하나에 2~3개의 단기 목표 수립이 적절함. ·목표 수정 필요함.

2차 팀역량계발-정신장애인의 평가도구의 이해, 지역사회에서의 정신장애인 사례관리, 공문서 작성법



팀 명	남동사회복귀시설 그루터기
일 시	2014. 8. 27. (수) 17:00~19:00
발표자	황수빈, 송현식
장 소	그루터기 상담실



2014년 인천광역시 정신보건실무자 역량강화 워크숍(기초과정) 전달 교육

I. 정신장애인 평가도구의 이해(GAF, BPRS)

- 인천광역시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선우영경

Global Assessment of Functioning (전반적 기능평가 척도)

1 Global Assessment of Functioning (전반적 기능평가 척도)

1) 서론

- 특정기간 동안의 전반적인 기능을 평가하는 GAS(Global Assessment Scale)에 보완 및 발전
- 다축체계를 동비한 DSM-III-R에서 Axis V로 처음 사용
- 환자의 심리적인 증상과 사회적, 기능적 기능에 대해서 일정 기간을 정해서 평가
- 점수는 0점에서 100점으로 단일 평가
- 심리학적 증상, 사회적/직업적 기능 측면에서 평가
- 환경적인 제한이나 신체적인 손상에 의한 장애는 평가하지 않는다.(예-사고, 팔 절단 등)
- 정신분열병 환자 뿐만 아니라 정신과 영역의 모든 환자에게 진단에 상관없이 적용가능

2) 기록(Recording)

- Axis 에 기록
- Axis V : GAF=(score), (time period)
 - (현재) : 치료나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반영
 - (최저 수준) : day to day variability를 보기 위해
 - (지난 해 최고 수준)
 - (입원 당시)
 - (퇴원당시)

3) 특징

- 10점 범위로 구분
- 이 범위 내에서 환자의 전반적인 기능 정도를 가장 잘 반영하는 점수를 기록
- 10점 범위는 두 가지의 구성요소를 갖는다.
 - Sx severity(증상)
 - Functioning(사회적, 직업적)
- 이 두 가지 요소 중 하나를 만족하면 된다.
-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는 더 나쁜 상태를 기록

4) Four step approach(1)

- Step 1 : Top level에서 시작하여 Sx severity 나 functioning 중 하나가 더 나빠지는 않는지 질문해 간다.

- Step 2 : Sx severity 나 functioning 중 더 나쁜 점수가 가장 부합되는 점수까지 따라 내려간다.

5) Four step approach(2)

- Step 3 : 적절 범위에 도달했다고 판단되면 다음 단계를 보아 빨리 멈추지는 않았는지 살핀다. 이 경우 다음단계는 Sx severity 와 functioning 모두가 훨씬 심해야 한다. 그렇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2단계로 되돌아 간다.

- Step 4 : 10점 범위 내에서 특정 점수를 결정하기 위해 higher end 인지 lower end 인지를 고려한다.

2. Dimensional view of GAF

1) Psychiatric Sx

- Psychotic Sx

- 망상, 환청등이 존재한다면 40점 이하
- 이러한 증상들이 행동에 영향을 주고 있다면 30점 이하

- Language

• 51-60 : 우원증적 언언, 의사소통을 이해할 수 있으나 생각, 감정 표현이 막연함.

• 31-40 : 때로 말이 비논리적, 부적절 또는 모호하여 의사소통에 어느정도 손상이 있음

• 21-30 : 때로 지리멸렬한 대화 등 의사소통의 심각한 손상

• 11-20 : 매우 지리멸렬하거나 말을 하지 않는 의사소통의 광범위한 손상

2) Dangerousness

- Suicide

• 41-50 : 단순한 자살에 대한 생각

• 21-30 : 자살에의 심한 몰입

• 11-20 : 죽음에 대한 명확한 기대 없이 자살 시도

• 1-10 : 죽음에 대한 명확한 기대를 갖는 심각한 자살 행동

- Hunting

• 11-20 : 빈번한 폭력, 조증의 흥분상태

• 1-10 : 반복적 폭력과 같이 지속적인 위협

3) Social skill

- 60-70 : 어느 정도 의미 있는 대인관계

- 51-60 : 친구가 거의 없고, 동료들과 갈등

- 41-50 : 친구가 없다.

4. Occupational skill

- 61-70 : 직업생활을 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기능을 잘 한다.
- 51-60 : 직업생활을 하는데 중등도 어려움
- 41-50 : 일정한 직업을 유지하기 어렵다.
- 31-40 : 가족을 방치, 일을 할 수 없다.
- 21-30 : 직업을 갖는 것이 불가능

5. Other functional scale

- SOFAS(Social and Occupational Functioning Assessment Scale; 사회적 직업적 기능 평가 척도)
- GARF(Global Assessment of Relational Functioning; 관계기능에 대한 전반적 평가)
- Defensive Functioning Scale(방어기능척도)

6. Case I

- 박씨는 하루 대부분을 아파트에서 요가를 하고, 용의 책을 보며 지낸다.
- 낮에는 자고 밤에는 깨어 있는데, 친숙한 가족 구성원 외에는 거의 대화를 하지 않는다.
- 그는 낮에는 밖에 나가기를 두려워했는데, 거리의 낯선 사람들이 그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생각과 행동을 조정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는 사고 명령의 전달은 태양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밤에는 더 안전하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 GAF=25(current)

7. Case II

- j씨는 퇴원 후 관계사고와 환청은 이전보다 더 줄어들어 1주일에 몇 번 정도 경험하는 저도였고, 별로 대수롭지 않다고 하였음.
- 최근 삼촌의 가게에 나가 물건 파는 일을 돕고 있으나 매끄럽게 일을 하는 편이 아니었고 규칙적인 생활도 잘 되지 않았음. 그래도 매일 가게는 나가고 있음
- 주말과 일요일에는 교회에 나가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였으나 병전 만큼 친밀하고 활발한 대인관계는 맺기 어려워 약간 걸도는 느낌이 있음.

※ GAF=38(current)

8. Case III

- C씨는 꾸준한 약물 유지로 망상, 환청 등은 사라졌고, 직업재활 프로그램에도 비교적 적응을 잘 하여 3개월 전부터는 정식으로 급여를 받고 일을 하고 있다.
- 그러던 중 최근 동거하던 여자와 크게 다투고 헤어진 후 우울한 기분과 자살에 대한 생각이 생겼고, 충동적으로 병원에서 타운 한달 분 약을 한꺼번에 복용한 후 가족에게 연락하여 응급실에 실려오게 되었다.

※ GAF=17(current)

BPRS(Brief Psychiatric Rating Scale)

※ Scale을 통한 평가는 왜할까?

- ▶ 정신과 증상은 손에 잡 잘하지 않아서
- ▶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 ▶ 변화의 정도를 알 수 있어서

1. 척도의 개발 배경

- 1962 Overall & Gorham
- : 16문항 개발
- : 개발목적
 - 정신병리의 주요차원 신속 평가
- : 적응 질환
 - 주로 정신분열증, 우울증, 조울증, 치매 등
- 1983 Overall
- : 18문항으로 확장
- 1986 Lukof, Nuechterlein & Ventura
- : 24개문항으로 개량
- :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고안

2. 특징

- 7점 척도, 24문항
- 정신병리의 진단, 치료에 대한 정신병리의 경과평가 등의 목적으로 사용
- 이 척도는 진단과 치료를 평가하기 위한 표준평가도구이며, 새로운 도구들과 비교되는 표준평가도구로서 활용
- 신뢰도(Hedlund & Vieweg, 1980)
- : 전체정신병리점수에 대한 검사자간 신뢰 .85
- 타당도(Hedlund & Vieweg, 1980)
- : 천개 이상의 연구들이 이 척도의 타당도를 지지
- : 횡문화적으로 타당한 척도

3. 척도의 원본

신체건강상태에 대한 집착(Somatic concern)	의심(Suspiciousness)
불안(Anxiety)	환각(Hallucination)
우울(Depression)	이상한 사고내용(Unusual thought content)
자살경향(Suicidality)	괴이한 행동(Bizarre behavior)
죄책감(Guilty)	자기관리 태만(Self-neglect)
적개심(Hostility)	지남력 장애(Disorientation)
고양된 기분(Elevated mood)	개념적 와해(Conceptual disorganization)
과대성(Grandiosity)	정동의 둔마(Blunted affect)
감정적 위축(Emotional withdrawal)	운동지체(Motor retardation)
긴장(Tension)	비협조적(Uncooperativeness)
흥분(Excitement)	주의산만(Distractibility)
운동과다(Motor hyperactivity)	반복적 동작과 자세(Mannerisms and posturing)

4. 점수

NA : not assessed

1점 : 없음

2점 : 아주 약간 정도, 의심되는 수준

3점 : 약간 정도, 증산의 존재가 분명히 인정

4점 : 중간 정도

5점 : 약간 심한 정도, 개인의 기능에 분명히 영향을 줌

6점 : 심한 정도, 망상수준

7점 : 매우 심한 정도

※ 일단 증산의 존재가 분명하면 3점-4점, 일상 생활에 영향을 주면 5점이상, 그 정도가 심하여 스스로 조절하기 어려우면 6점이상

5. 시행시의 유의점

- 평가자는 면담의 목적을 먼저 설명한다.

- 초기병력, 정신상태검사, 환자의 전반적인 문제에 관해 대략 10분정도 면담한 뒤 여기서 평가할 수 없었던 특정주제와 관련된 질문을 확인하는 것으로 평가를 마무리 한다.(대략 20분 정도)

① 1-14번 항목은 환자의 자기 보고에 의하여 평가한다.

② 7번, 12번, 13번은 관찰되는 행동에 의해서도 평가될 수 있음에 주의한다.

③ 15번-24번은 관찰된 행동과 언어에 근거하여 평가한다.

✓ 신체적 건강상태에 대한 집착(Somatic concern)

- 기능 장애의 정도는 신체 건강에 대한 집착에 의해서만 평가되어야지 우울과 같은 다른 증상에 의해 평가되어서는 아니 된다. 신체망상때문에 6 이나 7 로 평가되었다면, 이상한 사고 내용에서 최소한 4 이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 불안(Anxiety)

- 환자가 말하는 근심, 긴장, 두려움, 불안 발작 또는 걱정을 평가한다. 이 항목에는 환자가 보고한대로만 평가하고, 관찰을 통해 얻어진 불안 정도는 15번의 '긴장' 항목에서 평가한다.

✓ 우울(Depression)

- 슬픔, 불행감, 무감동, 우울한 주제에 대한 집착(우울 때문에 TV를 보거나 대화에 참여할 수 없음), 절망, 자존감 상실(자신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거나 혐오감 또는 무가치감)등을 포함함, 운동성 지체, 이른 새벽에 일찍 깨는 것과 같은 생물학적 증상이나 음성 증상에 동반된 무동기증은 포함되지 않음.

✓ 자살경향(Suicidality)

✓ 죄책감(Guilt)

- 과거의 행동에 대한 지나친 생각이나 양심의 가책, 환자의 말에 의해서만 평가하고, 우울, 불안 또는 신경증적인 방어로부터 죄책감을 추론하지 말 것. 죄책 망상

때문에 6 이나 7 로 평가하였다면, 이상한 사고 내용항목에서도 집착 및 장애 정도에 따라 최소한 4 이상으로 평가할 것.

✓ 적개심(Hostility)

- 증오, 경멸, 호전성, 위협, 논쟁, 율화, 기물파괴, 싸움 그리고 그 밖의 다른 적대감의 표현이나 행동, 신경증적 방어, 불안 또는 신체화 불평에서 적개심을 추론하지 말 것. 적절한 분노 혹은 명백한 자기 방어의 경우는 포함시키지 말 것.

✓ 고양된 기분(Elevated mood)

- 상황에 비해 지나친 낙관, 안녕감, 유쾌함, 다행감(병리적인 정동을 의미)이 지속되고 과장되어 있는 상태. 활동의 증가 혹은 과장된 발언만으로 기분의 고양을 유추하지 말 것.

✓ 과대성(Grandiosity)

- 과장된 자기 확신, 마치 부자나 유명인인 것처럼 특별한 능력이나 정체성에 대한 과장된 확신. 환자가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만을 근거로 평가하고 행동에 근거해서 평가하지 말 것. 만약 과대망상 때문에 대상자가 6 또는 7로 평가되었다면, 이상한 사고내용 항목에서도 최소한 4 이상으로 평가할 것

✓ 의심(Suspiciousness)

- 다른 사람들이 적개심을 가지고 행동하거나 차별하는 경향이 있다는 믿음을 표현하거나 분명하게 믿음. 초자연이나 다른 인간이 아닌 존재(악마같은)로부터 피해를 받고 있다는 믿음도 포함. 3이상으로 평가되면 이상한 사고 내용 항목에서도 평가되어야 함.

✓ 환각(Hallucination)

- 적절한 외부 자극이 없는 상태에서의 인식 경험을 보고함. 환각에 의해 장애가 생긴 기능의 정도를 평가할 때 환각 내용에 의거한 활동에 의한 기능 장애(예를 들어 명령 환청에 의해 비정상적 행동에 관여하는 것) 또는 유사환각(예를 들어 머리 속에서 들리는 목소리)뿐만 아니라 환각의 내용과 경험에 대한 집착도 포함함. 환자의 욕구와 관련된 것들을 주의깊게 생각해야 한다.(의심까지도 해야 한다.)

✓ 이상한 사고내용(Unusual thought content)- 말하는 내용

- 회화의 혼란(disorganization of speech)한 정도가 아니라 이상한 정도(unusualness)를 평가할 것. 관계/피해사고는 망상과 구별될 수 있음. 사고 침입(thought insertion), 철회(withdrawal), 방송망상(broadcasting)을 포함할 것. 다른 항목에서 평가가 되었더라도 과대망상, 신체화망상, 피해 망상을 포함함, 만약 신체건강에 대한 집착, 죄책감, 의심 또는 과대성이 망상으로 인해 6 또는 7 로 평가되었다면 이상한 사고 내용은 최소한 4 이상으로 평가되어야 함.

✓ 괴이한 행동(Bizarre behavior)

- 기이하고 이상하거나 정신병적인 범죄행동 등을 평가한다. 면담기간에만 한정해서 평가하지 말 것. 부적절한 성적 행동과 부적절한 정동을 포함할 것.

- ✓ 자기관리 태만(self-neglect) 먹는 것이 중요
 - 위생 상태, 외모 관리, 식습관이 일반적인 기대 수준이나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기준에 못 미치거나 생명에 위협적인 정도를 평가한다.
- ✓ 지남력 장애(Disorientation)
 - 주변 상황이나 면담 중 질문과 같은 대화를 이해하지 못함. 사람, 장소, 시간에 대해 혼란스러워 함. 만약 망상 때문에 반응이 부정확할 경우에는 장애가 있다고 평가하지 말 것.
- ✓ 개념적 와해(Conceptual disorganization)
 - 말(speech)이 혼돈되고, 조리에 맞지 않고, 모호하거나 와해된 정도를 평가한다. 탈선적 사고(tangentiality), 우원증(circumstantiality), 사고 비약(sudden topic shifts), 지리열렬(incoherent), 탈선(derailment), 단절(blocking), 신조증(neologism), 그리고 다른 대화소통상의 장애를 평가. 말의 내용을 평가하지 말 것
- ✓ 정동의 둔마(Blunted affect) - 표현의 정도
 - 얼굴, 목소리, 몸짓에서 감정표현이 제한된 정도를 평가한다. 자극적인 화제(distressing topic)에 대해 토론할 때조차도 현저하게 무관심하거나 변화가 없음. 기분이 들뜨거나 우울한 사례의 경우에는 확실히 감정의 변화 없으면(flat) 정동의 둔마 항목을 평가하십시오.
- ✓ 감정적 위축(Emotional withdrawal)
 - 면담하는 동안 감정적으로 관계를 맺는 환자 능력의 결핍을 평가한다. 환자와 면담자 사이의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면담자 자신의 느낌을 이용할 것. 명백히 정신병적 과정으로 인한 위축을 포함한다.
- ✓ 운동 지체(Motor retardation)
 - 운동과 말이 느려지고, 신체 움직임의 범위가 좁고, 자율적인 신체움직임의 횟수가 줄어드는 등 에너지 수준의 감소를 평가한다. 관찰자 환자의 행동에만 근거해서 평가할 것. 자신의 에너지 수준에 대한 환자의 주관적인 인상에 근거를 두어 평가하지 말 것. 약물효과에 상관없이 평가 할 것.
- ✓ 긴장(Tension) - 관찰 가능한 불안 경기
 - 긴장, 신경과민, 안절부절과 같은 관찰 가능한 신체적, 운동적(motor)표현을 평가한다. 긴장 경험의 자기보고는 부란 항목에서 평가할 것. 만약 안절부절한 것이 단지 정좌불능(akathisia)에 의한 것이라면 평가하지 말고 정좌불능이 긴장에 의해 약화될 경우에만 평가할 것.
- ✓ 비협조성(Uncooperativeness)
 - 면담에 협조할 생각이 없거나 저항함. 비협조성은 의심때문일 수도 있음. 면담과 관련된 비협조성만을 평가하고 친지나 가족에 대해 비우호적인 태도는 제외할 것.
- ✓ 흥분(Excitement)
 - 감정의 강도가 증가되어 있거나 면담자 혹은 논의중인 주제에 대해 감정 반응이 증가함. 얼굴 표정의 정도, 어조, 과도한 몸짓 혹은 말의 양과 속도의 증가로 알 수

있음.

✓ 주의산만(Distractibility)

- 면담에 관련없는 말을 하는 것. 자극에 바로 행동을 보이는 것. 관찰되는 말과 행동의 진행이 면접과 관련 없는 자극에 의해 중단되는 정도를 평가한다. 피면담자는 옆방의 소란스런 소리, 선반 위의 책들, 면담자의 옷 등으로 주의를 여기저기 기울인다. 우뚝증, 탈선적 언어, 사고의 비약은 평가하지 말 것. 또한 망상 내용을 반복해서 우물거리는 것도 평가하지 말 것. 산만하게 하는 자극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도 평가할 것.

✓ 운동과다(Motor hyperactivity)

- 움직임이 잦아짐 또는 말을 빨리 하는 등과 같은 에너지 수준의 상승을 평가한다. 정좌불능에 대한 안절부절은 평가하지 말 것.

✓ 반복된 동작과 자세(Mannerisms and posturing)

- 이상하고 괴이한 행동, 틀에 박힌 움직임 또는 행동, 혹은 명백히 불편하거나 부적절한 자세를 평가한다. 약물의 부작용에 의한 것이 분명한 행동은 제외. 기묘하건 이상하건간에 신경증적인 상동적 행동(nervous mannerism)은 제외

II. 지역사회에서의 정신장애인 사례관리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서진환

출현배경

1. 사례관리서비스 출현배경1

- 초기 탈시설화 이후 서비스 단편화 : 각기 다른 기관에서 다야안 재활 서비스 제공
-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해결 필요 제기 : 소득, 고용, 주택, 교통, 일상생활유지, 사회관계 등
- 지역사회 생활의 질 위협 : 일일이 서비스 기관 찾아다니고, 기관별 수혜신청자격과 신청과정의 상이성→인지적, 동기적 결손 지닌 만성중증정신장애인의 서비스 신청 노력 중단
- 포괄적 보호체계 필요 : 서비스 조직간 연결/지속적 서비스 제공 보장

2. 사례관리서비스 출현배경2

- 비공식적 자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증가
- 대인복지서비스 비용효과에 대한 인식 증가

개념

1. 사례관리 개념

- 일대일 원조관계를 바탕으로 정신장애인 개개인이 생활장면에서 경험하는 특정한 욕구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조정해주는 보다 발전된 서비스로서, 독

립적인 생활을 원조하는 적합하고도 효과적인 실천기법

-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사람들의 기능향상과 복지를 위해 총체적이고 통합적인 인력의 서비스를 문제의 심각성 정도 및 해결과정의 수준에 따라 단계별로 제공함과 동시에 각 단계간의 지속적인 연관성이 있도록 제공하는 문제해결과정으로 서비스와 서비스 사이에서 방황하게 될 정신장애인을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는 서비스 전달구도의 핵심

목적

- 만성정신장애인이 지니고 있는 복합적인 욕구를 해결하고 서비스 제공의 지속성과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만성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내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서비스원리

1. 서비스의 개별화
2. 서비스 제공의 포괄성
3. 클라이언트 자율성 보장
4. 보호 및 치료의 연속성
5. 서비스의 연계성

성과

1. 입원예방
2. 삶의 질 향상
3. 기능향상
4. 정신보건비용 감소
5. 모형별 성과비교는 연구별 차이
6. 기본환경 조성의 중요성 입증 : 전문가 1인당 10-35명

사례관리 실천모형

1. 실천모형 발전 배경
 - 초기 기본서비스 : 서비스 연계, 조정, 통합
 - 다양한 역할 요구 발생 : 필요한 서비스 부재시 직접 서비스 제공/사례관리자 역할과 업무 확대
 - 다양한 실천모형 개발 : 서비스 범위 확대로 '사례관리'개념의 혼란초래/다양한 유형의 서비스 제공 가능
2. 실천모양 구분 : 구분틀
 - 서비스 강도나 포괄성
 - ex) 직접서비스 제공 여부
 - 사례관리자의 구성
 - ex) 사례관리 팀 vs 개별 사례관리자
 - 사례관리자의 전문성 정도

ex) 전문가 vs 준/비전문가(자원봉사자, 학생, 가족, 동료회원 등)

3. 실천모형 구분

- 모형 구분의 필요성

: 각 기관에 적절한 자원과 인력배치계획에 기본 자료 제공

: 동일기관 내에서도 대상자 특성 및 욕구, 기관의 현실적인 여건 고려한 모형을 구분하여 적용 가능

- 모형 구분의 문제점

: 서비스를 패키지화하여 개별욕구 반영 부족 초래

4. 실천모형

- 브로커 모델

: 필요한 서비스가 존재하며 클라이언트가 서비스를 사용할 수도 있고 의지도 있다고 전제

: 개별화된 서비스는 위기상황에서만 가능

: 사례관리자 역할→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 연결과 조정

- 강점 모델

: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도 배우고 성장하고 변할 수 있다고 전제

: 환자의 강점과 잠재성, 자기결정권강조

: 사례관리자 역할→사회환경적 지지 제공하는 멘터(ct가 강점을 찾고 목표를 명료화하도록 원조)

- 재활모델

: 독립적인 지역사회 생활에의 장애물 극복전략 수립

: 체계의 규정목적보다 환자의 바람과 목표에 근거한 서비스

: 사례관리자 역할→지역생활유지와 개인목표달성을 증진하는 도구적 기술사정과 중재 강조

- 임상모델

: 정신질환에 대한 생심리사회 모델 사용

: 사례관리자 역할→전통적 조정 외에 심리교육/심리치료 제공

- ICM

: 빈번한 응급실 사용자 등 고비용서비스사용자들의 욕구충족 위해 개발

: 사례관리자 역할→쇼핑, 세탁, 교통 등 일상생활에서의 실질적인 자원과 직접서비스 제공

- ACT

: 직업재활, 의료적 치료, 사회기술훈련, 주거원조, 사회적 기회 제공 등 포괄적 서비스의 부분

: 팀접근에 의한 시간 무제한적 서비스 제공(24시간)

: 사례관리자 역할→포괄적 전문적 작업 통해 직접 서비스 제공

5. 실천 모형 주요 특징 비교

- 서비스 집중과 포괄성
 - : 기본형(전통적 브로커)에서 직접서비스 제공 접근(ICM, ACT 등)으로 이동할수록 증가
 - 재활모델 및 강점모델의 공통점
 - : 클라이언트 자기결정권 우선시
 - : 비/준전문가 수준의 사례관리자도 수행
 - 사례관리자 1인당 사례규모
 - : 기본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1:10~1:20 정도
 - 접근
 - : ACT
 - 서비스 제공 환경
 - : 대부분 사무실보다는 클라이언트의 자연적 환경 내 서비스 제공 강조(임상 모델 제외)
6. 실천 모형 구분의 의미
- 모델간 성과비교 연구 등 효과적 사례관리 모델이 무엇인가를 찾기위한 노력은 무의미
 - : 모든 서스 세팅에 걸쳐서 효과적인 단일 모델은 없다.
 - 만성정신장애인 집단 내 개인들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하며 따라서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인식 증가
 - : 우월한 특정 모델 모색보다 해당 클라이언트 욕구 및 주어진 서비스 환경에 적절한 서비스 요소를 밝히는 작업의 유용성 강조
 - : 예)사례크기가 작은 형태인 ICM 모델이 입원율을 줄이고 환자의 기능회전에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면서 미국에서는 이 모델을 선호
 - : 예)유럽에서는 일반모델이 자리잡고 있음

Ⅲ. 지역사회에서의 정신장애인 사례관리의 실제

-송파구정신건강증진센터 부센터장 황순찬

지역사회지지 프로그램

1. 지역사회지지 프로그램의 배경
 - 탈수용화, 탈시설화, 탈원화로 발생한 문제해결 필요성
 - 단편적이고 분절된 서비스의 통합
 - 비용효과성-사회기능향상/지역사회적응 증가
2. 지역사회 지지프로그램의 목적
 - 지역사회 서비스의 범주 구체화
 - 사례관리를 통한 서비스의 접근성과 조정 향상
3. 사례관리의 목적
 - 지속성(continuity)

- 포괄성(comprehensiveness)
- 연계성(integration)
- 개별성(individualization)
- 책임성(responsibility)

정신건강시스템 개혁의 근간- 초기 정신증 조기개입

1. 초기 정신증(early psychosis)

- 정신증은 보통 정신분열병과 정신병적 증상을 동반한 기분장애를 포괄하는 개념
- 초기정신증은 일반적으로 발병 5년 이내의 시기
- 발병 전 전반적인 기능저하, 약한 정신증 증상, 사회적 기능손상, 음성증상, 인지적 결핍 등을 보이는 전구기 상황 발생

2. 전구기(prodrome)

- 신경인지적 영역(기억/학습, 실행조절/처리속도, 작업기억)에서 손상을 보이고 발병 직전 상황으로 갈수록 신경발달적 장애와 인지기능면에서 손상이 심각해짐.
- 다양한 정신적 고통 수반, 고통의 심각성 정도가 정신증발병에 영향을 미침.
- 사회적 기능손상은 주로 우울, 사회불안 등과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고, 발병 상황에서 환각증상이 심할 경우 자살위험성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3. 문제점

- 당사자와 가족 모두 전구기와 발병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 이로 인해 증상의 만성화는 물론, 전반적 기능저하, 경제적 부담, 가족갈등, 사회적 관계단절등과 같은 더 심각한 상황 초래

인격장애

1. 인격장애와 정신증의 차이점

- 사고의 이완이나 망상, 환청과 같은 지속적인 정신증적 양상을 보이지 않는다.
- 일시적인 정신증적 상태 또는 미세정신증 삽화는 예외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 인격장애와 기질성 정신장애의 차이점 : 명료한 의식, 지능과 기억력, 상식의 양, 계산능력에 있어 모두 정상적이다.

가족교육

1. 가족교육의 배경

- 탈원화는 가족이 가장 중요한 돌봄제공자이자 평생지지체계라는 의미
- 당사자가 이요시설, 주거시설을 이용하더라도 가족이 재정적, 정서적, 사회적 지지의 가장 중요한 원천

2. 가족교육 내용

- 목표공유/협력적, 지지적 관계형성
- 질병교육/최적의 투약관리

- 가족지지
- 위기개입

IV. 정신보건전산시스템 및 평가도구(CANSAS) 교육

- 인천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재활지원팀장 이길자

1. 정신보건전산시스템 - 시설 해당 없음

2. 서비스 요구도조사 (CANSAS) 사용지침 및 MHIS에서의 적용

1) CANSAS 사용법

① CANSAS란?

Camberwell Assessment of Short Appraisal Schedule

심각한 정신건강상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의 서비스 요구도를 포괄적으로 사정하기 위한 도구

임상현장에서 특별한 사전훈련없이 사용 가능, 지난 1달동안 기준으로 현재 및 최근 상황 평가

② 작성법

- 일대일 면접 또는 토론의 형태로 실시

- 면접 대상자에게는 치료진, 보호자 및 서비스 이용자가 모두 해당

- 이용자, 치료진, 보호자가 지각한 욕구는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별도 양식으로 기록

- 면접 대상자를 나타내는 (U: 이용자, S: 치료진, C:보호자)에 ○표 하고, 날짜와 면접자 이름 기록

- 제시되어 있는 각 문항에 대한 질문을 하며, 필요하면 목적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

*이용자가 해당영역에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효과적인 도움을 받고 있는지 여부
면접 대상자의 대답을 기초로 지난 1달간의 평가 이루어짐
0 = 욕구없음 (예: 심각한 문제 없음)
1 = 욕구 충족 (예: 도움을 받아서 문제가 없거나 보통 정도임)
2 = 욕구 미충족 (예: 도움 여부와 상관없이 심각한 문제가 있음)
9 = 잘 모르겠음

- 요구도 평가는 다음의 지침에 따른다

- *그 영역에서 문제가 없는 경우 = 0점 (욕구 없음)
- *(가족지지, 컴퓨터의 정신치료, 약물등의) 도움을 받아서 심각한 문제가 없는 경우 = 1점 (욕구 충족)
- *(원인, 도움 여부에 상관없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 = 2점 (욕구 미충족)
- *면접 대상자가 모르거나 질문에 답하려고 하지 않는 경우 = 9점 (잘 모르겠음)

③ 주의사항

- 현재 문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적으로 '요구도=0'이 되는 것은 아님
- 어떠한 영역에서는 정신과적 이유 외에도 다양한 이유 존재 가능성
- 과잉 충족된 서비스 요구도 사정하지 않음

2) MHIS의 적용

- ① MHIS의 ISP 1단계에 CANSAS를 근간으로 하는 욕구 사정도구 설치
- ② CANSAS와 추가 욕구 사정 문항을 크게 8가지 영역으로 분류하여 재배치

영역	문항
1. 정신건강영역	심리적 스트레스
	정신병적 증상
	약물(치료) 정보
	약물관리
2. 물질남용 및 의존 영역	음주 문제
	약물 의존 및 남용
3. 위험성 영역	자해 및 자살 위험 (자기 안정성)
	타해위험 (타인 안정성)
4. 신체건강영역	신체건강
5. 일상생활 영역	자기관리
	식생활
	가정관리
	주간/여가 활동
	기초학습 (기초교육)
	전화(이용)
	교통수단 이용
생활비 관리	
6. 사회적 관계 영역	부부/가족 관계 (이성적 관계)
	부모자녀 관계
	자녀 양육
	성생활
	대인관계 (사회생활)
7. 학업/직업 기능영역	교육 및 훈련
8. 지역사회 생활지원 영역	고용지원
	교통 및 이동수단
	거주공간 (환경)

	사회보장 혜택
	법적 옹호
	인권 및 차별에의 보호
	안전 및 폭력에의 보호

③ 심각도 평가

요구도 평가에서 2(욕구 미충족)으로 체크한 경우에는 심각도를 평가한다.	
심각도	1. 욕구 미충족이나 그리 심각하지 않음 2. 욕구 미충족이며 다소 심각하여 전략적 개입이 필요함 3. 욕구 미충족이며 문제가 심각하여 집중적 관리가 필요함 4. 욕구 미충족이며 문제가 매우 심각하여 즉각적 개입이 필요함

V. 행정교육1 (공문서 작성) / 행정교육2 (사업계획서 작성)

-안전행정부 중앙공무원교육원 객원교수 신문주

1. 공문서 기안시 주의사항

항목	요령
1. 수신	① 2타(글자) 간격을 두고 수신자를 기재한다. ② 기관장을 수신으로 한다.(기관이 아님) ③ 수신자가 하나일 경우에는 수신자 란에 직접, 여럿일 경우에는 발신명의 바로 밑에 나열한다. ④ 내부결재일 경우에는 '내부결재'라고 기재한다.
2. 제목	① 2타(1글자) 간격을 두고 제목을 기재한다 ② 제목이 길어서 2줄이 될 경우에 2줄째 첫 글자는 1줄 첫 글자 밑에 오도록 기재한다.
3. 본문의 시작 위치	① 제목의 첫 글자 밑에서 시작한다.
4. 본문의 항목 구분	① 항목번호는 1,2,3 다음으로 가,나,다 다음으로 1),2)3) 다음으로 가)나)로 한다. ② 순서가 의미 없을 경우에는 항목번호 대신 기안자 임의로 부호를 사용할 수 있다. ③ 항목번호를 변경할 때 마다 2타(1글자)씩 들여서 기재한다.
5. 본문 첫 항목	① 기안문서가 다른 문서와 관련이 있을 경우 '관련근거'를 기재한다. ② 관련근거가 없을 경우 통상 인사말을 기재한다. 그러나 같은 집단에 속해있는 조직간에는 인사말을 기재하지 아니한다.
6. 관련근거 표	① 안전행정부 운영지원과-1234(2014. 2. 10), '공문서 작성법 교육

시	<p>실시' 식으로 표현한다.</p> <p>② 문서 명칭이 길더라도 끝까지 기재한다.</p> <p>③ 같은 기관 내에서 문서를 주고받을 경우에는 기관명 (예:안전행정부)을 생략한다.</p>
7. 줄 바꾸기	<p>① 본문 기재시, 문장이 길어서 아래 줄로 이어질 경우 아래 줄 첫 글자는 자연스럽게 기안지의 맨 왼쪽 가장자리부터 시작한다.</p> <p>② 한 단어가 2줄로 나뉠 경우에는 자 간격을 조정하여 1줄로 기재할 수 있다.</p>
8. 날짜 표기	<p>① 2014. 2. 10.(월) 식으로 기재한다. (년,월,일 대신 온점을 사용하되, 온점뒤에 1타씩 띄운다)</p> <p>② 기간을 표시할 때에는 날짜와 날짜 사이를 '-'으로 연결하되, '-' 앞뒤를 1타씩 띄울 수 있다. (붙여도 됨)</p>
9. 시간 표시	<p>① 15:00 식으로 표시한다 (24시각제)</p>
10. 쌍점(:) 사용	<p>① 쌍점 앞뒤를 띄우거나 쌍점 뒤만 1타 띄우고 쓸 수 있음 (예, 일시: 2014. 2. 10. 10:00 또는 일시: 2014. 2. 10. 10:00)</p>
11. 화폐표시	<p>① 240,000원(금이십사만원) 식으로 기재한다</p> <p>② 계약 서류 등 화폐금액 표시가 문서의 핵심 내용이 될 경우에는 반드시 위와 같이 기재한다.</p>
12. 순화용어 등	<p>① 기안 시에 사용하지 않는 용어 인지 확인한다.</p> <p>② '-코자', '-토록' 등 대신 '-하고자', '-하도록' 등을 사용한다.</p>
13. '태'	<p>① 1문장 속에 능동태 문장과 수동태 문장을 같이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능동태로 통일하여 쓰는 것이 좋다.</p> <p>예: -운영하고 있으며, -실시될 예정입니다 → -운영하고 있으며, -실시할 예정입니다.</p>
14. 아래와 같이	<p>① 기안문에 '아래와 같이' 또는 '다음과 같이'를 사용할 경우 그 밑에 '아래' 또는 '다음'이라고 표시하지 않는다.</p>
15. 붙임자료 처리	<p>① 붙임자료가 있을 경우 붙임자료의 핵심내용을 본문에 표시해주어야 한다. 이 때 '아래와 같이' 또는 다음과 같이 식으로 표시한다.</p> <p>② 기안문 본문에 붙임자료가 있음을 반드시 표시해준다. 중요한 자료일 경우, 문서명칭을 정확히 전부 나열해 주도록 한다.</p> <p>③ '붙임'은 기안지 외쪽 가장자리에서 시작한다. 붙임 뒤에 2타(1글자) 띄우고 기재한다. 붙임 뒤에 쌍점(:)을 표시하지 않도록 한다.</p> <p>④ 붙임이 여럿일 경우 1,2, 등으로 번호를 붙인다. 맨 끝 붙임자료 뒤를 '3. 공문서 교육 계획 1부. 끝.'식으로 표시한다. (1부 다음에 2</p>

	<p>타 띄우고, 끝 뒤에 온점을 찍는다)</p> <p>⑤ ‘붙임으로 송부하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으로 표시하되, 내부결재나 상급기관에 보내는 문서일 경우에는 ‘붙임으로 보고합니다.’ 식으로 기재한다.</p>
16. 결재 요구 표현	① ‘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현은 하지 않아도 된다. ‘승인하여’, ‘허락하여’ 등 표현은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17. 표	<p>① 표의 빈칸이 없이 다 채워져 있을 경우 : 표의 밑, 기안지 왼쪽 가장자리에서 2타 들인 후 끝표시를 함.</p> <p>② 표의 빈칸이 있을 경우 : 빈칸 다음 칸에 ‘이하 빈칸’이라고 기재. 끝 표시 불필요.</p>
18. 끝	<p>① 문서 맨 끝 글자 다음에 2타 띄우고 ‘끝.’으로 표시한다.</p> <p>② 문장이 기안지 오른쪽 가장자리까지 갈 경우에는 줄을 바꿔서 기안지 왼쪽 가장자리에서 2타 들여 ‘끝.’으로 표시한다.</p> <p>③ 문서가 표로 끝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다</p> <p>- 표의 모든 칸이 기재되었을 경우에는 표 밑에 줄의 기안지 오른쪽 가장자리에서 2타 들여서 ‘끝.’으로 표시한다.</p> <p>- 표에 빈칸이 있을 경우에는 맨 마지막 기재된 다음 칸에 ‘이하 빈칸’이라고 기재한다.</p>
19. 발신명의 표시	<p>① 내부결재 문서에는 발신명의를 표시할지 않도록 한다.</p> <p>② 직무대리나 권한대행 등을 발신명의로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김**’, ‘***부장관 직무대리 차관 김**’ 식으로 표시한다.</p>
20. 쪽번호	① 중요한 문서의 경우 반드시 쪽번호를 붙인다. 또한 쪽 사이에 간인을 한다.
21. 공개여부 표시	<p>① 반드시 비공개일 경우에만 비공개 표시를 하여야 한다.</p> <p>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공개법) 제 9조 제 1항의 1-8호의 비공개 사유’를 정확히 판단하여 ‘비공개(5)’ 식으로 표시한다.</p> <p>③ 붙임자료만 비공개 대상일 경우 : 부분공개 표시</p>

2. 계획보고서(도입) 작성 기법

1) 도입계획 보고서의 틀 (목차)

- ① 추진배경 (필요성) : 법적 근거, 연혁, 용어 등함
- ② 실태와 문제점, 향후 전망 등(SWOT): BM 등 활용

③ 목표, 방향(경우에 따라 비전-전략-과제체계)

④ 과제(목표 달성을 위한 과제) 또는 추진 계획

⑤ 세부 실행 계획

⑥ 기대효과 (정성적/정량적)

⑦ 행정사항 (즉각 조치사항도 여기에 포함)

2) 계획보고서는 언제 실패하는가?

① 도입계획 보고서 실패의 근본 원인들

- 기본적인 '틀' 자체가 미흡

② 도입계획 보고서 실패의 근본 원인들 : 추상적 표현

- 불명료한 추진 배경 (목적)

- 불명확한 정책 목표

- 목표와 연결되지 않는 계획 (세부과제)

- 빈약한 과제(계획) : 자료수집이 어려울 때

- 추상적이고 뜬 구름 같은 비전

- 세부실행계획 부재 또는 미비

- 성과목표/성과지표의 부재 또는 불명확

③ 도입계획 보고서 실패의 근본 원인들

- 꼭 필요한 '자료들'을 찾지 못할 때

※ 시설 내 활용 방안

1. 지역사회에서의 정신장애인 사례관리에 관한 교육을 들음으로써 이용회원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다가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음. 특히, GAF 및 BPRS 등의 정신장애인 평가도구에 대해 이론적인 부분을 통해 평가도구 사용법을 배우는 계기가 되었음. 시설 내에서의 회원 평가에 대한 부분 지속적으로 논의 필요하기에 팀회의때 이와 관련해 논의 하는 것 필요함.

2. CANSAS의 경우 MHIS를 사용하지 않는 본 시설에서의 적용 하긴 어렵지만, 팀 내 직원들의 전달을 통해 센터에서의 사례관리에 대한 파악 하는 부분도 좋을 것이라 사료됨.

3. 행정교육에 대해서는 시설 내 직원들과의 팀 회의 내 전달 교육 및 자료 배부를 통해 작성법에 대한 방법 공유하는 것 필요할 것임.

- 당사자와 가족 모두 전구기와 발병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 이로 인해 증상의 만성화는 물론, 전반적 기능저하, 경제적 부담, 가족갈등, 사회적 관계단절등과 같은 더 심각한 상황 초래

인격장애

1. 인격장애와 정신증의 차이점

- 사고의 이완이나 망상, 환청과 같은 지속적인 정신증적 양상을 보이지 않는다.
- 일시적인 정신증적 상태 또는 미세정신증 삽화는 예외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 인격장애와 기질성 정신장애의 차이점 : 명료한 의식, 지능과 기억력, 상식의 양, 계산능력에 있어 모두 정상적이다.

가족교육

1. 가족교육의 배경

- 탈원화는 가족이 가장 중요한 돌봄제공자이자 평생지지체계라는 의미
- 당사자가 이요시설, 주거시설을 이용하더라도 가족이 재정적, 정서적, 사회적 지지의 가장 중요한 원천

2. 가족교육 내용

- 목표공유/협력적, 지지적 관계형성
- 질병교육/최적의 투약관리
- 가족지지
- 위기개입

※시설 내 활용 방안 논의

1.정신장애인 평가 도구	GAF, BPRS의 경우 사례회의시 전체 회원 대상으로 실시 → 지속적인 개별화된 회원 평가 적용
	CANSAS의 평가 영역은 회원 서비스 목표의 우선순위 설정시 구분 적용
2. 공문서 작성법	실무자 전체 공유 (게시판 자료 게시)

2014 전문자료집 - 팀역량강화

남동발간 2014-08호

- 발행일 : 2014년 12월
- 발행인 : 서 현 정
- 편집인 : 정 은 지
- 주 소 : (405-868)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898번길
- 대표전화 : 032) 472-4004 팩스 : 032) 472-4005
- 홈페이지 : www.ndjb.or.kr